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3-29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미디어 규범 마련 연구

(A Study on Digital and Media Norm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Digital and Media Environment)

이부하/허순철/강기봉/김기선/김세준/김성호/한성훈/박세영

2023. 12.

연구기관: (사)한국법정책학회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규범 마련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총괄책임자: 이부하

참여연구원: 허순철

강기봉

김기선

김세준

김성호

한성훈

박세영

목 차

| | |
|---|------|
| 요약문 | viii |
| SUMMARY | xiii |
| CONTENTS | xx |
| 제1장 서 론 | 1 |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표 | 1 |
| 1. 연구의 필요성 | 1 |
| 2. 연구 목표 | 3 |
| 제2절 디지털 미디어 규제에 관한 동향 | 4 |
| 1.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동향 | 4 |
| 2.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동향 | 4 |
| 3. 인격권 침해 규제에 관한 동향 | 4 |
| 제2장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피해 상황 | 5 |
| 제1절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상황 | 5 |
| 1. 서설 | 5 |
| 2. 가짜뉴스 피해실태 | 6 |
| 3. 가짜뉴스에 관한 판례의 동향 | 18 |
| 4. 가짜뉴스 관련 외국 사례 | 27 |
| 5. 가짜뉴스의 유통 | 29 |
| 6. 소결 | 48 |
| 제2절 혐오표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실태 | 50 |
| 1. 혐오표현 관련 판례 | 50 |
| 2. 신문기사 | 59 |
| 제3절 인격권 침해로 인한 국민 피해 실태 | 63 |
| 1. 디지털·미디어에서의 인격권 침해 | 63 |

| | |
|---------------|----|
| 2. 명예훼손 | 65 |
| 3. 모욕 | 74 |
| 4. 악플 및 스토킹 | 77 |
| 5. 사자의 인격권 침해 | 78 |
| 6. 프라이버시 | 79 |

제3장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국민 피해구제 관련 국내 법령,

| | |
|--------------------------------------|-----------|
| 주요국의 법률 및 사례 | 80 |
| 제1절 가짜뉴스 입법현황 | 80 |
| 1. 입법 현황 | 80 |
| 2. 입법안 검토 | 89 |
| 제2절 인격권 침해 관련 입법정책 | 97 |
| 1. 인격권의 개념 | 97 |
| 2.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98 |
| 3. 국내 법률 현황 | 100 |
| 4. 입법안 검토 | 116 |
| 제3절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정책 | 118 |
| 1.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논의 | 118 |
| 2. 혐오표현의 규제 실태 | 121 |
| 3.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안 | 131 |
| 4. 소결 | 146 |
| 제4절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 148 |
| 1. 개요 | 148 |
| 2. 적용대상과 범위 | 150 |
| 3.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과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명령 | 157 |
| 4.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 | 165 |
| 5. 소결 및 시사점 | 182 |
| 제5절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및 형법 | 184 |

| | |
|--|-----|
| 1. 네트워크 집행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목적 | 184 |
| 2. 네트워크 집행법의 주요 내용 | 185 |
| 3.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평가 | 190 |
| 4. 독일 형법상 규제 | 192 |
| 제6절 미국의 혐오표현 및 불법표현물에 대한 규제 | 198 |
| 1. 서설 | 198 |
| 2. 혐오표현의 종류: ‘단순한 혐오표현’과 ‘헤로운 혐오표현’ | 199 |
| 3. 혐오표현에 관한 판례 | 200 |
| 4. 혐오표현 개념 논의 | 205 |
| 5. 혐오표현 규제 논의 | 209 |
| 6. 「통신품위법」 제230(c)(1) | 212 |
| 7. 미국 「혐오범죄예방법」 | 223 |
| 제7절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 233 |
| 1. 개요 | 233 |
| 2. 가짜뉴스에 대한 규율내용의 미비에 관한 논쟁 | 234 |
| 3. 정책의 배경 | 235 |
| 4. 법적 배경 | 243 |
| 5. 법령의 규정에 관한 해설 | 244 |
| 6. 법안의 주요 내용 | 245 |
| 7. 소결 | 281 |
| 제8절 호주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 283 |
| 1. 서설 | 283 |
| 2. 호주 「온라인 안전법」 개관 | 284 |
| 3. 소결 및 시사점 | 308 |
| 제9절 싱가포르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 2019) | 311 |
| 1. 입법개요 | 311 |
| 2.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의 주요 내용 | 313 |

| | |
|---|------------|
| 3.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 적용 사례 | 319 |
| 4.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에 대한 평가 | 324 |
| 5. 소결 | 329 |
| 제10절 일본에서 인격권 침해 관련 법령 | 331 |
| 1. 인격권 개요 | 331 |
| 2.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 332 |
| 3.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발신자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 333 |
| 4.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 341 |
| 제4장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342 |
| 제1절 입법 개선방안 | 342 |
| 1.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 | 342 |
| 2.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 | 352 |
| 3. 인격권 침해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 | 354 |
| 제2절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가이드라인(안) 제언 | 366 |
| 1.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 | 366 |
| 2. 목적과 개념정의 | 366 |
| 3. 적용범위 | 368 |
| 4. 기본원칙 | 368 |
| 5. 사업자 의무사항 | 369 |
| 6. 이용자 권익보호 | 370 |
| 7. 협의체 운영 및 관련 법령 준수 | 371 |
| 부록 | 372 |
| 참고문헌 | 414 |
| 1. 국내문헌 | 414 |
| 2. 해외문헌 | 418 |

표 목 차

| | |
|---|-----|
| <표 2-1> 각국의 코로나19 가짜뉴스의 취득경로 | 30 |
| <표 2-2> 코로나 19 가짜뉴스의 유형 | 33 |
| <표 2-3>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 의학정보 사례 | 36 |
| <표 3-1>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입법안(시간순) | 90 |
| <표 3-2> 법무부 민법 개정안 | 117 |
| <표 3-3> 혐오표현의 개념 정리 | 119 |
| <표 3-4> 유엔등 혐오표현 개념 정리 | 120 |
| <표 3-5> 디지털서비스법상 중개서비스 사업자별 의무 | 149 |
| <표 3-6>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범죄행위 | 186 |
| <표 3-7>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 188 |
| <표 3-8> 혐오표현의 해악 | 207 |
| <표 3-9> 혐오의 피라미드 | 209 |
| <표 3-10> 제116기 연방의회에 제출된 「통신품위법」 제230조 관련 법률안 | 220 |
| <표 4-1>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매체유형별 조정 신청 현황 | 365 |

그림 목 차

| | |
|--|-----|
| [그림 2-1] 허위정보가 우려되는 매체 | 30 |
| [그림 2-2] 가짜뉴스 경험자의 접촉경로 | 31 |
| [그림 2-3] 가짜뉴스 유통경로의 인식 | 31 |
| [그림 2-4] 코로나19 뉴스의 회피이유 | 38 |
| [그림 2-5] 한국사회 유튜브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는 설문응답 | 39 |
| [그림 2-6] 다른 유튜브 영상의 신뢰도를 주의하고 보게 된다는 설문응답 | 39 |
| [그림 2-7]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상 불법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 인신공격정보 등 삭제요청 건수 | 47 |
| [그림 3-1] 혐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 | 208 |

요 약 문

1. 제 목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미디어 규범 마련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디지털·미디어의 일상화로 방송·온라인 상에 증가하고 있는 국민 피해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규범 및 윤리 기반 마련

○ 연구의 필요성

-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 피해의 심각성
-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권리 구제의 필요성
-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권리 침해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를 위한 규범적 방안 마련 필요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연구의 구성

- 제1장 서론
- 제2장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피해 상황(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상황, 혐오표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실태, 인격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실태)
- 제3장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국민 피해구제 관련 국내 법령, 주요국의 법률 및 사례 (가짜뉴스 입법현황, 인격권 침해 관련 입법정책,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정책, EU

디지털서비스법,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미국 혐오표현 규제, 영국 온라인 안전법 (Online Safety Act), 미국법상 불법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 호주 온라인 안전법, 싱가포르의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 일본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 제4장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연구의 범위

-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상황, 혐오표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실태, 인격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실태 등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피해 상황
-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국민 피해구제 관련 국내 법령, 주요국의 법률 및 사례
-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 제안
- 디지털·미디어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4. 연구 내용 및 결과

(1)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피해 상황

○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

- 기사 등에서 유명인에 대한 허위정보 유포 사례, 소상공인 영업방해 사례, 기업 영업 방해 사례, 일반인에 대한 피해, 일반대중의 혼란 가중되고 있음
- 가짜뉴스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으로 확대·재생산되어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
- 가짜뉴스는 국민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 생각과 선택을 저해하여 사회 혼란 야기

○ 혐오표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실태

-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음

○ 인격권 침해로 인한 국민 피해 실태

-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었으며,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과 함께 이미지와 영상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음

(2)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국민 피해구제 관련 국내 법령, 주요국의 법률 및 사례

○ 가짜뉴스 입법현황

-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 행정적 대응으로는 방송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조치를 하는 방안이 있음. 형사적으로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전기통신기본법, 국가보안법 등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정책

- 혐오표현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사전예방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음. 해악을 초래하는 혐오표현은 인간 존엄이나 평등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이러한 혐오표현은 법적으로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인격권 침해 관련 입법정책

-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은 특정 유형의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통지 처리 속도 및 품질, 특히 불법 혐오발언 또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통지된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또는 접근 비활성화를 포함한 콘텐츠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콘텐츠 조정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프로세스 및 전담 리소스를 조정해야 함

○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 독일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와 가짜뉴스에 대처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

○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서비스 내 업로드 및 공유하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예방적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미국법상 불법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입법목적은 “유해한 온라인 게시물을 관리·감독하는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보호하여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규제로부터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임

○ 호주 「온라인 안전법」

- 호주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대상 사이버괴롭힘 콘텐츠’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사이버괴롭힘 콘텐츠’ 모두 행정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함

○ 싱가포르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

- 싱가포르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은 사실에 대한 거짓 진술의 전달 방지 및 그러한 통신의 영향에 대응하는 조치(명령) 가능,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온라인(웹사이트, 웹페이지, 채팅방 등)을 지원하는 일체 행위 금지, 조직화된 부정행위와 온라인 계정과 봇(Bot)의 악용의 발견, 통제, 저지 조치 가능

○ 일본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 일본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은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특정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을 위한 것임

(3)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

-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할 수 있음
- 개별 법률 개정방안으로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

-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조항을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벌칙 조항 개정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격권 침해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

-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등을 개정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적 활용 내용

- 디지털·미디어 상의 윤리 기반 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디지털·미디어 상의 윤리 기반 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6. 기대효과

- 디지털·미디어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증가하고 그 심각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법제도 마련으로 국민 피해 감소
- 디지털·미디어에서 발생하는 피해나 범죄 감소로 인하여 법적 분쟁 감소

SUMMARY

1. Title

A Study on Digital and Media Norm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Digital and Media Environmen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 Objective of Research

- In order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the issues of damage to the public that are increasing in broadcasting and online as digital and media become part of daily life,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norms and ethical foundations for overall damage occurring in digital and media

○ Importance of Research

- The severity of damage to citizens in the digital environment
- The need for rights relief in digital and media
- The seriousness of rights violations in digital media and the need to prepare normative measures for redres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Contents of the Research

- Chapter 1 Introduction
- Chapter 2 Situation of damage to citizens occurring in digital media (situation of damage to citizens due to fake news, status of damage to citizens due to hate

- speech, status of damage to citizens due to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 **Chapter 3** Domestic laws related to national damage relief in digital and media, laws and cases of major countries (status of fake news legislation, legislative policy related to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legislative policy on hate speech, EU Digital Services Act, German Network Enforcement Act, hate in major countries) Expression regulation, UK Online Safety Act, legal regulations on illegal expressions under US law, Australia’s Online Safety Act, Singapore’s “Online Fals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Manipulation Prevention Act”, Japan’s laws related to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 **Chapter 4**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reduce damage to citizens through digital media

○ **Scope of the Research**

- Situations of damage to citizens occurring in digital and media, such as damage caused by fake news, damage suffered by citizens due to hate speech, and damage suffered by citizens due to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 Domestic laws, laws and cases of major countries related to national damage relief in digital and media
- Proposal of amendments to the law to reduce damage to the public through digital and media
- Establishment of digital media ethics guidelines

4. Research Results

(1) Situation of damage to citizens occurring in digital and media

○ **Cases of damage caused by fake news**

- Cases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bout celebrities in articles, etc., cases of business interrup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cases of business interruption of

companies, damage to the general public, and increasing confusion among the general public

- In relation to the trend of precedents regarding fake news, there is a need for severe punishment as fake news is expanded and reproduced on the Internet, making it difficult to recover from damage
- Fake news causes social chaos by hindering people's rational thinking and choices

○ **Current status of public damage caused by hate speech**

- Recently, hate speech based on race, gender, region of origin, etc.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nd many hate speeches fall under the social evaluation of a specific victim and thus fall under the criminal offense of insult

○ **Current state of damage to citizens due to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 It has expanded further with the development of multimedia technology, and with the emergence of deepfake technology, infringement on personal rights through images and videos is intensifying

(2) Domestic laws, laws and cases of major countries related to national damage relief in digital and media

○ **Fake News Legislation Status**

- Civil responses to fake news include claims for damages and claims for corrected information. As an administrative response, measures such as reporting to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s fake news reporting center and deleting it after deliberation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can be considered. In terms of criminal matters, measures such as the Criminal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ress Arbitration Act,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and National Security Act can be considered

○ **Legislative policy related to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 On April 5, 2022,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ive notice establishing new definitions regarding personality rights in the Civil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3-2, Paragraph 1 of the Civil Act was newly established to define personality rights as “the rights to a person’s life, body, health, freedom, honor, privacy, name, portrait, personal information, and other personal interests.”

○ **Legislative policy on hate speech**

- The most effective and fundamental way to reduce hate speech is preventive education. Hate speech that causes harm undermines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nd equality, and there is a need to legally regulate such hate speech.

○ **EU Digital Services Act**

- Large online platforms and large online search engines consider the speed and quality of processing notices relating to certain types of illegal content, particularly in relation to unlawful hate speech or cyberbullying, and, where appropriate, a content moderation process that includes prompt removal or disabling of access to notified content. Establish and coordinate all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dedicated resources related to content moderation

○ **German Network Enforcement Act**

- Germany’s “Law for Improving Law Enforcement in Social Networks” imposes an obligation on social network service providers to respond to illegal content and fake news, and imposes significant fines if these obligations are not fulfilled

○ **UK Online Safety Act**

- The UK Online Safety Act emphasizes the preventive duty of service providers regarding ‘user-generated content’, which is not only illegal content but also

harmful content, which is created by users and uploaded and shared within the service

○ **Legal regulations on illegal expressions under U.S. law**

-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230 of the U.S. Communications Decency Act is to “protect Internet service providers who are ‘Good Samaritans’ who manage and supervise harmful online postings, create a self-regulatory environment, and protect freedom of online expression from government regulations.”

○ **Australia’s Online Safety Act**

- Australia’s Online Safety Act requires service providers to quickly delete content for both ‘cyberbullying content targeting children’ as well as ‘cyberbullying content targeting adults’ through the reporting system of the ‘Online Safety Commissioner’ (eSafety Commissioner), an administrative agency

○ **Singapore ‘Online Fals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Manipulation Prevention Act’**

- Singapore’s ‘Online Fals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Manipulation Prevention Act’ prevents the transmission of false statements about facts and allows for measures (orders) to counter the impact of such communications, and prevents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repeatedly online (websites, web pages, chat rooms, etc.)) Prohibits all activities that support, and can detect, control, and deter organized fraud and abuse of online accounts and bots.

○ **Japan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pecific Digital Platforms’**

- The purpose of the Act on Improving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Specific Digital Platforms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users providing products, etc., while considering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digital platform providers, designation of specific digital platform providers, etc., ami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3)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reduce damage to citizens through digital and media
 -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 on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can be regulated by enacting a separate special law
 - As a way to revise individual laws, revisions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stablishment Act can be considered
 -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 on hate speech**
 - There is a need to stipulate definitions for hate speech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penalty provision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ivil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Press Arbitration Act in relation to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establish an ethical foundation in digital and media
- Establishment of guidelines to establish ethical foundations in digital and media

6. Expectations

- In a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victims is increasing due to damage or crime occurring in digital and media, and the severity of the problem is rising, the damage to the public is reduced by establishing a legal system
- Reduction in legal disputes due to reduction in damage or crime occurring in digital and media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damage caused by fake news, illegal information, and harmful information is serious, and there is a need to legally regulate fake news nationally and socially. We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hat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all damages occurring in digital and media and propose digital media ethics guidelines.

Chapter 2. Situation of damage to citizens occurring in digital media

According to the article, cases of damage caused by fake news include cases of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bout celebrities, cases of business interrup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cases of business interruption of companies, damage to the general public, and increasing confusion among the general public. Fake news hinders people's rational thinking and choices, causing social chaos. Damage is occurring due to hate speech, and hate speech based on race, gender, region of origin, etc.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problem, and some hate speech lowers the social evaluation of a specific victim and constitutes a requirement for the crime of insult. Regarding the damage caused by violations of personality rights, violations of personality rights are expanding with the development of multimedia technology, and with the advent of deepfake technology, violations of personality rights through images and videos are intensifying.

Chapter 3. Domestic laws related to national damage relief in digital and media, laws and cases of major countries

Civil responses to fake news include claims for damages and claims for corrected information. As an administrative response, there is a plan to report it to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s fake news reporting center and have it deleted after deliberation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On April 5, 2022,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a legislative notice establishing new definitions regarding personality rights in the Civil Act. Among the methods of responding to hate speech, judicial regulations such as criminal and civil regulations have limitations in their preventive effect in that they are ex post regulations, so the most effective and fundamental way to reduce hate speech is preventive education.

EU Digital Services Act, German Network Enforcement Act, UK Online Safety Act, US Communications Decency Act, Australia Online Safety Act, Singapore Online Disinformation and Information Manipulation Prevention Act, etc. studied.

Chapter 4.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reduce damage to citizens through digital media

As a measure to improve legislation on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a separate special law can be enacted to regulate false and manipulated information, and revisions to individual laws such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stablishment Act can be considered. As a way to improve legislation on hate speech, there is a need to stipulate definitions for hate speech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re is a need to provide penalty provision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n

relation to violations of personal right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Civil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Press Arbitration Act.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미디어 규범 마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1)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의 심각성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다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공간적 무제약성(비경계성)과 전파성을 들 수 있다. 현실세계의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행위의 결과는 실시간 혹은 거의 동시에 전달가능하게 된다. 물리적 공간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온라인 환경의 전파력은 이용자들 간의 정보격차를 줄여줌으로써 정보의 독점화를 통한 권력화를 크게 완화시켰고 그 결과 정보의 ‘공유’라는 인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온라인상의 혐오표현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파성을 통한 피해가 다수에게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을 도의시킬 수 없다. 둘째, 온라인은 익명성·비대면성을 특징으로 한다.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실제 이름, 성별, 나이 등과 같은 신분성을 온라인에서는 감춘 채 익명성 아래 은둔할 수 있다. 익명성은 인터넷의 비대면적 성격으로 극대화된다.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통해서 온라인 이용자들은 현실세계보다 더욱 직설적이고 대담한 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익명성·비대면성으로부터 윤리의식은 감소하게 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써 사회적 일탈행위로 나아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셋째, 인터넷은 다양한 접속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공간 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다. 컴퓨터 외에도 휴대폰을 통해서도 인터넷 접속이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라인 환경 하에 있게 된다. 넷째, 온라인은 정보의 양방향성의 특징을 갖는다. 즉,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생산자는 누구라도 될 수 있으므로 현실 공간에서 정보의 수신자에 불과했던 이용자가 온라인 환경에서는 정보의 적극적 제공자 혹은 송신자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온라인 환경의 정보의 대량생산성과 축적성을 가능하게 한다. 즉, 정보의 양방향성에 근거하여,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로부터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가 생산되고 축적될 수 있다. 온라인의 특성에 근거하여 생활의 편의와 사회진보가

가능했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일탈행위가 가능하고 또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의 표현행위 친화성 또는 완전 경쟁적 표현행위 공간성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표현행위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외시킬 수 없는 온라인 환경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온라인에서의 생활은 시·공간의 무제약성으로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24시간 내내 이용할 수 있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과 수신자의 수신시점이 시간적으로 제약되지 않으며, 지역 국가라는 지리적이고도 물리적인 장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동일한 영향권 아래 있는 것처럼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온라인에서의 불법행위의 유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정보의 형식 측면에서 기존의 매체들은 주로 문서나 음성, 화상만으로 되어 있는 방식이었으나 온라인에서의 정보는 문서, 사진, 음향 등의 시각적인 이미지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보의 양과 질에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은 방송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게 콘텐츠를 송출하는 인터넷방송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정보의 내용 측면에서는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정보통제자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정보의 유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가 훼손될 만한 반사회적 내용의 문서들 등이 여과 없이 유통될 우려가 있다. 수많은 컴퓨터가 네트워크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시공을 초월하는 온라인을 형성함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 넘어 모든 정보가 매우 빠르게 전파된다. 온라인의 정보통신 수단인 인터넷은 간편한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하므로 이용자는 즉흥적으로 불특정상대방에게 직접 정보를 발송하고 수신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세계보다 상대방과의 접촉이 용이하며 일방이 정보제공 후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를 수신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동시에 다수인의 정보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전달되는 내용의 공적인 신뢰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반윤리적인 행위나 불법행위들이 현실세계에서보다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특정다수인의 동시접근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군중심리가 작용할 우려도 없지 않다. 익명성과 더불어 엄청난 확산속도를 갖고 있는 온라인 공간은 자칫 미확인 사실의 유포로 명예훼손이나 타인의 권

리 침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

(2) 가짜뉴스 규제의 필요성

가짜뉴스란 특정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 낸 거짓 정보를 말한다. 가짜뉴스는 온라인 공간을 통해 쉽게 확산되는데,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폐해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뉴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다. 가짜뉴스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와 ‘의도된 가짜 정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논의가 필요한 가짜 정보는 대중을 속일 목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왜곡한 또는 기만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는 ‘허위조작정보’로 표현되기도 한다.

(3)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한 침해의 권리 구제 필요성

디지털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은 정보나 뉴스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 새로운 정보를 양산하고 선과 악으로 단순화된 이분법적 대립 구조에 의해 표적이 된 인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표적이 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개똥녀, 쾌륜녀, 된장녀 등 이용자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인물에 대해 조롱과 비방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디지털 주홍글씨’를 낙인찍는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발생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인터넷에서 허위정보, 가짜뉴스, 혐오표현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해결할 적절한 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국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법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 목표

디지털·미디어의 일상화로 방송·미디어·온라인 상에 증가하고 있는 국민 피해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제2절 디지털 미디어 규제에 관한 동향

1.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동향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도하기 위한 법안들은 대체적으로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가짜뉴스들이 제작·유통되는 주된 경로가 인터넷이기 때문이고, 현행 법제상 인터넷상 정보에 대한 규율을 하는 중심적 법률이 정보통신망법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의된 가짜뉴스 법률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과 정의, 실효성 낮은 법률안, 가짜뉴스를 엄벌의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 제3자의 삭제요청권 도입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우려, 행정권 및 규제기관의 지나친 권한 확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강화의 문제점 등이 지적된다.

2.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동향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 비하 등을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를 혐오표현과 동일한 의미 또는 혐오표현의 한 종류로 해석·적용하지 않는 한, 차별금지법상 규제를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로 볼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

3. 인격권 침해 규제에 관한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격권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삭제 및 임시조치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관리·통제에 대한 역할을 불법행위 책임의 판단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문제된 표현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인격권 보호를 위한 절차와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2장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피해 상황

제1절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상황

1. 서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준다. 이제 길거리와 대중교통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손에서 스마트폰을 떼지 않는 광경은 일상의 광경이 되어 있다. 또한, SNS의 발달과 스마트폰에 탑재된 카메라의 발달로 누구나 고화질의 사진과 영상녹화를 통해 사건현장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한편, 과연 양질의 정보가 얼마나 들어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인터넷상의 수많은 정보 가운데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는 유용한 정보가 있지만 그 대적점에는 이성적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정보를 비롯하여 경제적 이익과 결부되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목적으로 살포되는 정보 등 양질이라 보기 어려운 정보들도 많다.¹⁾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분간하기 어렵게 만든다.

인터넷상의 정보유포는 해당 정보의 진실 여부나 공익적인 목적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유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일반인들은 해당 정보의 진실 여부보다는 유포된 내용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상으로 유포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정보들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활용되는 한편, 사회적 이슈와 결합하여 큰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포되는 다수의 정보들은 경제적 이익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유인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영상플랫폼이나 웹사이트 등에 유포되는 정보들도 관심도에 따라 수익이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적 현상은 비단 국내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 규제는 다소

1) 다수의 영상 플랫폼이나 웹사이트, 블로그 등은 사람들의 관심과 경제적 수익이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

미흡한 실정인데, 기존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범의만으로 규율하기에는 대상이 특정되기도 어렵고, 표현의 정도나 목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도 결부된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접근될 필요가 있다. 본 항목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한편, 현재의 법리에 근거한 판례도 동시에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되는 정보들의 성격을 면밀하게 파악한다.

2. 가짜뉴스 피해실태

(1)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

유튜브는 조회수와 관심도와 광고수익이 비례한다.²⁾ 영상을 클릭하기 전 영상제목과 영상내용을 요약한 한 장의 썸네일(Thumbnail)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사용된다. 자극적이고 허위·과장된 내용을 통해 사람들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썸네일 낚시(Clickbait)라고도 한다.

가짜뉴스의 생성과 유포에도 이와 같은 썸네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중이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개인미디어는 방송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법이나 방송심의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당사자의 고소 등 적극적인 피해소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소위 ‘아니면 말고’식의 정보생산이 용이한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익명이 보장되므로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관심을 받아 이슈몰이를 하는 ‘사이버 렉카’들은 정보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특히 이들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역외(주로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해외기반 플랫폼에도 적용하는 조항을 마련하고는 있다(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 그러나 현실적으로 굴지의 글로벌 대 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는 물론이고 임의수사조차도 대단히 어렵다.

2) 유튜브 광고수익의 계산방식과 구체적인 수익계산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구독자 수와는 상관없이 영상의 조회 수와 관련이 된다고 한다. 10분 분량의 영상에 광고 3개가 생기고 1조회수당 1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수익을 오픈하는 실제 유튜버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상수입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 유튜브의 예상수익을 계산해주는 웹사이트로 noxinfluencer, <<https://kr.noxinfluencer.com/youtube/channel-calculator>>.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은 가짜뉴스 생성과 유포의 주된 타겟이다. 가짜뉴스의 생성과 유포에도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일정한 유형이 있다. 생존한 사람인데 사망했다는 부고뉴스를 가장한 허위정보와 열애, 별거, 이혼 등 사생활 관련된 허위정보,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정보이다. 이들은 각각 사생활·인격권 침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유명세를 생업으로 하는 직업이므로 허위정보로 인해 대중의 질타를 받게 되면 섭외에 차질을 빚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2) 생사(生死)에 관한 가짜뉴스

유명인의 부고와 관련된 기사나 뉴스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좋은 소재이다. 특히 고령의 유명인들에 대한 부고(訃告)의 형식으로 가짜뉴스를 제조·재생산하며 유튜브에서 조금만 검색해보아도 뉴스 형식을 한 엄청난 수의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³⁾ 뉴스앵커가 더빙하는 듯한 영상편집과 장례식장의 영정사진과 유명인을 합성한 썸네일을 띄워놓아 일반인이 보면 진짜 부고로 오신하도록 만들어졌다. 실제로 이러한 허위부고로 인해 지인들이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다.⁴⁾

비단 고령의 유명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⁵⁾ 이러한 가짜뉴스는 생존하여 활동 중인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점과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에 대한 관심과 추모심리를 영상의 조회 수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허위정보를 담은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당 영상들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00만이 넘는 시청기록을 가지기도 한다. 실제 댓글에서도 고인으로 여겨 추모의 글을 남기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될 만큼 가짜 부고뉴스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힌다.

유명인의 위독설·건강이상설과 같은 가짜뉴스도 이와 유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⁶⁾

3) 이 가운데 대표적인 피해자 사례는 다음과 같다.

<https://youtu.be/iWpuK0EF8_E?si=9sJkVbYvRUVnPS0n>

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1209594514355>>

이를 지적하는 기사로, 한스경제, [이슈+] 선 넘는 SNS발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나, 2023.01.31.,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835>>

5) <<https://youtu.be/D6IRF4FXACY?si=wkavIN8g0z8Q5D19>>

<<https://youtu.be/TtQaNomQ-Ic?si=3L29beY-wXHnvdSn>>

6)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71409420001481?did=fa>>, <<https://isplus.com/>>

이와 같은 위독설 등은 별도의 확인이나 검증 없이 일간지에도 게재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⁷⁾ 이러한 유형의 가짜뉴스는 본질적으로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누적될 수록 마치 진짜뉴스에 대하여 대중들이 무감각해지는 양치기 소년의 우화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3) 사생활 관련된 내용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각종 소문이나 추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이 되어왔다. 각종 소문을 정리하여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증권가 정보지의 형태로 유포된 이른바 ‘찌라시(散らし)’형태가 있지만 이와 같은 정보지 수준은 일반인들에게 확대·재생산되기보다는 접근층도 제한적이고 열람자들도 풍문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짜뉴스는 일간지를 비롯하여 SNS,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살포되고 있다. 수많은 사생활 관련된 가짜뉴스들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생활 관련 가짜뉴스는 열애설에서부터 혼외임신이 있고,⁸⁾ 별거,⁹⁾ 이혼,¹⁰⁾ 불륜,¹¹⁾ 비밀출산¹²⁾ 등이 있다.

(4) 허위의 스캔들 내지 추문

각종 허위의 스캔들 내지 추문(醜聞)으로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내용이다. 유명인들이 미디어에서 보이는 이미지와 다른 실제 모습이나 업계의 평판도 소문처럼 존재하고 있으나, 인터넷과 유튜브의 발달은 이러한 소문들을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파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파 가운데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가미되기도 하여 종국적으로는 심각한 왜곡에 다다르게 된다.¹³⁾ 각종 스캔들 내지 추문(醜聞)이 여기에 해당한다.

article/view/isp202307140004>

7) <http://www.kpec.or.kr/sub/sub_0201_view.asp?Year=2023&DecideBaseNo=Y20230913&DecideNo=2023-3267>.

8) <<https://youtu.be/xCMW5GqoRX8?si=gil7H6cpiEMx1l1rt>>.

9) <<https://youtu.be/IDtQsHJwiVw?si=tx01mYTAwoVnEZdW>>

10) <https://youtu.be/ZSJrJlmjurl?si=IffgKnSlyJh0_v4eX>

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4394#home>>.

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820310188008>>.

2023년 6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에서, 극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이 현직 국회의원과 구의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가짜뉴스가 성행한 바 있다. 권력을 이용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을 통제한다는 취지로 확산되어 큰 논란이 되자 지목된 정치인들이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¹⁴⁾ 희극인들의 엄격한 선후배 문화에서 가혹행위의 가해자로 생산된 가짜뉴스가 유포된 경우나¹⁵⁾ 비듬이 수북하고 구취가 심해 상대역이 곤욕을 치렀다는 루머¹⁶⁾ 등 인터넷상으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고령의 대통령 영부인이 미국의 힙합가수와 재혼한다는 취지의 허황된 허위정보로 실제 처벌되기도 한 사례이다.¹⁷⁾ 이처럼 인터넷상의 허위정보는 업로드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전파될 위험이 있다는 점과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최종 판결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걸린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 사이에 가짜뉴스는 널리 퍼져있다는 문제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유통에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언론과 1인 미디어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이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들의 작은 스캔들이나 소문을 허위·과장하여 인터넷상으로 유포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터넷상으로 퍼지는 무분별한 가짜뉴스는 본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사항을 허위로 지적하여 유포하므로 대중들의 이미지가 중요한 유명인들에게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기도 한다. 실제 섭외에 지장이 있다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악소문이 퍼지기도 하여 인격적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마약, 정치성향 등이 가짜뉴스로 유포되어 해당 인터넷 방송인이 자살한 경우도 있다.¹⁸⁾

1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0916254722168>>.

14) <<https://www.segye.com/view/20230720518508>>.

15) <<https://youtu.be/33ak2kla65Y?si=dcW9HdemVTNppFiW>>.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093>>.

16) <https://youtu.be/-aixp_umtwg?si=XDfudG5HL-P1D9dS>.

<<https://www.donga.com/news/Entertainment/article/all/20231016/121683180/1>>.

17) <<https://www.news1.kr/articles/?3083907>>.

1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816410197572>>.

(5) 소상공인 등 영업방해 사례

이른바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의 취지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악덕상인을 보여줌으로써 해당 상인에게는 매출에 타격을 입히고 소비자에게는 경각심을 이끌어주어 건전한 상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지닌 본질적 속성이 고발인 만큼 소재를 억지로 찾기 위해 편집과 과장은 물론 허위정보를 가미하고 확대·재생산하여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7년 <먹거리X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 제조업체가 버터 대신 식용유를 쓰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방영한 것을 들 수 있다.¹⁹⁾ 이처럼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은 개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로 막강하다. 그렇지만 한 번 전파를 타고 나간 방송에서 발생한 손해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정도로 공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유튜브와 같은 영상플랫폼이 크게 유행하게 되며 이른바 1인미디어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인기있는 유튜버는 인플루언서로 구독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수많은 콘텐츠들 가운데 이른바 맛집탐방은 시간, 노력, 비용, 아이디어 등 제작에 법적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이 몰려있다. 유튜버들도 자신의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하여야 수익이나 유명세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같은 맛집탐방 유튜버라도 자극적인 내용을 가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가 적지 않다. 일례로 음식점을 다니며 평가하는 것을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영상에 올려 피해식당은 사람들의 비난에 폐업을 거쳐 재개장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다.²⁰⁾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20-2023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전염병 사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짜뉴스들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가하였다. 메르스 확진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았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²¹⁾ 2020년 코

1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8500044&wlog_tag3=naver>.

20)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20/12/1291069/>>.

2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098442>>.

로나19 팬데믹 때 가짜뉴스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특히 코로나19와 확진자 동선에 관련된 각종 가짜뉴스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강남구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사실과 다른 업소명이 적힌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호텔, 병원 등이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²²⁾ 경남 사천시에서는 신천지교인들 관련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방문객이 줄어들어 수산물시장과 마트, 식당가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적이 있다.²³⁾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사건에서도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보도들이 있었다. 실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산물 소비의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90%의 응답자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²⁴⁾ 당시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지역 상품권의 적용범위를 수산물시장에도 확장시키는 등 안전관리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지만 오염수 방류로 인한 불안감은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수산물 소비지출이 연간 4,483억원이 줄어드는 등 연평균 소비지출이 29% 가량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방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러한 전망들이 현실화되었다. 예컨대 100톤의 양식 우럭의 판매처를 찾지 못하여 수산업자들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²⁵⁾

(6) 기업 등의 영업방해 사례

메르스와 코로나19 당시의 가짜뉴스는 확진자 동선이 대중들에게 잘못 유포되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병원들에 대한 영업방해가 이루어진 바 있다. 대학병원을 특정하여 메르스 환자가 다녀갔다고 하여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다.²⁶⁾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그 정도와 횟수가 더욱 증가하였다. 확진자의 경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병원이 폐쇄되는 등 코로나가 심각한 시기에 더욱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²⁷⁾

22)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31/1071793/view.do?mid=ID01_0313>.

23) <<https://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02>>.

2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114340849614>>.

25) <<https://www.mk.co.kr/news/politics/10815237>>.

26)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8229>>.

27)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7130600064>>.

과거 ○○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 당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²⁸⁾ 직장 재직자임을 인증받아야 성공적으로 가입될 수 있고, 수많은 직장인이 익명으로 이용하는 소셜 커뮤니티로 기능하고 있다. 익명의 현직자라는 신빙성에 기대어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추어 뉴스를 생산하기에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허위계정을 만들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실제로 ○○○○ 계정이 거래되어 경찰청 계정으로 경찰을 사칭하여 칼부림을 예고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통로로도 악용되고 있다.²⁹⁾

2023년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가 파산하여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터넷발 가짜뉴스로 관련 은행들이 해명한 사건이다.³⁰⁾ 실제 ○○○○에서 인터넷 은행인 T은행이 유동성 위험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치한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³¹⁾ 이러한 가짜뉴스의 생성과 유통은 ○○○○의 가짜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와 이를 구매하여 허위사실을 생산하는 사람, 그리고 ○○○○의 글을 살펴보다가 현직자의 익명 전언을 빌려 기사화하는 언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회사 직원임을 사칭한다는 점에서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행위가 검토될 수 있고, ○○○○ 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도 검토될 수 있다.

(7) 일반인에 대한 피해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비단 유명인들에게만 그치지 않는다. 뉴스의 홍수 속에서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이다. 특히 SNS,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와 영상과 편집기술의 발달로 실제 사실인 것과 같은 형식의 가짜뉴스가 여과없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것에 모르겠다는 응답이 52.5% 구별할 수 없다는 응답이 30.8%로, 구별가능하다는 응답인 16.7%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³²⁾

28)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120/69180560/1>

29) <<https://www.4th.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939>>.

<<https://www.fnnews.com/news/202308280713196067>>

30)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327000223>>.

31)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32716310458743>>.

32)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3414>>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사건에서는 정치인들의 집회·시위에서 과격한 발언도 있다.³³⁾ 또한, 각종 과학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괴담(怪談)이 인터넷상으로 퍼져서 불안감이 증폭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137만톤의 오염수가 70경(京) 톤의 태평양을 오염시킨다는 주장, 현재 잡히는 우럭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는 주장, 한반도의 해산물이 위험하다는 주장, 30년 후에 나타날 방사능 부작용의 우려, 태평양산 수산물의 위험성, 제주도 해녀들의 건강에 위협, 삼중수소의 위험성, 방류수를 식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라는 주장 등이 인터넷과 시위현장을 통해 전파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산물 상인들에게 돌아간 바 있다.

전염병 관련된 사건으로는 2015년의 메르스 사태와 2020-2023년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있다. 코로나19 백신 무용론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백신접종 사망자와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비교하거나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다.³⁴⁾ 코로나19의 경우 백신에 관련된 수많은 괴담이 나돌았는데, 개중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백신속에서 미확인 괴생명체가 발견되었으니 접종 중단을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³⁵⁾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많은 허위정보들이 가짜뉴스의 형태로 유포되었다. 2018년 탈(脫)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는 원자력에너지가 지닌 위험성을 허위·과장하는 정보들이 인터넷과 SNS, TV나 매체 등 보도에서도 횡행한 바 있다.³⁶⁾

그 밖에도 각종 건강 관련 허위정보가 가짜뉴스의 형태로 제공되어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한 한의사는 2013년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이른바 안아키)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6만여명의 회원이 달할 정도로 각광받은 바 있다. 이른바 자연치유가 가능하므로 항생제, 예방접종을 금지한다던지 숯가루 먹이기, 수두에 걸리게 하여 자연면역을 갖추게 하기와 같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널리 전파하였다. 허위정보로 아동학대라는 비판에 따라 아동학대, 식품위생법 등으로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식품위생법, 약사법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되었다. 이후 한의사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재교부 신청을 한 이후 한의원을 운영하며 유튜브

33) <<https://m.segye.com/view/20230701511139>>.

34)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57>>.

35)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5_15>.

3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4/2019042400219.html>

활동도 시작하였다.³⁷⁾

2019년 암환자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한 구충제를 이용한 암치료가 있다. 미국의 말기암 환자가 개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 완치에 성공하였다는 사례에서 비롯되었다. 전문가들은 구충제가 항암제로서의 효능이 없고 간독성 부작용을 우려하여 만류하였다.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사람용 알벤다졸과 동물용 펜벤다졸을 다량으로 구매하여 전문가의 처방 없이 복용하였다.³⁸⁾

암(癌) 관련된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 치료방법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각종 민간요법이나 허위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예컨대 비타민C주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³⁹⁾ 또 다른 암치료 관련된 허위정보로는 마늘이 있다.⁴⁰⁾ 이상의 정보들은 유튜브에서도 지적한 가짜뉴스에 속한다.⁴¹⁾ 건강 관련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들은 의사와 같은 의료전문가들도 제작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더 문제된다고 하겠다.

가짜뉴스는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의 경우에는 인격권과 명예훼손,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유통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 타겟은 유명인 이지만 경우에 따라 가짜뉴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와 결부된 사건의 당사자들은 일반인 여부를 가리지 않고 각종 가짜뉴스들이 확산되기도 한다.

2021년 4월 한강변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대학생이 실종 뒤 익사한 채로 발견된 사건에서 사망한 대학생과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 대한 각종 허위정보가 인터넷과 SNS를 떠돌아다니는 바 있다. 이러한 허위정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엉뚱한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는 하였다. 그 중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의 친인척이 고위 경찰간부라는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전파되기도 하였다. 또한, 동행한 친구의 아버지가 모 병원의 의사라는 등 전혀 무관한 사람을 엮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같은 수뇌부는 물론이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해당 사건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려 한다는 루머는 수사기관이라는

37) <<https://www.youtube.com/channel/UCB3kL6u7HT31BqzUfZZUkbg>>.

38)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8736>>.

39) <<https://youtu.be/3P976A1o52o?si=T-yRWk3wzE86IK2Q>>.

40) <<https://www.youtube.com/watch?v=zwac3GNY5jI>>

41)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8/16/UHUF2N47BBRDC4ILVT4J6O4JQ/>.

공권력의 신뢰와도 결부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확산되자 해당 경찰관이 해명을 하는 사태도 빚어졌다.⁴²⁾

2023년 7월 폭우로 인한 제방 유실로 청주시 오송읍 지하철도를 지나던 차량들이 침수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다. 당시 어느 버스가 승객을 구하고 다시 버스로 돌아갔다가 사망하였는데, 이후 해당 버스가 규정노선을 벗어나 운행하였다거나 버스가 승객을 버리고 탈주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된 바 있다.⁴³⁾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 심의사건

1) 사실관계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3일 앞둔 2022년 3월 6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의 중심인물인 화천대유 대표 김만배와 신학림 전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전문위원간의 2021년 9월 15일 자 대화녹취록이 <뉴스타파>에서 공개되었다.⁴⁴⁾

<뉴스타파>의 인터뷰 녹취록 공개 이후 언론사들은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⁴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언론사들이 <뉴스타파>의 편집된 녹취록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가 없이 인용보도한 것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로 긴급 심의를 상정하였다.⁴⁶⁾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의 대상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글과 영상에까지 확대하는 심의내용을 발표하였다.⁴⁷⁾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인터넷 언론이 포함될 것인지 여부 가. 법적 근거

4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166>>.

43)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472>>.

44) <<https://youtu.be/TrdLAL3AT78>>.

45) <<https://youtu.be/cL1uTYbEcrg?si=QgLCL-BJM9K0zLVf>>.

<<https://youtu.be/HEGq-rMVECM?si=CWkYb5sj-SJL4k5O>>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7762_35666.html>

46) 2023년 제3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27면 이하.

4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2023.09.2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27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직무 등 관련 근거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광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각각의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심의대상인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 통신망을 매개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다(방송법 제2조 제1호). 통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정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정보 등의 불법정보(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조 제1항)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방통위법 제21조 제4호),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방통위법 제21조 제5호) 등이 있다.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심의대상인 정보란 청소년 유해정보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불법정보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가운데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두고 있다(방통위법 제24조 제2호). 심의기준은 국제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기타 법령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광고·선전등 제한을 나누어 규정한다.

나. 가짜뉴스 심의 현황

가짜뉴스 심의대상으로 인터넷 언론이 될 것인지 법령의 근거와 해석이 주로 문제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예정하는 가짜뉴스의 심의대상은 허위조작콘텐츠이다. 이러한 허위조작콘텐츠는 방송과 통신으로 나누어 특히 통신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게시글과 동영상이며 포털, 인터넷 언론사도 포함된다. 특히 신속심의대상으로 긴급재난,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사항으로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심의와 관련해서 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근거를 두고 있고, 통신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제3호 카목(사회혼란) 및 제4호 다목(명예훼손)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심의규정을 통한 심의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⁴⁸⁾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근거로 보더라도 사회혼란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방송법상 방송의 정의에는 인터넷 등 통신망을 매개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 데이터방송을 포함하고 있다(방송법 제2조 제1호). 이 정의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의 뉴스와 영상은 방송에는 해당되지 않고 통신에 속하므로, 통신심의를 위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는 관계법령에서 불법정보라는 용어로 찾아볼 수 있다. 즉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관한 불법정보(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조 제1항)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한 사항으로(방통위법 제21조 제4호)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동시행령 제8조 제1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 있다(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심의대상

방심위의 신속심의 대상은 중대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부분을 먼저 보자면, 인터넷의 특성상 정보의 진실여부나 목적과 같이 차후에 밝혀질 부분과는 별개로 한번 유포되면 그 자체로 원상회복이 대단히 어렵다. 예컨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등은 오랜 시간 재판을 거쳐 승소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긴급재난 사항과 중대한 공익 침해, 금융시장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항은 중대한 공익,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같은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8) 2023년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윤성욱 위원의 발언, 10면 이하.

마. 제재조치

다음은 방송심의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징금과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본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의 제재조치에 관한 심의·의결도 직무내용으로 하고 있고(방통위법 제21조 제2호), 여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의 징계, 주의 또는 경고, 출연 제한, 과징금 등이 있다(방송법 제100조). 그렇지만 통신심의의 경우 법상 시정요구를 규정하고 있고(방통위법 제21조 제4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는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와 같은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동 규정 제15조). 이상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실 등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는 명령요청이 가능할 뿐이다(동 규정 제17조).

방심위는 현행법상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불법정보로서 심의는 가능하지만, 삭제 또는 차단의 시정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송심의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가짜뉴스에 관한 판례의 동향

(1) 방송사 간 허위보도가 문제된 사안⁴⁹⁾

1) 사실관계

甲 방송사가 뉴스에서 유명인 乙의 접촉사고를 다루며 乙과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丙방송사가 시사프로그램에서 “甲 방송사는 ‘乙의 차량에 동승자가 타고 있었다’ 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甲방송사는 ‘乙이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와 같은 보도를 하자, 甲 방송사가 丙 방송사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丙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쟁점

4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37014 판결.

이 사건에서 丙 방송사의 甲방송사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는 인정되지만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丙 방송사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3) 판례의 태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 방송사의 보도에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甲 방송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甲 방송사가 피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丙 방송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丙 방송사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甲 방송사의 뉴스를 포함한 다수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고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형태를 탐색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丙 방송사가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지만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하여 甲 방송사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보도의 성격(언론 비평)을 고려할 때, 丙 방송사가 위 보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甲 방송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다.

(2)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사안⁵⁰⁾

1) 사실관계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유통 중인 황토팩 제품 A가 결함이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일반 화장품기준’을 초과하는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황토 분쇄기구인 쇠볼의 마모 등으로 제품에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인 것이다.

2) 쟁점

제품 A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제조사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인지 여부와 함께 보도의 목적에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14 선고 2008가합48235 판결.

3) 판례의 태도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일반 화장품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로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그 보도의 상당 부분이 일반 대중들에게 황토팩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여금 황토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의 허용치에 관하여 좀 더 명확하고도 엄격한 기준을 정립하여 이를 적절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중 위 황토팩 제품에 ‘일반화장품 기준’ 을 초과하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부분과 그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다고 보도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위 방송사등이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제조과정 중 쇠볼 마모 등으로 유입된 쇳가루라는 취지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고, 위 방송사 등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3) 허위 인터넷뉴스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안⁵¹⁾

1) 사실관계

甲, 乙 등이 신문사에 제보하여 기자 丙이 丁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뉴스에 게재하였다. 丙은 丁의 실명을 쓰지는 않았으나 여러 정황상 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丁이 이를 보고 허위 기사의 제보 및 게재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제보자 甲·乙, 丙, 발행인 戊를 상대로 위 자료를 청구하였다.

2) 쟁점

언론기사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와 보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보

51) 의정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는 기준이 문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판례의 태도

가. 특정여부

판례는 어느 정도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실명이나 단체의 명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문자나 이니셜만으로도 특정이 된다고 보았다. 즉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나. 공공의 이익

판례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은 전제하고 있지만, 주변 사정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4)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의 허위성과 주관적 의견표명 기준 사안⁵²⁾

1) 사실관계

52)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미국과의 FTA 협정 가운데 소고기 개방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인 중 약 94%가 엠엠(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과 정부가 문제발생시의 대책 및 사전조사가 미흡했음을 비판하는 논조를 취하였다.

2) 쟁점

이 사안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한다면 한국인의 유전자상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한,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소의 도축시스템을 사전에 잘 알지 못한 사실 및 수입소고기가 문제가 되었을 때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지 못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의견표명인지 아니면 사실주장에 관한 보도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3) 판례의 태도

가.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에 대한 허위

대법원은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관계가 어떠한 물질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사실관계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식품위생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정정보도 여부를 심리함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언론사가 과학적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의 자료로 삼은 과학적 증거가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신뢰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한 자료에 기초한 사실적 주장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과학적 불확실성은 그 과학적 연구가 첨단과학이나 논쟁적인 과학적 주제에 관한 것일 수록 높아지는 것이므로, 언론은 보도과정에서 과학적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대하여 보도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현재까지의 과학수준이나 연구 성과에 의하여 논쟁적인 과학적 사실의 진위가 어느 쪽으로든 증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고, 아직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학계에서 일반적·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 언론이 논쟁적인 주제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그 과학적 연구의 한계나 아직 진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라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그 과학적 연구에서 주장된 바를 과학적 사실로서 단정적으로 보도하였다면 그 과학적 사실에 관한 언론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의견표명 여부

문화방송이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안에서,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위 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전체적 구성, 사용된 어휘 및 표현 방식,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보도는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 중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보도의 내용을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축소하려 하였다’ 는 사실적 주장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의견의 표명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양자를 구분하여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것을 허위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를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태도에 대한 비판이라는 위 보도의 전체적인 의미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 보도는 전체를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

니하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5) 언론인이 신문에 악의적 허위사실 게재 사안⁵³⁾

가. 사실관계

甲은 개그맨 출신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丙의 인격을 훼손하고 성범죄 재판에서 丙의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기사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긍정한 형사소송이다. 甲은 乙등과 주기적으로 만나 재판 진행과정을 공유하며 대책을 마련하였고, 甲이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丙이 허위과장의 진술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검사는 甲과 신문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쟁점

이 경우는 일반인이 인터넷상에 저지른 명예훼손행위의 불법성과 언론을 이용하여 비방 목적의 기사를 게재한 경우의 불법성을 비교할 때 후자의 불법성과 폐해가 어느 정도인지 문제된 사안이다.

다. 판례의 태도

항소심은 丙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여 허위사실 기사를 반복적으로 작성하였고, 乙의 성범죄 재판이 진행 도중 참고자료로도 제출되었다. 해당 기사 가운데 하나는 丙이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식사 중 배탈이 났다며 식약청에 신고한 후 배상책임 보험금 218만 5000원을 수령하는 한편, 병원에서 수액을 맞던 도중 간호사가 자리를 비웠다고 항의하여 병원으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 내에 간호사마저 없는 상황에서 피가 역류하여 응급한 상황이었고, 甲은 이를 알고서도 ‘丙을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대로 기사가 나가면 병원영업이 힘들어진다’는 취지로 악의적으로 필요한 답변만을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丙에게 취재를 한다거나 해명 내지는

5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노884 판결.

반론을 듣지도 않고 丙을 특정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인터넷상으로 유포되었다.

재판부는 甲의 범죄성립을 긍정하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으로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사실확인과 공정성이라는 표지를 특정 개인의 인격 훼손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언론이 가진 힘을 악용하여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훼손하였고, 가짜뉴스가 인터넷상으로 확대·재생산되어 피해복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을 밝혔다.

(6) 일반인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사인⁵⁴⁾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허위사실유포로 대학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형사소송이다. 피고인인 甲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우려자 乙이 친정방문차 입국하였다가 발열증상이 있어서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신고하였고, 울산대학교병원에 이송되어 격리조치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 7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실제 울산 북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없었고 울산대학교병원에도 감염의심환자의 이송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실제 甲은 자신이 전달받은 ‘부산 동래구에 감염의심자가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지역명과 병원명 등을 임의로 고친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어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다.

나. 쟁점

감염병이라는 의료·보건의 위급상황에서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불법성의 인정 여부와 그 정도가 문제된 사안이다.

다. 판례의 태도

법원은 이러한 甲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시기에 지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다. 통상의 경우 단순한 장난전화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것에 반하여 유사한 행위임에도 사회적 위기상황임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54)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고단2718 판결

(7) 모욕행위의 표현 기준⁵⁵⁾

가. 사실관계

해당 사건은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가 기독교선교단체를 비판하면서 발언이 되었다. 해당 단체에 대하여 ‘가짜뉴스 공장’,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세력’, ‘가짜뉴스의 발원지’, ‘뉴극우세력’ 등의 표현을 하였다. 검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와 같은 표현이 명예 내지는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나. 쟁점

‘가짜뉴스 공장’,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세력’, ‘가짜뉴스의 발원지’, ‘뉴극우세력’과 같은 표현이나 ‘일베 느낌’, ‘이단’과 같은 표현이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표현인지,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과 같은 표현으로 인정될 것이냐가 문제되었다.

다.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가짜뉴스 공장’, ‘뉴극우세력’ 등의 표현에 대하여 해당 취재내용을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단체의 명예 내지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봄으로써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진행자는 선교단체에 대하여 ‘일베 느낌’이 난다라든지 ‘이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인 표현인 모욕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나온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보도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단체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베 느낌’이라는 표현도 인터넷을 통한 조직적 유포라는 점을 빚대어 나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가치판단과 평가를 드러낸 점과는 별개로 해당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고 보아 위법한 인격권 침해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8) 정리

최근의 가짜뉴스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가짜뉴스가 지닌 심각성과 폐해에

5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대한 인지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인터넷의 발달은 한 번 전과된 이후 발생하는 피해와 손해의 심대함에 비하여 민·형사절차 이후 사후적 구제를 취하는 시점에는 입은 손해를 되돌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반면, 언론이 지닌 건전한 비평과 비판의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공적 기능을 간과하지는 않고 있는데, 양자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특징에 비추어서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언론이 지닌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가짜뉴스의 불법성을 가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보나 보도의 내용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당사자로 하여금 해명의 기회나 사실확인을 위한 교차검증(이른바 팩트체크) 여부를 객관적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관적으로는 공익을 위한다는 동기와 대상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보도내용에 다소간 과장된 부정적 가치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이 충족한다면 이른바 가짜뉴스로 보지 않고 있다.

4. 가짜뉴스 관련 외국 사례

(1)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중에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진은 가짜뉴스⁵⁶⁾

2023년 4월 30일 영어 트위터 게시물에는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주의자인 마크롱을 퇴출시켜야 함을 표현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운집한 군중사진이 함께 게시되었는데, 이 게시물은 이 사진이 2023년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기간 중에 찍힌 사진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에서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2023년 4월 15일 마크롱이 서명한 연금 개혁에 반대하기 위해 2023년 5월 1일 노동절인 프랑스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은 퇴직 연령을 64세로 상향하고 연금 전부를 수급하기 위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56) GADMO, Auf diesem Foto feiert Paris den WM-Sieg 2018 gegen Kroatien, 2023.05.10., <<https://gadmo.eu/auf-diesem-foto-feiert-paris-den-wm-sieg-2018-gegen-kroatien/>>

그러나 독일에 기반을 둔 디지털 미디어상의 뉴스 등에 대한 팩트체크를 전문으로 하는 German-Austrian Digital Media Observatory(GADMO)에 따르면, 위의 게시물에 공유된 사진은 노동절 시위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게시된 사진은 2018년 7월 15일 프랑스가 크로아티아와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촬영된 사진이었다. AFP는 이날 파리 거리에서 있었던 축하 행사에 대해 보도했다. 게시물에 공유된 사진은 사진작가인 루도비크 마린(Ludovic Marin)이 개선문 꼭대기에서 찍은 항공 사진과 유사한 군중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 이스라엘 군인은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가짜뉴스⁵⁷⁾

하마스의 군사 테러 조직인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러한 공격 이후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문은 이스라엘 국방장관인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의 발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군사 규칙은 폐지되었으며 군사재판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어 텔레그램 채널이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인용문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채널이 인용하고 있는 것은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가 2023년 10월 10일 군인들에게 한 연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츠 비에리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인 요아브 갈란트(Yoav Gallant)가 한 연설에는 국제법이 이스라엘 군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

(3)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80억 달러 군사원조는 가짜뉴스⁵⁸⁾

2023년 10월 7일 테러 조직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

57) GADMO, Für Israels Soldaten gilt weiterhin Völkerrecht, 2023.10.19.,
<<https://gadmo.eu/fr-israels-soldaten-gilt-weiterhin-vlkerrecht/>>

58) GADMO, Gefälschtes Dokument belegt keine acht Milliarden Dollar Militärhilfe von den USA an Israel, 2023.10.12.,
<<https://gadmo.eu/gefaelsthes-dokument-belegt-keine-acht-milliarden-dollar-militrhilfe-von-den-usa-an-israel/>>

리는 전쟁을 선포하고, 공습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가자 지구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7일부터 80억 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가 이뤄진다는 ‘가짜문서’가 소셜 네트워크에 유포되고 있다. 이 문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80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즉시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변조된 문서로 확인되었다. 미국은 수년 동안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재정 지원하고 있다. 미 의회 조사국(CR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양해각서”의 형태로 2016년 안보 지원에 관한 10년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이스라엘은 연간 38억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2일 기준 새로운 군사원조를 승인된 바는 없는 상황이다.

변조된 문서에는 영어로 “나는 이로써 국무장관에게 [...]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의 국방 장비 및 서비스, 군사 교육 및 훈련에 최대 80억 달러를 사용하도록 명령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아래에는 조 바이든의 이름이, 그리고 문서의 위에는 2023년 10월 7일이라는 날짜와 백악관의 상징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백악관 웹 사이트에 게시된 2023년 7월 25일 문서를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변조된 문서와 2023년 7월 25일 문서와 레이아웃, 글꼴과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다. 다만 이 문서는 4억 달러 규모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가짜문서에는 문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원본에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5. 가짜뉴스의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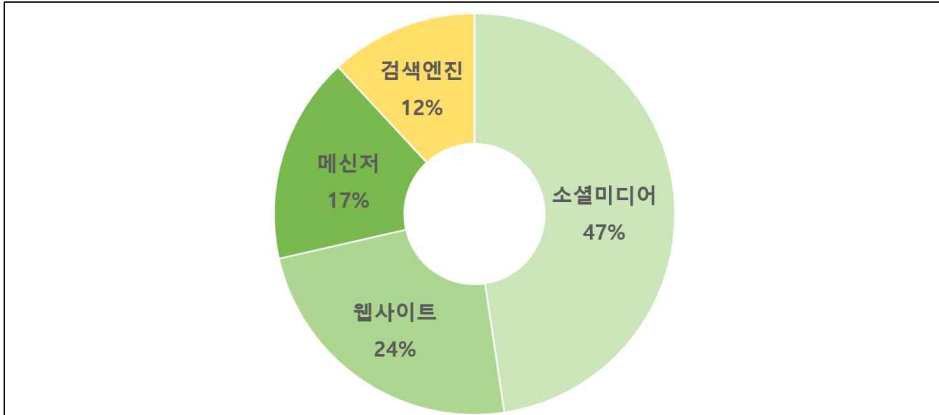
(1)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

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취득

가짜뉴스를 접하는 대표적인 경로로 꼽히는 것은 소셜미디어, 영상플랫폼, 메신저, 인터넷 검색엔진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리포트에 따르면 허위정보가 우려되는 매체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소셜미디어 47%, 웹사이트 24%, 메신저 17%,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 12%로 조사되었다.⁵⁹⁾

[그림 2-1] 허위정보가 우려되는 매체



출처: Newman et al.,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0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에서 미국은 페이스북이 약 35%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트위터가 32%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31%로 가장 우려하는 매체로 조사되었다.⁶⁰⁾ 이러한 경향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실시한 아래 <표 2-1>의 코로나19 관련한 가짜뉴스의 취득경로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표 2-1> 각국의 코로나19 가짜뉴스의 취득경로

| | 소셜미디어 | 영상플랫폼 | 메신저 | 검색엔진 |
|-------|-------|-------|-----|------|
| 미국 | 33% | 23% | 24% | 17% |
| 영국 | 38% | 22% | 22% | 14% |
| 독일 | 28% | 23% | 22% | 16% |
| 스페인 | 44% | 32% | 44% | 24% |
| 아르헨티나 | 43% | 27% | 45% | 19% |
| 한국 | 38% | 22% | 22% | 14% |

출처: Nielsen et a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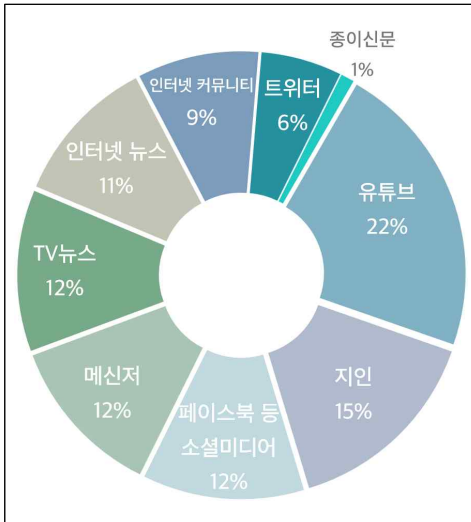
59) Newman et al.,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0, 9th Ed., Reuters Institute, 2020, p. 19.

60) Ibid. p.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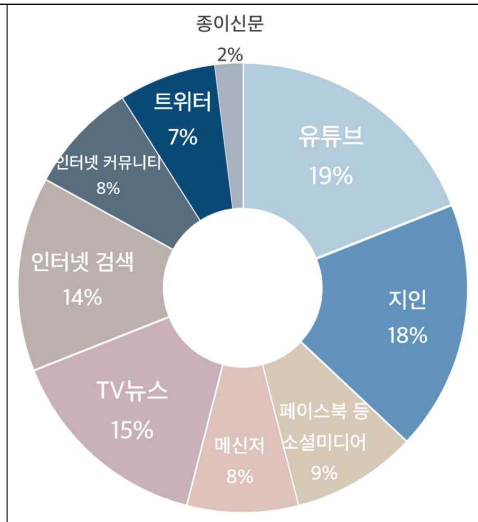
이상의 조사는 소셜미디어, 영상플랫폼, 메신저, 검색엔진 중에서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취득한 비율로서 각국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가짜뉴스를 접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영상플랫폼 및 메신저가 비슷한 비율이지만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신저를 통한 취득도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0년에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바 있다.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유튜브 영상을 직접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약 34%로 전체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가짜뉴스 영상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다.⁶¹⁾ 이러한 가짜뉴스가 담긴 동영상을 접하게 된 경로로는 유튜브가 58.9%로 가장 많고,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38.6%, 메신저가 35.3%, 검색엔진이 26.6%, 온라인 커뮤니티가 22.5%, 기타 인터넷 게시판이 19.6%로 조사되었다.⁶²⁾ 또한, 아래의 [그림 2-2]과 [그림 2-3]에서는 경험자의 가짜뉴스 접촉경로와 가짜뉴스의 유통경로의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도 관찰할 수 있다.⁶³⁾

[그림 2-2] 가짜뉴스 경험자의 접촉경로



[그림 2-3] 가짜뉴스 유통경로의 인식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허위정보와 뉴스미디어, 2020.

61)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허위정보와 뉴스 미디어, 연구서 2020-05, 2020, 30면.

62)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의 보고서(2020), 30면.

63) 이상우, 유튜브와 허위정보. 한국방송학회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 세미나 발제집, 2019. 8. 21.

위 [그림 2-2]과 [그림 2-3]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유튜브에서 허위정보를 접한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지인(15%),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12%), 메신저(12%), TV뉴스(12%), 인터넷 뉴스(11%) 등의 순이었다. 가짜뉴스의 경험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주요 유통경로로 인식되는 것은 유튜브가 19%로 가장 높았으나 지인(18%)과 크게 차이가 없었고, 뒤이어 TV뉴스(15%), 인터넷 검색(14%)의 순서였다. 특기할 만한 점은 유튜브는 실제 접한 경우와 가짜뉴스의 유통경로 모두의 경우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지인과 같은 주변사람도 가짜뉴스의 전달자이자 유통경로로도 인식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인 TV뉴스와 종이신문은 가짜뉴스의 접촉경로와 유통경로의 인식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TV뉴스는 실제 전달경험이나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가짜뉴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반면 종이신문은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 속하면서도 TV뉴스와는 현격한 차이를 지닌다.

다른 조사에서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분석하면서 유명인들이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경우 그 확산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도 발견하였다.⁶⁴⁾ 해당 조사는 259개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코로나 19 가짜뉴스의 경우 정치인, 연예인 및 기타 유명인들이 전파한 경우는 약 20%이지만 그 가운데 약 69%는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유명인들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인터넷상으로 공유한다면 더 빠른 확산이 일어나 피해가 발생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2) 코로나 19 가짜뉴스의 유형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는 코로나 19 당시 유행했던 가짜뉴스들을 수집하여 조사한 바 있다.⁶⁵⁾ 부분적으로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내용들 중에 틀린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재구성된 경우가 약 59%로 나타났으며 완전히 날조된 허

64) Brennen et al., Types, sources, and claims of COVID-19 misinformation. Reuters Institute. Available at <<https://reutersinstitute.politics.ox.ac.uk/types-sources-and-claims-covid-19-misinformation?fbclid=IwAR1VqhptMmHMzRosaaAN2Z9WfnKR4BH0A0oH7QOYKFXumY-7mq8uuUwIVhE2020>>.

65)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의 보고서(2020), 32면 이하.

위정보(38%)보다 더 많았다고 한다.⁶⁶⁾ 정부 및 공공기관의 활동에 관한 가짜뉴스(39%), 다음으로 지역사회 확산 사례(24%) 및 일반적인 의료 정보(24%), 주요 인물들(23%), 음모론(17%),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되는 방식(16%), 코로나바이러스의 출처(12%), 공공의 대응(6%), 백신 개발(5%)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코로나 19 시기에는 의학정보를 비롯하여 정부와 보건당국의 발표 내지는 정책, 기업이나 코로나 19가 창궐한 특정 지역, 외국인, 지역사회에서 감염자나 특정 단체 등에 대한 갖가지 가짜뉴스들이 대범람한 시기이다. 아래의 <표 2-2>는 한국과 미국에서 유행한 각종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유형별로 수치화한 자료이다.⁶⁷⁾

<표 2-2> 코로나 19 가짜뉴스의 유형*

| 가짜뉴스 유형 | | 한국** | 미국** |
|---------|--------------|------|------|
| 1. 의학정보 | 전체 | 52.1 | 30.4 |
| | 예방·진단·치료 등 | 28.1 | 17.6 |
| | 위험성 과장·축소 | 24.0 | 12.7 |
| 2. 비방 | 전체 | 33.3 | 37.3 |
| | 정부·보건당국 | 8.3 | 7.8 |
| | 기업·제품 | 5.2 | 8.2 |
| | 지역 | 4.2 | 2.6 |
| | 타국가·외국인 | 11.5 | 9.5 |
| | 개인·그룹 | 4.2 | 3.9 |
| | 기타(야당, 국제기구) | 0.0 | 5.2 |
| 3. 찬양 | 전체 | 3.1 | 4.9 |
| | 정부·보건당국 | 0.0 | 0.7 |
| | 기업·제품 | 0.0 | 2.0 |
| | 지역 | 1.0 | 0.0 |
| | 타국가·외국인 | 0.0 | 1.6 |
| | 개인·그룹 | 2.1 | 0.7 |
| | 기타(야당, 국제기구) | 0.0 | 0.0 |
| 4. 방역정책 | 전체 | 8.3 | 8.5 |

66) Brennen et al., op. cit.

67) 성욱제·정은진, 코로나19와 허위정보: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 | | | |
|-------|---------------|-----|------|
| 5. 기타 | 전체 | 3.1 | 19.0 |
| | 음모론 | 3.1 | 10.1 |
| | 기타(사건사고, 유명인) | 0.0 | 8.8 |

* 표에 나오는 수치의 단위는 %

** 미국의 경우, Poynter 연구소의 국제 팩트체크 네트워크 산하 코로나바이러스 팩트체크 데이터베이스에서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20일까지 업로드한 검증자료 총 354건 중 306건(경기부양책 등 기타 정책 관련 자료 제외)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한국의 경우, SNU팩트체크센터 코로나19 데이터베이스에서 2020년 1월 28일부터 4월 24일까지 업로드한 검증자료 총 121건 중 96건(교육제도 등 기타 정책 관련 자료 제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출처: 성육제 외, 2020.

위 <표 2-2>을 살펴보면, 양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가짜뉴스는 의학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전체 가짜뉴스 가운데 절반 이상(52.1%)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정부나 보건당국, 타지역, 외국인 등 대상에 대한 비방 목적의 가짜뉴스가 성행하였다(37.3%). 그 밖에 양국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른바 음모론인데, 우리의 경우 약 3%로 비교적 미미한 반면 미국은 10%에 육박하며 각종 사건사고나 유명인과 관련된 가짜뉴스도 약 9%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감염으로 인한 피해와 전염성 등의 위험을 과장하는 허위정보의 비율이 많은 반면, 미국은 이러한 위험을 축소하는 허위정보의 비율도 높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Oxford Internet Institute)는 2017년도부터 매해 컴퓨터를 통한 선전선동행위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왔다. 해당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 봇(bot), 트롤(troll) 등을 이용한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조작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러한 사례는 2019년 기준으로 70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⁶⁸⁾ 알고리즘과 자동화 및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의 정확성, 범위, 규모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조사한 결과, 70개국 중에서 실제 이용자 계정(87%) 및 봇 계정(80%)을 이용한 정보조작이 대다수(11%)였고, 사이버보그 계정을 이용하거나 계정을 해킹 혹은 도용한 경우(7%)도 있었다.

68) Bradshaw & Howard, 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Working Paper, Project on Computational Propaganda. Oxford, UK, 2019, pp.13. Available at <[https://demtech.oii.ox.ac.uk/wp-content/uploads/sites/12/2019/09/CyberTroop-Report19 .pdf](https://demtech.oii.ox.ac.uk/wp-content/uploads/sites/12/2019/09/CyberTroop-Report19.pdf)>.

이 연구에서 국가별 소셜미디어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만들어 유포시킨 사례들을 비교해 본 결과, 국가마다 정당 등이 여론 형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당독재나 독재자가 있는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 26개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축출하며 반대 의견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컴퓨터 기술을 통한 정보조작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⁶⁹⁾ 가령, 중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조작은 2019년도의 홍콩 시위를 기점으로 중국 내부의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점차 글로벌 소셜미디어에서까지 발견되었다. 또 다양한 소셜미디어 중에서도 컴퓨터로 조직화된 정보 조작이 가장 많이 발생한 매체는 페이스북인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3) 해외의 소셜미디어상의 가짜뉴스 유포

유엔개발계획(UNDP)은 이탈리아에 소재한 케슬러 재단(Bruno Kessler Foundation)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들 가운데 약 40%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국가별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⁷¹⁾ 연구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64개 언어로 게시된 소셜미디어 게시물 1억 1,200만 개에 대해 머신러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약 40%는 정보의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케슬러 재단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트위터 게시물 1억 7,800만 개의 분석에 대해 약 42%의 트윗은 봇이 만들어낸 것으로, 40%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페이스북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약 4,000만 건의 문제적 게시물들이 확인되어 경고 문구가 달리거나 아예 삭제되었다. 온라인 허위정보를 감시하는 기업인 블랙버드AI(Blackbird.AI)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 2-3월에 게시된 약 5,000만 개의 트위터 게시물들을 분석한 결과 38% 정도가 ‘조작된 정보’였으며, 2020년 5월 게시물들의 경우 조작된 정보가 27%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⁷²⁾

허위조작정보가 포함된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유포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우려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는 홍콩으로, 2019년 6월 이래 홍콩에서

69) Bradshaw & Howard, op. cit. p.14.

70) Ibid, p. 14.

71)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의 보고서(2020), 35면.

72)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의 보고서(2020), 35면.

진행된 민주화 시위 이후로 소셜미디어상으로 유포된 중국발 가짜뉴스들 때문이라고 한다.⁷³⁾

4) 가짜 의학정보

국내의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코로나19 과학 리포트 중에서 가짜뉴스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⁷⁴⁾ 아래의 <표 2-3>과 같이 국가별, 지역별로 확산된 가짜뉴스들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라는 점과 발생경로나 엄청난 전염력 등에 대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가짜뉴스의 생성과 전파에 큰 원인이 되었다. 이후 특히 의학정보 관련된 내용들은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백신대란 당시 의사들에 의한 가짜뉴스의 생산도 문제된 바 있다.⁷⁵⁾ 이러한 허위의 의학정보는 일반적인 의학정보와 유사하게 보이나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마치 일반인과 지역사회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이다.

<표 2-3>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 의학정보 사례

| 지역 | 가짜 의학정보의 내용 |
|----|---|
| 한국 | 알콜 섭취로 바이러스를 사멸케 한다. 출처: 기초과학연구원, 2020. |
| | 헤어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면 바이러스가 사멸한다. |
| | 마늘, 참기름을 섭취하거나 코에 바르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
| | 소금물을 가글하여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
| | 담배열기로 바이러스를 사멸하게 할 수 있다. |
| | 10초간 숨을 참아서 감염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다. |

73)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의 보고서(2020), 35면.

74) IBS, 코로나 19 과학리포트, 2020. 3.

75) 코로나19 백신 배양액에서 다량의 미생물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학정보의 유통으로 의사협회에 의해 징계를 받은 전문의도 있다. 관련 기사로 한국의약통신, 유언비어 퍼뜨린 백신 반대 운동 의사 징계, 2021.12.20., <<https://www.km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90>>.

| | |
|------------------|-------------------------------|
| 중국 | 불꽃놀이로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다. |
| | 울금(중국 약재)이 코로나 감염증 치료에 특효약이다. |
| | 항생제나 항고혈압제의 복용으로 치료할 수 있다. |
| 기타 아시아 | 열악한 의료진 처우에 관한 가짜뉴스 |
| | 품질이 낮은 마스크라도 여러 겹 쓰면 효과가 있다. |
| 교통폐쇄, 지역봉쇄 관련 | 미국 뉴욕의 기차역이 폐쇄된다. |
| | 중국 북경이 봉쇄된다. |
| | 한국의 시외버스터미널이 봉쇄된다. |

(2) 코로나19 가짜뉴스의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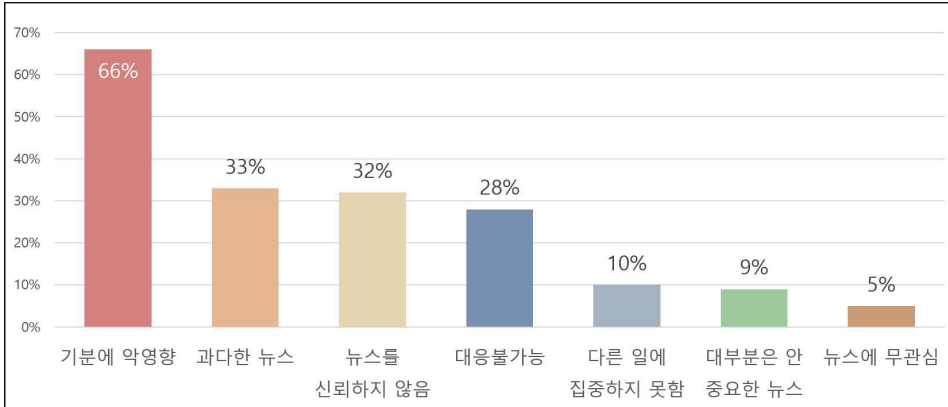
1) 뉴스와 정보에 대한 피로도

가짜뉴스 현상은 이습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수 차례 고한 일화와 비슷하다. 지속적으로 허위정보로 점철된 가짜뉴스에 시달리면 사람들은 정보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 의하면,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에 뉴스 소비가 급증했다가 2020년 4월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일부러 뉴스를 보지 않는 뉴스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⁷⁶⁾

<그림 2-4>는 코로나19 관련 뉴스의 회피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설문조사다. 이하의 설문에서 꼽은 뉴스의 회피현상의 이유로는 기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뉴스가 너무 많다는 응답으로 33%,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32%, 정보를 알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28%,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해서(10%), 대부분의 뉴스가 중요하지 않아서(9%), 관심이 없어서(5%) 등의 순(중복응답)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스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관한 허위정보 및 오인정보로 인한 피로감이 초래한 결과일 것으로 해석된다.

76) Nielsen et. al., Communications in the Coronavirus Crisis: Lessons for the Second Wave 2020., Reuters Institute, 2020, p. 13.

[그림 2-4] 코로나19 뉴스의 회피이유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허위정보와 뉴스 미디어,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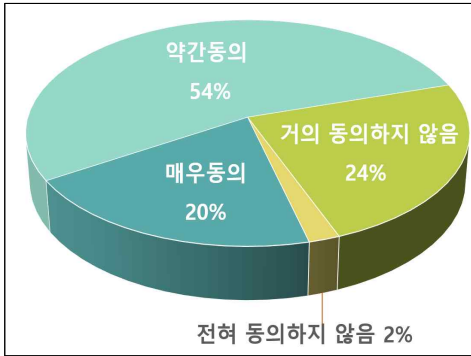
2) 유튜브상 가짜뉴스의 심각성과 신뢰성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유튜브의 역할과 인식을 조사한 아래의 [그림 2-5]와 [그림 2-6]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가짜뉴스의 확산경로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플랫폼은 유튜브가 꼽힌다. 여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응답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⁷⁾ 특히 한국사회에서 유튜브에서의 허위정보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동의하는 의견이 74%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26%보다 3배 정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동영상 이용할 때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의심한다는 응답자(7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26%)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조사에서 허위정보로 판단되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언론이나 전문 팩트체크 기관 등이 철저한 사실확인을 거쳐 허위정보를 걸러낸다(23.7%), 새로운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한다(23.3%), 이용자 개개인이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계하고 분별력을 키운다(21.4%), 유튜브 운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문제 영상들을 차단·삭제한다(19.7%), 허위 및 거짓정보 문제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한다(9.3%), 표현의 자유가 최우선이기 때 어떠한 규제도 필요하지 않다(2.5%)의 순서로 나타났다. 팩트체크를 통해 허위정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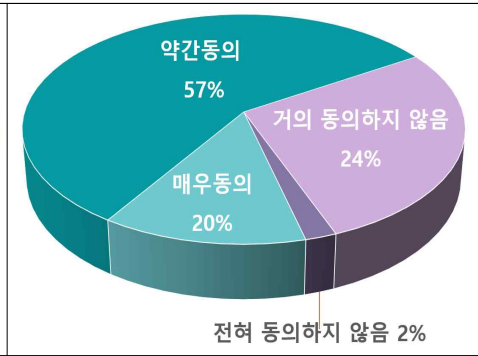
77)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미디어이슈 4권 8호, 유튜브 동영상 이용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 2018, 14면. 상세한 설문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된 파일 참조.
 <<https://www.kpf.or.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

판단되는 경우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약 1/4 정도를 차지했다.

[그림 2-5] 한국사회 유튜브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는 설문응답



[그림 2-6] 다른 유튜브 영상의 신뢰도를 주의하고 보게 된다는 설문응답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미디어이슈 4권 8호, 유튜브 동영상 이용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 2018.

이상의 연구와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가짜뉴스는 소셜미디어와 영상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의 출처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사실로 인식하고 전파하는 현상이 빈번하다. 특히 이용자들의 주의를 끌만한 내용이라면 더욱 가짜뉴스는 증폭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해당 콘텐츠에 머무르고, 감상하는지에 따라 광고주의 등의 경제적 창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시에 저널리즘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레거시 미디어로 대표되는 전통적 언론사들의 영향력은 약화된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뉴스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뉴스의 생산과 유통, 소비 주기는 더욱 빠르게 되고 이를 검증하여 잘못된 정보를 초기에 바로잡을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⁷⁸⁾

(3) 디지털화와 선거의 가짜뉴스

1) 정보기술의 발달과 선거환경

78)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의 보고서(2020), 39면.

정보혁명의 요체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 발달로 축약된다. 인터넷은 1969년 군사적 목적에서 개발된 이래 1990년대를 거치며 상용화되었고, 현재는 정보의 재생산과 확산의 주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정보는 인쇄물과 출판물의 형태로 저장되어 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위치한 장소에 가서 실물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인터넷의 발달은 이와 같은 정보검색과 확보의 단계를 생략한 것으로서, 정보사회학자 카스텔(Castells)은 인류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인터넷의 등장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기존 구조에서 정보의 생산과 확산의 주체는 대체로 전문가로 한정되었지만,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정보의 생산과 확산과정에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위키백과는 대표적인 일반인들에 의한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영상플랫폼인 유튜브의 등장으로 정보의 생성과 유통, 확산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2020년에 전 세계에 유통된 정보량은 90조 기가바이트(Giga Byte, GB)인 90제타바이트(Zeta Byte, ZB)로 추산하였고, 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쌓여서 지식이 되고 이는 새로운 권력이 되며 지식은 부(富)를 창출하고 권력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⁷⁹⁾ 정보의 접근성과 생산성의 확대는 과거 소수의 전문가 집단으로 국한되었던 정보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이른바 정보 불평등이 사라진다는 장점을 낳게 되었다.⁸⁰⁾ 시민의식의 함양과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도 변화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현대사회는 과잉화된 정보 속에 놓여있다. 정보의 과잉 가운데 좋은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허위정보 내지는 가짜뉴스로 대변되는 나쁜 정보도 있다. 초창기 인터넷과 정보통신에서는 절대적인 정보의 양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었지만, 정보가 넘치다 못해 과잉생산되기에 이르며 나쁜 정보들 가운데 좋은 정보란 무엇인지 가리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⁸¹⁾ 특히 최근의 나쁜 정보는 사회를 혼

79) 김상배,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 2008, 17면 이하.

80) 한국선거협회, 온라인 가짜뉴스 관련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1, 26면.

란하게 하고 시민들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병폐현상으로도 지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발달과 함께 더욱 쉽게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쟁점에 더욱 쉽게 침투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정부의 공식발표보다 유튜브, SNS 등 소셜네트워크,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각종 가짜뉴스가 사회의 혼란을 가중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2019년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은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에 편승하여 가짜뉴스가 더욱 쉽게 확대·재생산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2) 외국 선거에서의 가짜뉴스

가. 정치적·전략적 목적의 가짜뉴스의 기원

가짜뉴스는 단순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고 일정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의 기원은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있지 않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τικο(politico)에 따르면 15세기부터 가짜뉴스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1475년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2살 아이가 실종된 사건에서 프란치스코회의 한 수도사는 유대인이 아이를 유괴해 그 피를 마셨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설교를 통해 유포하였다. 가짜뉴스의 기원을 여기에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⁸²⁾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거짓 소문이나 선전선동, 풍자가 존재했다. 예컨대 고대 손무의 <손자병법>에서는 적을 쓰러뜨리는 가장 좋은 계책으로 반간계(反間計)를 꼽고 있는데, 첩자를 이용한 거짓 소문으로 적군을 자중지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적을 상대하는 이러한 방식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주유는 적벽대전에서 반간계를 이용하여 조조군을 격파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거짓된 정보를 이용한 교란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를 가짜뉴스라고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가짜뉴스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음

81) 한국선거협회, 앞의 보고서(2021), 26면.

82) Politico Magazine, The Long and Brutal History of Fake News, 2016.12.18., <<https://www.politico.com/magazine/story/2016/12/fake-news-history-long-violent-214535/>> 한겨레신문, “‘좋아요’의 함정…가짜뉴스 권하는 SNS.” 2017.03.06.,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5227.html>.

을 시사한다.⁸³⁾ 이처럼 적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위한 헛소문과 거짓 정보로서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상대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방법으로 현대의 선거전에서도 가짜뉴스의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의 가짜뉴스는 단순히 상대를 이기기 위한 계책 내지는 책략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과거의 전쟁은 권력과 정치지도자들 간의 싸움이었다면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일반 대중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선거상대방을 교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혼란마저 야기되기 때문이다. 사회가 집단적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된다는 것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것이고, 진실에 기반한 뉴스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2010년대에 접어들어 특히 2010년대 후반부에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데, 2016년 6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와 같이 서구권 국가들 뿐만 아니라, 2017년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⁸⁴⁾ 현대의 여론조사기법이 과거에 비해 많이 발달하여 예측가능성도 높다고 하지만 예측을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다. 서구권 국가의 경우 영국의 EU 탈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등이 있다.

나. 미국의 사례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질 만큼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위상에 따라 미국 대통령선거는 미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역대 미국 대선에서는 당연하게도 수많은 허위정보들과 가짜뉴스들이 범람하였다. 그 중에 특히 2016년의 트럼프와 힐러리가 맞붙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짜뉴스들이 인터넷상에 난무한 바 있고, 사회적 파급력도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이러한 권리가 폭넓게 인정되는 국가로 대륙법계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짜뉴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인다.

대표적으로 2016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한 가짜뉴스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학교내 국기에 대한 맹세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 11일 ABC 방송국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ABCNews.com'이라는 뉴스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이다. 제

83) 한국선거협회, 앞의 보고서(2021), 27면.

84)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연구서 2017-06, 2017, 50면.

목은 “오바마 대통령, 학교내 국기에 대한 맹세금지 행정명령에 서명”으로 되어 있다. 오바마 前대통령에게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은 이 기사를 공유하면서 오바마가 애국심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허위였다. ‘ABCNews.com’은 미국 방송국 중 하나인 ABC방송의 이름을 사칭한 것으로 기만형 가짜뉴스였다. 미국의 팩트 체크 전문 매체인 스노프스(snopes)는 이 가짜뉴스에 대해 명백한 거짓말(hoax)이라고 판정했다.⁸⁵⁾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 뉴스는 페이스북에서 유포되면서 공유, 좋아요 등 이용자 참여 수는 217만 개를 넘어섰다. 가짜뉴스의 작성자라고 되어 있는 지미 러스틀링(Jimmy Rustling)은 가명이었고, 실제 작성자는 폴 호너(Paul Horner)라는 사람이다. 호너는 작성자로 본인임이 밝혀지자 한 매체를 통해 “트럼프 지지자들이 좋아할 것으로 보이는 어떤 내용을 쓰더라도 그들은 믿었다”며, “이들이 공유를 할수록 광고를 통한 수익이 증가했다”고 밝혀 광고수익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해당 가짜뉴스는 호너가 직접 새롭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유포된 적이 있는 가짜뉴스를 재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대선과 관련된 주요인물인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있다. 2016년 7월 지역뉴스채널의 이름을 훔쳐낸 가짜뉴스 사이트인 WTOE 5News라는 곳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내용으로 올라왔다. 해당 뉴스는 BBC에서도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⁸⁶⁾ 이 뉴스는 전 세계적인 이슈로 순식간에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후 또 다른 가짜뉴스 사이트인 ‘엔딩 더 페드(Ending the Fed)’에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 유포하여 그해 연말까지 페이스북을 통한 이용자 참여 수가 96만을 넘었다.⁸⁷⁾ 그러나 완전한 허위내용이 담긴 뉴스로 경제적 목적에서 만든 완벽한 거짓말(hoax)로 기만형 가짜뉴스다.⁸⁸⁾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정치전략가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직적인 가짜뉴스로 여론

85) 스노프스, <<https://www.snopes.com/pledge.of.allegiance.ban/>>.

86) BBC, Solutions that can stop fake news spreading, 2017.01.30., <<https://www.bbc.com/news/blogs-trending-38769996>>.

87) 엔딩 더 페드(Ending the Fed)는 루마니아의 24세 오비디우 드로보타(Ovidiu Drobot)라는 사람이 용돈을 벌 목적으로 개설한 가짜뉴스 사이트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의 보고서(2017), 54면 참조.

88)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의 보고서(2017), 54면 이하.

을 조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선거였다.⁸⁹⁾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평균 한건 이상의 가짜뉴스에 노출될 정도로 일상화되었다고 보고 있다.⁹⁰⁾ 공화당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유권자의 사회정치적 성향을 빅데이터화하여 친공화당, 친트럼프 지지집단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타겟팅을 통해 생성된 정보를 주로 상대후보를 비판하는 가짜뉴스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선거 캠페인은 트럼프 지지세력의 지지를 강화하고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다.⁹¹⁾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선거와 관련되어 특정 후보에 관한 가짜뉴스는 꾸준히 확대·재생산되는 중이다. 2019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가짜뉴스 1위로 선정된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조부는 탈세범이고 부친은 KKK단의 일원이었다는 취지의 가짜뉴스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의 유명한 격언 가운데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라는 것이 있다. 세금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로, 탈세범은 사회적으로 중범죄로 인식된다.⁹²⁾ 또한 이를 집행하는 기관인 미연방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FBI, CIA 등 수많은 연방수사기관과 정보국을 상회할 정도로 막강한 무력과 집행을 자랑하는 기관으로 주정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이러한 세금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탈세범의 후손이라는 굴레는 매우 나쁜 인상을 심어주기 좋다. 또한 미국내 인종문제는 특히 민감한 사안으로 부친이 과거 인종차별주의 집단으로 악명높았던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 KKK)의 회원이라는 가짜뉴스도 나쁜 인상을 심어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89) 한국선거협회, 앞의 보고서(2021), 28면.

90) Hunt Allcott and Matthew Gentzkow,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2017, pp. 211.

91) 오택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2018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8.

92) 영화 <아마게돈>마이클 베이 감독, 브루스 윌리스 주연, 1998년작)에서는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집된 우주비행사들 모두가 세금면제라는 조건을 내세울 정도로 묘사될 정도로 세금에 대한 미국인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다. 독일의 사례

선거과정에서 가짜뉴스가 빚는 문제점은 미국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2017년 9월에 총선을 치른 독일은 가짜뉴스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내무부장관이 가짜뉴스의 생산과 확산을 막는 정부기관 창설을 제의한 바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가짜뉴스 범죄에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시사하는 등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독일에 유입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가짜뉴스가 증가하면서 난민 관련 혐오표현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인터넷상 소셜미디어는 위법한 콘텐츠를 24시간 내에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삭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5백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인종주의적 극우세력이 포용적 이민정책을 펴는 메르켈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난민들이 독일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식의 가짜뉴스로 호도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관점도 있다.⁹³⁾ 독일의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독일에서는 가짜뉴스가 문제된 바 있다. 총선운동 기간동안 메르켈 총리가 히틀러의 냉동정자로 인공수정한 딸, 내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에서 몰래 살아있다가 탈출하여 낳은 딸이라는 가짜뉴스가 있다. 이는 메르켈이 舊동독출신임을 고려하여 극단적 공산주의자였다는 의심과 함께 반복된 가짜뉴스이다. 독일내의 반메르켈 진영뿐 아니라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 중 유럽연합(EU)과의 협상 과정에서 메르켈의 리더십에 반발한 세력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유포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의 가짜뉴스의 내용에는 히틀러 본인이나 히틀러의 생모 클라라 히틀러와 젊은 시절 메르켈 사진을 나란히 놓고 닮았다고 주장하거나, 과거 히틀러의 포즈와 비슷한 자세를 하고 있는 메르켈의 사진을 놓기도 하고, 불상의 어린이와 찍은 사진을 가리켜 어린 시절의 메르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은 실증적으로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라. 기타 유럽국가

201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판테어벨렌(Van der Bellen, 1944-)

93) 한국언론진흥재단, 앞의 보고서(2017), 59면.

을 비방하기 위한 가짜뉴스들이 범람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판데어벨렌을 공격하기 위해 여성 녹색당수인 에바 글라비슈니히(Eva Glawischnig)를 비방한 가짜뉴스는 법원에 의해 차단명령을 받은 바 있다. 글라비슈니히를 “시민을 배반한 아주 엉망인 사람이자 부패한 얼뜨기”라고 폄하한 부정적 내용의 포스팅이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가 치매라는 가짜뉴스도 유포되었다.

그 밖에 유럽국가의 선거 관련된 가짜뉴스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탈리아에서는 개헌안 투표 전 개헌안과 관련해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구글 플러스 등 SNS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뉴스 10개 중 5개가 가짜뉴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개헌안 찬성으로 표기된 투표용지가 투표 전에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는 페이스북 좋아요 수가 23만 건 이상을 기록해 ‘진짜’ 뉴스보다 훨씬 많았다. 마테오 렌치(Matteo Renzi) 이탈리아 총리가 추진했던 개헌안은 결국 부결되었다. 특히 이 가짜뉴스는 마치 정부기밀문서인 것처럼 꾸며져 소셜네트워크로 퍼졌다.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위하여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하여 유포되는 정보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⁹⁴⁾

이처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유권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인터넷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정치와 관련된 뉴스가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 간에도 정보가 공유되는 등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인터넷과 결합된 민주주의와 구조적으로 결합하여 각종 허위정보를 확대·재생산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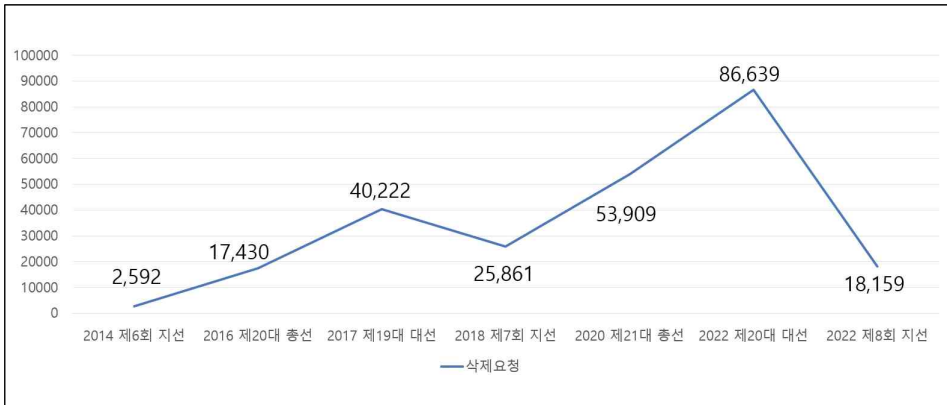
3) 우리나라 선거에서의 가짜뉴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32.3%가 가짜뉴스를 전달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⁹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선거운동,

94) 김재선,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행정법적 대응방안 -영국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이화여대, 223면 이하.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형 정보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하고 있다. 아래 [그림 2-7]에서는 최근의 삭제요청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온라인상의 불법선거 운동,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형 정보 등 부적절한 콘텐츠가 2만5,861건으로 집계하였고, 2014년에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2,592건)에 비해 가짜뉴스가 2만여 건이 넘는 수가 증가하였다.⁹⁵⁾ 반면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가 허위사실 삭제요청한 게시글이 약 1만 8,159건으로 지난번 보다 약 8천여건이 줄어들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의 삭제요청은 8만6,639건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2-7]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상 불법선거운동, 허위사실유포, 인신공격정보 등 삭제요청 건수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취합

95) 한국선거협회, 온라인 가짜뉴스 관련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21, 29면.

96) 한국선거협회, 앞의 보고서(2021), 29면에서 재인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참조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한 언론, 포털, 통신사 등의 자정 노력과 ‘팩트체크’ 등 여러 대안이 등장했지만 대통령 선거등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여전히 가짜뉴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2010년대 후반부터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現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카톡을 통해 무차별로 유포되는 허위왜곡보도와 유언비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페이스북상에서 운영하였다.⁹⁷⁾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0월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짜뉴스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포털 등 통신사업자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미디어 교육과 팩트체크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⁹⁸⁾ 한상혁 前 방송통신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2019년 8월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으로 적극적인 규제 대상이며 유포자를 처벌하는 한편 팩트체크 민간기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을 통해 가짜뉴스를 규제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춘 바 있다.⁹⁹⁾ 이후 2023년 이동관 前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부 가짜뉴스에 대해 중대범죄로 국기문란으로 보고, 차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도입도 시사한 바 있다.¹⁰⁰⁾

6. 소결

이상의 가짜뉴스의 피해실태를 살펴보면, 허위정보 유포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되는 가짜뉴스는 감염병 등 재난, 선거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에 집중적으로 생성·확대·유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못하게 만든다는 점과 정보 제작과 확산의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없앤 인터넷의 발달과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은 온라인상의 소셜네트워크 등 각종 커뮤니티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동영상 플랫폼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 동시에 익명에 기대어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을 즐겨본다는 점에서

9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219459#home>>

98)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1001070830123001>>.

9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60858>>.

100)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9/05/YMY3QQHEUVCHHDKO5534RQME4U/>>.

유튜브로 대표되는 이른바 1인미디어 내지는 인터넷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의 책무에 버금간다고 볼 수 있다.

서구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가짜뉴스의 폐해는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보다 자극적인 뉴스에 대해 별도의 검증없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를 내보낸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켜 건강한 언론환경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가짜뉴스는 사회가 혼란한 시점에 본격적으로 유포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2008년 광우병 파동, 2016년 사드미사일 배치, 2023년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2008년 광우병 파동과 2016년의 사드미사일의 경우 당시 떠돌던 괴담 가운데 현재까지 실현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의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 판명될 것이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국민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 생각과 선택을 저해하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절 혐오표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실태

1. 혐오표현 관련 판례

최근 들어 우리 사회 내에서 극혐 또는 특정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OO충(蟲)을 붙이는 등 혐오감정을 드러내는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났다.¹⁰¹⁾ 특히 혐오감정을 포함한 다양한 혐오표현들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즉 인터넷 웹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 게시된 글이나 댓글들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부정적 편견을 기반으로 하는 혐오표현들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에서 더 나아가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폄훼나 혐오로 계속 진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일련의 사건들로 혐오표현을 사회적 문제로 일반화하는 것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 내에서 진화되어 발현되는 혐오표현들로 인해 특정세대 또는 특정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현재 혐오표현으로부터 야기된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여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조각보식으로 혐오표현을 처벌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제들은 존재하지만, 그 법제들 또한 혐오표현의 개념을 직접 규정하여 규제하는 법률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¹⁰²⁾ 그리하여 현 시점에서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행 법제상 혐오표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형법』, 『민법』,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하 젠더, 인종, 민족,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태도가 표출된 것이 여기서 정의한 혐오표현으로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들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¹⁰³⁾

101) 디지털 조선일보 “직장인이 꼽은 불쾌한 신조어 1위 ‘○○충’”, 2017.09.13.자; 이외에도 ‘맘충’, ‘진지충’, ‘설명충’ 등 다양한 신조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102) 송현정/김성화/서용성,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 169면.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종북, 주사판 사건)

1) 사실관계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2) 판시사항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는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한계

[2]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을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3)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103) 판결문은 본고에서 이해하고 있는 혐오표현과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다룬 모든 사안들을 조사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또한 조사한 판결문의 경우, 대법원 판결물 시스템에서 검색되지 않는 관계로 송현정/김성화/서용성, 앞의 보고서, 190-202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보수우익’이든 ‘중북’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 토론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좁히되,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숨 쉴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표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무조건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고 해서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든 보수든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서로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비록 양쪽이 서로에게 벽을 치고 서로 비방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2)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1) 사실관계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00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2) 판시내용 및 판결요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

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 사건의 발언에 있어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어서 그 생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된 발언과 피해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3) 부산지방법원 2019.10.25. 선고 2019노 1100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여직원 사내 몰카. 성폭행 피해 주장 논란... 회사 사과”라는 제목의 뉴스기사가 게시되자, 위 뉴스기사의 당사자인 피해자를 특정하여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내렸음ㅋㅋㅋ 그리고 강간당한 다음날 가해자랑 ㅋㅋ거리면서 카톡하냐ㅋㅋㅋ 김치녀 무고 1승 추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2) 판시내용

‘김치녀’는 여성 혐오표현의 일종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고정901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내가 찍은 사진 좀 허락받고 쓰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네티즌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놀라운 메테지 논리

의 현장”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판시내용

‘메돼지’는 ‘메갈리아’와 ‘돼지’를 합성한 단어로 여성을 폄하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이고, ‘메갈리아’는 여성들만의 커뮤니티로 과격하고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는 여성인 피해자의 외모나 행동 등을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17. 선고 2019고정4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일보 ‘마카롱 10개 사태 손님 가게주인과 악플러 고소하고왔다’라는 기사에 댓글로 “메갈똥똥이는 10개이상 먹나보지 뭐,,, 20대 건장한 키 180대 남자인 나는 5개만 먹어도 넘어올 것 같지만 메갈한녀는 일반 인간이 아니니까 일반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2) 판시내용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 ‘메갈똥똥이’, ‘메갈한녀’라는 표현은 위 기사에 표시된 A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8. 선고 2018고정 729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트위터 게시글을 피고인의 트위터에 리트윗한 후 “논란이 된 워년은 기껏 갔다는게 ‘호주워킹홀리데이’고, 이번에는 일본 료칸이냐. 존나 딱하다 진짜... 집에 돈 없나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판시내용

피고인이 게시한 ‘워년’이란 표현은 ‘워마드’와 ‘년’의 합성어로서 ‘워마드’는 극단적인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 색채의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를 의미하고, ‘년’은 통상적으로 여

성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비속어이므로, 위 표현은 여성인 피해자를 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별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휘를 담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7) 전주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노140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서로 시비를 벌였는데, 같은 날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장애가 있어 걸음걸이가 불편한 피해자에게 “××년들이 지랄하고 있네, × 같은 년, 똑바로 걸어 다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시내용

피해자는 지체장애가 있어 걸음걸이가 불편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위 발언은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히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한 불만 내지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8) 수원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정162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피해자의 아들들, 성명불상의 남성 2명이 있는 가운데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변태짓 해놓고는 이사가, 이사가, 손가락 없는 거랑 살면서 나는 징글징글 맞아서 못 산다, 징글징글 맞아서, 애들 있으면 행동머리 똑바로 해, 어디서 변태질이야, 개소리 까고 앉아 있네, 니놈이 이사 가지, 육갑 떨고 앉아 있어, 너 정신병자 아니, 어디서 변태질이야,

혼자 옷통 벗고 뛰하는 것이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시내용

피고인의 위 발언으로 인하여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9) 서울행정법원 2013.4.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사실관계

우간다 국적 여성 甲은 동성애자로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부터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다.

2) 판시사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갑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3) 판결요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신청을 한 우간다 국적 여성 甲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동성애자인 사실, 마을 주민들이 甲의 모(母)에게 동성애자인 甲을 마을에서 내보낼 것을 경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 甲의 집에 불이 나 모(母)와 여동생이 사망한 사실,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를 탄압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탄압으로부터 동성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도 않는 사실에 비추어, 甲이 우간다로 귀국할 경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10) 소결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제는 없지만, 관련 법제들을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표현은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다. 즉 관련 법제들을 통해 일부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 우리 판례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통해 혐오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우리 판례는 혐오표현과 관련된 사안들에서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문제되고 있으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형법』은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임을 부인할 순 없지만, 반면에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왜냐하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해악이 표현되거나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법적 판단을 해야 함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형법』 또한 일부 혐오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혐오표현들이 진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면 최우선적을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혐오표현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민사·행정적 제재, 사회·정책적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신문기사

(1) 대학생 커뮤니티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익명커뮤니티에서도 혐오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모 대학교 학생들이 “미니 쿼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연서명을 받겠다”는 연서명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자, “두창(원숭이두창) 걸릴까봐 그날 학식 못먹겠다”는 식의 노골적인 비난과 욕설 총 700여개 정도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왔다.¹⁰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에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대상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등의 내용”이 유통되고 있다며 해당 커뮤니티 측에 “자율규제 강화를 권고했지만, 권고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대학 커뮤니티 내 ‘혐오문화’ 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⁰⁵⁾ 2023년 10월 12일 해당 대학의 미니쿼어퍼레이드 조직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대학에서 미니쿼어퍼레이드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백 개의 혐오 게시물이 올라왔고 많은 호응을 얻으며 ‘HOT 게시판’ 에 오르기가까지했다”며 “방심위는 대학 혐오문화를 방관하지 말고 ‘혐오게시물 삭제’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¹⁰⁶⁾

(2) 인터넷 ‘혐한 글’ 게시자 상대 손해소 승소 (일본 사례)

재일 한국인 3세인 원고는 “일본에 적대적인 적국의 사람”, “조국으로 돌아가” 등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남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194만엔(약 1천7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¹⁰⁷⁾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은 2016년 ‘헤이트스피치(혐오표현) 해소법’ 제정 후 혐한 시위 등에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발언을 할 수 없게 되자 혐한 단체 등이 자주 사용해 온 표현”이다.¹⁰⁸⁾ 특히 “2016년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나서 문제점을 직접 호소,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104)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10121728299796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105) 프레시안, 위의 기사.

106)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101201039921314001>.

107)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2174400073?input=1195m>.

10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1313380001348?did=NA>.

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정에 기여”하였고, “2019년 가와사 키시가 일본 최초로 헤이트스피치에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도입하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¹⁰⁹⁾

(3) 초등학교사 SNS 혐오 글 논란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6학년 XX XX 싫어. 만나자마자 야동 신음소리 내면서 깔깔거리기 시작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¹¹⁰⁾ A씨는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몽정을 설명하는 수업 자료를 띄워놓은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을 욕설과 함께 게시”하기도 했으며, “남성 혐오표현도 지속적으로 썼”는데, “고(故) ○○○ 남성연대 대표가 2013년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사건을 빗댄 은어인 ‘△△하다’와 너희 아버지 한국남자라는 의미인 ‘느개비 한남’”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여자도 남성처럼 성기를 세우는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면”과 같은 글들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¹¹¹⁾ 논란이 되자 결국 A씨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온라인상에 부적절하게 배설한 것 같다. 교사가 된 후에는 그만했어야 하는데 끊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¹¹²⁾

(4) 남성혐오 ‘한남’

2023년 8월에는 “흥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수십명의 남성들을 흥기로 찌르겠다며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구속”되었다.¹¹³⁾ 이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흥기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았으며,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어로 한국 남성을 얕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된다.¹¹⁴⁾ 이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서현역

109) 위 신문기사.

110)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27510514?OutUrl=naver>.

111) 위 신문기사.

112) 위 신문기사.

113)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0504561?OutUrl=naver>.

홍기난동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¹¹⁵⁾

(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혐오 발언 논란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ANNI)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혐오발언”에 대해 “이 위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위원회의 결정에 반영하려 시도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¹¹⁶⁾ 해당 상임위원은 인권위원회 결정문 초안에서 “남자 동성애자가 항문 파열로 기저귀를 차더라도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산다면, (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인식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인권위가 그 사실을 교육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¹¹⁷⁾

(6) 중국인 투표권 제한과 혐오 논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 16만명 중 중국인은 13만 명 이상인데, “정당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¹¹⁸⁾ 여권에서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여럿 발의”되었고, 법무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외국인 혐오를 부추긴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¹¹⁹⁾ 또한 모 의원이 “중국은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다.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말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정치적 득실을 따져 이주민 혐오를 조장하는 행

114) 위 신문기사.

115) 위 신문기사.

11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7041646001>.

11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5500197&wlog_tag3=naver;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7041322314672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118)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622020700641?input=1825m>.

119) 위 신문기사.

위”라는 비판이 있었다.¹²⁰⁾ 이러한 비판에 대해 모 의원은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냐”고 반론을 제기했다.¹²¹⁾

(7) 레즈비언 임신부 혐오글

2019년 미국 뉴욕에서 동성혼인을 하고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모씨가 “유교 관념에 간혀 있어서 그런지 동성애자를 보면 가까이하는 못 할 것 같다”는 맘카페 글에 대해 “안녕하세요. G인데 저도 맘인 걸 잊으셨나요?” 하고 댓글을 단 사실이 알려졌다.¹²²⁾

120)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_06132117005.

121)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59822>.

12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704/120066394/2>;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704503384?OutUrl=naver>.

제3절 인격권 침해로 인한 국민 피해 실태

1. 디지털·미디어에서의 인격권 침해

최근 디지털·미디어, 즉 인터넷, 방송, 언론·출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례가 그 이전에 비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단에 의한 인격권 침해 유형은 그 밖의 다른 인격권 침해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 법에는 ‘인격권’에 관한 정의는 물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헌과 판례에서도 인격권의 범주나 외연에 관한 통일된 서술은 발견되지 않는다. 지난 해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거쳐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지만, 법무부의 민법 예고안이나 최근 발의된 윤미향 의원안(의안번호: 17124)에서 인격권은 상당히 넓은 범위로 정의되고 있다.¹²³⁾ 인격권 침해는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법률효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예방·방해제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에 의해 금지청구권(또는 유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삭제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¹²⁴⁾ 물론, 인격권(또는 인격적 이익)을 법률에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 여부를 해당 법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가령, 일반적으로 인격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명예를 침해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손해

123) 가령, 윤미향의원안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밑줄은 필자가 추가한 것임]

124) 가령, 언론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가 인정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무엇인지, 금지청구를 인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어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보도청구는 실질적으로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다영,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1호, 2017, 133면).

배상청구권), 형사상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문제된다. 그러나 이는 민사법 또는 형사법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간 기본권의 충돌이라는 헌법상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실무에서 ‘인격권’ 침해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침해 법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재 학설 및 판례에 의하여 인격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인정되고 있는 법익은 명예,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초상권, 성명권 등이다. 최근 실무에서는 명예, 초상권 등 종래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왔던 전통적인 법익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보호되지 못하였던(혹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인격적 이익들도 사회변화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¹²⁵⁾ 이하에서 논의되는 인격권 침해는 자연인에 관한 것이다.¹²⁶⁾

디지털·미디어에서 인격적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에서의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의해 행해지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결과물도 인간에 의한 데이터에 의존하는 가운데 인간에 의해 특정 결과물이 유도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인간의 활동이 확대되었는데, 메타버스에서도 오프라인에서의 문제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디지털·미디어에서의 인격권의 침해는 인간에게 그 원인이 있다.

디지털·미디어에서 인격적 침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반드시 괴리되지는 않고 연결된 경우도 많다. 학교폭력이 SNS에서만 아니라 메타버스로의 확대는 경우와 같이 오프라인의 문제를 온라인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디지털·미디어를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메타버스와 같이 온라인상에서만 전개되는 문제도

125) 고철웅,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99호(2022), 70면.

126)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법인의 인격권 그 자체에 관한 판단을 한 사례는 아직 없으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결정)는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이 이러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유지 내지 법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법인에게도 인격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있다. 예를 들어 아바타 자체에 인격권이 없지만 인간 당사자와 동일시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추행이 아바타를 조종하는 자에게 인격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의 언어와 행동에 의한 폭력이 온라인상에서의 문자와 언어에 의한 폭력으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되었으며,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과 함께 이미지와 영상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심화되었다.

2.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디지털·미디어에 의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격권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터넷 웹사이트(공개된 블로그 등)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허위정보 등을 올린 경우, 악성 댓글 등에 의한 모욕 내지 언어폭력을 행한 경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인터넷 카페 등에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¹²⁷⁾, 타인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에서 도용하는 경우¹²⁸⁾, SNS에 올린 게시물이 언론에 재공표된 경우¹²⁹⁾ 등이 있다. 이외에 인터넷신문이나 포털에서는 기사가 삭제되었지만 1인 미디어 등을 통해 문제의 기사가 계속 유통되는 경우, 개인미디어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을 쓰거나 그런 기사를 복제·링크하는 경우, 인터넷개인방송자가 명예훼손 정보나 모욕적인 언사를 여과 없이 송출하는 경우 등도 자주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례이다.

127) 인터넷 카페 ○○○모임 내 게시판에서 카페 회원인 A는 카페지기인 B가 자신의 의견을 자주 비난하고 심지어 강제로 퇴출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B를 성토했다는 글을 작성하면서 ‘병신’, ‘X도 모르는 새끼’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언론중재 2011년 봄호 (통권 118호), 언론중재위원회, 76면).

128) A는 우연히 방문한 ○○○카페에서 B가 A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게재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어 B의 미니홈피에서도 A의 사진을 다수 게재한 것을 발견하고 B에게 메일로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B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이용자 정보를 청구하였다(언론중재 2011년 봄호 (통권 118호), 언론중재위원회 76면).

129) 재미교포 출신 아이돌 가수가 연예기획사 연습생 시절인 2005-2007년 Myspace에 ‘한국이 짜증난다’, ‘너무 힘들다’는 등의 내용으로 올린 글이 뒤늦게 네티즌들에 의해 발견돼 지탄을 받은 뒤 불과 나흘 만에 한국을 떠났다. 이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09.9.5.자 인터넷 기사 참조(<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24>).

(1) 법률 규정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두 유형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는 형법 제310조에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사자(死者)의 경우에도 형법 308조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해서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형법 제308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되고,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제312조).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제44조에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판례의 경향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체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¹³⁰⁾라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대법원(전원합의체)¹³¹⁾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떼떽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다.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다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나 특별법상 명예훼손 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의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법리로 적용되어 왔다.”¹³²⁾라고 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른 공연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13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3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132)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행위자도 발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공연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법리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유형의 명예훼손 처벌규정에서의 공연성 개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술 등의 발달과 보편화로 SNS, 이메일, 포털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의 의사표현이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과 정보유통과정은 비대면성, 접근성, 익명성 및 연결성 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어서, 정보의 무한 저장, 재생산 및 전달이 용이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행위자가 적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쉽게 상실하게 되고, 빠른 전파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침해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연성의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¹³³⁾라고 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법원(전원합의체)¹³⁴⁾은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뜻한다.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표현행위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평판

133)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134)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된다.”¹³⁵⁾고 하여 객관적인 평판이나 명성의 손상을 명예훼손의 요건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서, 대법원은 “독일 형법 제193조와 같은 입법례나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¹³⁶⁾라고 하면서,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¹³⁷⁾라고 하여 사인에 대한 사안에 대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3) 소셜미디어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A는 자살한 딸 B의 싸이월드 내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B가 남자친구인 C를 만나 사귀면서 임신하였으나, 그 후로는 C가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연락을 끊자 C를 찾아가 다투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A가 C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뺨을 때린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C는 합의를 해달라는 B의 간청을 거절하였고, 급기야 B가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고 죽게 되었으니 C가 장례식장에서 회사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위 글은 인터넷상에서 널리 퍼지면서 급기야 주요 언론매체의 인터

135)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136)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137)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넷신문에까지 보도되어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의 포털에 보도 내용이 게시되기에 이르렀다. C는 네이버 등 포털업체들을 상대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전부 삭제하고, 관련된 추모, 안티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를 폐쇄하고, C와 관련된 정보의 검색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포털업체들은 삭제할 글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포털업체들은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C와 관련된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고, C를 금칙어로 등록하여 검색을 차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4) 기사삭제청구권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원고는 A회사의 전 공동대표이사(다른 공동대표이사는 C)이자, B회사(A 회사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A회사의 제6대 주주(5.36%) 회사의 자회사로서 뉴스전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C는 2006. 9. 12.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에게 원고가 오래 전부터 미국에 국내정보를 유출하여 왔다고 알리면서 일련의 문건들을 보여주었고 이를 공개하려 한다면서 피고 측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C는 2006. 10. 11. 피고 소속의 기자 및 간부들에게 원고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원고의 정보유출과 관련된 행적 등을 말해 주었고, 이에 피고의 간부직원들은 원고가 이른바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 해 왔다는 결론을 내린 후 특별취재팀을 구성하고, C가 국정

감사장에서 증언하는 기회에 이를 공표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그 준비를 위하여 검찰, 국가정보원 및 정치인들과 접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10. 31.부터 2007. 4. 8.까지 57회에 걸쳐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원고가 국내정세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면서, C에게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의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건들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영어로 번역한 후 미국 측에 보고함으로써 국가정보를 유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와 뉴스 제공을 제휴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미디어다음, 네이버, 야후, 파란, 네이트, 엠파스, 하나포스, MSN, 코리아닷컴이다.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피고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2007. 1. 1. 이전 기사는 해당 연도로는 검색할 수 없으나, 원고나 C의 이름 등 각종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입력함으로써 검색할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각 기사를 삭제하고, 위 각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게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어 간접장제를 명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을 하지 아니한 각 기사당 매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장제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의 주요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

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에 대한 침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기사삭제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과 관련이 없는 기사 등으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 기사삭제 청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기사 중 삭제를 명한 부분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이상 가사 피고가 그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기사의 삭제를 구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할 수 없다”.

(5) 검색엔진에 의한 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카합1661 결정

검색엔진은 포털 등 ISP의 콘텐츠, 뉴스 그리고 개인들이 만들어낸 콘텐츠 등 인터넷 상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찾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드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는, 온라인 검색을 실시한 결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의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이 검색되거나 연관검색어가 제시된 경우이다.

이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인 이 모씨는 자신의 실명과 이니셜을 이용한 ‘강간범, 흉어, 좌빨’ 등의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게시물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웹사이트에 계속 올라오자 이러한 비방글의 삭제를 6개월간 일베운영자에게 신청했다. 그럼에도 이씨의 이름을 변형한 불법적 게시물이 웹사이트에 반복하여 게재되어 검색되자, 이씨는 일베 운영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게시물 방치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이 비방글의 URL을 특정하여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만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URL을 특정함이 없이 비방글이 올라온 때로부터 1분 안에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해달라는 이씨의 요청에 대해서는 1분 이상 방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일베사이트

운영자가 비방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6) 드론 등 새로운 기술 장치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드론 등 새로운 기술 장치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 드론 등에 장착한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 스마트폰에 의한 촬영 영상 등은 기존의 CCTV에 비해 위·변조가 쉽고 개인 영상정보 관리자에 의해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이들 기기에 의한 영상촬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녹음까지 가능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훨씬 크다. 나아가 이들과 같이 방송사 외부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생산한 영상정보를 방송사가 선정적으로 편집·보도하는 경우 2차적인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드론이나 차량 블랙박스, 스마트폰 등 새로운 기술장치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동형 영상정보'로서 법 적용을 받는다. 드론이나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촬영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적용을 받는다.

(7) 초상권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다. 가령 스타강사의 원정도박 보도 사건에서 법원¹³⁸⁾은, 이 보도에서 스타강사를 가리켜 '최씨'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원고의 강의 동영상을 수차례 방송하였고, 얼굴을 흐릿하게 블러처리하였지만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인 '대한민국 사회탐구 NO1 최', 원고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제목인 '공부의 비법'이 그대로 방송되었고 원고 음성, '내신 때려잡기' 수강 프로그램명들이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았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범죄 피의자가 강도미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가 탈주한 사건에서, 경찰은 모방범죄 가능성을 이유로 CCTV를 공개하지 않았고 검찰은 전체 화면에서 일부 CCTV 캡처 화면만을 언론기관에 제공했다. 이후 범인은 6일 만에 검거되었다. 3개월여 뒤 JTBC는 CCTV를 단독 입수하여 원고가 탈주

138) 서울중앙지법 2014. 8. 14. 선고 2013가단93294 판결.

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및 얼굴이 나온 현장검증 영상을 보도했다. 이에 원고는 동 영상 삭제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뉴스 방영 이전에 이미 현상수배되어 있다가 검거되어 얼굴과 범죄사실이 모두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초상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격권 이익보다 뉴스를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한 점”을 들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¹³⁹⁾

3. 모욕

(1) 법률 규정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모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적용된다(제312조 제1항). 이는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욕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판례

모욕과 관련하여, 대법원(전원합의체)¹⁴⁰⁾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발언자와 그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극우’든 ‘극좌’든, ‘보수우익’이든 ‘중복’이나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을 한 맥락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것은 이른바 공인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발언자의 지위나 평소 태도도 그 발언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⁴¹⁾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139) 대구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4가합4089 판결.

140)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¹⁴²⁾라고 전제한 후에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¹⁴³⁾라고 하여 명예훼손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특정인에 대한 모욕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온라인 매체에서 이를 비방함에 의해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사례는, 특히 악성 댓글의 형태로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는 ‘국민첫사랑’, ‘국민여동생’ 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온 점, 이전에 피해자가 남성 연예인과 데이트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되었고, 직후 피해자와 그 남성 연예인은 연인관계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개봉 기사에 “...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언론에서 ‘국민여동생’으로 띄우는데 그중 ‘국민’이라는 단어와 당시 해외에서 모 남성 연예인과 호텔을 갔다고 하는 스캔들이 있어서 ‘호텔’이라는 단어를 합성하여 만든 단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피해자가 종전에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14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14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14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¹⁴⁴⁾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혐오표현에 관한 사건이지만, 대법원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 내용에 더하여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격적 침해를 혐오표현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였다.

SNS에서의 학교폭력은 다양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SNS상에서도 위와 같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이를 비방함에 의해서 특정인을 모욕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사업소 소장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甲이 관리하는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甲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여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위 표현의 의미와 정도,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 및 전후의 정황, 甲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표현은 피고인의 甲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甲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¹⁴⁵⁾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사건은 비록 무죄 판결이었지만,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

14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145)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¹⁴⁶⁾라는 법리를 제시하여 SNS 상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온라인 게시판, 메타버스 등의 매체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메타버스 환경은 언어, 행동, 집단 따돌림 등을 통해서 인격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의 가상 결혼 사례는 메타버스 상에서 인간이 오프라인에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렇지만 메타버스 상에서는 실제 인간의 신체의 피해로 직결되지 않지만,¹⁴⁷⁾ 그 피해 양상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악플 및 스토킹

인터넷상에서의 악플과 스토킹의 문제는 특정한 개인에게 인격적 침해가 될 수 있다. 뉴스에는 주로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스토킹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악플 및 스토킹은 일반인들에게도 문제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유족들을 비방하는 것과 같이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인 악플¹⁴⁸⁾이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악플이나 스토킹이 행해지고 있다. SNS 학고폭력은 이러한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일반인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교류를 하면서 평가를 받고 있고 명예감과 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악플은

14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147) 다만, 메타버스 환경도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 아이템, 가상화폐 등의 교환이나 거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재산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로블록스와 같은 메타버스는 한국에서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14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416>

일반인에게 상당한 상처와 아픔을 준다.

한편, 악플이나 스토킹은 동영상 매체를 통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이버 렉카로 불리는 자들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통해 악성 루머를 퍼트리면서 악플과 스토킹을 조장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해당 특정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A씨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고, 고소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년 3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 그는 일상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아야 했다¹⁴⁹⁾고 한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 심화된 사례로 가수 ○○○에 대한 학력 위조 논란¹⁵⁰⁾이 있다. 사이버 렉카의 활동은 특정인을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정의감에 호소하면서 특정인들에 대한 사적 제재를 가하는 사례¹⁵¹⁾도 있는데,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적 제재를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실현하는 행위다.

5. 사자의 인격권 침해

사자(死者)의 경우에도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대법원¹⁵²⁾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그의 사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사망 후에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고 그의 생활상이 왜곡된다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사람은 적어도 사망 후에 인격이 중대하게 훼손되거나 자신의 생활상이 심각하게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그러한 기대 속에서 살 수 있는 경우에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⁵³⁾라고 전제하면서,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 의료법의

149)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663>

150) <http://www.stoo.com/article.php?aid=86921330265>

151) <https://www.inews24.com/view/1298724>

15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153)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입법 취지, 구 의료법 제19조의 문언·내용·체계·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의료법 제19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는 생존하는 개인 이외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¹⁵⁴⁾라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디지털·미디어 상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프라이버시

2022년 9월 17일에 영국에서 열린 토트넘과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가족을 무단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것과 관련하여, 손흥민 매니지먼트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몇몇 SNS채널(유튜브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손흥민 선수의 가족을 촬영한 영상들을 발견했다”라며 선수와 그 가족의 초상권 피해를 우려했다.¹⁵⁵⁾ 이와 같이 디지털·미디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사진,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구글어스에 게시된 사진을 통해 실종된 사람을 찾거나 불륜 사실을 알아내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¹⁵⁶⁾ 그렇지만 인터넷에 게시되는 사진, 영상 등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즉, 특정인이 업로드한 사진이나 영상 속에 타인의 일상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콜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용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¹⁵⁷⁾ 이는 인터넷 영상 채팅, 메타버스 채팅에서의 녹화 등에도 해당할 수 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에서의 대화나 특정 장면을 녹화하여 이를 특정 아바타와 관련한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메타버스 공간은 청소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사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154)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155)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20921_14540832211

156) <https://allets.com/contents/?contentsId=37861>

15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59>

제3장 디지털·미디어 상에서 국민 피해구제 관련 국내 법령, 주요국의 법률 및 사례

제1절 가짜뉴스 입법현황

1. 입법 현황

(1) 개관

현행법하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민·형사적인 방안과 행정적 대응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와 같은 방안이 있고, 행정적 대응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조치를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언론중재법, 전기통신기본법,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형사적 대응방안으로 한정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현행법상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이후 관련 입법 논의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2) 형사적 대응

1) 형법적 대응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서 규율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를 규제하는 가장 전통적인 대응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는 외적 명예, 즉 사회적 평판인 세평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형법상 명예훼손¹⁵⁸⁾이나 모욕¹⁵⁹⁾에 해당된다. 가짜뉴스의 유포 방식을 불문하고 그것이 공연성을 가지는 이상 이를 통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그것이 출판물 등의 형태를 통해 강력한

158)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과력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있는 가짜 뉴스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크다.

그 외에도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서 규율하고 있는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죄도 허위사실의 유포를 구성요건으로 함으로써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업무 방해 등의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동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수단으로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통한 경우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¹⁶⁰⁾에 해당하고,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매체라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 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¹⁶¹⁾

2)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대응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정보의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나 임시조치(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를 취할 의무가 있다.¹⁶²⁾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물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160)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1)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¹⁶³⁾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게시물 관리의무 및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정보, 국가기밀누설 정보, 국가보안법상 금지행위 수행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일부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러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역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¹⁶⁴⁾

3)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응

공직선거법은 가짜뉴스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 통제방식과 인터넷 실명화 방법 등을 통하여 가짜뉴스가 선거에 유포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간접적인 통제방식을 두고 있었다.¹⁶⁵⁾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1. 1.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우선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¹⁶⁶⁾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163)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64)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3조(벌칙)

165) 조재현, “가짜뉴스와 공직선거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2020, 57-83.

166)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1조¹⁶⁷⁾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한 경우를 직접 규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4¹⁶⁸⁾에서는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 즉 가짜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생산, 유포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와 관련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직선거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간접적 통제방식으로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¹⁶⁹⁾ 선거게시판 실명조치규정을 들 수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 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7)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68)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169)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는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인터넷에서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익명표현이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짜뉴스의 생성이나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위험을 간접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¹⁷⁰는 이처럼 정치적 익명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방해될 수 있다. 실명확인제가 표방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목적은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유통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상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삭제요청 등의 수단이나 임시조치 등이 활용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이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사후적 제재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대상 조항은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은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하며 동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현재의 판단에 따라 동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처럼 사전적, 포괄적으로 정치적 의사의 게시에 대해 실명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제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언론중재법

현행 언론중재법 중 가짜뉴스 대응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시정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들 수 있겠다. 우선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5조¹⁷¹)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과 행사방법에 대해 규율하면서 진실하지 않은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16조¹⁷²)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보도내용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같

170)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 2020헌바406, 2018헌가16(병합)

17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5조(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

17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은 법제32조¹⁷³⁾에 따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대응

전기통신기본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설비(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를 이용한 허위 통신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6) 국가보안법에 따른 대응

국가보안법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로서 선동·선전,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를 처벌하고 있다.¹⁷⁴⁾

(3) 현행법에 따른 대응의 한계

1)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규제 한계

현행법은 모두 특정 표현의 ‘작성자 또는 발화자’를 처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의 규제만으로는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글이나 혐오표현이 포함된 게시물 유무의 의무적인 감독 등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2003도80 판례¹⁷⁵⁾의 입장에 의할 때 특정 인터넷 플랫폼의 이용자가 특정 가벌행위의 정범에 해당될 때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

17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174)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75)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정보제공업체들이 음란한 정보를 반포·판매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저지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정보제공업체들의 음란정보 반포·판매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하지 않으나 방조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플랫폼 이용자가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실 적시, 일정규모 이상의 집단을 혐오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정범에 해당되지 않아 방조범의 책임 또한 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한계

현행법상 모욕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상대방(즉,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에 대한 발언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인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법상 처벌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다.

판례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2011도15631).”고 그 기준을 실시하였다.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된 제2장의 사례176)에서 법원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현행 모욕 및 명예훼손죄의 법리상

176) 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저녁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장래의 희망이 아나운서라고 한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승진하기 위하여)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을 각 모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인종·성별·지역 등을 이유로 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

3)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근거한 규제의 한계

왜곡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혹은 명백히 거짓인 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게시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어 사회에서 배척하려고 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정책수행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저해함은 분명하다. 다만,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 관련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불가능하다. 국가 또는 사회적 법익을 근거로 이와 같이 여론을 호도하여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저해하는’ 발화를 처벌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와 같은 처벌 법안이 다시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위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¹⁷⁷⁾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판단주체가 법전문가라 하여도 마찬가지이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현재의 다원적이고 가치 상대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 상황이 문제되었을 때에 문제되는 공익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익 간 형량의 결과가 언제나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고 하여 위 법에서 정한 ‘공

177)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익'에 대한 불명확성을 이유로 위헌 선고를 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의할 때, 일반적인 목적 규정에 의거한 처벌규정의 경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4) 정리

국내에서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 이미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고, 이러한 명예훼손죄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법률은 허위사실이 특정한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지 허위사실의 유포 자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허위사실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갖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와 그에 따른 해악은 그와 같은 처벌로 달성되는 법익을 압도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 그 자체를 처벌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¹⁷⁸⁾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비추어 기존의 규율 체계로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즉, 최근의 가짜뉴스는 뉴스의 생산·유포·이용이 기존의 신문·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확대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기 쉬운 환경에서 부정확하고 무분별한 수많은 정보들이 뉴스라는 형식으로 급속하게 퍼지고¹⁷⁹⁾ 이것이 개인의 의사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현행 개별 법률이 신속하게 대처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형법, 정보통신망법, 공직선거법 등 개별 규정들은 대부분 사후적인 통제에 불과하여 가짜뉴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이미 퍼질 대로 퍼진 후 작동되는 수단에 그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법률은 가짜뉴스를 다 포섭할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집단 명예훼손이나 성, 지역, 인종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 포함된 가짜뉴스의 경우 민·형사상 규율이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개인이 아닌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178) 박경신,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법학연구, 12(1)(2009), 1-44.

179) 김여라,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NARS 현안분석(2020), 제 114호.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규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다.¹⁸⁰⁾

2. 입법안 검토

(1) 개관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가짜뉴스는 그 특성상 인터넷을 주요한 유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법적 규제는 대체로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율을 시도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가짜뉴스 관련 제재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규제대상에 대한 명칭을 지정한 법률안들 중 가짜정보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시도를 포함한 입법안들은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규제대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짜뉴스의 조건으로써 공통적으로 허위성과 언론보도의 형식을 요구한다. 규제대상에 대한 명칭을 지정하지 않은 다른 개정안들도 이와 같았다.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별개의 법안 제정의 형식을 취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규제의 대상으로 ‘가짜정보’라는 개념을 상정해 뉴스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규제가 가능하게 하여 그 범위를 넓혔다. 또한 허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으로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거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차이가 있다. 아래의 <표 3-1>에서 관련 입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80) 윤성욱, 가짜뉴스 규제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과법, 18(1)(2019), 103-138.

<표 3-1> 가짜뉴스 규제에 관한 입법안(시간순)

| 순번 | 발의자, 법령, 의안번호 | 발의일자 | 주요내용 |
|----|------------------------------------|-----------|---|
| 1 | 김관영의원 등 26인 정보통신망법 (2006708) | 2017.4.11 | ①가짜뉴스를 “거짓의 사실을 언론보도의 형식으로 제공해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와 아울러 유통금지대상정보에 포함시킴(안 제44조 제1항) ②가짜뉴스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와 아울러 요청에 의한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의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4조의2 제1항) ③가짜뉴스에 대해서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76조 제1항 제6호 신설) |
| 2 | 주호영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법 (2006804) | 2017.4.25 | ①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②위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자’와 ‘고의로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73조 제5호 및 제6호 신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에 관하여 심의 중에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고(안 제44조의8 신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76조 제1항 제5의3호 신설) |
| 3 | 주호영의원 등 10인 언론중재법 (2006805) | 2017.4.25 | ①언론사의 표시의무제 도입 ②언론중재위원회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권 도입 |
| 4 | 주호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2006807) | 2017.4.25 | ①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금지 ②가짜뉴스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다중에게 뉴스로 오인 |

| 순번 | 발의자, 법령, 의안번호 | 발의일자 | 주요내용 |
|----|------------------------------------|-----------|--|
| | | | <p>시킬 목적으로 작성해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p> <p>③가짜뉴스 피해자 가짜뉴스 표시 요청 및 이의 신청 등 도입</p> <p>④가짜뉴스 최초 유포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짜뉴스 표시의무 위반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p> |
| 5 | 안호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망법 (2007095) | 2017.5.30 | <p>①가짜뉴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제1항 제14호 신설)</p> <p>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안 제44조의2 제7항 신설)</p> <p>③위 규정을 위반하여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76조 제1항 제6의2호)</p> |
| 6 | 이은권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법 (2008194) | 2017.7.26 | <p>①가짜뉴스를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른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와 아울러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포함시킴(안 제44조 제1항 제2호)</p> <p>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의 지체 없는 삭제 의무 부과(안 제44조의2 제3항 제3호 신설)</p> <p>③위 규정을 위반하여 삭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76조 제1항 제6호)</p> |
| 7 | 송희경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법 (2008392) | 2017.8.4 | <p>①가짜뉴스를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제1항 제14호 신설)</p> <p>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안 제44조의2 제4항 신설)</p> <p>③위 규정을 위반하여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76조 제1항 제5의3호 신설)</p> <p>④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 신설)</p> |

| 순번 | 발의자, 법령, 의안번호 | 발의일자 | 주요내용 |
|----|--|-----------|---|
| | | | ⑤위 규정을 위반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한 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70조 제2항) |
| 8 | 이장우의원 등 16인 정보통신망법 (2008920) | 2017.9.1 | ①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의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안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 신설) ②위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의 사실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안 제74조 제1항 제2의 2호신설) |
| 9 | 박광온 등 29인 가짜정보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2927) | 2018.4.5. | ①가짜정보를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정보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고(안 제3조), 가짜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안 제8조제2항), 가짜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10조). ④가짜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18조) ⑤가짜정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
| 10 | 강효상의원 등 15인 가짜뉴스대책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495) | 2018.5.9. | ①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 인터넷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의 정보로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함(안 제2조 제1호) ②가짜뉴스 유통 방지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③신문과 인터넷신문에서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통 방지 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과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유통 방지 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기관으로 함(안 제6조) |

| 순번 | 발의자, 법령, 의안번호 | 발의일자 | 주요내용 |
|----|-------------------------------------|-----------|--|
| | | | ④주관기관은 분야별 가짜뉴스 유통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가짜뉴스 유통 방지 대책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
| 11 | 金成泰의원 등 110인 정보통신망법 (2014625) | 2018.7.30 | ①누구든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가짜뉴스”라 함)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7제1항) ②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가짜뉴스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삭제 등의 요청을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짜뉴스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8 신설) ④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9 신설) ⑤가짜뉴스를 유통하는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70조의2 1호) |
| 12 | 박완수의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법 (2015891) | 2018.10.5 | ①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②이를 위반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13 | 정필모의원 등 39인 정보통신망법 (2100815) | 2020.6.22 |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함(안 제44조의2 제7항 신설), ②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76조 제6호 신설) |
| 14 | 박정의원 등 10인 언론중재법 (2110702) | 2021.6.9 | ①온오프라인상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단순 오보가 아닌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개인 |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미디어 규범 마련

| 순번 | 발의자, 법령, 의안번호 | 발의일자 | 주요내용 |
|----|------------------------------------|-------------|---|
| | | | 이나 단체·조직 등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신설(안 제3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 15 | 윤영찬의원 등 10인 언론중재법 (2110947) | 2021.6.22. | ①언론등이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규정을 신설(안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 16 | 최형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법 (2117324) | 2022.9.8. | ①유통금지되는 정보에 사이버괴롭힘 정보를 추가(안 제44조제1항) ②유통금지정보의 유포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소명하여 해당정보를 삭제·차단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
| 17 | 김승수의원 등 10인 언론중재법 (2119177) | 2022.12.27 | ①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의 범위를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및 그 밖에 언론사로 확장 개정(안 제2조제1호) |
| 18 | 김기현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법 (2119663) | 2023.1.27 |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정보유통의 경우 접속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기할 의무규정 신설(안 제45조의4 신설) ②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규정 신설(안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
| 19 | 김승남의원 등 15인 언론중재법 (2122955) | 2023.6.29. | ①명예훼손등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은 정보의 확산 이전에 신속한 접근차단을 위한 임시조치근거를 마련(안 제17조의2제2항 후단 및 제18조의2 신설) |
| 20 | 윤두현의원 등 22인 정보통신망법 (2124795) | 2023.9.27. | ①허위조작정보의 정의규정과 불법정보의 일종으로 포함(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②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마련(안 제44조의4제2항 신설) ③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등 조치규정 마련(제44조의7제2항 개정) ④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근거규정 마련(제44조의12 신설) |
| 21 | 박성중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법 (2125438) | 2023.11.15. | ①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세분화하여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정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가공물(안 제44조 제1항제1호-제3호 신설, 안 제44조의7 제2호의2, 제2호의3 신설) |

| 순번 | 발의자, 법령, 의안번호 | 발의일자 | 주요내용 |
|----|---------------|------|--------------------------------------|
| | | | ②위반시 벌칙규정 신설(안 제70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표 3-1>에서 보듯이 20대 국회(2016-2020)에서부터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되었으나 다수의 안은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법안 처리는 더디지만 가짜뉴스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이라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많은 의안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제안이유 기재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에서 가짜뉴스의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가짜뉴스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적·경제적 이유에 기한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상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더 넓히려는 시도(17번안)를 비롯하여, 민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가짜뉴스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14번안). 특히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위한 입법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짜정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와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임시조치에 관련된 사항들도 고려되고 있다. 가짜뉴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객관성 확보에 관한 규정으로는 댓글의 국적표기의무 신설이 있다(18번안). 또한, 신속한 확산이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상 임시조치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제안되고 있다(19번안).

한편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처벌 및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의 제정이 계속하여 불발된 이유는 대부분의 개정 및 제정안에서 사용한 개념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안이유에서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설시하면서도 법안 내용에서 가짜뉴스의 정의 규정조차 없는 개정안, 있더라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여 처벌을 담당하는 법률로서 기능하기에는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¹⁸¹⁾

181) 임재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또한 사업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 책임자지정 의무 등을 지게 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혹하며, 이용자가 가짜뉴스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할 때 게시글의 진위 여부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필요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가 게시한 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 또는 침해되거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평가가 있었다.¹⁸²⁾

(2) 검토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 관련 개정안이나 법안을 보면,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목하에 가짜뉴스의 유포주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거나 가짜뉴스의 유포 통로인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관련 각종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큰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의 유통 경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이르지 않으면서도 가짜뉴스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가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 유통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김성태의원 대표 발의(2018. 7. 30. / 2014625), 2018. 9., pp. 7-8.

182) 임재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김성태의원 대표 발의(2018. 7. 30. / 2014625), 2018. 9., pp. 8-13 ; 임재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박완수의원 대표발의(2018. 4. 25. / 2013251) 강효상의원 대표발의(2018. 5. 9. / 2013492), 2018. 9., pp. 12-14.

제2절 인격권 침해 관련 입법정책

현행법에는 ‘인격권’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인격권을 ‘인격적 법익에 대한 권리’라고 풀어서 쓰더라도 인격적 법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에는 아래에서 보듯이 인격권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자는 입법 논의와 함께, 그간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인격적 이익으로 분류되었던 법익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인격권과 관련된 국내 정책 및 관련 법령에 관하여 차례대로 서술한다.

1. 인격권의 개념

헌법재판소는 인격권을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기본권으로 본다.¹⁸³⁾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인격권의 범위를 직접 실시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인격권’과 ‘인격적 이익’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역시 구체적으로 인격권의 범위를 실시하지 않고 대체로 해당 사안에서 침해된 이익이 인격적 이익이나 아니냐를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치고 있다.¹⁸⁴⁾ 한편 학설에서도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의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인격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자기결정권, 사회적 평가 침해, 초상권,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느낌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첫째,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¹⁸⁵⁾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요건과 청구권자를 규정한 민법조항¹⁸⁶⁾ 관련 사건에서 일반적 인격권 제한이 문제되었다. 둘째, 사회적 평가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률조항,¹⁸⁷⁾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183)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6헌마1298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2헌마425 전원재판 등.

184) 가령,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185)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 판례집 31-1, 404, 416.

186) 헌재 2019. 12. 27. 2018헌바130, 판례집 31-2하, 133.

저지른 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하는 법률조항,¹⁸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가 조사대상자의 인격권 제한 사건¹⁸⁹⁾에서 문제되었다. 셋째, 초상권과 관련하여서는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경찰이 촬영한 행위 사건¹⁹⁰⁾에서 일반적 인격권 제한이 문제되었다. 넷째,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느낌과 관련하여서는 수형자들의 ‘점호행위’ 사건¹⁹¹⁾에서 일반적 인격권 제한이 문제되었다.¹⁹²⁾

학설과 판례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명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인격권 침해로 보고 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를 수단으로 한 인격권 침해 사례는 아니지만, 판례에서는 학생이나 공직선거후보자의 인격적 이익, 유류분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인격적 이익의 침해 등에 관한 사건에서도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명예권, 초상권 등 전통적으로 인격권에 포섭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온 법익을 제외하면, 어떠한 법익의 침해가 인격권 또는 인격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어떠한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인격권 침해가 되면, 이는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제750조)를 구성하고 그 법률효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특히,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1조)¹⁹³⁾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¹⁹⁴⁾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87) 현재 2013. 10. 24. 2011헌바106 등, 판례집 25-2하, 156.

188) 현재 2016. 5. 26. 2014헌바68 등, 판례집 28-1하, 244.

189) 현재 2010. 10. 28. 2007헌가23, 판례집 22-2상, 761.

190) 현재 2018. 8. 30. 2014헌마843, 판례집 30-2, 404, 413.

191) 현재 2012. 7. 26. 2011헌마332, 판례집 24-2상, 324, 324.

192) 이부하,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3호, 2022, 146-147면.

193)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예방·방해제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에 의해 금지청구권(또는 유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 40614,40621 판결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 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라고 한 원심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령,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위의 실정법상 구제수단 외에,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¹⁹⁵⁾ 다만, 이와 같이 금지청구가 인정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무엇인지, 금지청구를 인정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기준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함) 등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삭제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¹⁹⁶⁾ 위와 같이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발생 요건과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는 디지털·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194)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9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96) 정다영,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1호, 2017, 133면.

3. 국내 법률 현황

(1) 개요

현행법에는 인격권에 관한 정의는 물론, 그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상의 인격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 침해로 인한 법적 분쟁이 급증하였고,¹⁹⁷⁾ 이에 따라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정의 및 인격권 침해시 침해배제 및 예방 청구권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특별법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2)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격권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은 금지청구권과 관련된 권리로 볼 수 있다.¹⁹⁸⁾ 우선 동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열람요구권은 인격권에 기한 방해예방·제거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97) 법무부 보도자료, “민법상 인격권 규정 신설 추진”(2022.4.5.), 1면 참조.

198) 권태상,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사법(私法) 측면에서의 검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2013, 100-101면.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동법 제36조는 전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이러한 정정 또는 삭제요구권은 허위의 정보나 불완전·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예방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¹⁹⁹⁾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가령 정보주체는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서도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99)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동의 철회,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망법상 인격권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 임시조치 등에 관한 규정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²⁰⁰⁾ 동법 제44조는 우선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한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그와 같은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

200) 박아란,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3호, 2020, 24면 이하.

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동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인격권을 침해당한 정보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고 함)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주체로부터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삭제,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

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동법 제44조의6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동법 제44조의7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 시하는 내용의 정보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3. ... 8.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教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4) 언론중재법상 인격권 관련 규정

언론중재법상 정보보도청구권, 반론권, 추후보도청구권은 방송, 신문, 잡지 등에 의한 인격권 침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²⁰¹⁾ 우선 동법 제5조는 언론 등(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타인의 인격권(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201)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권형돈, 디지털 전환의 시대 언론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모색 - 언론중재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3호, 2021 참조.

-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 ④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
- 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사 등은 그와 같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발송하거나 게재해야 한다(동법 제15조).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

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등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

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동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편,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추후보도 시에는 청구인의 명예 등 인격권 회복에 필요한 설명이나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추후보도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저작권법 관련 규정 및 판례

1)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저작권법은 인격권에 관한 몇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고,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하였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제10조 제1항)고 규정하여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권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저작권법 제127조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을 침해받은 자는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2) 저작권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저작권법은 저작권권에 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저작권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제136조 제2항 제1호). 이 규정에 따르면, 인격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의 침해로 인하여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정된다.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권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7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르면 성명표시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더라도 침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즉,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특별한 조건 없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이외에도 저작권법은 명시한 저작권권 외에도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권의 침해로 규정하여(제124조 제2항) 이러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37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이 규정은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즉,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더라도 순수하게 저작자의 명예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해당한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②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3) 초상권 관련 규정

저작권법은 제35조에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면서, 초상권과 관련하여 초상에 관한 저작물(초상화 및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에 대해 위탁자에 의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제35조 제4항).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4) 일반적 인격권: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저작자의 일반적인 저작인격권을 인정한 도라산역 사건(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이 있었다. 이 사건의 대법원은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미술저작물의 철거, 훼손 및 폐기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저작물의 이용 행위는 없지만, 저작자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

이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가가 이 사건 벽화의 설치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유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철거를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저작자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 등의 침해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였다.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 침해의 책임은 물론 저작권 침해의 정범에 대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여 왔다.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면책에 관하여 규정함에 의해 간접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였다.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 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 라. 저작물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 저작물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제공되는 저작물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저작물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 라.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저작물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마. 저작물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
 - 바.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저작물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저작물등을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저작물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또는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
 - 라. 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
4. 삭제 <2020. 2. 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입법안 검토

(1) 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는 2022년 4월 5일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제34조의2에서 법인에 대한 준용 규정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1월 10일 인격권을 규정하고 인격권 침해 제거 및 예방청구권(사전에 인격침해의 예방을 요구할 권리)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SNS 또는 메타버스상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폭력, 초상권·음성권 침해, 디지털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여러 분야에서 인격권을 침해한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²⁰²⁾ 현재 2023년 11월 13일 제안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350)은 국회 위원회 심사 계류 중이다.

2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9587?sid=102>

<표 3-2> 법무부 민법 개정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3조의2(인격권) ①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 사람은 그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 <신 설> | 제34조의2(법인의 인격권) 제3조의2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에 준용한다. |

(2) 윤미향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7124)

의안으로는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동 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대법원 또한 판례를 통해 인격권의 존재 및 보호 필요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법 해석만을 통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위 법무부 안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제3절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정책

1. 우리나라에서 혐오표현 논의

(1) ‘차별’과 ‘소수자’를 핵심요소로 보는 견해

국내 학자들 중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홍성수 교수는 “혐오표현이란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시·모욕·위협하거나 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정도로 그 개념을 정의해 볼 수 있다.”고 한다.²⁰³⁾

(2)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견해

이 견해는 혐오표현을 크게 세 가지 즉, “개인의 인격권 등의 권익을 침해하는 ‘협의를 혐오표현’”,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는 ‘광의의 혐오표현’” 및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적의적인 공격행위인 ‘최광의의 혐오표현’”으로 구분한다.²⁰⁴⁾ 먼저 ‘협의를 혐오표현’은 “인격권이나 명예와 같은 권익 침해”의 관점에서 좁게 설정된 개념으로서, “오직 법적인 권리 주체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포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²⁰⁵⁾ 그러나 이 견해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혐오표현을 “개인적인 권리의 침해 문제로 축소하는 단점”이 있다.²⁰⁶⁾

두 번째 개념인 “광의의 혐오표현”은 “평등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으로서 “혐오표현에 대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법 차원에서 접근은 혐오표현의 기저에 있는 일정한 유형의 사람이나 사람의 집단에 대한 혐오감의 표현이나 직장이나 학교, 공공서비스 등과 같은 일정한 생활영역에서의 차별 또는 배제를 법적으로 ‘차별행위’로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²⁰⁷⁾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혐오표현의 대

203)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31면.

204) 김현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이론과 실무 2016-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11-13면.

205) 김현귀, 위 보고서, 11면.

206) 김현귀, 위 보고서, 11면.

상을 소수자로 평가되는 집단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²⁰⁸⁾ 다시 말해서 “흑인보다 백인이 다수인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혐오표현만이 혐오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며 흑인의 백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혐오표현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²⁰⁹⁾

“최광의의 혐오표현”은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의 관점에서 혐오표현을 정의”하는 견해로서 이에 의하면 “자신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적의적인 공격을 포괄적으로 혐오표현이나 증오범죄 등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한다.²¹⁰⁾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다문화 국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 즉 ‘젠더(gender)’ 또는 소수자의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인 ‘호모포비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폭력, 혐오 또는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을 법으로 금지하는 외국의 입법례들이”이 이에 속한다.²¹¹⁾ 그런데 이러한 최광의의 혐오표현은 “규제될 수 있는 표현의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는 큰 단점”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는 문제가 있다.²¹²⁾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3> 혐오표현의 개념 정리²¹³⁾

| 혐오표현의 개념 | 해악의 대상 | | 해악의 내용 |
|----------|--------|------------|---------|
| | 해악의 객체 | 침해되는 이익 | |
| 협의 | 개인 | 인격권 등 | 침해 |
| 광의 | 집단 | 평등 | 침해 |
| 최광의 | 사회 | 공공질서 또는 안녕 | 침해의 위험성 |

207) 김현귀, 위 보고서, 12면.

208) 김현귀, 위 보고서, 13면.

209) 김현귀, 위 보고서, 13면.

210) 김현귀, 위 보고서, 14면.

211) 김현귀, 위 보고서, 15면.

212) 김현귀, 위 보고서, 15면.

213) 김현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이론과 실무 2016-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16면, <표1> 혐오표현의 개념정리.

(3) 개념요소를 통해 정의하는 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는 혐오표현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지니는 표현”이라고 정의한다.²¹⁴⁾ ‘혐오표현 리포트’는 혐오표현에 관한 국내외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4> 유엔등 혐오표현 개념 정리²¹⁵⁾

| | |
|-------------------------------------|--|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 |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
| 유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의 고무에 근거한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 인종차별을 조장·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 |
| 유엔 혐오표현 대응 행동전략·계획 | 종교, 민족, 국적, 인종, 피부색, 혈통, 성별, 기타 다른 정체성 요인에 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멸적이거나 차별적 언어 혹은 공격으로 말, 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표현 |
| 유럽인종차별위원회 일반정책권고 제15호 |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나 신념, 국적이거나 출신국가·민족, 혈통, 나이, 장애, 성, 성별,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이나 지위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비하(denigration)나 이를 옹호·증진·선동하거나, 적대·비방, 괴롭힘, 모욕, 부정적 고정관념, 낙인찍기나 위협 및 이러한 모든 표현을 정당화하는 표현 |
| 유럽평의회 성평등전략 | (성차별적 혐오표현) 성이나 성별에 기하여, 혹은 그 사람의 성적 범주를 열등하거나 근본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사람을 멸시하는 표현 |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보고서 |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

214) 이승현 외,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12면.

215) 이승현 외,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10면-11면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에는 크게 3가지, 즉 (1)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함” (2)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폭력을 선전·선동함” (3) “대상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 등을 사용한 언동”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한다.

(4) 소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혐오표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은 없다. 위에서 살펴본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들은 “특정한 집단이나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적인 공격 내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혐오표현의 정의에 대하여 일치를 볼 수 없는 것은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집단이나 그 구성원은 각 국가마다 사회적 경험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²¹⁶⁾ 그러나 혐오표현을 정의해야 그 규제의 필요성이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념 정의에 따라,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본다.²¹⁷⁾

2. 혐오표현의 규제 실태

(1) 형법적 규제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법부는 혐오표현이 기존의 법률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대응하고 있다. 우선 형사사건의 경우, 대표적으로 혐오표현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이 규정들은 피해자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혐오표현이 특정 소수자 개인이 아닌 소수자 집단 전

216) 조규범,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30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2면.

217) 이승현 외,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12면.

체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 집단 모욕죄(집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불가변적 특성 또는 집단 외부 사회에 의하여 부여된 특성을 이유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표적이 된 경우, 즉 일반 대중으로부터 명백히 구별되는 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하였다면(예컨대, 나치 정권하에 박해받은 유대인) 모욕죄를 인정하는 독일 법원의 피해자의 특정성이 다소 완화된 판단기준을 참고할만하다.²¹⁸⁾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대별되는데, 제307조²¹⁹⁾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311조²²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구성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족하다고 보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명예’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명예의 내용에 관해서는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감정의 세 가지로 보는 견해가 존재하는데, 통설과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모욕죄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일컫는 ‘외적 명예’를 명예개념으로 보고 있다.²²¹⁾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에 의하여 구별될 수 있으며,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경멸적인 의사의 표시 내지 추상적 관념을 사용한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²²²⁾

218) Vgl. BVerfG, Beschluss vom 10. 10. 1995 - 1 BvR 1476/91, BVerfGE 93, 266 (300); Winfried Brugger, The Treatment of Hate Speech in German Constitutional Law (Part I), 4 German L. J. 1, 13 (2003). 16.

219)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0)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1) 송현정 외 2인,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 171면.

222) 오영근, 형법각론(제7판), 박영사 (2022), 183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

더 나아가 2019. 3.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양형 가중 요소로서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키는 양형기준을 의결하여 2019. 7.부터 이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양형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이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게 되어있으므로 실제 양형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원이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단초로서 개인이나 특정될 수 있는 집단에 발화된 혐오표현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된 때 가중인자로서 ‘혐오와 증오감’을 고려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²²³⁾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혐오 또는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에 대한 가벌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경우에는 ‘두려움 혹은 폭력의 도발’, ‘(고의적) 괴롭힘 또는 불안, 고통’의 경우 인종·종교에 기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경우 범죄 및 질서위반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가해자가 성적 지향, 장애, 트랜스젠더로서의 지위에 근거한 적대감이 동기가 되어 범행을 한 경우 법관에게 형사사법에 따라 그 동기를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우리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혐오, 증오, 편견이라는 용어가 언급되고 있으며,²²⁴⁾ 혐오가 동기가 된 범죄를 특별히 죄질이 나쁘고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데 이번 양형기준은 이러한 판결의 경향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식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²²⁵⁾

(2) 형사특별법적 규제

우리나라는 형법 외에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형사처

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라고 설시하였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223) 홍성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혐오 또는 증오감에 의한 범행 가중처벌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2019, 92면.

224) 이해리, “한국에도 ‘혐오범죄’ 있다”, 경향신문 (2019. 5. 1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170600065.

225) 그 밖에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도 포함된다.

벌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을 통해 이들 법에 저촉되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상 보호영역에 속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제한적 방법에 의해 대응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

2015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위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됨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 및 성별에 근거한 비하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이 금지되게 되었다(제110조 제2항).²²⁶⁾ 이를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제256조). 또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50조)으로써 선거 상에서 소수자를 표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오표현을 방지할 수 있다.²²⁷⁾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금지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²²⁸⁾ 장애인차별금지법

226)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8)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상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가운데 혐오표현으로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행위는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행동, 그리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이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²²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법원을 통한 사법적 구제, 이렇게 두 방법이 존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감독기관의 장애인에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 및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할 권한을 가진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²³⁰⁾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인권위 진정에 대한 인용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법원에 의한 구제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 및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가 소멸된 경우에는 판결 전이라도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 한편, 법원은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229)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30)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이 행하여지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이러한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4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50조).

(3) 그 밖의 규제

1) 행정법적 규제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행위를 차별행위로 본다(제2조).²³¹⁾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혐오표현 중 성희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만 한정하여 차별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규제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단체, 감독기관의 장에게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44조), 경우에 따라 진정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제45조).

나. 남녀고용평등법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혐오표현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에만 한정하여 규제될 수 있다(제2조).²³²⁾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

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23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실을 해당 사업주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4조 제5항). 한편,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9조 제1항).

다. 방송법

방송법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33조).²³³⁾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²³⁴⁾ 구체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하여서는 성차별적 표현 또는 특정 성을 부정적, 회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²³⁵⁾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하여서는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²³⁶⁾ ‘신앙의 자유’와 관련하여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233)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

234)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35)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회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36)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

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2조).²³⁷⁾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도 심의토록 하고 있는데(방송법 제33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 이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 인종, 성, 연령, 직업, 종교, 신념, 장애, 계층,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방송법 제100조 제1항). 만일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방송법 제100조 제3항).

한편, 제재조치가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는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방송법 제100조 제2항).

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표시하는 광고물은 금지된다(제5조).²³⁸⁾ 시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해당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237) 제32조(신앙의 자유 존중)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방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된다.

238)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인격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²³⁹⁾ 피해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거나(제26조), 언론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침해정지·예방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제30조).

법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31조). 또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2조),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소위원회회를 구성하여 언론의 보도내용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에서는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하고(제10조의2 제1항),²⁴⁰⁾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제10조의2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239)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240) 제10조의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법적 규제

민법 제750조²⁴¹⁾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며, 제751조²⁴²⁾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혐오표현의 피해자는 명예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인정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에는 어떠한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민법상 명예훼손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률용어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통일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모욕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시함으로써,²⁴³⁾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우는 범위를 제한하면서 반면에 법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명예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체화하였다. 첫째, 제3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적 주장을 하여야 한다. 이때 주장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는 통상의 독자 또는 청취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명예훼손적 주장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만 공익성이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셋째, 민법 제764조의 민사상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연성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제3자에게 타인의 명예훼손적 사실을 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²⁴⁴⁾ 넷째,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

241)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42)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43)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실인 경우에도 성립되며,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섯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이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였다면 실질적인 손해를 증명하여야 하고, 민법 제751조에 의한 위자료 청구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여야 한다.²⁴⁵⁾ 민사상 불법행위는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형사규제보다 그 대상 행위가 넓다.²⁴⁶⁾ 더 나아가 혐오표현의 피해자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²⁴⁷⁾

3.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안

(1) 형법적 대응

1) 형사사건

① 명예에 관한 죄를 통한 혐오표현 대응

가.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과 혐오표현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 간 차이로 인하여 혐오표현의 해악을 현행 형법 내에서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에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통설과 판례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이 아닌 ‘외적 명예’로 보고 있으므로 본래 혐오표현 규제의 목적인 인간존엄성 및 인격권의 보호, 차별

244) “불법행위법에서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사회상 지위를 훼손하는 사실을 제3자에게 표명하기만 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261 판결].”

245) 현대호, “개인의 감정적 평온에 관한 불법행위: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4집, 2008, 35-36면.

246) 이승현, “학문적 비평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 법리와 쟁점”, 언론중재 제144호 2017, 54면.

247)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금지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명예에 관한 죄가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강력한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다는 데는 의문이 없으나 명예에 관한 죄는 일부 혐오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단편적인 방책에 불과하다. 혐오표현과 관련된 사건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향이 큰 가운데,²⁴⁸⁾ 모욕죄로 처벌되는 표현은 공연히 특정인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욕설이나 경멸적인 언사의 형태를 띤 혐오표현 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욕설을 동반한 혐오표현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혐오표현은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하와 같이 즉각적으로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의 형태만을 지니지 않는다. 내용 자체는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모욕감을 주지는 않지만 다소 왜곡된 역사적 기원, 사회 경제적 이유를 바탕으로 특정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불쾌감이나 편견을 드러내어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표현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후자의 예로 다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자가 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당신 나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라고 말한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내용 그 자체로는 어떠한 신념이나 사상을 근거로 들면서 언어를 순화하여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부드럽게 내보이기 때문에 전자의 표현보다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²⁴⁹⁾ 이러한 표현이 미치는 파급력이 욕설의 형태를 지닌 혐오표현보다 약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혐오표현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여도 “뿌리 깊은 차별 관행이 ‘말’로서 분출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단단한 사상적 토대를 갖고 구조적 차별을 조장하거나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²⁵⁰⁾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명예에 관한 죄로 혐오표현의 해악을 해소하려는 방식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폭력 등을 선동하는 혐오표현과 같이 정작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할 혐오표현을 포섭하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문제가 된 표현이 발생시키는 해악의 정도에 대한 치밀한 고려 없이 혐오표현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²⁵¹⁾

248)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249) 박경신/김가연,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12, 456-458면.

250) 홍성수, “어떤 혐오표현을 제한할 것인가”, 한겨레21 (2015. 9. 9.), http://h21.hani.co.kr/arti/world/world_general/40294.html.

251) 송현정, “현행법상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2022, 275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중래 법원이 모욕죄의 판단에 적용하는 기준에 혐오표현에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일단 문제된 표현 자체가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모욕적 표현인지를 판단(구성요건 해당성)하고, 다음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와 같이 표현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지(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위법성 조각)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⁵²⁾ 위법성 조각 단계에서 기준에 고려하였던 요소들(예를 들어 표현의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논리적 객관적 타당성의 정도, 표현의 정도와 수법, 전체적 맥락 등) 외에 ‘표현의 심각성 또는 반복성’, ‘발화자의 지위 또는 영향력’, ‘피해자의 취약성’, ‘대향표현 여부’ 등 추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²⁵³⁾

나. 모욕죄와 혐오표현의 개념

법원은 일부 판결에서 혐오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함에 있어 문제가 된 표현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욕설이 아닌 ‘피해자가 가진 소수자로서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경멸하는 표현’임을 밝히고(예컨대, “‘김치녀’는 여성 혐오표현의 일종”, “특정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 전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내는 발언”,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 등) 그러한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므로 모욕죄로 처벌된다고 실시하고 있다.²⁵⁴⁾ 이 외에도 달리 판결 이유에 혐오표현에 대한 적시를 하지 않고도 혐오표현에 대하여 모욕죄를 인정한 사례들이 존재한다.²⁵⁵⁾ 이러한 인정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혐오표현에 대해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판결들은 우리 법원이 혐오표현에 대해 불개입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적

252) 허문희, “모욕죄의 헌법합치적 해석에 대한 고찰”, 모욕죄의 남용과 한계, 국제인권법 연구회 (2015. 5. 22. 발표), 28-29면.

253) 송현정, 앞의 논문, 276면.

254) 최 란, “헌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 2018. 12, 66면.

255) 성소수자 혐오표현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 고소가 취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거나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난 사례가 존재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정727 공소기각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31.자 2016고단530 공소기각결정; 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1197 공소기각판결 참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모욕죄에 의하면 소수자가 아닌 다수자를 표적으로 하는 표현 또한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규제론적 측면에서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소수자 또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의 근원이 되는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²⁵⁶⁾

다. 집단 모욕죄(명예훼손죄)와 피해자 특성성

헌행법상 혐오표현 관련 조항이 부재한 관계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혐오표현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고려할 필요는 분명 존재한다. 다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혐오표현의 상당수는 소수자 개인인 특정정보보다는 소수자 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삼기 때문에 발화대상이 특정될 수 없어 상당수 처벌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는 한계가 여전히 내재한다.²⁵⁷⁾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²⁵⁸⁾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²⁵⁹⁾

“외국인과 난민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하자”와 같은 그 자체로 소수자 집단에 실질적인

256) 송현정, 앞의 논문, 278면.

257) 전창영 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방송통신연구 2018년 가을호, 2018. 10, 80-81면.

258)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259) 송현정, 앞의 논문, 279면.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직접적인 선동적 혐오표현도 위와 같은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혐오표현 규제의 맥락에서 공허한 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원이 정립한 집단 모욕죄 및 집단 명예훼손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에는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독일과 같이 특정 개인에 대한 초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여 입법적 부재가 해결되는 시점까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수자 집단을 표적으로 한 혐오표현에 집단 모욕죄 및 집단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²⁶⁰⁾

(2) 형사특별법적 대응

형사특별법적 대응은 앞서 우리나라 혐오표현의 규제 실태에서 살펴보았듯이 여러 특별형법 분야에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기존의 형사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혐오표현 규제 대응체계를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입법안들이 적지 않게 국회에서 상정되었는데 이러한 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이 법안은 2020년도에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혐오·차별이 계속되어 연예인 등 유명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응할 법적 규제가 구축되어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그에 따라 여기서는 혐오표현을 내용으로 한 정보의 삭제요청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들 가운데 형법과 관련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공공연하게 상대방을 혐오·차별하거나 혐오·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혐오 정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둘째, 벌칙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혐오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혐오 정보를 유통한 결과로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자살을 결의하도록 만든 경우, 유통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안을 마련하였다.²⁶¹⁾

260) 송현정, 앞의 논문, 280면.

261)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인격권이나 평등권의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사회 질서나 타인의 명예·권리 보호등의 공익이 우월하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 해당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이 법안이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만큼, 불법정보에 속하는 혐오표현의 구성요건인 ‘혐오·차별’의 의미는 죄형법정주의원칙 가운데에서도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좀 더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만일 이의 의미가 불충분하게 제시된다면 혐오표현의 해당 여부가 전적으로 상대방의 주관적 의사에 의존하여 결정될 수 있는데, 그 경우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혐오표현의 유통이 피해자의 자살이나 자살 결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형벌조항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고 한다. 셋째, 피해자가 자살하거나 그를 자살 결의의 상태로 만든 혐오정보의 유통에 대한 법정형이 형법 제252조인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및 자살관여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법정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시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⁶²⁾

2) 특정범죄가중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2020년도에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증오심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행위자가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인죄(보통살인죄, 존속살인죄) 등을 범할 경우,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그가 저지른 범죄에 정하여진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된다고 한다.²⁶³⁾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취지 - 증오감을 표출하는 범죄를 가중처벌 함

률안”, 2102828, (2020.8.7.) 소관위심사.

26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0 참조.

263)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464, (2020.11.18.) 소관위심사.

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 - 기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가중처벌을 위한 구성요건인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적개심이라든지 증오심은 입증과 판단이 곤란하므로,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한다. 셋째,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긴 하나, ‘사회에 대한 증오심, 적개심을 표출할 목적’이라고 하는 불분명한 목적에 해당하는 이유로 법정형을 두 배까지 가중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한다. 넷째, 이 법안이 문제로 삼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합리적인 양형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고 지적한다.²⁶⁴⁾

3) 혐오표현 규제법안

이 법률안은 2018년 2월 13일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동성에 비관을 금지하는 법률로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 같은 달 28일 철회되었지만, 혐오표현의 개념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점, 혐오표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규정한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 법률안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해지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행위로서 “1.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또는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행위, 2.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을 공개적으로 멸시·모욕·위협하는 행위, 3.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제한·배제하는 내용을 유인물, 이미지 등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인터넷, 미디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게시·배포하는 행위, 4.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264)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1 참조.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혐오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누구든지 혐오표현을 할 수 없고, 이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안 제3조 및 제18조) 특히,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안 제10조), 법원으로 하여금 혐오표현 피해자를 위해 임시조치 명령 및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혐오표현 중지·원상회복 또는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도록 한 점(안 제15조) 및 혐오표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혐오표현이 악의적인 경우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두고 있는 점(안 제16조)이 특징이었다.

본 법률안은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에 기반한 구체적 실태조사 결과 등이 부족하여, 필요할 인력 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렵고, 이로 인하여 추가 재정소요를 예측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²⁶⁵⁾

(3) 형사법 이외의 대응체계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의 심의와 관련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민간 주도의 행정 기구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조적 측면과 위원 구성에 있어서 비독립적인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²⁶⁶⁾ 2012년에 헌법재판소는 “방심위는 행정기관이며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헌법소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1헌가13). 방심위는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9인의 위원들은 방송심의소위원회,

265) 허성환,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비사법적 대응”- 캐나다의 혐오표현 규제를 중심으로 -, 법무연수원, 63면.

266) 전창영 외 3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 현황”, 방송통신연구, 2018, 80면.

통신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 디지털성범죄소위원회로 나뉘어져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해 담당하고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에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그 불법성 및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에 따라 시정 요구 및 시정명령을 행한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3호). ‘건전한 통신 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역시 방심위의 심의 및 시정 요구의 대상이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방심위의 온라인 정보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인데, 방심위의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주로 제8조 3호 바목의 ‘차별·비하 표현’ 조항에 의해 이루어진다.²⁶⁷⁾ 심의 조항 제8조 3호 바목은 2014년 1월 15일에 개정된 조항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중,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통신심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는데 비판의 핵심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다양한 표현물에 대해 전통 매체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통신 내용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2002년에 헌법재판소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이른바 ‘불온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조항을 명확성 원칙 위반 및 과잉 금지 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하여 위헌으로 결정(99헌마480)한 것이 대표적이다.²⁶⁸⁾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건전한 통신 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방심위가 마련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도,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시정 요구가 가지는 위협성을 경고한 바 있었다(2011헌가13). 방통위의 시정 요구는 행정지도 내지 권고의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위축효과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2011헌가13).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수 의견은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에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행정 기관으로서도 그

267) 전창영 외 3인, 앞의 논문, 80면.

268) 전창영 외 3인, 앞의 논문, 81면.

의미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2011헌가13).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법 기관의 판단 이전에 불법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그리고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해하는 정보를 심의하고 그에 따라 게시물 삭제, 계정차단 등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다.²⁶⁹⁾ 게다가 통신심의의 경우, 막대한 양의 정보가 교환되는 온라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초국가적 성격으로 인해 해외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게시물 작성자를 찾아내거나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²⁷⁰⁾

2) 자율규제 방안

자율규제는 현재 온라인공간에 대한 규제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방식으로, 법적 규제와의 결합을 통해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안된다. 자율규제는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므로, 법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자율규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실행 절차나 기구의 구성을 법에서 명시하거나, 약한 의미에서의 법이라 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며, 행동강령의 근거와 기준을 국가법에서 제시하고 구체적 내용을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다.²⁷¹⁾

독일 멀티미디어 사업자 자율규제기구로 독일 ‘멀티미디어 서비스제공자 자율규제’ 기구(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Diensteanbieter (FSM))가 있다. 2004년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가 미디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인 FSM를 승인하였다.²⁷²⁾ FSM은 미디어상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공급업체는 FSM의 적합성 심사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이나

269) 언론연대·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킹센터·참여연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2013. 12. 17.

270) 전창영 외 3인, 앞의 논문, 81면.

271) 황승흠, 인터넷 자율규제와 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272) 선지원, “자율규제의 유형별 사례와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2호, 2022. 11, 91면.

청소년 보호기술 제공업체는 FSM과 같은 자율규제 기관의 인증을 받는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인증서가 수여된다. 인증이 된 멀티미디어 서비스기업은 다양한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업체와 차별화된다.

FSM은 청소년 미디어보호 주간(州間)협약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청소년 미디어보호위원회(KJM) 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 (KJM)가 작성한 기준을 고려한다. FSM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하며, 개별 사례마다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 요구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이 어떠한 플랫폼으로, 어떠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의 자율규제기구로는 ‘인터넷 감시재단’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이 있다. 현재 IWF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텀블러, 야후, vodafone, 노키아,페이팔, postoffice, Macafee, 시만텍, ISPa, BBC 등 전 세계 유수의 116개의 기업과 협회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은 검색사업자, SNS 사업자, 포털서비스 제공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사업자 협회, 인터넷 보안,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다. IWF는 ① 아동 성학대 콘텐츠 이용 금지(Disrupt), ② 성학대 피해 아동 보호(Protect), ③ 아동 성학대 콘텐츠 접속 방지(Prevent), ④ 음란물, 아동 성학대 콘텐츠 삭제>Delete) 등 4개 사항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²⁷³⁾

(4) 사회·정책적 대응방안

1) 회복적 정의 운용의 활성화

혐오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과정에서 확인되는 여러 한계는 이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만든다. 그런데 범죄의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곧장 처벌강화라는 대답이 나올 만큼 처벌만능주의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은 시급하면서 쉽지 않은 것이다. 회복적 정의로써 혐오범죄에 대응하는 국가도 있다. 아래에서는 전통적 형사법의 대안으로서 회복적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혐오범죄와 회복적 정의를 연결 지으려는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273) <https://www.iwf.org.uk/about-us/why-we-exist/>

은 아니다. 그러나 혐오범죄와 회복적 정의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향후 진행될 혐오범죄에 대한 회복적 프로그램의 구성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²⁷⁴⁾

가.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특징

전통적 형사사법을 통한 혐오범죄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위의 한계는 이 시스템을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대응방안을 고민하도록 만드는데, 회복적 정의가 바로 그것이다. ‘회복적 정의’란 피해자 권리운동, 교도소 폐지운동 그리고 비공식적 사법운동(Informal Justice Movement) 등 20세기에 일어난 여러 움직임이 배경이 되어 등장한 것으로, 그 개념은 비록 이 분야의 전문가마다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복을 목적으로 관련 당사들을 참여시켜 요구를 확인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회복적 정의는 이미 그 효과를 인정받아 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을 수용하여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 변화를 꾀하려는 논의가 1990년대 후반부터 있어 왔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00년도 중반부터는 회복적 정의가 폭발적인 연구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으며, 그 관심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회복적 정의의 원리는 첫째, 회복적 정의는 범죄를 사람 혹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침해로 이해한다. 둘째, 이 같은 침해는 범죄자에게든 공동체에게든 어떠한 내용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셋째, 회복적 정의는 치유와 바로잡는 것을 추구한다. 다음으로, 전통적 형사사법과 구분되는 회복적 정의의 특징으로는 첫째, 범죄피해자는 그에게 벌어진 범죄의 해결과정에서 핵심적인 주체로 등장한다. 둘째, 회복적 정의는 회고적인 성격보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회복적 정의가 지향하는 목적은 응보와 예방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형사사법과 달리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회복이다.²⁷⁵⁾

나. 혐오범죄에서의 유용성

혐오범죄의 또 다른 대응방안인 회복적 정의가 과연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범죄 피해자는 법리의 충족을 위하여 제한되는 그 자신의 피해내용을 토로할 통로를 획득하며,

274) 김준우, “혐오범죄의 형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68면.

275) 김준우, 학위논문, 175면.

이 과정으로부터 박탈된 주체성은 회복된다. 혐오범죄 가해자의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가 다시 혐오를 표출하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하여 회복적 정의를 통한 그와의 만남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한 혐오범죄 피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²⁷⁶⁾ 둘째, 회복적 정의는 혐오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를 장려함과 동시에 재범률을 낮추어 혐오범죄에 대한 입법의 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²⁷⁷⁾

다. 회복적 정의의 실천모델

우리나라에는 혐오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회복적 정의의 실천모델로 어떠한 것이 있을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복적 정의를 향한 학계와 실무의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이 시스템의 적용반경도 넓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상의 영역에서 회복적 정의는 가정에서부터 학교 그리고 조직(예컨대, 병원이나 회사 또는 교회 등)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와 별개로 사법의 영역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에서부터 화해권고와 형사조정 등에 이르기까지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념이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며 실현되고 있다.²⁷⁸⁾ 이처럼 혐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입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실천모델이 확인되는 가운데, 아래에서는 제한된 지면을 고려하여 이들 중 하나로 2006년도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시범운영된 후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장에 명문화된 형사조정제도이다.²⁷⁹⁾ 기본적으로 형사조정이란 ‘대안적 분쟁해결’ 혹은 ‘대체적 분쟁해결’이라 소개되는 소송 외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절차적 부분은 제3자인 형사조정위원에게 위임되고, 결과적 부분은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성격의 형사조정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선, 형사조정의 신청대상은 검사와 당사자, 즉 피해자와 피의자이며, 신청기간은 검사의 기소 전 수사단계로 한정된다. 그 다음으

276) Andrew, B., “Making Restorative Justice happen for hate crime across the country“, Why me?, 2019, p.4.

277) 김준우, 학위논문, 177면.

278) 심보영,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20 참조.

279) 김지원/강동욱,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194면.

로, 형사조정이 가능한 범죄로는 재산범죄, 명예훼손범죄,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그리고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범죄 등이 있으며, 이들 범죄 가운데 검사에 의하여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그 사건이 회부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전문성과 학식 그리고 덕망을 구비한 형사조정위원의 조정과정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당사자 간의 조정이 이루어져 가령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에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각하를, 그 반대의 경우 통상의 수사절차를 진행한다.²⁸⁰⁾

2) 교육 정책적 접근

가. 혐오표현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방법 중 형사적, 민사적 규제와 같은 사법적 규제는 사후적 규제라는 점에서 그 예방효과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사전예방적인 교육이라는 점은 다수의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교나 군대와 같이 또래집단의 문화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여성혐오, 성소수자 혐오가 일종의 놀이, 문화로서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이는 특히 자아를 형성해가는 이 시기 당사자들에게 큰 고립감과 무력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 상황에서 교사가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하므로 인권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정규 교과과정으로 교육 내용을 편성하는 것, 법집행 담당자, 교사 등에 대하여는 교과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등 교육 실행의 방법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무엇보다 그 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²⁸¹⁾

나. 캐나다의 차별 및 괴롭힘 관련 정책 및 미국의 ‘스피치코드’ 도입 여부 검토

캐나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캐나다 서부의 대표적 대학 중 하나인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BC)에서는 2011년 9월부터 차별 및 괴롭힘과 관

280) 정준영, “치유와 책임, 그리고 통합: 우리가 회복적 사법을 만날때까지”, 저스티스 통권 제134권 제3호, 한국법학원, 2013, 538면; 다만,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조건 각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이하 ‘형사조정지침’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단서에 의할 경우,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를 진행하되 처벌 시 감경될 수 있다.

281) 박미숙/추지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326면.

런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괴롭힘을 「불쾌감을 느끼거나, 수렁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C주 인권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근거 중 하나 이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의견이나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BC주 인권법 제7조 제1항에는 혐오표현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사람을 차별하는 의도 또는 차별을 나타내거나 인종, 피부색, 가계, 출신지, 종교, 결혼 상태, 가족 상태, 육체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 또는 계급을 증오 또는 경멸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정책에 의하여 사실상 혐오표현을 대학 내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 정책에 근거하여 제기된 불만은 대학 내 사무소에 회부되어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다양한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표현의 자유 항목에 혐오표현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²⁸²⁾ 다음으로, 미국의 스피치 코드(speech code) 제정에 관한 논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논의가 시작된 스피치 코드는 ‘인종, 문화, 종교, 성, 성적 취향 등을 근거로, 특정 학생을 낙인찍고, 희생하게 하는 혐오표현이나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려는 언어 표현 수칙’을 말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대학교 별로 스피치코드에 대한 정의의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스피치 코드 도입을 처음 논의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우에는 ‘인종, 성, 성적 취향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낙인찍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의도하는 사람을 직접 겨냥해야 하고, 욕설이나 단어로 직접 겨냥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포괄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미시간대학교의 스피치 코드는 아예 ‘차별과 차별적 괴롭힘에 관한 미시간 대학의 방침’이라고 정하고 ‘연령, 결혼여부, 참전여부, 임신여부, 정치적 신념’ 등 대상을 세분화하며, 스피치코드의 적용 공간도 구분하며, 공간별로 세부 내용을 명시하는 등 매우 세부적으로 명문화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스피치 코드 도입과 그 범위는 집단 구성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법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혐오표현과 관련

282) 허성환, 앞의 논문, 74-75면.

하여 사회과교육에서 스피치 코드 도입 논의를 할 때에는,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스피치 코드를 정할 수 있는가, 그 범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²⁸³⁾

4. 소결

지금까지 혐오표현의 규제 및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혐오표현의 규제 실태는 크게 형법적 규제, 형사특별법적 규제, 행정법 및 민법적 규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규제에 대한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로 인해 형법적 규제 형태에서는 모욕죄와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해석상 문제, 집단모욕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및 이에 따른 입법론 등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쟁점이 남아있다.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자들은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특징이 필요하지만 혐오표현은 특징이 없음에도 처벌되는 문제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예훼손을 삭제한다면 혐오발언 처벌의 정당성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만일 처벌법이 제정되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되고 판결시에 혐오의 범위에 대해서도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법원(판사)의 재량에 맡기면 법원(판사)의 생각에 좌우될 염려가 있다고 한다. 법률규정이 대체로 추상적이긴 하지만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형사법 규정은 명확한 경우에 속하고 피해자가 분명히 확인되지만 욕설이나 발언의 경우 시대에 따라 다르고 편차가 커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반면, 혐오표현규제 찬성론자들은 유럽에서의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는 형사법적 폐지를 말하는 것이고,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말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많은 나라가 표현의 자유에 혐오표현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혐오표현의 대상은 소수자인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외국인, 미성년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집단들은 소수자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권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코미디언들이 특정 인물이나 단체 등을 풍자할 때 혐오표현이 다소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표

283) 이종일,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과 논쟁 범위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2016, 1-18면.

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한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시대에 따라 도덕의 내용과 수준은 달라져 왔고 도덕 중 어떠한 내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할 것인지도 자주 변해 왔다. 도덕과 형법은 사회의 인식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하는 것이며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는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낫다고 판시하였다.²⁸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며, 혐오표현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인권침해의 결과가 초래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헌법은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²⁸⁵⁾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집단과 개인에게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민주국가는 혐오표현 규제법을 갖고 있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혐오표현 대상으로서 소수자만을 명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만을 명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혐오표현의 해악은 그 대상이 다수일지라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혐오표현의 주된 피해자가 사회적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수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 법적 규제를 고려한다면 혐오표현의 개념정의는 중립적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의 입법례도 중립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표현내용에 근거한 규제는 엄격심사를 받는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표현행위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거의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미국에서도 일정한 사항(예컨대 음란, 명예훼손, 즉각적인 폭력적 반응을 유발하는 언사)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그 구성원에게 가하는 해악을 고려할 때 법적 규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284) 헌재 2019.11.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참조.

285) 정 완, “사이버공간상 혐오표현 규제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23호 제3권, 2022, 429면.

제4절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1. 개요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²⁸⁶⁾(이하 ‘디지털서비스법’이라고 함)은 불법 콘텐츠의 확산으로부터 디지털 공간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마련된 통일법이다. 동 규정은 소셜미디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 등을 규율하며, 이 중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중개서비스(VLOP 및 VLOSE)는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⁸⁷⁾

- ① 불법제품 및 서비스의 온라인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특별 의무 규정
- ② 온라인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와 플랫폼이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할 의무 규정
- ③ 플랫폼이 EU법에 정의된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 사용에 기반한 타겟팅 광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보호
- ④ 성별, 인종, 종교 등 타겟팅 광고를 위한 광고 표시 및 민감한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한 특정 제한 부과
- ⑤ ‘다크 패턴’(dark patterns)이라고 불리는,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 및 관행 금지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적 위험(불법 콘텐츠의 유포, 기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젠더 기반 폭력 등)을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경감할 의무를 부과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의 적용대상은 정보사회 서비스 중, 중개서비스 제공자 또는 사업자이다.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다시 단순 전달(mere conduit), 캐싱(caching), 호스

286) 정식명칭은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이다.

287) 동법에 대한 개관은 Folkert Wilman,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 An Overview, European Commission, 2021 참조.

팅(hosting),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 온라인 검색엔진(online search engine),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으로 구분된다. 동 규정은 2023년 8월 25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에 발효되었고,²⁸⁸⁾ 2024년 2월 17일부터는 다른 기업에도 전면 적용된다.

한편, 디지털서비스법은 디지털·미디어 상의 위법한 내용의 콘텐츠를 가짜뉴스(허위정보), 혐오·차별표현, 인격권 침해 표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불법 콘텐츠'로 통칭한다. 불법 콘텐츠는 그 자체로 또는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활동과 관련하여 '유럽 연합법 또는 회원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정보'로 정의된다.

<표 3-5> 디지털서비스법상 증개서비스 사업자별 의무²⁸⁹⁾

| 사업자 구분 | 불법 콘텐츠 관련 대응 | 투명성 보고 사항 |
|---------------------------------------|--|---|
| 증개서비스 일반 | -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접근차단, 비활성화 등) - 의사소통을 위한 연락창구, 법률대리인 지정, 불법 콘텐츠에 대한 약관상의 제한에 관한 정보 제공 | -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 명령 건수, 신고 건수, 콘텐츠 조정 수행 내용 등 |
| 호스팅 (추가 의무) | -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메커니즘) 마련 - 범죄혐의 통보 | |
| 온라인 플랫폼 (추가 의무) | - 내부 불만처리 시스템 제공 - 재판 외 분쟁해결 정보 제공 - 부당한 이용행위(빈번한 불법 콘텐츠 제공)에 대한 서비스이용 중단(정지) 조치 | - 추가 투명성 보고의무(재판 외 분쟁해결 건수, 비율 및 결과,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이용중단, 정지 조치 건수 등) |
|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추가 의무) | - 불법 콘텐츠로 인한 위험(구조적 위험)에 대한 평가 - 평가된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 - 독립적인 감사, 준법감시 부서 설치 | - 추가 투명성 보고의무(불법 콘텐츠 대응 인력, 해당 직원의 자격, 해당 직원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지원 등) |

288) 대상 사업자는 Alibaba AliExpress, Amazon Store, Apple AppStore, Booking.com, Facebook, Google Shopping, Instagram, Twitter, Wikipedia, YouTube 등 온라인 플랫폼 17개 업체, Bing, Google Search 등 온라인 검색엔진 2개 업체, 총 19개 업체이다.

289) 여기서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별 의무를 중심으로 도표를 구성하였다. 규정에 따른 사업자별 전체 의무를 도표화한 것으로는 European Commission, Study on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Digital Markets Act and their possible impact on research, 2022, p. 12 참조.

2. 적용대상과 범위

(1) 목적 및 적용범위

EU 디지털서비스법은 유럽연합 내에서 제공되는 온라인상 중개서비스(intermediary services)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규정한다(제1조). 디지털서비스법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가 유럽연합 내에 소재하거나 이용자의 사업장이 유럽연합 내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는 고려되지 않는다(제2조). 디지털서비스법은 우선 모든 중개서비스에 적용되는 의무를 정하고, 호스팅,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cumulative obligations)를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1 Subject matter</p> <p>1. The aim of this Regul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for intermediary services by setting out harmonised rules for a safe, predictable and trusted online environment that facilitates innovation and in which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harter, including the principle of consumer protection, are effectively protected.</p> <p>2. This Regulation lays down harmonised rules on the provision of intermediary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In particular, it establishes:</p> <p>(a) a framework for the conditional exemption from liability of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p> <p>(b) rules on specific due diligence obligations tailored to certain specific categories of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p> <p>(c) rules on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Regulation, including as regards the cooperation of and coordination between the competent</p> | <p>제1조 적용대상</p> <p>1. 본 규정의 목적은 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보호 원칙을 포함한 유럽 헌장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들이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안전하면서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정함으로써, 중개서비스를 위한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에 기여하는 것이다.</p> <p>2. 본 규정은 단일시장의 중개서비스 제공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정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한다.</p> <p>(a)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조건부 면책에 관한 규정;</p> <p>(b) 특정 범주의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특정한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p> <p>(c)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본 규정의 실행 및 집행에 관한 규정.</p> |

| | |
|---|---|
| <p>authorities.</p> <p>Article 2 Scope</p> <p>1.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intermediary services offered to recipients of the service that have their place of establishment or are located in the Union, irrespective of where the providers of those intermediary services have their place of establishment.</p> <p>2. This Regulation shall not apply to any service that is not an intermediary service or to any requirements imposed in respect of such a service, irrespective of whether the service is provided through the use of an intermediary service.</p> | <p>제2조 적용범위</p> <p>1. 본 규정은,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유럽연합에 소재지를 두거나 위치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중개서비스에 적용한다.</p> <p>2. 본 규정은, 중개서비스의 이용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개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또는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
|---|---|

(2) 적용대상 및 주요 용어

본 규정은 유럽연합의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중개서비스의 책임을 정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유럽연합 내에서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우선 ‘유럽연합 내에서의 서비스의 제공’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 ‘유럽연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유럽연합과의 상당한 관련’은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거나 일정한 사실적인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유럽연합 간의 관련을 말한다. 규정은 그와 같은 사실적인 기준의 예시로 ①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서 그 인구 대비 상당한 수의 서비스 이용자의 존재 또는 ② 하나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지향을 들고 있다.

‘중개서비스’는 ‘정보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 중 하나로서, ①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통신망 내 전송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 제공으로 구성된 ‘단순 전달’(mere conduit) 서비스, ②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통신망 내 전송으로 구성되는 ‘캐싱’(caching) 서비스, ③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 시 제공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된 ‘호스팅’ 서비스의 3가지로 구분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중에게 정보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로, ‘온라인 검색엔진’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실행하기 위하여 질문의 입력을 허용하고, 요청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발견된 형식으로 그 결과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로 정의된다.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검색엔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또는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이라고 한다. 가령,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호스팅 서비스의 한 형태이므로, 호스팅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의 적용을 받고, 추가적인 의무도 부담한다.

동 규정은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규정하는데,²⁹⁰⁾ 여기서는 특히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선 규정은 ‘불법 콘텐츠’를 그 자체로 또는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활동과 관련하여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정보로 정의한다. 즉, 불법 콘텐츠를 허위정보(가짜뉴스), 혐오표현(모욕, 차별), 인격권 침해 정보 등과 같이 구체적 유형을 구분 정의하지 않고,²⁹¹⁾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콘텐츠 조정’이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불법 콘텐츠나 자신의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탐지, 식별 및 대응하기 위하여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불법 콘텐츠 또는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등급 강등, 유통 금지, 접근 금지, 제거와 같은 이용 가능성, 가시성 및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이용자

290) 동 규정은 종래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던 규제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아래에서 보듯이, 규정은 사업자별로 단계적, 중첩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대규모 사업자의 경우 위험평가 및 경감조치를 스스로 수행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종래의 EU법에서 취하지 않았던 규제 체계를 도입하였다. Andrej Savin, The EU Digital Services Act: Towards a More Responsible Internet, Copenhagen Business School Law Research Paper Series No. 21-04, Journal of Internet Law, 2021, p. 14-15. 한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으로 EU 차원에서 마련된 행동규범으로 ‘허위조작정보 대응 실천강령’(Code of practice against disinformation)이 있다. 동 강령은 2018년 제정되었고, 2022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ode-practice-disinformation>). 이는 허위조작정보의 대응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자율규제적 접근방식(self-regulatory approach)을 취하고 있다(Sharon Galantino, How Will the EU Digital Services Act Affect the Regulation of Disinformation?, 20:1 SCRIPTed 89 (2023), p. 95f.).

291) 규정 자체로는 어떠한 정보가 유해한지 또는 불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Aina Turillazzi/Mariarosaria Taddeo/Luciano Floridi/Federico Casolari, The digital services act: an analysis of its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Law, Innovation and Technology, 15:1, p. 94.

계정의 삭제 또는 중지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포함된다.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3 Definitions</p> <p>For the purpose of this Regulat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p> <p>(a) ‘information society service’ means a ‘service’ as defined in Article 1(1), point (b), of Directive (EU) 2015/1535;</p> <p>(b) ‘recipient of the service’ means any natural or legal person who uses an intermediary service, in particular for the purposes of seeking information or making it accessible;</p> <p>(c) ‘consumer’ means any natural person who is acting for purposes which are outside his or her trade, business, craft, or profession;</p> <p>(d) ‘to offer services in the Union’ means enabling natural or legal persons in one or more Member States to use the services of a provider of intermediary services that has a substantial connection to the Union;</p> <p>(e) ‘substantial connection to the Union’ means a connection of a provider of intermediary services with the Union resulting either from its establishment in the Union or from specific factual criteria, such a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significant number of recipients of the service in one or more Member States in relation to its or their population; or - the targeting of activities towards one or more Member States; <p>(f) ‘trader’ means any natural person, or any legal person irrespective of whether it is privately or publicly owned, who is acting, including through any person acting in his</p> | <p>제3조 정의</p> <p>본 규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p> <p>(a) ‘정보 사회 서비스’는 지침 (EU) 2015/1535 제1조 제1항 (b)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p> <p>(b) ‘서비스 이용자’는, 특히 정보를 찾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p> <p>(c) ‘소비자’는 자신의 거래, 사업, 공정 또는 직업 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자연인을 말한다;</p> <p>(d) ‘유럽연합 내에서의 서비스의 제공’은,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이 유럽연합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p>(e) ‘유럽연합과의 상당한 관련’은,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거나 다음의 예와 같은 사실적인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유럽연합 간의 관련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 이상의 회원국에 그 인구 대비 상당한 수의 서비스 이용자; 또는 - 하나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지향. <p>(f) ‘사업자’는 거래, 사업, 공정 또는 직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활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사법인과 공법인 포함)을 말한다;</p> |

or her name or on his or her behalf, for purposes relating to his or her trade, business, craft or profession;

(g) 'intermediary service' means one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 a 'mere conduit' service, consisting of the transmission in a communication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or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communication network;

(ii) a 'caching' service, consisting of the transmission in a communication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involving the automatic, intermediate and temporary storage of that information, performed for the sole purpose of making more efficient the information's onward transmission to other recipients upon their request;

(iii) a 'hosting' service, consisting of the storage of information provided by, and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f the service;

(h) 'illegal content' means any information that, in itself or in relation to an activity, including the sale of product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is not in compliance with Union law or the law of any Member State which is in compliance with Union law, irrespective of the precise subject matter or nature of that law;

(i) 'online platform' means a hosting service that,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f the service, stores and disseminates information to the public, unless that activity is a minor and purely ancillary feature of another service or a minor functionality of the principal service and, for objective and technical reasons, cannot be used without that other service, and

(g) '중개서비스'는 다음의 정보 사회 서비스 중 하나를 말한다:

(i)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통신망 내 전송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 제공으로 구성된 '단순 전달' 서비스;

(ii)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통신망 내 전송으로 구성되는 '캐싱(caching)'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전송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는, 해당 정보의 자동화된, 중간적이며 임시적인 저장을 포함한다;

(iii) 서비스 이용자가 요청 시 제공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된 '호스팅' 서비스;

(h) '불법 콘텐츠'는, 그 자체로 또는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법의 구체적 대상이나 성질에 관계없이,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i)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중에게 정보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를 말한다. 그러나 해당 활동이 다른 서비스에 대하여 종속되고 순수하게 부수적인 활동이거나 또는 주된 서비스에 종속된 기능이며,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이유로 다른 서비스 없이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서비스에 그 활동 또는 기능을 통합한 것이 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

| | |
|--|--|
| <p>the integration of the feature or functionality into the other service is not a means to circumvent the applicability of this Regulation;</p> | <p>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된다;</p> |
| <p>(j) ‘online search engine’ means an intermediary service that allows users to input queries in order to perform searches of, in principle, all websites, or all websites in a particular language, on the basis of a query on any subject in the form of a keyword, voice request, phrase or other input, and returns results in any format in which information related to the requested content can be found;</p> | <p>(j) ‘온라인 검색엔진’이란, 이용자에게 키워드, 음성 요청, 문구 또는 그밖의 입력 방식에 의한 일정한 주제에 관한 질문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모든 웹사이트에서 또는 특정한 언어로 모든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실행하기 위하여 질문의 입력을 허용하고, 요청된 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발견된 형식으로 그 결과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를 말한다.</p> |
| <p>(k) ‘dissemination to the public’ means making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request of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who provided the information, to a potentially unlimited number of third parties;</p> | <p>(k) ‘대중에의 배포’는 정보를 제공한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잠재적으로 무제한의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p> |
| <p>(l) ‘distance contract’ means ‘distance contract’ as defined in Article 2, point (7), of Directive 2011/83/EU;</p> | <p>(l) ‘원격지 계약’은 지침 2011/83/EU 제2조 제 7항에서의 계약을 말한다;</p> |
| <p>(m) ‘online interface’ means any software, including a website or a part thereof, and applications, including mobile applications;</p> | <p>(m) ‘온라인 인터페이스’는, 웹사이트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p> |
| <p>(n) ‘Digital Services Coordinator of establishment’ means the Digital Services Coordinator of the Member State where the main establishment of a provider of an intermediary service is located or its legal representative resides or is established;</p> | <p>(n) ‘설립지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되거나 그 법률대리인이 거주하거나 설립된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를 말한다;</p> |
| <p>(o) ‘Digital Services Coordinator of destination’ means the Digital Services Coordinator of a Member State where the intermediary service is provided;</p> | <p>(o) ‘목적지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는 중개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를 말한다;</p> |
| <p>(p) ‘active recipient of an online platform’ means a recipient of the service that has</p> | <p>(p)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 이용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정보의 호스팅을 요청하거나 또</p> |

| | |
|---|---|
| <p>engaged with an online platform by either requesting the online platform to host information or being exposed to information hosted by the online platform and disseminated through its online interface;</p> <p>(q) ‘active recipient of an online search engine’ means a recipient of the service that has submitted a query to an online search engine and been exposed to information indexed and presented on its online interface;</p> <p>(r) ‘advertisement’ means information designed to promote the message of a legal or natural person, irrespective of whether to achieve commercial 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presented by an online platform on its online interface against remuneration specifically for promoting that information;</p> <p>(s) ‘recommender system’ means a fully or partially automated system used by an online platform to suggest in its online interface specific information to recipients of the service or prioritise that information, including as a result of a search initiated by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or otherwise determining the relative order or prominence of information displayed;</p> <p>(t) ‘content moderation’ means the activities, whether automated or not, undertaken by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that are aimed, in particular, at detecting, identifying and addressing illegal content or information incompatible with their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by recipients of the service, including measures taken that affect the availability,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of that illegal content or that information, such as demotion, demonetisation, disabling of</p> | <p>는 온라인 플랫폼이 호스팅한 정보에 노출되고 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배포되는 것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관계를 맺은 서비스 이용자를 말한다.</p> <p>(q) ‘온라인 검색엔진의 활성 이용자’는, 온라인 검색엔진에 질문을 입력하고 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 및 제공된 정보에 노출된 서비스 이용자를 말한다.</p> <p>(r) ‘광고’는,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의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메시지를 홍보하도록 설계된 정보로서,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해당 정보의 홍보로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한 정보를 말한다;</p> <p>(s) ‘추천 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서비스 이용자에게 특정 정보를 제안하거나 그러한 정보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 사용하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말하며, 여기에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검색결과 또는 표시된 정보의 상대적 순서 또는 중요도의 결정이 포함된다;</p> <p>(t) ‘콘텐츠 조정’이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불법 콘텐츠나 자신의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탐지, 식별 및 대응하기 위하여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하는, 자동화되거나 또는 자동화 되지 않은, 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그러한 불법 콘텐츠 또는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등급 강등, 유통 금지, 접근 금지, 제거와 같은 이용 가능성, 가시성 및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이용자 계정의 삭제 또는 중지와 같이 서비스 이용자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포</p> |
|---|---|

| | |
|--|--|
| <p>access to, or removal thereof, or that affect the ability of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 to provide that information, such as the termination or suspension of a recipient's account;</p> <p>(u) 'terms and conditions' means all clauses, irrespective of their name or form, which gover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der of intermediary services and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p> | <p>함된다;</p> <p>(u) '약관'은,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조항을 말한다.</p> |
|--|--|

3.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과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명령

(1) 면책 요건

디지털서비스법은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요건을 정하고 있다. 중개서비스 제공자별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단순 전달 서비스

우선 '단순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① 전송을 개시하지 않고, ② 전송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며, ③ 전송에 포함된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보는 전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않아야 한다.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4 'Mere conduit'</p> <p>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transmission in a communication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or the provision of access to a communication network, the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the information transmitted or accessed, on condition that the provider:</p> <p>(a) does not initiate the transmission;</p> <p>(b) does not select the receiver of the transmission; and</p> | <p>제4조 '단순 전달'</p> <p>1.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통신망 내 전송 또는 통신망에 대한 접근 제공으로 구성된 정보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전송되는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a) 전송을 개시하지 않을 것</p> <p>(b) 전송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p> |

| | |
|---|---|
| <p>(c) does not select or modify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ransmission.</p> <p>2. The acts of transmission and of provision of acces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automatic, intermediate and transient storage of the information transmitted in so far as this takes place for the sole purpose of carrying out the transmission in the communication network, and provided that the information is not stored for any period longer than is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transmission.</p> <p>3.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for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 Member State's legal system, to require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p> | <p>(c) 전송에 포함된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을 것</p> <p>2. 제1항에 언급된 전송 및 접근 제공 행위에는, 통신망에서 전송할 목적으로만 수행되는 전송된 정보의 자동화된, 중간적이면서 일시적인 저장이 포함되며, 정보는 전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저장되지 않아야 한다.</p> <p>3. 본 조항은 법원 또는 행정당국이 회원국의 법률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를 방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
|---|---|

2) 캐싱 서비스

캐싱 서비스의 경우에도 단순 전달 서비스에 비해 강화된 조건 하에서 정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그 요건은 총 5가지로, 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 ② 정보에 대한 접근 조건을 준수할 것, ③ 업계에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보의 업데이트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④ 정보이용에 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업계에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⑤ 전송의 출처에서 정보가 네트워크에서 제거되었거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비활성화되었거나, 법원 또는 행정당국이 그러한 제거 또는 비활성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었을 때, 저장된 정보에의 접근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등이다.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5 'Caching'</p> <p>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transmission in a communication network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the</p> | <p>제5조 캐싱</p> <p>1.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통신망 내 전송으로 구성된 정보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오직 다른 이용자에</p> |

| | |
|--|--|
| <p>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the automatic, intermediate and temporary storage of that information, performed for the sole purpose of making more efficient or more secure the information's onward transmission to other recipients of the service upon their request, on condition that the provider:</p> <p>(a) does not modify the information;</p> <p>(b) complies with conditions on access to the information;</p> <p>(c) complies with rules regarding the updating of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a manner widely recognised and used by industry;</p> <p>(d) does not interfere with the lawful use of technology, widely recognised and used by industry, to obtain data on the use of the information; and</p> <p>(e)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nformation it has stored upon obtaining actual knowledge of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at the initial source of the transmission has been removed from the network, or access to it has been disabled, or that a judicial or an administrative authority has ordered such removal or disablement.</p> <p>2.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for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 Member State's legal system, to require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p> | <p>게 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보다 안전하게 전송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의 자동화되고, 중간적이면서 임시적인 저장에 대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a)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것</p> <p>(b) 정보에 대한 접근 조건을 준수할 것</p> <p>(c) 업계에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는 방식으로 명시된 정보의 업데이트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p> <p>(d) 정보이용에 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업계에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는 기술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p> <p>(e) 전송의 출처에서 정보가 네트워크에서 제거되었거나,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비활성화 되었거나, 법원 또는 행정당국이 그러한 제거 또는 비활성화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되었을 때 저장된 정보에의 접근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p> <p>2. 본 조항은 법원 또는 행정당국이 회원국의 법률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를 방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
|--|--|

3) 호스팅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불법행위 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또는 불법 콘텐츠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것

- ② 이에 대해 알거나 인지하였을 때, 불법 콘텐츠에의 접근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6 Hosting</p> <p>1. Where an information society service is provided that consists of the storage of information provided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the servic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the information stored at the request of a recipient of the service, on condition that the provider:</p> <p>(a) does not have actual knowledge of illegal activity or illegal content and, as regards claims for damages, is not aware of facts or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illegal activity or illegal content is apparent; or</p> <p>(b) upon obtaining such knowledge or awareness, acts expeditiously to remove or to disable access to the illegal content.</p> <p>2.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here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is acting under the authority or the control of the provider.</p> <p>3. Paragraph 1 shall not apply with respect to the liability under consumer protection law of online platforms that allow consumers to conclude distance contracts with traders, where such an online platform presents the specific item of information or otherwise enables the specific transaction at issue in a way that would lead an average consumer to believe that the information, or the product or service that is the object of the transaction, is provided either by the</p> | <p>제6조 호스팅</p> <p>1.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된 정보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a) 불법행위 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해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또는 불법 콘텐츠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것</p> <p>(b) 이에 대해 알거나 인지하였을 때, 불법 콘텐츠에의 접근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p> <p>2. 제1항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의 감독 또는 통제 하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3. 제1항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격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균적인 소비자에게 그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자체 또는 플랫폼의 감독 또는 통제 하에 활동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되는 특정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거래의 대상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온라인 플랫폼 자체 또</p> |

| | |
|--|---|
| <p>online platform itself or by a recipient of the service who is acting under its authority or control.</p> | <p>는 플랫폼의 감독 또는 통제 하에 활동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도 또한 같다.</p> |
| <p>4. This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possibility for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 Member State's legal system, to require the service provider to terminate or prevent an infringement.</p> | <p>4. 본 조항은 법원 또는 행정당국이 회원국의 법률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를 방지 또는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

(2)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 부존재

디지털서비스법은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전송 또는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불법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제8조). 즉,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다.²⁹²⁾ 또한 규정에 따르면,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탐지, 식별 및 제거 또는 접속차단 하기 위해 자체 조사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제7조).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7 Voluntary own-initiative investigations and legal compliance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shall not be deemed ineligible for the exemptions from liability referred to in Articles 4, 5 and 6 solely because they, in good faith and in a diligent manner, carry out voluntary own-initiative investigations into, or take other measures aimed at detecting, identifying and removing, or disabling access to, illegal content, or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Union law and national law in compliance with Union law, including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is Regulation.</p> | <p>제7조 자발적인 자체 조사 및 법률 준수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신의를 가지고 성실한 방법으로 불법 콘텐츠를 탐지, 식별 및 제거 또는 접속 차단을 위한 자발적인 자체 조사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거나, 본 규정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유럽연합법 및 회원국의 국내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언급된 면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p> |

292) Caroline Cauffman/Catalina Goanta,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Consumer Protection,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12(4), 2021, p. 769.

| | |
|---|--|
| <p>Article 8 No general monitoring or active fact-finding obligations</p> <p>No general obligation to monitor the information which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transmit or store, nor actively to seek facts or circumstances indicating illegal activity shall be imposed on those providers.</p> | <p>제8조 일반적인 모니터링 또는 적극적인 사실 조사 의무의 부존재</p> <p>중개서비스 제공자가 전송 또는 저장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불법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일반적인 의무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되지 않는다.</p> |
|---|--|

(3)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명령

회원국이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때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명령에 대한 유럽연합법 또는 국내법상의 법적 근거 명시
- ②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법의 규정 또는 유럽연합법과 합치하는 국내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그 정보가 왜 불법 콘텐츠에 해당하지를 설명하는 이유 서술
- ③ 발령 기관을 나타내는 정보
- ④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정보 가령, 하나 이상의 정확한 URL 주소 및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
- ⑤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를 제공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한 정보
- ⑥ 어느 기관이 명령에 부여된 효과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관련국의 사법기관 또는 행정당국이 해당 유럽연합법 또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하나 이상의 특정 불법 콘텐츠 항목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유럽연합법에 따라 취한 조치와 조치가 취해진 시기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명령을 발한 기관 또는 명령에 명시된 다른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9 Orders to act against illegal content</p> <p>1. Upon the receipt of an order to act against one or more specific items of illegal content, issued by the relevant national</p> | <p>제9조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 명령</p> <p>1.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관련국의 사법기관 또는 행정당국이 해당 유럽연합법 또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발한 하나 이상의 특정</p> |

| | |
|--|--|
| <p>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on the basis of the applicable Union law or national law in compliance with Union law,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shall inform the authority issuing the order, or any other authority specified in the order, of any effect given to the order without undue delay, specifying if and when effect was given to the order.</p> | <p>불법 콘텐츠 항목에 대한 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유럽연합법에 따라 취한 조치와 조치가 취해진 시기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명령을 발한 기관 또는 명령에 명시된 다른 기관에 알려야 한다.</p> |
| <p>2.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when an order referred to in paragraph 1 is transmitted to the provider, it meets at least the following conditions:</p> <p>(a) that order contains the following elements:</p> <p>(i) a reference to the legal basis under Union or national law for the order;</p> <p>(ii) a statement of reasons explaining why the information is illegal content, by reference to one or more specific provisions of Union law or national law in compliance with Union law;</p> <p>(iii) information identifying the issuing authority;</p> <p>(iv) clear information enabling the provider of intermediary services to identify and locate the illegal content concerned, such as one or more exact URL and, where necessary, additional information;</p> <p>(v) information about redress mechanisms available to the provider of intermediary services and to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who provided the content;</p> <p>(vi) where applicable, information about which authority is to receive the information about the effect given to the orders;</p> <p>(b) the territorial scope of that order, on</p> | <p>2. 회원국은 제1항에 언급한 명령을 제공자에게 송달할 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p> <p>(a) 명령이 다음 요소를 포함할 것</p> <p>(i) 명령에 대한 유럽연합법 또는 국내법상의 법적 근거 명시</p> <p>(ii) 하나 이상의 유럽연합법 규정 또는 유럽연합법과 합치하는 국내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여, 그 정보가 왜 불법 콘텐츠에 해당하지를 설명하는 이유에 대한 서술</p> <p>(iii) 발령 기관을 나타내는 정보</p> <p>(iv)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불법 콘텐츠를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정보. 가령, 하나 이상의 정확한 URL 주소 및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p> <p>(v)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콘텐츠를 제공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대한 정보</p> <p>(vi) 어느 기관이 명령에 부여된 효과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p> <p>(b) 유럽 현장을 포함한 유럽연합법 및 국내</p> |

the basis of the applicable rules of Union and national law, including the Charter, and, where relevant, gener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s limited to what is strictly necessary to achieve its objective;

3. The authority issuing the order or, where applicable, the authority specified therein, shall transmit it, along with any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provider of intermediary services concerning the effect given to that order to the Digital Services Coordinator from the Member State of the issuing authority.
4. After receiving the order from th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Digital Services Coordinator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shall, without undue delay, transmit a copy of the order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o all other Digital Services Coordinators through the system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5.
5. At the latest when effect is given to the order or, where applicable, at the time provided by the issuing authority in its order,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shall inform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concerned of the order received and to the effect given to it.

Such information provided to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reasons, the possibilities for redress that exist, and a description of the territorial scope of the ord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6.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laid down in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national civil and criminal procedural law.

법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근거하여,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그 명령의 지역적 적용범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격히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

3. 명령을 발한 기관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그 명령에 명시된 기관은, 그 명령을 중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수령한 그 명령에 부여된 효과와 관련된 정보와 함께, 발령 기관의 회원국으로부터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4. 사법 또는 행정 당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후, 해당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는 부당한 지체 없이 제85조에 따라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본 조 1항에 언급된 명령의 사본을 다른 모든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에게 전송해야 한다.
5. 늦어도 명령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거나, 적용가능한 경우 발령 기관이 명령에서 정한 시기에,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의 수신자에게 받은 명령과 그에 따른 효과를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수신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제2항에 따라 이유의 진술, 존재하는 구제 가능성 및 명령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본 조항에 명시된 조건 및 요건은 국내 민사 및 형사절차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

(1) 디지털서비스법의 구조

디지털서비스법(제3장)은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과한다. 주의의무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된다. 우선 제1절에서는 모든 중개서비스에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절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어서 제3절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규정, 제4절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에 적용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자가 여러 절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의무가 중첩적으로 적용된다.²⁹³⁾

(2)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제3장 제1절)

1) 의사소통을 위한 연락창구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회원국의 감독기관인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 서비스 유럽연합 이사회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도록 단일 연락창구(single point of contact)를 마련해야 한다(제11조).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단일 연락창구를 지정해야 한다(제12조).

2) 법률대리인 지정

제3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중 하나에 본 규정의 준수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관한 권한을 갖는 법률대리인(legal representatives)을 지정해야 한다(제13조).

3) 약관상의 제한에 대한 정보제공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293) 이병준,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2021, 189면.

여 부과하는 모든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약관(terms and conditions)에 포함해야 한다(제14조). 이와 같은 정보에는 콘텐츠 조정을 목적으로 실행하는 모든 정책, 절차, 조치 및 도구에 대한 정보와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4) 투명성 보고의무

디지털서비스법은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이상 일정한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제15조).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①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8조의 불법 콘텐츠 조치명령 및 제10조의 정보제공 명령(orders to provide information)을 포함하여 회원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수를, 해당 불법 콘텐츠의 유형, 명령을 한 회원국, 명령을 발부한 당국 또는 명령에 명시된 기타 당국에 수령 사실을 알리고 명령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으로 분류한 수치
- ②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제16조(불법 콘텐츠에 대한 통지)에 따라 제출된 통지 건수, 해당 불법 콘텐츠의 유형별로 분류된 통지 건수,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가 제출한 통지 건수, 해당 조치가 법률 또는 제공자의 약관에 근거하여 취해진 것인지 구분하여 통지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여 처리된 통지 건수 및 조치에 소요된 평균 시간
- ③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자동화된 도구의 사용, 콘텐츠 조정 담당자에게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용성, 가시성 및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수와 유형,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수신자의 능력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제한에 대해 제공자의 주도하에 수행된 콘텐츠 조정에 대한 의미 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이때 보고된 정보는 불법 콘텐츠의 유형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 위반 유형, 탐지 방법 및 적용된 제한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 ④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공자의 약관에 따라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불만 건수, 추가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제20조에 따라 해당 불만의 근거, 해당 불만과 관련하여 취해진 결정, 해당 결정에 소요된 평균 시간 및 해당 결정

이 반복된 사례의 수

- ⑤ 콘텐츠 조정을 목적으로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정성적(질적) 설명, 정확한 목적에 대한 명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된 자동화된 수단의 정확성 및 오류 가능성에 대한 지표, 적용된 모든 안전장치 포함)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15 Transparency reporting obligations for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p> <p>1.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shall make publicly available, in a machine-readable format and in an easily accessible manner, at least once a year, clear, easily comprehensible reports on any content moderation that they engaged in during the relevant period. Those reports shall include, in particular, information on the following, as applicable:</p> <p>(a) for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the number of orders received from Member States' authorities including order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and 10, categorised by the type of illegal content concerned, the Member State issuing the order, and the median time needed to inform the authority issuing the order, or any other authority specified in the order, of its receipt, and to give effect to the order;</p> <p>(b) for providers of hosting services, the number of notice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categorised by the type of alleged illegal content concerned, the number of notices submitted by trusted flaggers,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the notices by differentiating whether the action was taken on the basis of the law o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vider,</p> | <p>제15조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의무</p> <p>1.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기간 동안 수행한 모든 콘텐츠 조정에 대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를 컴퓨터로 해독 가능한 형식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특히 해당되는 경우 다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p> <p>(a)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을 포함하여 회원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명령의 수를, 해당 불법 콘텐츠의 유형, 명령을 발부한 회원국, 명령을 발부한 당국 또는 명령에 명시된 기타 당국에 수령 사실을 알리고 명령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평균 시간으로 분류한 수치</p> <p>(b) 호스팅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통지 건수, 해당 불법 콘텐츠의 유형별로 분류된 통지 건수,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가 제출한 통지 건수, 해당 조치가 법률 또는 제공자의 약관에 근거하여 취해진 것인지 구분하여 통지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여 처리된 통지 건수 및 조치에 소요된 평균 시간</p> |

the number of notices processed by using automated means and the median time needed for taking the action;

(c) for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meaningful and comprehensible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moderation engaged in at the providers' own initiative, including the use of automated tools, the measures taken to provide training and assistance to persons in charge of content moderation, the number and type of measures taken that affect the availability,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recipients of the service and the recipients' ability to provide information through the service, and other related restrictions of the service; the information reported shall be categorised by the type of illegal content or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ervice provider, by the detection method and by the type of restriction applied;

(d) for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the number of complaints received through the 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der's terms and conditions and additionally, for providers of online platform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 the basis for those complaints, decisions taken in respect of those complaints, the median time needed for taking those decisions and the number of instances where those decisions were reversed;

(e) any use made of automated means for the purpose of content moderation, including a qualitative description, a specification of the precise purposes,

(c)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자동화된 도구의 사용, 콘텐츠 조정 담당자에게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가용성, 가시성 및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수와 유형,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수신자의 능력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제한에 대해 제공자의 주도하에 수행된 콘텐츠 조정에 대한 의미 있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보고된 정보는 불법 콘텐츠의 유형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 약관 위반 유형, 탐지 방법 및 적용된 제한 유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d)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공자의 약관에 따라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불만 건수, 추가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의 경우 제20조에 따라 해당 불만의 근거, 해당 불만과 관련하여 취해진 결정, 해당 결정에 소요된 평균 시간 및 해당 결정이 반복된 사례의 수

(e) 정성적 설명, 정확한 목적에 대한 명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된 자동화된 수단의 정확성 및 오류 가능성에 대한 지표, 적용된 모든 안전장치를 포함하여, 콘텐츠 조정을 목적으로 자동화된

| | |
|---|--|
| <p>indicators of the accuracy and the possible rate of error of the automated means used in fulfilling those purposes, and any safeguards applied.</p> <p>2.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that qualify as micro or small enterprises as defined in Recommendation 2003/361/EC and which are not very large online platform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3 of this Regulation.</p> | <p>수단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p> <p>2. 본 조 제1항은 권고안 2003/361/EC에 정의된 극소기업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고, 본 규정 제33조에서 말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p> |
|---|--|

(3)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적 규정(제3장 제2절)

1) 불법 콘텐츠에 대한 통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 또는 단체가 불법 콘텐츠로 판단하는 특정 항목의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제16조).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통지 제출을 활성화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제의 정보를 불법 콘텐츠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히 입증된 설명
- ② 정확한 URL 등 해당 정보의 정확한 전자적 위치(URL)에 대한 명확한 표시, 필요한 경우 콘텐츠 유형 및 특정 호스팅 서비스 유형에 맞게 조정된 불법 콘텐츠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정보
- ③ 통지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및 전자우편주소
- ④ 통지에 포함된 정보와 주장이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통지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선의의 믿음을 확인하는 진술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16 Notice and action mechanisms</p> <p>1. Providers of hosting services shall put mechanisms in place to allow any individual or entity to notify them of the</p> | <p>제16조 통지와 조치 방법</p> <p>1.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 또는 단체가 불법 콘텐츠로 판단하는 특정 항목의 정보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내에 있음</p> |

presence on their service of specific items of information that the individual or entity considers to be illegal content.

Those mechanisms shall be easy to access and user-friendly, and shall allow for the submission of notices exclusively by electronic means.

2. The mechanism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such as to facilitate the submission of sufficiently precise and adequately substantiated notices.

To that end, the providers of hosting servic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able and to facilitate the submission of notices containing all of the following elements:

- (a) a sufficiently substantiated explanation of the reasons why the individual or entity alleges the information in question to be illegal content;
- (b) a clear indication of the exact electronic location of that information, such as the exact URL or URLs, and, where necessary, additional information enabling the identification of the illegal content adapted to the type of content and to the specific type of hosting service;
- (c) the name and email address of the individual or entity submitting the notice, except in the case of information considered to involve one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s 3 to 7 of Directive 2011/93/EU;
- (d) a statement confirming the bona fide belief of the individual or entity submitting the notice that the information and allegations contained therein are accurate and complete.

3. Notices referred to in this Article shall be

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접근이 용이하고, 이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하며 전적으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통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은 충분히 정확하고 적절하게 입증된 통지의 제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통지 제출을 활성화하고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개인 또는 단체가 문제의 정보를 불법 콘텐츠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히 입증된 설명
- (b) 정확한 URL 등 해당 정보의 정확한 전자적 위치(URL)에 대한 명확한 표시, 필요한 경우 콘텐츠 유형 및 특정 호스팅 서비스 유형에 맞게 조정된 불법 콘텐츠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 정보
- (c) 지침 2011/93/EU의 제3조 내지 제7조에 언급된 위반 중 하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지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및 전자우편주소;
- (d) 통지에 포함된 정보와 주장이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통지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선의의 믿음을 확인하는 진술

3. 본 조에서 언급된 통지는 호스팅 서비스

| | |
|--|---|
| <p>considered to give rise to actual knowledge or awareness for the purposes of Article 6 in respect of the specific item of information concerned where they allow a diligent provider of hosting services to identify the illegality of the relevant activity or information without a detailed legal examination.</p> | <p>제공자가 상세한 법적 검토 없이도 관련 활동 또는 정보의 불법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특정 항목과 관련하여 제6조의 목적상 실제의 인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된다.</p> |
| <p>4. Where the notice contains the electronic contact information of the individual or entity that submitted it, the provider of hosting services shall, without undue delay, send a confirmation of receipt of the notice to that individual or entity.</p> | <p>4. 통지에 통지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의 전자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경우,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통지 수신 확인을 보내야 한다.</p> |
| <p>5. The provider shall also, without undue delay, notify that individual or entity of its decis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to which the notice relate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possibilities for redress in respect of that decision.</p> | <p>5. 서비스 제공자는 또한 해당 통지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결정을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구제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
| <p>6. Providers of hosting services shall process any notices that they receive under the mechanisms referred to in paragraph 1 and take their decisions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to which the notices relate, in a timely, diligent, non-arbitrary and objective manner.</p> | <p>6.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에 따라 수신한 모든 통지를 처리하고, 통지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적시에 자의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p> |
| <p>Where they use automated means for that processing or decision-making, they shall include information on such use in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5.</p> | <p>해당 처리 또는 의사 결정을 위해 자동화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제5항에 언급된 통지에 해당 사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p> |

2) 이유의 제시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법 콘텐츠이거나 이용약관을 위반한다는 는다는 이유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제17조).

- ① 콘텐츠 제거, 콘텐츠 액세스 비활성화 또는 콘텐츠 등급 강등 등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특정 정보 항목의 공개를 제한하는 행위

- ② 금전적 지급의 정지, 해지 또는 기타 제한
- ③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종료
- ④ 서비스 계정 이용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3) 범죄혐의의 통보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관련 회원국의 법 집행기관 또는 사법당국에 즉시 이러한 혐의를 알려야 하며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18조).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18 Notification of suspicions of criminal offences</p> <p>1. Where a provider of hosting services becomes aware of any information giving rise to a suspicion that a criminal offence involving a threat to the life or safety of a person or persons has taken place, is taking place or is likely to take place, it shall promptly inform the law enforcement or judicial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or Member States concerned of its suspicion and provide all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p> <p>2. Where the provider of hosting services cannot identify with reasonable certainty the Member State concerned, it shall inform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 in which it is established or where its legal representative resides or is established or inform Europol, or both.</p> <p>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Member State concerned shall be the Member State in which the offence is suspected to have taken place, to be</p> | <p>제18조 범죄혐의의 통보</p> <p>1.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회원국 또는 관련 회원국의 법 집행기관 또는 사법당국에 즉시 이러한 혐의를 알려야 하며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p> <p>2.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회원국을 합리적으로 확실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거주하거나 설립된 회원국의 법 집행기관에 알려거나 유로폴(Europol)에 알려야 한다.</p> <p>본 조항의 목적상, 관련 회원국이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국 또는 의심되는 범죄자가 거주하거나 위치한</p> |

| | |
|---|---|
| <p>taking place or to be likely to take place, or the Member State where the suspected offender resides or is located, or the Member State where the victim of the suspected offence resides or is located.</p> | <p>회원국 또는 의심되는 범죄의 피해자가 거주하거나 위치한 회원국을 말한다.</p> |
|---|---|

(4)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추가적 규정(제3장 제3절)²⁹⁴

1)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

온라인 플랫폼²⁹⁵은 통지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불법 콘텐츠를 구성하거나 이용약관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내린 다음 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을 제공해야 한다(제20조).

- ①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 또는 비활성화하거나 공개를 제한하는 결정
- ②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기로 한 결정
- ③ 이용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결정
- ④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을 일시 중단, 종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한하는 결정

2) 재판외 분쟁 해결 방법

제20조에 언급된 결정에 따라 통지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자는,

294) 본 절은, 제24조 제3항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권고 2003/361/EC에 정의된 극소기업 및 소기업(micro and small enterprises)으로 인정되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9조).

295)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대중에게 정보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포섭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있다. 규정 초안 당시 산업계에서는 통상 이용자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IT 기반서비스 사업자(IT infrastructure services)나 정보를 보관하기는 하지만 배포는 하지 않는 클라우드 기반의 호스팅 사업자(cloud-based hosting services)를 명시적으로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Ilaria Buri/ Joris van Hoboken,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proposal: a critical overview, Digital Services Act (DSA) Observatory, 2021, p. 18-19.

해당 결정과 관련된 분쟁(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은 불만 포함)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인증된 재판외 분쟁 해결 기관(out-of-court dispute settlement body)을 선택할 수 있다(제21조). 온라인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자가 재판외 분쟁 해결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조치 및 보호

온라인 플랫폼은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를 빈번히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사전 경고를 보낸 후 중단해야 한다(제23조). 중단을 결정할 때,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의 특성을 포함한, 부당한 이용행위의 심각성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23 Measures and protection against misuse</p> <p>1. Providers of online platforms shall suspend,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after having issued a prior warning, the provision of their services to recipients of the service that frequently provide manifestly illegal content.</p> <p>2. Providers of online platforms shall suspend,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nd after having issued a prior warning, the processing of notices and complaints submitted through the notice and action mechanisms and internal complaints-handling systems referred to in Articles 16 and 20, respectively, by individuals or entities or by complainants that frequently submit notices or complaints that are manifestly unfounded.</p> <p>3. When deciding on suspension, providers of online platforms shall assess, on a case-by-case basis and in a timely, diligent and objective manner, whether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the individual,</p> | <p>제23조 부당한 이용행위에 대한 조치 및 보호</p> <p>1. 온라인 플랫폼은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를 빈번히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합리적인 기간 동안 사전 경고를 보낸 후 중단해야 한다.</p> <p>2. 온라인 플랫폼은 명백히 근거가 없는 통지 또는 불만을 빈번히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불만 제기자가, 각각 제16조 및 제20조에 언급된 통지 및 조치 메커니즘과 내부 불만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통지 및 불만 처리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사전 경고를 한 후 중단해야 한다.</p> <p>3. 중단을 결정할 때,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서 명백한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신자, 개인, 법인 또는 신고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p> |

| | |
|--|---|
| <p>the entity or the complainant engages in the misu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taking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apparent from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rovider of online platforms. Those circumstances shall include at least the following:</p> <p>(a) the absolute numbers of items of manifestly illegal content or manifestly unfounded notices or complaints, submitted within a given time frame;</p> <p>(b) the relative proportion thereof in relation to the total number of items of information provided or notices submitted within a given time frame;</p> <p>(c) the gravity of the misuses, including the nature of illegal content, and of its consequences;</p> <p>(d) where it is possible to identify it, the intention of the recipient of the service, the individual, the entity or the complainant.</p> <p>4. Providers of online platforms shall set out, in a clear and detailed manner, in their terms and conditions their policy in respect of the misus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and shall give examples of the facts and circumstances that they take into account when assessing whether certain behaviour constitutes misuse and the duration of the suspension.</p> | <p>부당한 이용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사례별로 적시에 성실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는 최소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p> <p>(a) 주어진 기간 내에 제출된 명백히 불법적인 콘텐츠 또는 명백히 근거가 없는 통지 또는 불만 사항의 절대 수</p> <p>(b) 주어진 기간 내에 제출된 총 정보 제공 또는 통지 항목 수에 대한 상대적 비율</p> <p>(c) 불법 콘텐츠의 특성을 포함한, 부당한 이용행위의 심각성과 그 결과</p> <p>(d)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수신자, 개인, 법인 또는 불만 제기자의 의도</p> <p>4.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약관에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부당한 이용행위에 관한 정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명시하고, 특정 행위가 부당한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단 기간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실과 상황의 예를 제시해야 한다.</p> |
|--|---|

(5)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의 추가적 의무(제3장 제5절)

1) 적용대상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또는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은 유럽연합 내에서 서비스의 월평균 활성 이용자가 4,500만명을 넘고, 위원회에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s) 또는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으로 지정한 사

업자를 말한다(제33조).

2) 위험성 평가²⁹⁶⁾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포함한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의 설계나 기능 또는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모든 구조적 위험(systemic risks)을 성실히 식별,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제34조). 사업자는 위험성 평가 시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적 위험을 포함해야 한다.

- ①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불법 콘텐츠의 유포
 - ② 기본권, 특히 헌장 제1조에 명시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본권, 헌장 제7조에 명시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 헌장 제8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권 행사에 대한 실제 또는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 헌장 제1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을 포함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 헌장 제21조에 명시된 차별 금지, 헌장 제24조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존중, 헌장 제38조에 명시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 ③ 시민 담론과 선거 과정, 공공 안보에 대한 실제 또는 예측 가능한 부정적 영향
 - ④ 젠더 기반 폭력, 공중 보건 및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실제 또는 예측 가능한 모든 부정적 영향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결과
-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사업자는 특히 다음 요인이 구조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어떻게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 ① 추천 시스템 및 기타 관련 알고리즘 시스템 설계
- ② 콘텐츠 조정 시스템
- ③ 적용되는 약관 및 그 시행
- ④ 광고 선택 및 게재 시스템
- ⑤ 제공자의 관련 관행

296) 위험성 평가와 위험경감조치는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중심적인 규제 틀이다. Anupam Chander, When the Digital Services Act Goes Global,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Forthcoming, (2023), p. 14.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34 Risk assessment</p> <p>1. Providers of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of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shall diligently identify, analyse and assess any systemic risks in the Union stemming from the design or functioning of their service and its related systems, including algorithmic systems, or from the use made of their services.</p> <p>They shall carry out the risk assessments by the date of application referred to in Article 33(6), second subparagraph, and at least once every year thereafter, and in any event prior to deploying functionalities that are likely to have a critical impact on the risks identified pursuant to this Article. This risk assessment shall be specific to their services and proportionate to the systemic risk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ir severity and probability, and shall include the following systemic risks:</p> <p>(a) the dissemination of illegal content through their services;</p> <p>(b) any actual or foreseeable negative effects for the exercise of fundamental rights, in particular the fundamental rights to human dignity enshrined in Article 1 of the Charter,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enshrined in Article 7 of the Charter,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enshrined in Article 8 of the Charter,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including the freedom and pluralism of the media, enshrined in Article 11 of the Charter, to non-discrimination enshrined in Article 21 of the Charter, to respect for the rights of the child enshrined in Article 24 of the Charter and to a high-</p> | <p>제34조 위험성 평가</p> <p>1.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포함한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의 설계 또는 기능 또는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럽연합 내에서의 모든 구조적 위험을 성실히 식별,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p> <p>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은 제33조 제6항 제2호에 언급된 적용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회 이상,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조에 따라 식별된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능을 배포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 위험성 평가는 심각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서비스에 특화되고 구조적 위험에 비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 위험을 포함해야 한다.</p> <p>(a)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불법 콘텐츠의 유포;</p> <p>(b) 기본권, 특히 헌장 제1조에 명시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본권, 헌장 제7조에 명시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한 존중, 헌장 제8조에 명시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권 행사에 대한 실제 또는 예측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 헌장 제1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을 포함한 표현과 정보의 자유, 헌장 제21조에 명시된 차별 금지, 헌장 제24조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존중, 헌장 제38조에 명시된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p> |

| | |
|--|---|
| <p>level of consumer protection enshrined in Article 38 of the Charter;</p> <p>(c) any actual or foreseeable negative effects on civic discourse and electoral processes, and public security;</p> <p>(d) any actual or foreseeable negative effects in relation to gender-based violence,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and minors and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to the person's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p> <p>2. When conducting risk assessments, providers of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of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shall take into account, in particular, whether and how the following factors influence any of the systemic risks referred to in paragraph 1:</p> <p>(a) the design of their recommender systems and any other relevant algorithmic system;</p> <p>(b) their content moderation systems;</p> <p>(c) the applicable terms and conditions and their enforcement;</p> <p>(d) systems for selecting and presenting advertisements;</p> <p>(e) data related practices of the provider.</p> <p>The assessments shall also analyse whether and how the risks pursuant to paragraph 1 are influenced by intentional manipulation of their service, including by inauthentic use or automated exploitation of the service, as well as the amplification and potentially rapid and wide dissemination of illegal content and of information that is incompatible with their terms and conditions.</p> <p>3. Providers of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of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shall preserve the supporting documents of the risk assessments for at least three</p> | <p>(c) 시민 담론과 선거 과정, 공공 안보에 대한 실제 또는 예측 가능한 부정적 영향</p> <p>(d) 젠더 기반 폭력, 공중 보건 및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하여 실제 또는 예측 가능한 모든 부정적 영향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결과</p> <p>2.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는 특히 다음 요인이 제1항에 언급된 구조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어떻게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p> <p>(a) 추천 시스템 및 기타 관련 알고리즘 시스템 설계</p> <p>(b) 콘텐츠 조정 시스템</p> <p>(c) 적용되는 약관 및 그 시행</p> <p>(d) 광고 선택 및 게재 시스템</p> <p>(e) 제공자의 관련 관행</p> <p>평가는 또한 제1항에 따른 위험이 서비스의 부정 사용 또는 자동화된 악용을 포함한 의도적인 서비스 조작, 불법 콘텐츠 및 이용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증폭 및 잠재적으로 빠르고 광범위한 유포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 그 방식을 분석해야 한다.</p> <p>3.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은 위험성 평가 수행 후 최소 3년 동안 위험 평가의 근거 문서를 보존해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및 설립지의</p> |
|--|---|

years after the performance of risk assessments, and shall, upon request, communicate them to the Commission and to the Digital Services Coordinator of establishment.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에게 이를 전달해야 한다.

3) 위험성 경감 조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은 제34조에 따라 식별된 특정한 구조적 위험에 맞게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인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그러한 조치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제35조). 여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²⁹⁷⁾

- ① 특정 유형의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통지 처리 속도 및 품질, 특히 불법 혐오 발언 또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통지된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또는 접근 비활성화를 포함한 콘텐츠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콘텐츠 조정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프로세스 및 전담 리소스를 조정하는 것
- ② 추천 시스템을 포함한 알고리즘 시스템의 테스트 및 조정
- ③ 구조적 위험 감지와 관련하여 내부 프로세스, 리소스, 테스트, 문서화 또는 모든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
- ④ 연령 확인 및 보호자 통제 도구, 미성년자가 학대를 알리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 조치를 적절히 취하는 것
- ⑤ 생성되거나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가 현존하는 사람, 사물, 장소 또는 기타 실제 또는 사건과 현저히 유사하여 진짜인 것처럼 보이거나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 정보 항목이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표시될 때,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통해 구별할

297) 현재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된 사업자 중 다수는 미국계 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경우 가령 규정에서 말하는 콘텐츠 조정(content moderation)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어느 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지, 즉 EU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법에 따라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EU 디지털 서비스법과 미국 일부 주(텍사스, 플로리다 등)의 관련 규정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는 결국 EU와 미국 간의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관한 충돌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Ioanna Tourkochorit,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EU as the Global Regulator of the Internet*,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No. 1, 2023, p. 144 f. 참조.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비스 수신자가 그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 등

| 원 문 | 번역문 |
|--|--|
| <p>Article 35 Mitigation of risks</p> <p>1. Providers of very large online platforms and of 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s shall put in place reasonable, proportionate and effective mitigation measures, tailored to the specific systemic risks identified pursuant to Article 34, with particular consideration to the impacts of such measures on fundamental rights. Such measures may include, where applicable:</p> <p>(a) adapting the design, features or functioning of their services, including their online interfaces;</p> <p>(b) adapting their terms and conditions and their enforcement;</p> <p>(c) adapting content moderation processes, including the speed and quality of processing notices related to specific types of illegal content and, where appropriate, the expeditious removal of, or the disabling of access to, the content notified, in particular in respect of illegal hate speech or cyber violence, as well as adapting any relevant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dedicated resources for content moderation;</p> <p>(d) testing and adapting their algorithmic systems, including their recommender systems;</p> <p>(e) adapting their advertising systems and adopting targeted measures aimed at limiting or adjusting the presentation of advertisements in association with the service they provide;</p> <p>(f) reinforcing the internal processes,</p> | <p>제35조 위협의 경감 조치</p> <p>1.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및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은 제34조에 따라 식별된 특정한 구조적 위협에 맞게 합리적이고 비례적이며 효과적인 완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그러한 조치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p> <p>(a)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디자인, 특징 또는 기능을 조정하는 행위</p> <p>(b) 이용 약관과 그 시행의 조정</p> <p>(c) 특정 유형의 불법 콘텐츠와 관련된 통지 처리 속도 및 품질, 특히 불법 혐오 발언 또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통지된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또는 접근 비활성화를 포함한 콘텐츠 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콘텐츠 조정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프로세스 및 전담 리소스를 조정하는 것</p> <p>(d) 추천 시스템을 포함한 알고리즘 시스템의 테스트 및 조정</p> <p>(e) 광고 시스템을 조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광고 표시를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목표 조치를 채택하는 것</p> <p>(f) 특히 구조적 위협 감지와 관련하여 내</p> |

- | | |
|---|--|
| <p>resources, testing, documentation, or supervision of any of their activities in particular as regards detection of systemic risk;</p> <p>(g) initiating or adjusting cooperation with trusted flagg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2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s of out-of-court dispute settlement bodies pursuant to Article 21;</p> <p>(h) initiating or adjusting cooperation with other providers of online platforms or of online search engines through the codes of conduct and the crisis protocols referred to in Articles 45 and 48 respectively;</p> <p>(i) taking awareness-raising measures and adapting their online interface in order to give recipients of the service more information;</p> <p>(j) taking targeted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hild, including age verification and parental control tools, tools aimed at helping minors signal abuse or obtain support, as appropriate;</p> <p>(k) ensuring that an item of information, whether it constitutes a generated or manipulated image, audio or video that appreciably resembles existing persons, objects, places or other entities or events and falsely appears to a person to be authentic or truthful is distinguishable through prominent markings when presented on their online interfaces, and, in addition, providing an easy to use functionality which enables recipients of the service to indicate such information.</p> <p>3. The Commission, in cooperation with the Digital Services Coordinators, may issue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in relation to specific risks, in particular</p> | <p>부 프로세스, 리소스, 테스트, 문서화 또는 모든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p> <p>(g) 제22조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와의 협력 개시 또는 조정 및 제21조에 따른 법원 외 분쟁 해결 기관의 결정 이행</p> <p>(h) 제45조 및 제48조에 각각 언급된 행동 강령 및 위기 프로토콜을 통해 다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검색엔진과의 협력을 시작하거나 조정하는 것</p> <p>(i) 서비스 수신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식 제고 조치를 취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조정하는 것</p> <p>(j) 연령 확인 및 보호자 통제 도구, 미성년자가 학대를 알려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표 조치를 적절히 취하는 것</p> <p>(k) 생성되거나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가 현존하는 사람, 사물, 장소 또는 기타 실체 또는 사건과 현저히 유사하여 진짜인 것처럼 보이거나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 정보 항목이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표시될 때,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통해 구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비스 수신자가 그러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사용하기 쉬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p> <p>3. 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와 협력하여, 특정 위험과 관련하여 제1항의 적용에 관한 지침을 고시할 수 있으며, 특히 관련 당사자의 현장에 명시된 기본권에 대한 조</p> |
|---|--|

to present best practices and recommend possible measures, having due regard to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the measures on fundamental right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all parties involved. When preparing those guidelines the Commission shall organise public consultations.

치의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여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가능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을 마련할 때 위원회는 공적 자문단을 조직해야 한다.

4) 기타 주요 조항

유럽연합 내 공공의 안전 등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또는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 제공자에게 그러한 위협을 예방, 제거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제36조). 또한, 자체 비용으로 1년에 한번 이상 독립적인 감사(independent audit)를 받아 본 규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해야 한다(제37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설립지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자 또는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제40조). 사업자는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한 명 이상의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준법감시 부서를 두어야 한다(제41조). 준법감시 부서는 사업자의 본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 지위 및 자원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제공자의 관리 기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또는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으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최소 6개월마다 게시해야 한다.

5. 소결 및 시사점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상에서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 온라인 검색엔진(online search engine),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디지털·미디어 상의 위법한 내용의 콘텐츠를 가짜뉴스(허위정보), 혐오표현·차별표현, 인격권 침해 표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불법 콘텐츠’로 통칭한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적 위험(불법 콘텐츠

의 유포, 기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젠더 기반 폭력 등)을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경감할 의무를 부과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단계적으로 중개 서비스,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규정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규제의 세밀화를 기하고 있는 점에서 획기적 변화가 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성장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플랫폼에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되는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있다.²⁹⁸⁾

디지털서비스법의 다른 특징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이 문제를 스스로 찾아 대처하도록 하는 모델을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부과되는 구조적 위험에 대한 위험평가와 완화조치의무 부과이다. 구조적 위험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게 식별, 분석 및 평가하도록 하고 구조적 위험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위험 완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에 개입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화된 형태의 간접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⁹⁾

298) 이병준,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2021. 5, 203면.

299) 이병준,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2021. 5, 204면.

제5절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및 형법

1. 네트워크 집행법의 제정 배경³⁰⁰⁾ 및 입법목적

독일에서 증오범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 확산에 따른 대책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이다. 이 해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이하 ‘연방법무부’)는 증오범죄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및 시민단체와 TF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TF에서는 자율적 규제의 측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가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된 콘텐츠의 위법성을 전문부서에서 24시간 내에 검토하여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러한 기류는 2016년 변화되었다.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가짜뉴스가 생산,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독일 정부는 증오범죄 등 콘텐츠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도 규제하기로 하였다. 2016년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제가 되었던 허위조작정보의 경험에서 독일에서도 미디어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척결이 우선적 과제로 인식되었다.³⁰¹⁾ 이에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국민을 선동, 모욕, 중상적 명예훼손, 공중의 평화 교란을 유발하는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을 효과적으로 삭제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와 가짜뉴스에 대처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입법된 법률이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이하 ‘네트워크 집행법’)”이다. 이하에서는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독일 연방법무부는 이미 2015년 페이스북,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의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의 유포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운영자와 시민단체 대표와 함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³⁰²⁾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법으로는 기업의 자율규제를 통한 충분한 효과

300) 이하의 내용은 안수길,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p.124-125을 참조하여 요약한 것이다.

301) BT-Drs. 18/12345, S.1, 11.

302) 안수길,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권

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³⁰³⁾ 이에, 플랫폼 이용자들의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대한 이의제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법률 제정이 이루어졌다.³⁰⁴⁾

2015년 독일 연방 법무부 및 소비자 보호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MJV) 장관인 하이코 마스(Heiko Mass)는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DG, 이하 ‘네트워크 집행법’이라 함)을 발의하였고, 그 후 2017년 6월 30일 독일 연방 의회가 이 법률을 통과시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³⁰⁵⁾

2. 네트워크 집행법의 주요 내용

2017년 9월 1일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집행법은 제정 당시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법률에서는 적용 범위(제1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의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대응 의무(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4조)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법률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 제기된 불만을 처리하고(제3조), 그 내용을 보고하며(제2조), 사람들이 연락할 수 있는 대리인을 임명할 의무(제5조)를 부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 법률의 전체적 골자라 할 수 있다.

(1) 법률의 적용범위

1) 소셜네트워크

네트워크 집행법의 규정은 개방형 소셜네트워크에 적용된다.³⁰⁶⁾ 즉, 영리 목적으로 인

제1호, 2019, 124면.

303) 지성우·윤성욱·박용숙·이승현,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 연구”, 한국언론중재위원회, 2019, 41면.

304) 박용숙,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2022. 11, 149면 이하.

305) 해당 법률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대표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의 이름을 따서 ‘페이스북법’(Facebook-Gesetz)이라고 불린다.

306) Telemediendiensteanbieter, die mit Gewinnerzielungsabsicht Plattformen im Internet

터넷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공중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운영하는 텔레미디어서비스 제공자³⁰⁷⁾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편집하여 제공하는 언론보도 형식의 플랫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³⁰⁸⁾ 그러므로 직업상 네트워크, 온라인게임, 물건판매를 위한 플랫폼 등은 배제된다.³⁰⁹⁾ 독일에 거주하는 등록된 국내이용자가 2백만 이하인 소셜 네트워크의 경우 제2조의 보고의무 및 제3조의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이의제기의 규정과 방법을 마련할 의무가 면제된다.³¹⁰⁾

2)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이란 아래 <표 3-5>에서와 같이 독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게시물로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다른 이용자 공유하거나 공중에 공개되어진 것을 의미한다.

<표 3-6>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범죄행위

-
- 위헌조직의 선전물 반포(제86조)
 - 위헌조직의 상징적 표시 사용(제86a조)
 -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폭력행사의 예비(제89a조)
 -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폭력행사의 지도(제91조)
 - 간첩행위 목적의 위조(제100a조)
 - 공공연한 범죄선동(제111조)
 - 범죄위협에 의한 공중평온의 교란(제126조)
 - 범죄단체의 조직(제129조)
 - 테러단체의 조직(제129a조)
 - 해외에서의 범죄단체 및 테러단체의 조직(제129b조)
-

betreiben, die dazu bestimmt sind, dass Nutzer beliebige Inhalte mit anderen Nutzernteilen oder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machen

307)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법(Telemediengesetz)의 규율대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Telemediendiensteanbieter)를 뜻한다.

308) N. Guggenberger,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S. 2577-2578.

309) BT-Drs. 18/13013, S.20.

310) B. Holznapel, "Das Complicance-System des Entwurfs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ZUM, 2017, S. 615.

- 국민선동(제130조)
- 폭력 표현물 유포 등(제131조)
- 범죄 대가의 지급 및 찬양(제140조)
- 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등의 모욕(제166조)
- 금지된 매춘(제184d조)과 관련된 아동음란물의 배포, 취득 및 소지(제184b조)
- 모욕(제185조), 악의적 비방(제186조), 명예훼손(제187조)
- 사진촬영을 통한 과도한 인격적 사생활영역의 침해(제201a조)
- 협박(제241조)
- 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조(제269조)

결과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 또는 헌정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에서 타인의 인격권 혹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게시물에 포함된다. 그런데 제 1조 제3항의 규정은 ‘예시규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열거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³¹¹⁾ 왜냐하면, 네트워크 집행법에서의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은 독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정당화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²⁾ 결국 독일 형법상의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네트워크 집행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보고서 및 공개 의무(제2조)

제2조에서는 사업자(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는 연간 100건 이상의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취급에 관한 사항을 반년마다 독일어로 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연방관보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시할 의무를 부담한다.³¹³⁾

이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311)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 연구 제20권 제1호, 2019, 86면.

312) 「NetzDG」 § 1 Anwendungsbereich “Rechtswidrige Inhalte sind Inhalte I Sinne des Absatzes 1, die den Tatbestand der §§ 86, 86a, 89a, 91, 100a, 111, 126, 129 bis 129b, 130, 131, 140, 166, 184b in Verbindung mit 184d, 185 bis 187, 201a, 241 oder 269 des Strafgesetzbuchs erfüllen und nicht gerechtfertigt sind”

313) 제2조 제1항

<표 3-7>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
-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
 -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관한 이의제기를 위한 메커니즘 및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 및 차단하기 위한 기준
 - 이의제기 처리 담당부서나 기관 및 이의제기 사유에 따라 분류된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의 수
 - 이의제기 담당부서의 조직, 인적자원 및 직원 교육과 지원내용
 - 협회에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줄 협회 구성원 여부
 - 결정을 내리기 위해 외부기관에 조언을 구한 이의제기의 수
 - 제3조 제2항 제3호 a 사례의 존재여부 및 이의제기 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된 수
 - 이의제기 후 삭제 또는 차단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24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일주일 이내 혹은 상당한 시간)
 -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의 통지 조치
-

(3)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이의제기의 취급 방법(제3조)

1) 기본원칙

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과 관련된 이의제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³¹⁴⁾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손쉬운 이의제기를 위해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직접 제기할 수 있으며 언제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³¹⁵⁾

2) 기본절차

서비스 제공자는 이의제기를 인식하고 이의가 제기된 게시물이 위법한지 그리고 삭제 또는 차단되어야 하는지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³¹⁶⁾ 해당 내용은 「통신미디어 서비스법」(Telemediengesetz, TMG) 제10조³¹⁷⁾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의

314) 제3조 제1항 제1문

315) 제3조 제1항 제2문

316) 제3조 제2항 제1호

317) 「통신미디어서비스법」 제10조(정보의 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위하여 저장하는 타인의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서비스 제공자가 위법한 행위 혹은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에 그에게 위법한 행위 혹은 정보가 명확하다는 사실 또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2. 서비스 제공자가 이러한 인지를 하고 즉시 정보를 제거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한 경우

의무를 구체화 및 보충하고 있다.

(a) 명확하게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 처리

서비스 제공자는 명확하게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³¹⁸⁾ 이때 명확하게 위법하다 함은 제1조 제3항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 규정으로 인해, 혐오표현(증오범죄)와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폭력 등의 내용의 게시물을 신속(24시간 이내)하게 삭제 또는 차단이 가능하게 된다.

(b) 기타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의 처리

명확하게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의 기간을 두어 해당 내용의 위법성을 주의 깊게 심사해야 한다.³¹⁹⁾ 이 기간동안 문제된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의견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중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문제된 게시물에 대한 판단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승인받은 자율규제기관에 이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소셜네트워크 상의 발생하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방지하면서도 이의제기 된 게시물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3) 증거 목적으로의 보관의무

서비스 제공자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게시물의 삭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게시물을 저장하여 10주간 증거로 보관하여야 한다.³²⁰⁾ 해당 내용은 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1호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과 동일하다.³²¹⁾

4) 결과통지 및 기록

이의제기 된 게시물에 대한 심사결과(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또는 조치의 거부 등)는

318)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319) 제3조 제2항 제3호

320) 제3조 제2항 제4호

321) BT-Drs. 18/12356, S.23.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민영성·박희영,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제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법학연구 제57권 제2호, 2016, 89-109면 참조.

이의를 제기한 자 및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³²²⁾ 이때 모든 이의제기 및 이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과태료 처분(제4조)

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에 규정된 의무(보고의무와 절차규정)를 다하지 않은 경우,³²³⁾ 최대 500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³²⁴⁾ 독일 이외의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독일 국내에 관련 업무의 책임자(국내 송달대리인)를 임명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³²⁵⁾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행정청은 연방 법무부 산하의 연방법무청(Bundesamt für Justiz)이다.

(5) 국내 송달대리인(제5조)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독일 이외의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률에 따른 과태료 결정이나 법원의 절차에 따른 송달의 원활한 수령을 위하여 국내 송달대리인(Zustellungsbevollmächtigter)을 임명하여야 한다.³²⁶⁾

3. 독일 네트워크 집행법 평가

(1) 적용범위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률로 종종 소개되어 왔다. 그런데 적용범위를 고려하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소셜네트워크 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위한 법률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독일 형법상 규정된 21개의 특정 범죄를 범한 표현물이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인

322) 제3조 제2항 제5호

323)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 미비,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제공의 미비, 이의의 처리 감독의 부실, 이의처리와 관련한 부족한 부분의 시정미비 등

324) 제4조 제1항 1호 내지 제6호

325) 제4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8조

326) 제5조 제1항

인터넷상 게시물의 내용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형법규정에 위배되는 표현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 집행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일반법인 형법과 다른 내용의 범죄유형을 신설하는 경우에 발생가능한 표현의 자유 위축의 문제를 고려한 입법적 타협점으로 생각된다.³²⁷⁾

21개의 특정 범죄는 국가사회주의(Nazi) 시대의 히틀러 지배와 홀로코스트 등의 경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자 하는 잠재적 위협성에 대한 민감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혐오범죄(증오범죄) 및 국민선동이 주요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혐오표현(형법상 ‘대중선동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마련된 것이다.

(2) 공공질서 보장의 책임주체 및 사적 검열

네트워크 집행법은 입법 준비과정에서부터 학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시행 후에도 이러한 비판은 지속되고 있다. 비판의 대부분은 주로 법률의 구체적 내용 및 이행의 방법에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게시물의 불법 여부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조치가 법관이 아닌 민간 기업의 책임으로 되어 있다.³²⁸⁾ 다시 말해, 네트워크 집행법은 공공질서의 담보 책임을 민간사업자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담(1차 규제권한 위임)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군가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다.³²⁹⁾ 물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일시적 판단 정도는 사인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³³⁰⁾ 이 경우에도

327) 지성우,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2019, 427면.

328) 이권일,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9, 94면.

329) Benjamin Raue, Meinungsfreiheit in sozialen Netzwerken - Ansprüche von Nutzernsozialer Netzwerke gegen die Löschung ihrer Beiträge, JZ 2018, S. 961 (962).

330) K. Ladeur/T. Gostomyk, Der Schutz von Persönlichkeitsrechten gegen Meinungsäußerungen in Blogs - Geht die große Zeit des privaten Presserechts im Internet zu Ende?, NJW 2012, S. 710 (714 f.); L. Specht/V. Eickhoff, Ein reformiertes Haftungskonzept für

최종판단은 법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법률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한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 판단 및 삭제 등 조치의무’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에 규정된 보고의무와 절차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담(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가중)하게 되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익’이나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순전히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³³¹⁾

(3)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의 판단기준

이 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을 ‘명확하게 위법한 것’과 ‘위법한 것’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선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³³²⁾, ‘명확하게 위법한 것’과 ‘위법한 것’을 구별할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³³³⁾

4. 독일 형법상 규제

혐오표현에 대한 독일의 정책은 나치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민감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은 구설 또는 간행물을 통해 치안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및 “특정 인적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매우 광범위한 혐오표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독일 형법 제130조 제2항은 치안방해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표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

rechtswidrige Äußerungen auf Bewertungsportalen?, CR 2016, S. 740(745)

331) 즉 위법한 내용의 게시물인지 명확하기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차단을 결정하게 된다.

332) M. Liesching, “Was sind ‘rechtswidrige Inhalte’ im Sinne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ZUM, 2017, S. 813.

333) B. Holzngel, “Das Complicance-System des Entwurfs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ZUM, 2017, S. 623.

일은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독일 형법 제130조 제3항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행위와 같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까지도 혐오표현의 일환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조항은 특히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의 구별 기준에 관한 논쟁뿐만 아니라 학문적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독일 형법 제130조 제4항은 나치 찬양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1) 형법 중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독일에서는 타인을 모욕한 때에는 ‘모욕죄’가, 타인을 비방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전과할 때에는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독일 형법 제186조의 명예훼손죄(Üble Nachrede) 관련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행위자는 이 죄로 처벌된다. 아울러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거나 출판물 등에 의해 유포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한편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의 대중선동죄는 일반적 법률로서 의견표명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된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처벌의 합헌성에 폭넓은 합의를 얻고 있지만, 독일 형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과 같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 등의 처벌에 관해서는 의견표명의 자유와 충돌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였다.³³⁴⁾

(2) 형법 중 대중선동죄

독일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형법(Strafgesetzbuch: StGB)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중선동죄(Volksverhetzung)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³³⁵⁾ 이 규정은 독일 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된 보호법

33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형법 제1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합헌이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에 있어서는 의견표명의 자유를 배려하고 대중선동죄의 성립에는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335) 독일 형법 제130조(대중선동죄) ① 공공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적정한 방법으로 1.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민족으로 이루어진 특정 집단이나 일부의 인구집단 또는 거기에 속한 개인에 대하여 그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오 또는 폭력적이거나 자의적인

익은 ‘공공의 평온’이다.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사건을 특정하여 만들어진 이 법은 국민 선동에 관한 형법 제130조의 하위조항으로 1994년 10월 통과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 참혹성을 축소하거나, 혹은 그것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독일 형법 제130조 제3항³³⁶⁾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에 해당)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역사적으로 이 규정은 1950년대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던 반유대주의가 더욱 증가하는데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그 보호대상은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주민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다.³³⁷⁾

독일 형법 제130조 제3항에 근거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왜곡에 대한 처벌은 “이러한 왜곡이 한 국가의 특정 집단(소수집단)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는 효과에 의해 공공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 때 공공의 안전이라는 자유주의 국가의 목표와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의 선동을 연결시킨 것은 나치를 경험한 독일이 무엇을 국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지를 짐작케 한다.

(3) 독일 법규제 소결

혐오표현과 관련된 독일 입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혐오표현의 문제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일반 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군인의 평등대우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der Soldatinnen und Soldaten) 등 두 개의 차별금지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법률은 민간인과 군인을 대상으로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예방·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에서 이 두 법률이 평등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차별을

조치를 선동하는 경우, 또는 2. 전술한 일부의 인구집단 또는 개인을 그에 속한다는 이유로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경멸 또는 중상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3월 내지 5년의 자유형에 처한다.

336) 독일 형법 제130조 제3항 공공의 평화를 혼란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국제형법전 제6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사회주의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를 공언히 혹은 집회로 용인하거나,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자는 5년 미만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337) 이 조문에 관하여 독일 판례가 인정한 집단은 가톨릭, 개신교, 유대인, 공화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강제이주자, 난민신청자, 독일에 거주하는 객원 아르바이트생, 유학생, 집시, 노동자, 농민, 공무원, 판사, 검사, 보안경찰관, 형사경찰관, 군인 등이다.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형법」상의 ‘대중선동죄’와 함께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소수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법규범들이다.

독일 「형법」 제130조 제3항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표현행위와 같이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까지도 혐오표현의 일환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30조 제4항³³⁸⁾에서는 나치 찬양행위까지도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특히 사실(fact)과 견해(opinion)의 구별 경계에 관한 논쟁뿐만 아니라 학문적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에 의하면 「형법」의 특정 조항들을 위반한 게시글은 신고된 뒤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백만 유로(한화 약 60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³³⁹⁾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 집행법」은 이미 「형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범죄들 중 특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내용³⁴⁰⁾이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관리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었다.

이 법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라 ‘등록된 국내의 이용자가 2백만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등록된 국내(독일)의 이용자가 2백만 이하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법과정에서 당해 법률은 독일 내의 학계, 언론계,

338) 독일 형법 제130조 ④ 국가사회주의의 전단적 폭력을 승인하거나 찬미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혹은 집회로 공공의 평화를 혼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에 처한다.

339) 박신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과 관련된 독일 전자정보법률(TMG) 연구”,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2016, 277-320면; 박신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확장과 관련된 독일 법행법(NetzDG) 연구”, 법학연구, 2018, 269-304면.

340) 이 법에서의 ‘위법한 내용’이라 함은 독일 형법(StGB) 제184조d(금지된 매춘의 수행), 제185조(모욕) 내지 제187조(중상), 제201 조a(사진촬영을 통한 고도의 사생활 침해), 제241조(협박) 또는 제269조(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작)와 관련된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 제86조a(위헌조직 표시사용), 제89조a(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폭력의 예비), 제91조(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폭력 행사의 지도), 제100조a(간첩목적의 위조), 제111조(공연한 범죄선동), 제126조(범죄위험에 의한 공공평온교란), 제129조(범죄단체조직), 제129조a(테러단체조직), 제129조b(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 제130조(국민선동), 제131조(범죄의 대가 지급 및 찬양), 제140조(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 제166조(신앙·종교단체·세계관단체 등 모욕 및 제184조(음란물의 반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은 (본 법률 제1조) 제1항의 의미에서의 내용을 말한다.

세계 등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였었고,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법에 대한 주요한 비판은 ① 위법한 콘텐츠의 내용을 확정할 때 ‘명백성’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의적으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삭제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의한 내용규제’가 ‘기업’(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내용규제로 전환되었을 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며, ③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표현물을 매우 적극적으로 삭제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으며, ④ 이 법률을 통해 국가가 담당해야 할 위법적인 표현물에 대한 삭제와 범죄예방 등의 기능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으로 전가해놓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³⁴¹⁾ 이와 같이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전혀 다르게 가짜뉴스 전반이 아니라 ① ‘혐오표현’의 경우에 국한하여 ② 「형법」상 특정한 범죄를 범한 표현물이 ③ 정보통신망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다.

혐오표현에 관한 독일의 법·정책은 대부분 국가사회주의(나치) 시대의 경험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민감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0조 제1항에서는 구술 또는 간행물을 통해 치안 방해가 되는 방식으로 ‘특정 인적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및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매우 광범위한 혐오표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형법」 제130조 제2항에서는 본래 형법의 목적이어야 하는 치안방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오표현 그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은 혐오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⁴²⁾ 독일의 법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법률의 적용을 위해서는 한 국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국가

341) 박희영, “독일의 가짜뉴스(Fake News)에 대처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 「최신외국법제정보」4, 한국법제연구원, 2018, 70면 참조.

342) R. Cohen, “Regulating Hate Speech: Nothing Customary About It”,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5(1), 2014, p. 240.

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이러한 생각에서 국가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위해 어떠한 범규범이 필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³⁴³⁾

343) 지성우,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2019. 12, 424-428면.

제6절 미국의 혐오표현 및 불법표현물에 대한 규제

1. 서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일정한 형태의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반면에 미국은 처벌하는 법규정이 없다.³⁴⁴⁾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온 미국은 ‘혐오표현’을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³⁴⁵⁾ 미국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³⁴⁶⁾,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³⁴⁷⁾ 및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³⁴⁸⁾에 혐오표현 처벌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³⁴⁹⁾

미국의 경우 연방 수정헌법 제1조가 혐오표현을 보호하는지 여부는 다소 복잡한 문제이다.³⁵⁰⁾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혐오표현을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³⁵¹⁾ 미국 연방

344) Robert A. Khan, “Why Do Europeans Ban Hate Speech? A Debate Between Karl Loewenstein and Robert Post,” 41 Hofstra Law Review 545, 547 (2013).

345) William A. Schabas, Hate Speech in Rwanda: The Road to Genocide, 46 McGill L.J. 141, 164 (2000).

34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Declarations and Reservations, Dec. 9, 1948, 78 U.N.T.S. 277.

347)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 20, Mar. 23, 1976, 999 U.N.T.S. 171.

34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Jan. 4, 1969, S. TREATY DOC. No. 95-18 (1966).

349) Jean-Marie Kamatali, The U.S. First Amendment Versus Freedom of Expression in Other Liberal Democracies and How Each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on Hate Speech, 36 Ohio N.U.L. Rev. 721, 737-740 (2010).

350) Jean-Marie Kamatali, “Hate Speech” in America: Is It Really Protected?, 61 Washburn L.J. 163, 165 (2021).

351) Jean-Marie Kamatali, “Hate Speech” in America: Is It Really Protected?, 61 Washburn L.J. 163, 165 (2021).

대법원은 더군다나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개념 정의도 하지 않고 있다.³⁵²⁾ 반면 미국 내 학자들은 ‘혐오표현’이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보는 입장³⁵³⁾이 있는 반면, 이 문제를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³⁵⁴⁾ 다만, 미국의 학자들은 비록 혐오표현이 헌법적 보호를 받을지라도 언론의 자유 그 자체가 절대적이지는 않고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³⁵⁵⁾

2. 혐오표현의 종류: ‘단순한 혐오표현’과 ‘해로운 혐오표현’

(1) ‘단순한 혐오표현’

‘단순한 혐오표현’(mere hate speech)이란 그저 ‘단순한 혐오’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정부는 그러한 혐오표현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탐탁하지 않고(disfavored), 당황하게 만들며(disturbing) 두려운(feared)’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³⁵⁶⁾ 미국 연방대법원의 *Matal v. Tam* 사건에서 알리토 대법관은 “우리는 어떤 생각(idea)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그 생각이 그 자체만으로 듣는 사람을 기분 상하게(offensive)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지는 않는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판결해 왔다.”고 하였다.³⁵⁷⁾ 연방대법원은 *Texas v. Johnson* 판결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판결들을 통해 “사회가 어떤 생각 그 자체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그 생각의 표현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해 왔다.³⁵⁸⁾ 따라서 이러한 ‘단순한 혐오표현’은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거나 법의

352) Richard Ashby Wilson & Molly K. Land, Hate Speech on Social Media: Content Moderation in Context, 52 Conn. L. Rev. 1029, 1037 (2021).

353) Eugene Volokh, Supreme Court Unanimously Reaffirms: There Is No “Hate Speech” Exception to the First Amendment, Wash. Post (June 19, 2017).

354) Nadine Strossen, Hate: Why We Should Resist it with Free Speech, Not Censorship xxi (2018); Richard Ashby Wilson & Molly K. Land, Hate Speech on Social Media: Content Moderation in Context, 52 Conn. L. Rev. 1029, 1037 (2021).

355) Alexander Tsesis, Balancing Free Speech, 96 B.U.L.Rev. 1 (2016).

356) Nadine Strossen, Hate: Why We Should Resist it with Free Speech, Not Censorship 67 (2018).

357) *Matal v. Tam*, 137 S. Ct. 1744, 1763 (2017) (quoting *Street v. New York*, 394 U.S. 576, 592 (1969)).

규제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한다.³⁵⁹⁾

(2) ‘해로운 혐오표현’

단순한 혐오표현과 달리 ‘해로운 혐오표현’(harming hate speech)은 특정한 해악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혐오표현은 “어떠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확인가능한 중대한 해악을 담고 있어서 국가가 규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³⁶⁰⁾ 제레미 윌드론(Jeremy Waldron)의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 역시 표현의 내용이나 관점보다는 그 표현이 야기하는 해악이나 폭력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³⁶¹⁾ 이러한 해로운 혐오표현은 홀로코스트나 르완다의 인종청소와 같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야기된 해악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혐오표현이 “단순한 혐오표현(mere hate speech)”이라는 인식의 결과인 반면에 다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혐오표현이 “해로운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⁶²⁾

3. 혐오표현에 관한 판례

(1) 사사(私事)에 관한 표현

2011년 연방대법원의 Snyder v. Phelps 사건에서는 “웨스트보로침례교(Westboro Baptist

358) Texas v. Johnson, 491 U.S. 397, 414 (1989); Abrams v. United States, 250 U.S. 616, 630 (1919) (Holmes, J., dissenting); Hustler Mag., Inc. v. Falwell, 485 U.S. 46, 55-56 (1988); Coates v. Cincinnati, 402 U.S. 611, 615 (1971); Bachellar v. Maryland, 397 U.S. 564, 567 (1970); Tinker v. Des Moines Indep. Cmty. Sch. Dist., 393 U.S. 503, 509-14 (1969); Cox v. Louisiana, 379 U.S. 536, 551 (1965); Edwards v. South Carolina, 372 U.S. 229, 237-38 (1963); Terminiello v. Chicago, 337 U.S. 1, 4-5 (1949); Cantwell v. Connecticut, 310 U.S. 296, 311 (1940); Schneider v. State, 308 U.S. 147, 161 (1939); De Jonge v. Oregon, 299 U.S. 353, 365 (1937).

359) Jean-Marie Kamatali, “Hate Speech” in America: Is It Really Protected?, 61 Washburn L.J. 163, 167 (2021).

360) Nadine Strossen, Hate: Why We Should Resist it with Free Speech, Not Censorship 67 (2018).

361) Jeremy Waldron, The Harm in Hate Speech 105-106 (2012).

362) Jean-Marie Kamatali, “Hate Speech” in America: Is It Really Protected?, 61 Washburn L.J. 163, 172 (2021).

Church)의 신도들이 이라크에서 사망한 해병대 상병(Lance Corporal) 매튜 스나이더(Matthew Snyder)의 장례식장으로부터 약 1천 피트 떨어진 곳에서 ‘Thank God for Dead Soldiers’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들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³⁶³⁾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사사(private matters)에 관한 표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적인 이슈에 대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에 대한 위협은 없으며, 사상의 의미 있는 대화에 간섭할 가능성은 없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협은 자기 검열의 반응을 보일 위협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³⁶⁴⁾

Snyder v. Phelps 사건에서 법정의견을 제시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적 관심사의 개념에 덧붙여 어떠한 언사가 공적 관심사를 담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서 그 언사의 “내용(content), 형식(form) 및 맥락(context)”을 제시하였다.³⁶⁵⁾ 그는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무엇을 말했는지, 어디서 말했는지와 어떻게 말했는지”를 비롯하여 그 언사의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³⁶⁶⁾ 먼저 첫 번째 요건인 내용과 관련하여 로버츠 대법원장이 집필한 다수의견은 웨스트보로 침례교도들의 피켓에 적힌 “신은 미국을 증오한다 / 9·11 테러 감사합니다”, “미국은 이제 끝났다”, “미국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동성애 군대”, “교황은 지옥에나 가라”, “성직자들이 소년을 성폭행한다” 등과 같은 “내용(content)”은 순수하게 사적인 관심사라기보다는 대체로 사회의 이익에 관한 광범위한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³⁶⁷⁾ 다수의견은 또한 이러한 메시지가 비록 “정제된 사회적·정치적 논평”은 아니지만 이들이 강조하는 이슈는 “미국과 미국사회의 정치적·도덕적 행동, 미국의 운명, 군대내의 동성애, 가톨릭 성직자의 스캔들과 같은 공적인 관심사들”이라고 하였다.³⁶⁸⁾ 다수의견은 두 번째 요건, 즉 형식과 관련하여 웨스트보로침례교인들이 사용한 피켓 시위는 가능한 한 많은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방식이며, 비록 “너는 지옥에 갈 거다” 또는 “신은

363) 허순철, “미국에서의 공적 관심의 개념과 판단기준”, 법학논총 제33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42-43면.

364) Snyder v. Phelps, 562 U.S. 443, 451-452 (2011).

365) Id. at 453.

366) Id. at 454.

367) Id. at 454.

368) Id. at 454.

너를 증오한다”와 같은 내용들이 특히 스나이더나 스나이더 가족과 관련된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주된 주제(overall thrust and dominant theme)”는 광범위한 공적이슈에 관한 연사였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³⁶⁹⁾ 마지막 세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다수의견은 장례식에서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변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³⁷⁰⁾ 다수의견은 웨스트보로 침례교도인들이 오래 전부터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며, 사적인 사안에 관하여 스나이더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숨기기 위해 공적인 관심사로 위장한 것으로 불만한 교인들과 스나이더 사이의 관계나 갈등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³⁷¹⁾ 다수의견은 또한 도로에 인접한 공공용지에서 웨스트보로의 피켓시위가 있었다는 점은 사회 전반을 비난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하였다.³⁷²⁾ 이처럼 연방대법원은 혐오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 때에는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2) 도발적 연사(Fighting Words)

수정헌법 제1조는 도발적 연사(fighting words)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입장이다.³⁷³⁾ 여호와의 증인인 채플린스키(Chaplinsky)가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경찰관에게 “빌어먹을 사기꾼(God damned racketter)” “빌어먹을 파시스트(damned Fascist)”라며 욕설을 한 것이 문제가 된 *Chaplinsky v. New Hampshire*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도발적 연사는 “결코 어떤 사상이나 표현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진실을 향한 걸음으로써 사회적 가치가 매우 미약하여서 질서와 도덕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어떤 이익보다 명백히 우월”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³⁷⁴⁾

369) Id. at 454.

370) Id. at 454.

371) Id. at 455.

372) Id. at 454-455.

373) Beth C. Boswell-Odum, *The Fighting Words Doctrine and Racial Speech on Campus*, 33 S. Tex. L. Rev. 261, 262 (1992).

374) *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 U.S. 568, 571 (1942); 송현정,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뉴햄프셔주의 법률은 “적법하게 공공장소에 있는 타인에게 불쾌하거나(offensive), 조롱하거나(derisive) 또는 화나게 하는(annoying) 말을 하거나 타인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조롱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다.³⁷⁵⁾ 연방대법원은 “이처럼 해석되는 동 법률의 제한된 범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법은 주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가 가능한 특정한 행위, 즉 공공의 안녕에 대한 침해(breach of the peace)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말들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사용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률이다”라고 판시하였다.³⁷⁶⁾ 따라서 연방대법원은 혐오표현 중 도발적 언사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았다.

한편 R.A.V. v. City of St. Paul 사건에서는 빅토라(Robert A. Viktora)를 비롯한 2명의 백인 학생이 세인트폴대학의 흑인 가족이 사는 집의 정원에 침입하여 부서진 나무의자로 십자가를 만들어 불을 붙인 것이 문제 되었다. 세인트폴 시의 「편견으로 인한 범죄의 처벌에 관한 조례」(Bias-Motivated Crime Ordinance)는 “인종·피부색·신념·종교·성별에 근거하여 타인에 대한 분노 또는 경고, 원한을 발생시킬 것을 알거나 알고 있다고 불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십자가나 나치 표장(Nazi Swastika)을 비롯한 공적 또는 사적 재산상에 상징·물체·명칭·특징·기호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³⁷⁷⁾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혐오표현이 도발적 언사의 하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³⁷⁸⁾ 이 사건의 법정외견은 수정헌법 제1조가 도발적 언사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표현이 어떤 특정한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이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방식으로 특정한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³⁷⁹⁾

연방대법원은 위 조례를 위헌으로 선언하면서, 동 조례가 인종 또는 종교, 성별에 근거한 혐오표현은 금지하고 있으나 정치적 소속(political affiliation)이나 성적 지향에 근거한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 65면

375) *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 U.S. 568, 569 (1942).

376) *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 U.S. 568, 573 (1942).

377)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380 (1992).

378)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381 (1992).

379)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393 (1992).

혐오표현은 금지하지 않음으로써 혐오표현(expression of hate) 가운데서 일정한 차별을 하였다고 판시하였다.³⁸⁰⁾ 따라서 이 판결에 의하면 도발적 언사를 금지하는 법은 표현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합헌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³⁸¹⁾ 그러나 “내용에 근거한 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표현의 기저에 놓여있는 메시지에 대한 구분 없이 특정 유형의 도발적 언사 전체를 규제하여야 되는데, 그러한 법을 무효가 될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과도하게 광범위하지 않을 정도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도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³⁸²⁾

(3) 명예훼손

미국 연방대법원은 명예훼손이 문제된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즉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거짓인지 여부를 미필적으로 무시하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원은 자신의 공무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허위진술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³⁸³⁾ 따라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 여부를 부주의하게 무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을 원고가 지게 된다.³⁸⁴⁾ 따라서 공직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 즉, 공직자인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가 혐오표현을 한 피고의 현실적 악의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4) 소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연방대법원은 *R.A.V. v. City of St. Paul* 사건을 통해 혐오표현도 수정헌법 제1조

380)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391 (1992).

381) *R.A.V. v. City of St. Paul*, 505 U.S. 377, 391 (1992).

382) 송현정,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 68면.

383)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269 (1964).

384) 송현정, 혐오표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0, 73면.

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미국에서는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한 혐오표현은 내용에 근거한 규제로서 위헌으로 선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케메린스키(Erwin Chemerinsky) 교수는 만일 어떤 법률의 적용대상이 좁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은 내용을 이유로 어떤 도발적 언사를 금지하고 다른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내용에 근거한 표현의 제한을 이유로 위헌으로 선언될 것이며, 만일 어떤 법률의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도하게 광범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선언될 것이라고 한다.³⁸⁵⁾ 이처럼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규제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 혐오표현 개념 논의

(1) 혐오표현의 개념

‘혐오표현’이란 단어는 1980년대에 유행하였는데, 이는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인종 혐오(race hate)’라는 개념과 1940년대의 ‘집단 명예훼손(group libel)’의 개념에서 발전한 것이다.³⁸⁶⁾ 그런데 ‘혐오표현’이란 말은 영어 단어 ‘hate speech’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³⁸⁷⁾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혐오’란 “싫어하고 미워함”이라고 설명되어 있고,³⁸⁸⁾ Oxford 사전에 따르면 혐오표현(hate speech)이란 “어떤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을 특히 인종, 종교 또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근거로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말(speech)이나 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³⁸⁹⁾ 그런데 혐오표현은 “감정에 관한 개념(emotive concept)이며, 국제인권법상 혐오표현에 관하여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없다.”고 한다.³⁹⁰⁾ 따라서

385) Erwin Chemerinsky, *Constitutional Law: Principles and Policies* 1054 (5th ed., 2015).

386) Samuel Walker, *Hate Speech: The History of an American Controversy* 8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4).

387) 김현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이론과 실무 2016-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6, 8면.

388) 네이버 국어사전, 혐오,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D%98%90%EC%98%A4>.

389) Oxford Learner's Dictionaries, hate speech, <https://www.oxfordlearnersdictionaries.com/definition/english/hate-speech?q=hate+speech>.

390) Article 19, 'Hate speech' explained: A summary 1. What is 'hate speech'?,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hate-speech-explained-a-summary/>.

혐오표현은 각국이 처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상황에 따라 개념에 차이를 보인다.³⁹¹⁾ 특히 ‘혐오표현’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사회학 용어(sociological term)에 가깝다.³⁹²⁾

한편 언론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인 ‘Article 19’에 따르면,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의 표현을 의미하는 ‘혐오표현’이 합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을 담고 있다.”고 한다.³⁹³⁾

(2) 혐오표현 규율의 문제점

1) 서설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해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공통점은 혐오표현을 당하는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 즉, 개인적 차원의 해악과 그 사회 전체의 불이익, 즉 사회적 차원의 해악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본다.

2) 개인적 해악과 사회적 해악을 구분하는 견해

일반적으로 혐오표현은 그 상대방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인격권, 명예 등을 훼손”하지만, 그러한 “표현이나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우 그것은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한다고 한다.³⁹⁴⁾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 즉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부정”, (2) “개인적 인권의 침해” (3) “민주주의 왜곡 혹은 부정”과 (4) “사회통합 저해”로 나누고 이 중 2번째 해악인 “개인적 인권의 침해”를 다시 세분화하여 ①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11조)” ②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헌법 제10조)” ③ “인격권: 혐오받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10조)” ④ “그 외 침해하는 인권들”로 나누고 있다.³⁹⁵⁾ 이를 표로

391) 조규범,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 30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4면.

392) David Boromisza-Habashi, Hate Speech,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anguage & Social Interaction, at 4.

393) Article 19, ‘Hate speech’ explained: A summary 1. What is ‘hate speech’?,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hate-speech-explained-a-summary/>.

394) 이승현 외,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26면.

395) 이승현 외,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26면-31면.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3-8〉 혐오표현의 해악³⁹⁶⁾

| 분류 | | 주요 내용 |
|-------------------|-----------------------------|--|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부정 | | 혐오표현의 해악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만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상 집단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을 일반사회에서 고립된 섬인 계토로 만들어버린다. |
| 개인적 인권의 침해 |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11조) | 혐오대상자가 가진 일정한 속성을 특정하고, 이러한 속성을 이유로 안전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라든가, 정치적 권리 혹은 혼인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과 직업의 권리,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문화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서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받도록 하거나, 그러하도록 선전하고 선동한다. |
| |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헌법 제10조) | 혐오표현은 그 대상자에게 일정한 사회적 지위나 자격, 권리·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려 하는데, 이러한 박탈이나 제한은 곧 결핍이나 위협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준다. |
| | 인격권: 혐오받지 아니할 권리(헌법 제10조) | 혐오표현은 표현이기 이전에 그 대상자에게 불쾌감을 가져오며 스스로에 대하여 가지는 명예의식이나 자존감을 공격하고 침해하는 행위이다. |
| | 그 외 침해하는 인권들 | 혐오표현으로 인해 그 대상자가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 어렵게 되는 인권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혐오표현은 생활공동체나 직장, 교육시설 등에서 배제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한다. 거주이전의 자유(세계인권선언 제12조, 헌법 제14조), 직업과 노동의 자유(세계인권선언 제23조, 헌법 제15조, 제32조), 정당한 보수 등에 대한 권리(헌법 제32조),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6조, 헌법 제31조), 문화적 활동에의 참여권(세계인권선언 제27조, 헌법 제9조) 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를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제20조)도 침해된다. |
| 민주주의 왜곡 혹은 부정 | | 혐오표현은 그 대상자를 침묵시켜 공적 토론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그들을 과소 대표 상태에 빠지게 만들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의 사회구성원들이 몸담고 있는 공론장 전체에 적대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만연시켜 공적 토론을 왜곡한다. |

396) 이승현 외,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26면-31면.

| 분류 | 주요 내용 |
|---------|---|
| 사회통합 저해 | 혐오표현의 궁극적인 해악은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들어, 항구적인 분열 상태를 야기한다는 점에 있다. 혐오의 경계를 따라 사회의 통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작게는 생활공동체가 크게는 국가공동체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불합리한 차별을 강화하고 구조화하는 혐오는 반통합적이며, 사회통합을 기본적 기능으로 삼는 법질서 자체를 위협한다. |

3) 혐오표현의 종류별 해악을 구분하는 견해

혐오표현의 해악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이를 “혐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라고 부르는 견해가 있고,³⁹⁷⁾ 국내에서는 홍성수 교수가 이를 약간 변형하여 소개하고 있다.³⁹⁸⁾

[그림 3-1] 혐오의 피라미드(pyramid of hate)³⁹⁹⁾



혐오의 피라미드는 혐오를 가장 낮은 단계의 편견 또는 편향적 태도(Biased Attitudes)에 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집단학살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해악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혐오의 피라미드를 표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397) Anti-Defamation League, Pyramid of Hate, <https://www.adl.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yramid-of-hate.pdf>.

398)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84면, 표2. 혐오의 피라미드.

399) Anti-Defamation League, Pyramid of Hate, <https://www.adl.org/sites/default/files/documents/pyramid-of-hate.pdf>.

〈표 3-9〉 혐오의 피라미드⁴⁰⁰⁾

| | |
|------|---|
| 집단학살 | 특정 집단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말살 |
| 증오범죄 | 편견에 기초한 폭행, 협박, 강간, 방화, 테러, 기물파손 |
| 차별행위 |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 괴롭힘, 배제, 분리 |
| 혐오표현 | 조롱, 위협적·모욕적·폭력적 말이나 행동, 집단 따돌림 |
| 편견 |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편견 공유 |

4) 소결

혐오표현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그 해악도 다양하다. 혐오의 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듯이 혐오표현이 단순한 표현 즉, 말이나 표현(speech)에 그치지 않고 “특정 집단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말살”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생명권의 침해라는 해악을 가져온다. 한편 혐오표현이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다.⁴⁰¹⁾ 이러한 차별행위를 하는 주체가 사인(私人)인 경우에는 우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11조의 수범자는 원칙적으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해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혐오표현 규제 논의

(1) 서설

혐오표현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혐오표현은 각국이 처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고, 그 나라 국민들의 가치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규제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상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혐오표현이 논쟁을 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그것이 ‘표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⁰²⁾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우려

400)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84면, 표2. 혐오의 피라미드.

401) 이승현 외,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27면.

하여 혐오표현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독일은 혐오표현의 규제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처럼 국가마다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찬반론을 살펴본다.

(2) 찬반론

1) 찬성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데 찬성하는 국가들은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해악을 이유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혐오표현이 가져오는 해악은 “혐오표현의 표적이 된 소수자의 정신적 고통,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 조건의 파괴, 그리고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해악을 초래하는 혐오표현은 자연스럽게 인간 존엄이나 평등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며, 이러한 혐오표현은 규제해야 마땅한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한다.⁴⁰³⁾ 한편 유럽에서는 “혐오표현이 소수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모욕(insult)하고 감정을 상하게(offending) 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오표현의 규제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적인 토론(public discourse)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표현(offending statement)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혐오표현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폭력, 차별 또는 적의(hostility)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⁴⁰⁴⁾ 그러나 법률 실무에 있어서는 혐오표현과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만약 혐오표현이 있었으나 폭력이 뒤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혐오표현을 한 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한다.⁴⁰⁵⁾

402)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145면.

403)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146면.

404) Judit BAYER & Petra BÁRD, Hate speech and hate crime in the EU and the evaluation of online content regulation approaches,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for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l Policies, PE 655.135, at 55 (July 2020).

405) Judit BAYER & Petra BARD, 위 보고서, 56면.

2) 반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은 “개별 소수자들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괴로울 수는 있지만 소수자 ‘집단’이 일반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막연한 가정에 불과” 하며, 그러한 손해는 “민사배상을 통해 해결하면 되므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해악을 별도로 인정하여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⁴⁰⁶⁾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혐오표현을 규제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1990년대에 워커(Samuel Walker)는 혐오표현의 법적 보호는 민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과 베트남전 반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⁴⁰⁷⁾

(3) 소결

혐오표현을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론과 관련하여 로널드 드워킨과 제레미 윌드론의 논쟁이 유명하다.⁴⁰⁸⁾ 드워킨은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표현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가로써 법의 강제성이 정당화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며, “표현의 자유는 단지 정치공동체로서의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 도구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근거로 하는 ‘평등한 존중과 배려’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의 제한은 정치적 도덕성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한다.⁴⁰⁹⁾ 반면에 윌드론은 “인간 존엄성은 사회와 법률에 의해 확립, 지지, 유지, 옹호되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들 전원에게 역할을 부과한다. 즉, 적어도 우리는 공적으로 서로와 관련될 때, 타인의 존엄을 해치려 계산된 방법으로 행위하지 않을 요청을 받으며, 이로부터 혐오표현 규제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정당성이 도출된다.”고 한다.⁴¹⁰⁾

406)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148면.

407) Samuel Walker, Hate Speech: The History of an American Controversy 14-16, 161-62 (1994).

408)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널드 드워킨과 제레미 윌드론의 논쟁, 법과사회 제 55호, 2017, 34면.

409)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널드 드워킨과 제레미 윌드론의 논쟁, 법과사회 제 55호, 2017, 36면-37면.

410)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널드 드워킨과 제레미 윌드론의 논쟁, 법과사회 제 55호, 2017, 44면.

6. 「통신품위법」 제230(c)(1)

(1) 서설

1996년 미국 연방의회는 인터넷상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을 개정하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을 통과시켰는데, 이러한 법률안들을 통칭해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이라 부른다.⁴¹¹⁾ 동법의 일부조항들은 온라인상에서 음란하거나 불쾌한(harassing)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은 1997년 이 법의 2개의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였다.⁴¹²⁾ 이에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의 이용자나 제공자들이 스스로 내용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⁴¹³⁾

인터넷상에서 “정보와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촉진하고 성적 굴욕감을 주는(offensive) 음란한 자료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⁴¹⁴⁾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의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표현물(unlawful content)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동 조항은 가짜뉴스의 배포를 차단하는 데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하나의 장애물(hurdle)이 되고 있다고 한다.⁴¹⁵⁾ 한편 동 법률은 “음란하거나, 외설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저속하거나,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괴롭히는 등의 불쾌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규제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⁴¹⁶⁾

411) Pub. L. No. 104-104, Tit. V, 110 Stat. 133 (1996).

412) Reno v. ACLU, 521 U.S. 844, 882 (1997).

413) 141 CONG. REC. H8470 (daily ed. Aug. 4, 1995) (하원의원 와이든(Ron Wyden)의 법안 제안 설명).

414) Farnaz Alemi & Po Yi, Section 230 Under Assault: It’s Not Just a Big Tech Problem, JD Supra (April 14, 2021), <https://www.jdsupra.com/legalnews/section-230-under-assault-it-s-not-just-1029515/> (quoting Carafano v. Metrosplash.com, Inc., 339 F.3d 1119, 1122 (9th Cir. 2003)).

415) Eliza J. Estrella, Fals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The Problem with Free Speech in a Fake News Crisis, 88 Brook. L. Rev. 1313, 1318 (2023).

416) 47 U.S.C. § 230(c)(2)(A).

(2) 법규정

1996년 제정된 「통신망위법」 제230(c)(1)은 “컴퓨터 서비스(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information content provider)가 제공한 정보의 발행인(publisher)이나 화자(speaker)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⁴¹⁷⁾

| 원 문 | 번역문 |
|--|--|
|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 컴퓨터 서비스(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information content provider)가 제공한 정보의 발행인(publisher)이나 화자(speaker)로 간주되지 않는다. |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서비스”(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란 “다수의 이용자들이 하나의 컴퓨터 서버에 컴퓨터로 접속하게 하거나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정보서비스나 시스템 또는 접근 소프트웨어”를 말한다.⁴¹⁸⁾

법원은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서비스”를 구글,⁴¹⁹⁾ 야후,⁴²⁰⁾ 페이스북⁴²¹⁾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해 왔다.⁴²²⁾ 다시 말해서 법원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컴퓨터 서비스와 그 서비스의 이용자인 ‘정보 콘텐츠 제공자(information content provider)’를 구분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자들이 게시한 내용물이나 표현물의 “단순한 전달자(mere conduits)”로 해석하여 명예훼손과 같은 소송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을 보호해 왔다.⁴²³⁾ 법원은 또한 동 조항이 컴퓨터 접근 서비스를 제공

417) 47 U.S.C. § 230(c)(1)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418) 47 U.S.C. § 230(f)(2).

419) *Marshall’s Locksmith Serv. v. Google, LLC*, 925 F.3d 1263, 1268 (D.C. Cir. 2019).

420) *Barnes v. Yahoo!, Inc.*, 570 F.3d 1096, 1101 (9th Cir. 2009).

421) *Klayman v. Zuckerberg*, 753 F.3d 1354, 1357 (D.C. Cir. 2014).

422) *Ira Rubinstein & Tomer Kenneth, Taming Online Public Health Misinformation*, 60 *Harv. J. on Legis.* 219, 251 (2023); *Klayman v. Zuckerberg*, 753 F.3d 1354, 1358 (D.C. Cir. 2014); *Fields v. Twitter, Inc.*, 217 F. Supp. 3d 1116, 1121 (N.D. Cal. 2016).

하는 도서관⁴²⁴)이나 기업의 이용자(employers)⁴²⁵뿐만 아니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⁴²⁶)나 웹호스팅 회사⁴²⁷)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

법원은 「통신품위법」을 좁게 해석하게 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제3자의 글을 자율적으로 규율하려는 의지를 꺾게 되고 인터넷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게 된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해 왔다.⁴²⁸) 다만,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1) 연방 형사법, (2) 지식재산권법, (3)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합치되는 주법(state law), (4) 「전기통신 프라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및 (5) 성매매를 금지하는 연방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주의 형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⁴²⁹)

법원은 「통신품위법」 제230(c)(1)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크게 3가지, 즉 (1) 피고가 컴퓨터 서비스(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의 제공자나 이용자인가? (2)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인이나 화자로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가? (3) 원고의 청구가 또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로부터 생겨난 것인가의 문제들을 검토한다.⁴³⁰) 다시 말해서

423) Farnaz Alemi & Po Yi, Section 230 Under Assault: It's Not Just a Big Tech Problem, JD Supra (April 14, 2021), <https://www.jdsupra.com/legalnews/section-230-under-assault-it-s-not-just-1029515/>.

424) 47 U.S.C. § 230(f)(2) (“...such systems operated or services offered by libraries or educational institutions.”); Kathleen R. v. City of Livermore, 104 Cal. Rptr. 2d 772, 777 (Cal. Ct. App. 2001).

425) Miller v. Fed. Express Corp., 6 N.E.3d 1006, 1017 (Ct. App. Ind. 2014).

426) Winter v. Bassett, No. 1:02CV00382, 2003 WL 27382038, at *6 (M.D.N.C. Aug. 22, 2003).

427) Ricci v. Teamsters Union Local 456, 781 F.3d 25, 28 (2d Cir. 2015); Gucci Am., Inc. v. Hall & Assocs., 135 F. Supp. 2d 409, 412 (S.D.N.Y. 2001).

428) Claudia G. Catalano, Validity,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Immunity Provisions of Communications Decency Act, 47 U.S.C.A. § 230, 52 A.L.R. Fed. 2d 37, at 1.

429) 47 U.S.C. § 230(e) (“(e) Effect on other laws. (1) No effect on criminal law. ... (2) No effect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 (3) State law.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ny State from enforcing any State law that is consistent with this section. ... (4) No effect on communications privacy law. ... (5) No effect on sex trafficking law. ...”).

430) Ken S. Myers, Wikimmunity: Fitting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to Wikipedia, 20 Harv. J.L. & Tech. 163, 179 (2006).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공표, 철회, 연기 또는 변경할 결정권과 같이 출판인이 가지는 전통적인 편집권(editorial function)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지 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⁴³¹⁾ 만약 이러한 세 가지 질문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동법 제 230조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⁴³²⁾

(3) 「통신품위법」의 입법목적

「통신품위법」의 입법목적의 하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에 대해 충분한 편집권(editorial control)을 행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statement)에 대해 발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뉴욕주 1심법원의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⁴³³⁾ 판결을 파기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⁴³⁴⁾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 당시의 미 연방의회 기록”에 따르면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입법목적은 “1) 유해한 온라인 게시물을 관리·감독하는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보호하여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2) 정부 규제로부터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한다.⁴³⁵⁾ 특히 연방의회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유해한 내용을 제한하려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발행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

431) *Validity,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Immunity Provisions of Communications Decency Act*, 47 U.S.C.A. § 230, 52 A.L.R. Fed. 2d 37, at 2. 보통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첫째, 주된 발행인(primary publisher) 책임으로서 명예 훼손적 표현물에 대한 편집권을 가진 경우 작성자와 함께 동등한 책임을 진다. 둘째, 배포자(distributor) 책임으로서 도서관 사서나 서점 주인처럼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배포한 경우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배포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셋째 단순 전달자(mere conduits) 책임으로서 전화 회사처럼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단순히 매개·전달만 했다면 표현물에 대한 어떠한 관리 및 감독 권한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박아란,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언론학보, 64권 3호, 2020, 12면.

432) Valerie C. Brannon & Eric N. Holmes, Section 230: An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6751, 9 (2021).

433)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 23 Media L. Rep. 1794, 1995 WL 323710 (N.Y. Sup. Ct. 1995).

434) *Medytox Solutions, Inc. v. Investorshub.com, Inc.*, 152 So. 3d 727, 730 (Fla. 4th DCA 2014).

435) 박아란,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64권 3호, 2020, 13면.

였다”고 한다.⁴³⁶⁾

(4) 판례

미국의 법원들은 다양한 소송들을 배제하고 제3자가 올린 콘텐츠를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다른 법률들보다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⁴³⁷⁾ 이하에서는 중요한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Zeran v. American Online, Inc.*

「통신품위법」 제230(C)(1)의 범위가 문제 된 최초의 사건은 1997년 연방 제4항소법원의 *Zeran v. America Online, Inc.* 사건이었다.⁴³⁸⁾ 이 사건에서 신원미상의 이용자는 오클라호마시티에 있는 연방 건물의 폭탄테러를 축하하는 슬로건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AOL(America Online)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⁴³⁹⁾ 이 불상의 이용자는 그 셔츠를 구매하는 데 관심이 있는 AOL 이용자들이 원고인 지란(Kenneth Zerán)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였다.⁴⁴⁰⁾ 그런데 지란은 그 광고를 게시하지 않았고 본인 대신 누군가에게 게시를 하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다.⁴⁴¹⁾ 불쾌한(harassing) 전화와 협박 전화를 받게 된 지란은 AOL에 연락을 해서 그 광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OL의 직원은 그 광고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광고가 삭제되자 비슷한 광고가 다시 게시되었다.⁴⁴²⁾ 결국 지란은 AOL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AOL에 그 불법광고를 알린 이상 AOL은 그 광고를 삭제하고 그 광고가 기만하는

436) 박아란,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 언론학보, 제64권 3호, 2020, 13면.

437) Valerie C. Brannon & Eric N. Holmes, Section 230: An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6751, 2 (2021).

438) *Zeran v.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4th Cir. 1997).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국내 문헌으로는 박정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2012, 520면 이하 참조.

439) *Zeran v.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329 (4th Cir. 1997).

440) *Id.* at 329.

441) *Zeran v. Am. Online, Inc.*, 958 F. Supp. 1124, 1126 (E.D. Va. 1997).

442) *Zeran v.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329 (4th Cir. 1997).

(deceptive)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유사한 게시물을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⁴⁴³⁾ 지란은 명예를 훼손하는 출판물의 판매자(vendor)와 배포자는 그 출판물이 위법하거나 불법적 내용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출판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배포자(distributor) 책임의 원칙을 주장하였다.⁴⁴⁴⁾ 지란은 「통신망위법」 제230(C)(1)이 “발행인(publisher)”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AOL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의 “발행인(publisher)”으로서의 책임은 면책시켜 주지만, 불법광고라는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배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⁴⁵⁾ 이에 대해 연방 제4항소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배포자로서의 책임은 불법적인 자료의 배포자로서의 발행(distributor’s publication) 때문이며, 결국 배포자는 발행인이라고 판시하였다.⁴⁴⁶⁾ 따라서 동법원은 보통법상은 물론 「통신망위법」 제230조가 규정하는 “발행인(publisher)”이라는 단어는 최초 발행인(original publisher)뿐만 아니라 배포자도 포함한다고 하였다.⁴⁴⁷⁾ 동법원은 또한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언론을 규제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고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회피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불쾌한 자료(offensive material)의 전파를 규제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⁴⁴⁸⁾ 나아가 동 법원은 「통신망위법」 제230(C)(1)이 “제3자가 게시한 정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모든 종류의 소송에서 연방법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⁴⁹⁾

2) Children’s Health Defense v. Facebook Inc.

2020년 8월 17일 원고인 Children’s Health Defense(‘CHD’)는 (1)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 위반, (2) 「랜햄법」(Lanham Act)을 위반한 허위광고, (3) 「사기 및 부패 단체 처벌법」

443) Id. at 330.

444) Id. at 330.

445) Id. at 331-332.

446) Id. at 332.

447) Id. at 333-334.

448) Id. at 333.

449) Id. at 330.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위반 등의 이유로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인 저커버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⁴⁵⁰⁾ 원고 CHD는 페이스북에 소셜미디어 웹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웹페이지에 살충제나 5G와 같은 무선 기술뿐만 아니라 코로나19백신과 같은 백신(vaccines)의 피해에 관한 논문이나 의견들을 게시하였다.⁴⁵¹⁾ 원고 CHD는 미국 연방정부가 연방의원인 슈프(Adam Schiff), 질병통제센터,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에 관한 자신들의 표현을 검열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공조함으로써(by “teaming up”) 수정헌법 제1조를 “민영화하였다(privatized)”고 주장하였다.⁴⁵²⁾ 원고 CHD는 자신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있는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피고들이 “거짓(false)” 또는 “호도하는(misleading)”이라는 표시를 붙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백신에 관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피고들이 검열하고 이용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⁵³⁾ 원고는 저커버그와 같은 “사인(private parties)이 정부가 추구하는 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사인의 행위를 국가 행위(state action)로 변질시킨다.”고 주장하였으나,⁴⁵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⁴⁵⁵⁾

3) *Dyroff v. Ultimate Software Grp., Inc.*

이 사건의 원고인 다이로프(Kristanalea Dyroff)의 아들 웨슬리 그리어(Wesley Greer)는 “내가 플로리다 잭슨빌의 어디에서 헤로인을 살 수 있을까?(‘where can i [sic] score heroin in jacksonville, fl.’)”라는 메시지를 피고 얼티밋 소프트웨어(Ultimate Software)의 웹사이트인 익스피리언스 프로젝트(‘Experience Project’)에 게시하였고, 올랜도(Orlando)의 마약상인 카스트로(Hugo Margenat-Castro)가 그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자, 피고의 웹사이트는 이메일로 그리어에게 답변이 올라 온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그리어는 카스트로를 만나서 헤로인을 구입하였고 다음 날 사망하였다.⁴⁵⁶⁾ 이에 그리어의 어머니인 원고 다이로

450) *Children’s Health Def. v. Facebook Inc.*, 546 F. Supp. 3d 909, 915 (2021).

451) *Id.* at 915.

452) *Id.* at 915.

453) *Id.* at 915.

454) *Id.* at 931.

455) *Id.* at 944.

프는 피고가 불법적인 마약을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기 아들의 죽음에 피고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⁴⁵⁷⁾

이에 대해 법원은 “「통신망법」은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제3자의 정보(또는 익스피리언스 프로젝트(Experience Project)에 올라온 게시물과 같은 콘텐츠)의 창작이나 개발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얼티밋 소프트웨어는 익스피리언스 프로젝트에 올라온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익스피리언스 프로젝트의 운영자로서 얼티밋 소프트웨어는 추천과 통지를 비롯한 자신들의 기능(functions)이 인터넷 통신을 하는데 사용된 내용과는 무관한 도구들이었기 때문에 「통신망법」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판시하였다.⁴⁵⁸⁾

(5) 비판 및 개정 법안

「통신망법」 제230조로 인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게시물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명예훼손적 상황을 초래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 발생”하였으며, “게시물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행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책규정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방치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 야기”되었다고 한다.⁴⁵⁹⁾ 따라서 이 조항은 성희롱, 혐오표현 및 가짜뉴스와 같은 다양한 인터넷상의 행위들에 의해 야기되는 해악에 플랫폼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⁴⁶⁰⁾ 유명한 언론법 학자인 스몰라(Rodney Smolla) 교수는 “법원이 230조의 면책을 연방의회가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확장해 왔다.”고 비판한다.⁴⁶¹⁾

456) *Dyroff v. Ultimate Software Grp., Inc.*, 934 F.3d 1093, 1095 (2019).

457) *Id.* at 1095.

458) *Id.* at 1096.

459) 박아란,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64권 3호, 2020, 13면.

460) Tim Hwang, *Dealing with Disinformation: Evaluating the Case for CDA 230 Amendment 1* (Dec. 17, 2017) (unpublished manuscript),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089442.

이에 미국 연방의회에는 「통신품위법」 제230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십 개의 법률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제116기 입법기에는 26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주요 법률안들을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0> 제116기 연방의회에 제출된 「통신품위법」 제230조 관련 법률안⁴⁶²⁾

| 법률안 | 제명 | 주요 내용 |
|------------|--|--|
| H. R. 8636 | 「위험한 알고리즘 배제를 통한 미국인 보호법」 (Protecting Americans from Dangerous Algorithms Act) | 제230(c)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평점을 매김으로써 시간순으로, 알파벳순으로 또는 임의로 분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위를 매기기 위해 알고리즘 또는 그 밖의 컴퓨터 처리 장치를 이용하거나 정보의 전달이나 표시를 변경하는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를 배제하는 내용 |
| H. R. 8719 | 「기술 남용 규제 및 표현 규제법」 (Curbing Abuse and Saving Expression in Technology (CASE-IT) Act) | 제230(c)를 개정하여 불법적인 콘텐츠를 창작, 발전, 게시 또는 핵심적인 기여를 하거나 타인이 불법적인 콘텐츠를 창작, 발전, 게시, 핵심적인 기여를 하도록 교사한 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하는 내용이며,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계약 및 저속, 음란 또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알면서도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경우 컴퓨터 서비스의 법적 보호를 배제하는 내용 |
| H. R. 8896 | 「온라인 검열 포기법」 (Abandoning Online Censorship (AOC) Act) | 제230조를 폐지하는 내용 |
| H. R. 8922 | 「빅테크기업 종료법」 (Break Up Big Tech Act of 2020) | 제230(c)를 개정하여 (1) 이용자의 개인적 취향을 기반으로 광고를 판매하거나 (2) 상업거래에 아이템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조장하거나 (3)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4) 이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에 중독되도록 하는 디자인을 이용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법적 책임 보호를 배제하는 내용이며, 시간 순서가 아닌 다른 순서로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를 현출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법적 책임 면제를 배제하는 내용 |

461) Rodney Smolla, Law Of Defamation § 4.86 (2d ed. 2019).

462) Jason A. Gallo & Clare Y. Cho, Social Media: Misinformation and Content Moderation Issues for Congress, CONG. RSCH. SERV. 27-28, Appendix B. Table B-1 (Jan. 27, 2021),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6662>.

| 법률안 | 제명 | 주요 내용 |
|---------|---|---|
| S. 1914 | 「인터넷 검열 지원 중단법」 (Ending Support for Internet Censorship Act) | 제230(c)를 개정하여 컴퓨터 서비스가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인증을 받으면 컴퓨터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식을 통해 정보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 |
| S. 3398 | 「컴퓨터 연결 기술의 남용 및 만연한 직무해태 추방법」 (Eliminating Abusive and Rampant Neglect of Interactive Technologies (EARN IT) Act of 2020) | 제230(e)를 개정하여 아동 성착취행위 처벌 관련 법률의 위반을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 면제를 배제하는 내용 |
| S. 3983 | 「착한사마리아인의 제230조 책임 면제 제한법」 (Limiting Section 230 Immunity to Good Samaritans Act) | 제230(c)를 개정하여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정책을 서술한 이용약관을 채택하고 유지한 컴퓨터 서비스에게만 법적 책임 면제를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컴퓨터 서비스는 “선의로(in good faith)” 또는 기망의 의도 없이 공정한 처리 기준으로 서비스 약관을 설계하고 운용하여야 한다는 내용 |
| S. 4062 | 「빅테크의 검열 금지법」 (Stopping Big Tech's Censorship Act) | 제230(c)를 개정하여 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이나 공개를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컴퓨터 서비스에게만 법적 책임의 면제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가 중립적인 관점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장소 및 방식만을 규제하며 접근을 제한하는 긴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컴퓨터 서비스의 법적 책임 면제를 배제하는 내용 |
| S. 4066 |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 향상법」(Platform Accountability and Consumer Transparency (PACT) Act) | 제230(c)를 개정하여 불법적인 콘텐츠나 활동의 통지에 중간단계의 책임 기준을 포함시키는 내용 |
| S. 4337 | 「행태맞춤형광고 서비스 제한법」 (Behavioral Advertising Decisions Are Downgrading Services (BAD ADS) Act) | 제230(c)를 개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적 성향을 기준으로 광고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법적 책임 면제를 배제하는 내용 |
| S. 4534 | 「온라인 자유 및 관점 다양화법」 (Online Freedom and Viewpoint Diversity Act) | 제230(c)를 개정하여 혐오스러운 콘텐츠가 아닌, 자해(self-harm), 테러리즘 또는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의 면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

| 법률안 | 제명 | 주요 내용 |
|---------|---|---|
| S. 4632 | 「온라인 콘텐츠 정책 현대화법」 (Online Content Policy Modernization Act) | 제230(c)를 개정하여 혐오스러운 콘텐츠가 아닌, 자해(self-harm), 테러리즘 또는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의 면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
| S. 4756 | 「도발방지법」 (Don't Push My Buttons Act) | 제230(c)를 개정하여 이용자의 습관, 선호 또는 신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자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자동화된 기능을 사용하는 컴퓨터 서비스의 법적 책임 면제를 제한하는 내용 |
| S. 4758 | 「온라인 발견 및 신고법」 (See Something, Say Something Online Act of 2020) | 제230(e)를 개정하여 의심스러운 데이터 전송 활동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 면제를 배제하는 내용 |
| S. 4828 | 「언론 억압 금지법」 (Stop Suppressing Speech Act of 2020) | 제230(c)를 개정하여 혐오스러운 콘텐츠가 아닌, 불법적이거나 폭력 또는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의 면제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
| S. 5012 | 「성범죄자 및 온라인 조력자 책임 부과법」(Holding Sexual Predators and Online Enablers Accountable Act of 2020) | 제230(e)가 성 착취나 그 밖의 아동학대 관련 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 |
| S. 5020 | 없음 | 제230조를 폐지하는 내용 |
| S. 5085 | 없음 | 제230조를 폐지하는 내용 |

2020년에는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개혁 문제가 행정부에서도 논의되었는데,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s)가 제230조를 집행할 수 있는 규제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⁴⁶³⁾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Communications Act of 1934)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지만, 지금까지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역할을 해 오지는 않았으며, 제230조가 명시적으로 연방통신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학자들은 연방의회가 연방통신위원회에게 제230조에 대한 규제

463) Valerie C. Brannon & Eric N. Holmes, Section 230: An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6751, 2 (2021).

권한을 부여할 의도가 있는지와 동 조항이 연방통신위원회의 법규명령(regulations)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을 벌여 왔다.⁴⁶⁴⁾

한편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개정하자는 주장은 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한 2가지 논란, 즉 (1) 개정 법률안이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의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2) 제230조가 전부 또는 일부 폐지될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사인 또는 정부는 콘텐츠를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인지의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⁴⁶⁵⁾

7. 미국 「혐오범죄예방법」

(1) 서설

미국의 경우 2020년 한 해 동안 연방수사국(FBI)에 신고된 혐오범죄는 8,263건이었으며, 피해자는 11,472명으로 집계되었다.⁴⁶⁶⁾ 연방의회는 혐오범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18 U.S.C. § 245'⁴⁶⁷⁾와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 of 2009'라고 불리는 '18 U.S.C. § 249'를 살펴보기로 한다.

(2) 18 U.S.C. § 245

1968년 제정된 '18 U.S.C. § 245'는 종종 '최초의 현대식 연방 혐오범죄처벌법'이라고 불린다.⁴⁶⁸⁾ 동 법은 흑인들과 민권운동가들에 대한 '인종적 테러행위'와 '잔인한 범죄'에

464) Id. at 2.

465) Id. at 2.

466) Peter G. Berris, Overview of Federal Hate Crimes Law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7060, at 1, April 1, 2022.

467) 이 법률을 「혐오범죄예방법」(Hate Crimes Prevention Act)으로 소개하고 있는 국내 문헌으로는 이정념,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제언-미국의 혐오범죄예방법(Hate Crimes Prevention Act) 및 혐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9권 제2호, 2011, 251면; 김희정, 우리 사회 혐오 피해에 대한 법정책적 시사점, 가천법학 제15권 제4호, 2022, 139면 등이 있다.

468) Nicholas C. Erickson, Hate Crimes, 6 Geo. J. Gender & L. 289, 291-292 (2005).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⁴⁶⁹⁾ 동법은 몇 가지 유형의 범죄로 나뉘는데, 이 중 혐오 범죄와 관련한 건 ‘제245(b)(2)’, 같은 조 ‘(b)(4)’ 및 같은 조 ‘(b)(5)’의 세 개 조항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범죄들은 상당히 중첩되지만, 각각의 조항들은 고의에 의한 상해, 협박(intimidation) 또는 투표, 배심원 참여 및 공적 교육과 같이 연방이 보호하는 활동과 관련한 방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⁴⁷⁰⁾ 검사는 연방 체육시설(federal recreational facilities)의 이용을 방해하는 인종적 편견에 의한 공격,⁴⁷¹⁾ 공중 숙박업소의 흑인 청소부에 대한 경찰관의 공격⁴⁷²⁾과 공립학교에 통학하는 흑인 학생들의 버스 이용을 막기 위한 흑인의 폭행⁴⁷³⁾과 같이 인종적 편견에 의한 행위를 기소하는 데에 이 세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 검사는 또한 2020년 아머리(Ahmaud Arbery) 살해 사건과 같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소하는데 동조항을 이용해 왔다.⁴⁷⁴⁾

1) 제245(b)(2) 위반죄의 구성요건

제245(b)(2)는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 및 일정한 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어떤 개인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⁴⁷⁵⁾

469) S. REP. NO. 90-721, at 1839 (1967).

470) 18 U.S.C. § 245.

471) United States v. Price, 464 F.2d 1217, 1218 (8th Cir. 1972).

472) United States v. Hearod, 499 F.2d 1003, 1004 (5th Cir. 1974).

473) United States v. Griffin, 525 F.2d 710, 712 (1st Cir. 1975).

474) Verdict Form, United States v. McMichael, No. 2:21-cr-22 (S.D. Ga. 2022).

475) 18 U.S.C. § 245(b)(2).

| 원 문 | 번역문 |
|--|---|
| <p>(b) Whoever, whether or not acting under color of law, by force or threat of force willfully injures, intimidates or interferes with, or attempts to injure, intimidate or interfere with — ...</p> | <p>(b) 누구든지, 법 집행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무력 또는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상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 ...</p> |
| <p>(2) any person because of his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 and because he is or has been — (a) enrolling in or attending any public school or public college; (b) participating in or enjoying any benefit, service, privilege, program, facility or activity provided or administered by any State or subdivision thereof; (c) applying for or enjoying employment, or any perquisite thereof, by any private employer or any agency of any State or subdivision thereof, or joining or using the services or advantages of any labor organization, hiring hall, or employment agency; (d) serving, or attending upon any court of any State in connection with possible service, as a grand or petit juror; (e) traveling in or using any facility of interstate commerce, or using any vehicle, terminal, or facility of any common carrier by motor, rail, water, or air; (f) enjoying the goods, services, facilities, privileges, advantages, or accommodations of any inn, hotel, motel, or other establishment which provides lodging to transient guests, or of any restaurant, cafeteria, lunchroom, lunch counter, soda fountain, or other facility which serves the public and which is</p> | <p>(2)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 및 그가 (a) 공립학교나 공립대학에 등록 또는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b) 주 정부 또는 주정부의 기관에 의해 제공되거나 집행되는 어떠한 복지 서비스, 특권, 프로그램, 시설 또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향유하였다는 이유로 (c) 사인인 이용자 또는 주정부나 주정부의 기관이 제공하는 또는 그로 인한 특전(perquisite)을 신청하거나 향유하였다는 이유 또는 노동조합(labor organization), 직업소개소(hiring hall), 또는 고용기관에 가입 또는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d) 대배심원 또는 소배심원으로서의 임무와 관련하여 주 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e)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 시설을 이용한 여행이나 시설의 이용 또는 동력(motor), 철도, 수상 또는 항공 운수업자의 차량, 터미널 또는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f) 여행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여관, 호텔, 모텔 그 밖의 숙박시설(establishment)의 물품, 서비스, 시설, 특권, 혜택(advantages) 또는 편의시설(accommodations) 또는 대중시설로서 구내에서(on the premises)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p> |

principally engaged in selling food or beverages for consumption on the premises, or of any gasoline station, or of any motion picture house, theater, concert hall, sports arena, stadium, or any other place of exhibition or entertainment which serves the public, or of any other establishment which serves the public and (i) which is located within the premises of any of the aforesaid establishments or within the premises of which is physically located any of the aforesaid establishments, and (ii) which holds itself out as serving patrons of such establishments; or

카페, 구내식당(lunchroom), 간이식당, 소다수 판매점 또는 그 밖의 시설이나 대중시설인 주유소, 영화관(motion picture house), 극장, 콘서트홀, 경기장, 스타디움 그 밖에 전시나 공연을 위한 장소, 또는 대중시설로서 (i) 위에서 열거한 시설의 구내 또는 위에서 열거한 시설 내에 물리적으로 위치한 구내이고 (ii) 그러한 시설의 고객들을 위해 설치된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

동조의 범죄로 기소하려면 수사기관은 몇 가지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첫째 피고인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방해하거나 위협을 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하였거나 위력을 보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⁴⁷⁶⁾ 그런데 Johnson v. Mississippi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위력 또는 위력의 위협(force or threat of force)”를 폭력행위 또는 폭력의 위협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⁴⁷⁷⁾ 한편 미국 내 법원은 살인⁴⁷⁸⁾이나 폭행협박(assaults)⁴⁷⁹⁾과 같은 행위를 폭력적인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협박성 발언은 “진짜 협박(true threat)”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⁴⁸⁰⁾

수사기관은 피고의 2가지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고⁴⁸¹⁾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향유하거나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

476) United States v. Sandstrom, 594 F.3d 634, 654 (8th Cir. 2010).

477) Johnson v. Mississippi, 421 U.S. 213, 224 (1975).

478) United States v. Lane, 883 F.2d 1484, 1487 (10th Cir. 1989).

479) United States v. Sowa, 34 F.3d 447, 449 (7th Cir. 1994).

480) Virginia v. Black, 538 U.S. 343, 359 (2003).

481) 18 U.S.C. § 245(b)(2).

이다.⁴⁸²⁾ 여기서 ‘법률에 명시된 권리’에는 공교육, 주나 지방정부의 각종 혜택(benefits), 주나 지방정부의 고용이나 노동조합, 주나 지방의 배심원,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 이나 공기업(common carriers) 또는 극장이나 오락장, 호텔 및 그 밖의 서비스나 여행 제 공업소, 식당 및 음식이나 음료 판매업 등이 포함된다.⁴⁸³⁾ 한편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의 도적으로(willfully)” 범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을 근거로 연방법상 보호되는 활동을 특정적 고의(specific intent)를 가지고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⁴⁸⁴⁾

2) 제245(b)(4) 위반죄의 구성요건

| 원 문 | 번역문 |
|---|--|
| (4) any person because he is or has been, or in order to intimidate such person or any other person or any class of persons from— (a) participating, without discrimination on account of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 in any of the benefits or activities described in subparagraphs (1)(a) through (1)(e) or subparagraphs (2)(a) through (2)(F); or (b) affording another person or class of persons opportunity or protection to so participate; or | (4) 어떤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해왔다는 이유로 또는 그러한 사람이나 집단이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a)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지 않고, (1)(A)부터 (1)(E) 까지 또는 (2)(A)부터 (2)(F)까지 규정되어 있는 혜택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에 참여 (b) 타인 또는 타인의 집단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보호를 제공 |

제245(b)(4)는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지 않고 연방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의 행위에 폭력을 사용하여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⁴⁸⁵⁾ United States v. Griffin 사건에서 법원은 보스턴에서

482) 18 U.S.C. § 245(b)(2); United States v. Nelson, 277 F.3d 164, 189 (2d Cir. 2002).

483) 18 U.S.C. § 245(b)(2).

484) United States v. Makowski, 120 F.3d 1078, 1081 (9th Cir. 1997); United States v. Franklin, 704 F.2d 1183, 1188 (10th Cir. 1983).

485) 18 U.S.C. § 245(b)(4)(A).

버스 통학제에 반대하는 시위대(anti-busing protest)를 향해 차를 몰았다가 시위대에 의해 강제로 차에서 끌려 나온 흑인 남성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제245(b)(4)(A)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였다.⁴⁸⁶⁾

제245(b)(4)(B)는 “다른 사람이나 타인의 집단에게”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람을 폭력으로 방해하거나 그러한 기회를 주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⁴⁸⁷⁾ 동조는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제3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2009년에 법무부는 제245(b)(4)(B)에 따라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역사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에서 보안요원에게 총격을 가한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그 보안요원이 그 박물관에 의해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 및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인종이나 종교와 관계없이 유대인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affording opportunity)을 해 왔다고 보았다.⁴⁸⁸⁾

3) 제245(b)(5) 위반죄의 구성요건

제245(b)(5)는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지 않고 연방법상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미국 시민(citizen)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⁴⁸⁹⁾

| 원 문 | 번역문 |
|---|---|
| (5) any citizen because he is or has been, or in order to intimidate such citizen or any other citizen from lawfully aiding or encouraging other persons to participate, without discrimination on account of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 in any of the benefits or activities described in | (5)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받지 않고, (1)(A)부터 (1)(E)까지 또는 (2)(A)부터 (2)(F)까지 규정되어 있는 혜택이나 활동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정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한 합법적인 표현(speech)이나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하거나 |

486) United States v. Griffin, 525 F.2d 710, 712 (1st Cir. 1975).

487) 18 U.S.C. § 245(b)(4).

488) Indictment, United States v. Weneker, No. 09CR00184, 2009 WL 2342906 (D.D.C. July 30, 2009).

489) 18 U.S.C. § 245(b)(5).

subparagraphs (1)(a) through (1)(e) or subparagraphs (2)(a) through (2)(F), or participating lawfully in speech or peaceful assembly opposing any denial of the opportunity to so participate—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one year, or both; and if bodily injury results from the act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or if such acts include the use, attempted use, or threatened use of a dangerous weapon, explosives, or fire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ten years, or both; and if death results from the act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or if such acts include kidnapping or an attempt to kidnap, aggravated sexual abuse or an attempt to commit aggravated sexual abuse, or an attempt to kill,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for any term of years or for life, or both, or may be sentenced to death.

As used in this section, the term “participating lawfully in speech or peaceful assembly” shall not mean the aiding, abetting, or inciting of other persons to riot or to commit any act of physical violence upon any individual or against any real or personal property in furtherance of a riot. ...

참여해 왔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사람이 참여하도록 합법적으로 지원하거나 격려하지 못하도록 그 시민이나 그 밖의 시민을 협박한 시민은 누구든지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고, 이 장을 위반하여 범한 행위로 인해 신체상해를 가한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 폭발물, 화기(fire)의 이용 또는 그 미수범, 또는 이를 이용하겠다는 협박 행위는 이 장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를 병과하며, 이 장을 위반하여 범한 행위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납치, 납치미수, 가중된 성적 학대(aggravated sexual abuse) 또는 그 미수범 또는 살인미수는 이 장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거나 유기징역(any term of years) 또는 종신형(for life)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하거나 사형에 처한다.

이 장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표현(speech)이나 평화적인 집회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폭동에 조력하거나, 교사하거나 고무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폭동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타인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범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동조는 (1) 미국 ‘시민’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일시 방문한 여행객이나 외국인은 보호되지 않으며, (2) 연방법상 보호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부정하는(denial) 것에 반대하는 표현(speech)이나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 예컨대 학교 내 인종분리 반대를 지지하는 시가행진이나 선거인 명부 등록신청(voter registration)을 권유하기 위해 조직된 시가행진에 참여하는 행위를 보호하며,⁴⁹⁰⁾ (3) 오로지 보호되는

490) 18 U.S.C. § 245(b)(5); United States v. Griffin, 585 F. Supp. 1439, 1441 (M.D.N.C. 1983).

활동을 지지하기 위하여 보호되는 활동, 표현 또는 집회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을 보호하며, 폭동이나 소요(disturbance)에 참여하는 시민은 보호하지 않는다.⁴⁹¹⁾ United States v. Johns 사건에서 법원은 미국 흑인지위향상협회 지부장(NAACP chapter president)의 자택에 총을 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지하면서, 그 지부장을 공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흑인들에게 더 나은 고용과 주거 기회를 보장하려는 미국흑인지위향상협회의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적절하게 분배하려는 노력을 폭력으로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하였다.⁴⁹²⁾

(3)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 of 2009, 18 U.S.C. § 249⁴⁹³⁾

연방 법전 ‘18 U.S.C. § 249’에 규정되어 있는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 of 2009’는 타인의 신체적 특징들을 이유로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에 대한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에 대한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⁴⁹⁴⁾

491) 18 U.S.C. § 245(b)(5).

492) United States v. Johns, 615 F.2d 672, 676 (5th Cir. 1980) (per curiam).

493) 이 법률의 제명인 “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는 미국인들의 전국적 관심을 촉발시킨 2건의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이름에서 가져온 것인데, 매튜 셰퍼드(Matthew Shepard)는 동성애자인 대학생이었고, 제임스 버드 주니어(James Byrd Jr.)는 텍사스에서 인종차별주의자에 의해 공격을 받아 살해된 피해자였다. James Brooke, Gay Man Dies From Attack, Fanning Outrage and Debate, N.Y. Times (Oct. 13, 1998), <https://www.nytimes.com/1998/10/13/us/gay-man-dies-from-attack-fanning-outrage-and-debate.html>; Audra D.S. Burch, In Texas, a Decades-Old Hate Crime, Forgiven but Never Forgotten, N.Y. Times (July 9, 2018), <https://www.nytimes.com/2018/07/09/us/james-byrd-jasper-texas-killing.html>.

494) 18 U.S.C. § 249. (“(a) In general. (1) Offenses involving actual or perceived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 Whoever, whether or not acting under color of law, willfully causes bodily injury to any person or, through the use of fire, a firearm, a dangerous weapon, or an explosive or incendiary device, attempts to cause bodily injury to any person, because of the actual or perceived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 of any person—(a)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10 years, fined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or both; and …”).

| 원 문 | 번역문 |
|---|--|
| <p>(a) In General.—</p> <p>(1) Offenses involving actual or perceived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 Whoever, whether or not acting under color of law, willfully causes bodily injury to any person or, through the use of fire, a firearm, a dangerous weapon, or an explosive or incendiary device, attempts to cause bodily injury to any person, because of the actual or perceived race, color, religion, or national origin of any person—</p> <p>(a) shall be imprisoned not more than 10 years, fined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or both; and</p> <p>(b) shall be imprisoned for any term of years or for life, fined in accordance with this title, or both, if —</p> <p>(i) death results from the offense; or</p> <p>(ii) the offense includes kidnapping or an attempt to kidnap, aggravated sexual abuse or an attempt to commit aggravated sexual abuse, or an attempt to kill.</p> | <p>(a) 총론</p> <p>(1) 실제의 또는 인식된(perceived)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으로 인한 범죄 —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실제의 또는 인식된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법 집행 행위인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의도적으로 그 타인에게 신체 상해를 가하거나 화기, 총기, 위험한 무기 또는 폭발물이나 방화기구(incendiary device)를 이용하여 신체 상해를 가한 자는</p> <p>(a) 10년 이하의 징역, 이 장에 따른 벌금 또는 양자를 병과하고,</p> <p>(b) 이 장에 따라 유기징역(any term of years) 또는 종신형(for life)에 처하거나 벌금형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한다.</p> <p>(i) 그러한 범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p> <p>(ii) 납치, 납치미수, 가중된 성적 학대 (aggravated sexual abuse) 또는 그 미수범 또는 살인미수의 경우에는</p> |

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연방 혐오범죄처벌법은 제245조였는데, 피해자가 ‘연방법상 보호되는 활동(federally protected activity)’에 참여하였거나(또는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적이 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참여하도록 돕던 중이었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⁴⁹⁵⁾ 이러한 제한된 적용범위로 인해 제245조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었다.⁴⁹⁶⁾

이와 달리 제249조는 3가지 측면에서 혐오범죄에 대한 연방의 관할권을 확대하였는데, 동법은 (1) 피해자가 다른 연방 법률에 명시된 연방법상 보호되는 권리와 관련이 있을

495) H.R. REP. NO. 111-86, at 6 (2009).

496) Sara Sun Beale, Federalizing Hate Crimes: Symbolic Politics, Expressive Law, or Tool for Criminal Enforcement?, 80 B.U.L.Rev. 1227, 1238 (2000).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⁴⁹⁷⁾ (2) “실제의 또는 인식된(actual or perceived)”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타겟이 된 피해자들에게까지 보호를 확대하였다는 점을 법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인종과 같은 특정한 신체 특징을 이유로 범죄를 범하였으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⁴⁹⁸⁾ (3)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으로 타겟이 된 사람들도 보호함으로써 다른 연방 혐오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들도 보호영역을 확대하였다.⁴⁹⁹⁾

동 법률은 제정된 이후, 인종적 편견을 가진 폭행,⁵⁰⁰⁾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을 가진 납치 및 폭행⁵⁰¹⁾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감금⁵⁰²⁾을 비롯한 차별적인 동기를 가진 다양한 범죄를 소추하는데 적용되었다. 연방 검찰은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톤에 있는 임마누엘 아프리카 감리교 교회(Emanue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⁵⁰³⁾와 2018년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 있는 유대교 회당(Tree of Life Synagogue)에서의 총기사건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건들에 제249조를 적용해 왔다.⁵⁰⁴⁾

497) 18 U.S.C. § 249.

498) 미국 연방 법무부는 유대인이라고 착각하고 공격한 남성을 기소하는데 제249조를 적용하였다. Press Release, U.S. Department of Justice, Ohio Man Convicted of Hate Crime in Attack Outside Cincinnati Restaurant, <https://www.justice.gov/opa/pr/ohio-man-convicted-hate-crime-attack-outside-cincinnati-restaurant>.

499) Hate Crime Laws, U.S. Department of Justice, <https://www.justice.gov/crt/hate-crime-laws>.

500) Press Release, U.S. Dep’t of Justice, California Man Convicted with Federal Hate Crime for Attempting to Stab Black Man, <https://www.justice.gov/opa/pr/california-man-convicted-federal-hate-crime-attempting-stab-black-man>.

501) Press Release, U.S. Dep’t of Justice, Two Harlan County, Kentucky, Men Indicted for Federal Hate Crime Against Individual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 <https://www.justice.gov/opa/pr/two-harlan-county-kentucky-men-indicted-federal-hate-crime-against-individual-because-sexual>.

502) Press Release, U.S. Dep’t of Justice, Federal Charges Allege Captors Held Adults with Disabilities in Subhuman Conditions to Carry out Social Security Fraud, <https://www.justice.gov/opa/pr/federal-charges-allege-captors-held-adults-disabilities-subhuman-conditions-carry-out-social>.

503) United States v. Roof, 225 F. Supp. 3d 438, 441 (D.S.C. 2016).

504) Superseding Indictment, United States v. Bowers, No. 18-292, 2019 WL 720160 (W.D. Pa. Jan. 29, 2019).

제7절 영국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1. 개요

영국은 2022년 3월 17일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내의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만 유해한(legal but harmful) ‘유해 콘텐츠’로부터도 아동 및 성인 이용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서비스 내 업로드 및 공유하는 ‘이용자 제작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의 예방적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⁵⁰⁵⁾

이 법안은 이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새로운 디지털 시대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소셜 미디어 포함)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 표시, ② 음란물과 같은 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 보호, ③ 불법 콘텐츠에 대한 노출 제한, ④ 언론의 자유 보호.⁵⁰⁶⁾

또한 Ofcom⁵⁰⁷⁾은 규제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⁵⁰⁸⁾

- ①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관행을 개선하고 비준수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
- ③ 협조하지 않는 경영진이 법안 제정 후 2개월 이내에 기소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2년 발의된 법안은 2021년 5월 초안 이후에 일부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온라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조치로 소셜 미디어 및 검색 엔진에 유료 사기광고(paid-for scam adverts)를 게재하도록 함. ② 상업적 사이트를 포함

505) 김지현,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90호, 국회도서관, 2022, 1면.

506)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rld-first-online-safety-laws-introduced-in-parliament>(최종접속일: 2023. 11. 12.).

507) 영국의 방송 통합 규제기구인 커뮤니케이션청(Office of Communications).

508)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rld-first-online-safety-laws-introduced-in-parliament>(최종접속일: 2023. 11. 12.).

하여 모든 웹사이트에서 이용자가 18세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강력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③ 익명의 트롤을 단속하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어를 강화함. ④ 기업이 유해한 불법 콘텐츠 및 범죄 활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함. ⑤ 법안을 통해 사이버 플래싱(cyberflashing)⁵⁰⁹⁾을 범죄화한다.⁵¹⁰⁾ 이 법안은 영국 의회 양원을 통과하였고 2023년 10월 26일 국왕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으로 제정되었다.

온라인 안전법은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즉 다음 주체에게 법적 요건을 부과한다. 다른 이용자가 생성, 업로드 또는 공유하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간 서비스’), 이용자가 여러 웹 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의 제공자(‘검색 서비스’) 및 공급자 포르노 콘텐츠(이용자가 생성하지 않은 공급자가 게시한 포르노 콘텐츠)가 게시되거나 표시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이다.⁵¹¹⁾ 이 법은 영국 Ofcom에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이 역할에는 새로운 규제체제를 감독하고 시행하는 일이 포함된다.⁵¹²⁾

2. 가짜뉴스에 대한 규율내용의 미비에 관한 논쟁

온라인 안전법은 가짜뉴스(disinformation 또는 misinformation)에 관해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동법은 영국을 온라인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대중을 취약하게 만들고 온라인 피해에 노출시킨다고 한다. 동법에는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와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조항이 없다. 잘못된 정보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Ofcom에 조언하기

509)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이란 음란한 사진을 온라인으로 낚선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종종 장치 간 Bluetooth 또는 AirDrop 전송을 통해 전송됩니다. 이 용어의 첫 번째 주류 신조어는 2015년 8월 13일경에 발생했습니다.

510)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rld-first-online-safety-laws-introduced-in-parliament>(최종접속일: 2023. 11. 12.).

511)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

51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

위한 위원회 설립에 관한 것뿐이다(제152조).⁵¹³⁾

기존 안에서는 기업이 서비스 약관에서 해결해야 하는 우선 유해 콘텐츠 목록에 잘못된 건강 정보를 포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법안의 성안 과정에서 성인에 대한 안전 의무와 보호를 삭제하였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어떤 콘텐츠가 서비스 약관에 포함되는지 결정하고 해당 서비스 약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인터넷 기업에 맡기게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결정을 의회나 독립 규제기관이 아닌 플랫폼의 손에 맡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⁵¹⁴⁾

동법은 (해외 간섭 범죄가 아닌 한) 선거 허위정보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규정하지도 않는다. 즉 가짜정보에 대한 모든 사람의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Ofcom의 새로운 미디어 활용 의무에 대한 기존의 계획을 폐기하였다.⁵¹⁵⁾

3. 정책의 배경

인터넷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온라인 콘텐츠의 보급 및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함께 음란물 등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⁵¹⁶⁾ 리서치 및 여론조사에서도 플랫폼이 자체 약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의 불만 사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가 부각되었다.⁵¹⁷⁾

(1)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기존 규정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국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이용자 간 및 검색 서비스에 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안전과 관련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았다.⁵¹⁸⁾ 영국에서 사용되는 제한된 수의 이용자 간 서비스에는 2003년 통신법 제4B조('VSP 체제')에 명시

513) <https://fullfact.org/about/policy/online-safety-bill>(최종접속일: 2023. 11. 12.).

514) <https://fullfact.org/about/policy/online-safety-bill>(최종접속일: 2023. 11. 12.).

515) <https://fullfact.org/about/policy/online-safety-bill>(최종접속일: 2023. 11. 12.).

51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3.

51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

51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

된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도가 적용된다. 비디오 공유 플랫폼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고 영국과 필수 연결이 있는 서비스만 범위에 포함된다.⁵¹⁹⁾

VSP 체제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⁵²⁰⁾

- a. 성별, 인종, 피부색, 인종 또는 사회적 기원,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믿음, 정치적 의견, 소수민족 가입, 장애, 나이 및 성적 성향을 포함한 특정한 이유로 사람에 대한 폭력 또는 증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비디오 및 광고로부터 대중을 보호한다.
- b. 테러, 아동 성학대 자료, 인종차별 및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해당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형사 범죄가 될 수 있는 비디오 또는 광고의 자료로부터 대중을 보호한다.
- c. R18 인증서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영국 영화 분류 위원회의 인증서를 받았거나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는 비디오 및 광고로부터 18세 미만을 보호한다.
- d. 신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발달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된 비디오 및 광고로부터 18세 미만을 보호한다.

VSP 체제는 개별 비디오의 내용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지 않는다.⁵²¹⁾

Ofcom은 VSP 체제하에서 비디오 공유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 준수를 강제할 책임이 있다. Ofcom은 집행 통지(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설정할 수 있음)를 하고, 최대 250,000파운드 또는 적격 수익의 5% 중 큰 금액의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정 상황에서 Ofcom은 서비스를 중단 및/또는 제한할 수도 있다.⁵²²⁾

(2) 온라인 유해 백서

2019년 4월 발간된 온라인 유해 백서는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밝혔다. 이 목표는 기업에 대한 새로운 주의 의무와 온라인 안전 프레임워크를 감독하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51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

52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

521)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

52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9.

제안되었다. 백서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비례적이고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하며, 주의 의무는 범위 내의 모든 기업이 유해 콘텐츠를 해결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⁵²³⁾

백서 제안에 대한 공개 협의는 2019년 4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되었다. 기술 산업(대규모 기술 대기업 및 중소기업 포함), 기업, 학계, 싱크탱크, 아동 자선 단체, 인권 단체, 출판사, 정부 조직 및 개인에 이르기까지 2,400개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⁵²⁴⁾

2020년 2월, 정부는 백서 제안과 관련하여 질문된 18개의 상담 질문 각각에 대한 응답을 심층 분석하여 상담에 대한 초기 응답을 발표했다. 응답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 여러 주요 분야에서 정부의 이행 방향을 제시했다:⁵²⁵⁾

- a. 새로운 규제체계가 안전장치를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 b. 불법적이고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물질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방법
- c. 제안된 범위에 포착되지 않을 사람을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요구사항이 비례적이고 위험 기반적인 방법
- d. 아동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 e. 정부가 Ofcom을 새로운 규제기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2020년 12월, 온라인 안전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정책 입장과 온라인 안전법을 통한 정부의 법적 봉안 의도를 설명하는 협의에 대한 정부의 전체 응답이 발표되었다. 응답은 다음의 7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졌다.⁵²⁶⁾

- a. 1부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서비스가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호스팅하거나 이용자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회사에 적용될 것이며, 그 중 하나 이상이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검색 엔진에도 적용될 것으로 언급되었다.
- b. 2부에서는 주의 의무가 적용되는 유해한 내용과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범위에 있는 모든 회사가 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위해 위험을 이해하고 이용자 안전을 개선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과 프로

523)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0.

524)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1.

525)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2.

52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3.

세스를 구축해야 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 c. 3부는 Ofcom이 규제기관으로 임명될 것임을 확인하고 규제 기능과 자금 지원의 개요를 설명했다.
- d. 4부에서는 실무강령, 집행 권한 및 이용자 재조정 메커니즘을 설정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규제기관이 제안한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 e. 5부에서는 온라인 피해에 대처하는 기술, 교육 및 인식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 f. 6부에서는 정부의 디지털 전략의 일부를 포함하여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가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환경에 어떻게 적합할 것인지 설명했다.
- g. 7부에서는 온라인 안전법의 예상 시기를 포함하여 규제의 다음 단계를 제시했다.

(3) 임시행동강령

정부는 정부의 완전한 대응과 함께 테러리스트 콘텐츠와 아동 성 착취 및 학대(CSEA) 콘텐츠를 다루는 두 가지 임시 행동 강령을 온라인에 발표했다. 이 임시강령들은 Ofcom이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여 행동 강령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가 온라인에서 제공자들이 가장 심각한 범주의 유해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규정한다.⁵²⁷⁾

(4) 투명성 보고에 관한 정부 보고서

온라인 해악과 관련하여 투명성 보고에 대한 첫 번째 정부 보고서가 정부의 완전한 대응과 함께 발표되었다. 이는 2019년 10월에 설립된 다중 이해 관계자 투명성 작업 그룹의 새로운 온라인 해악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투명성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⁵²⁸⁾

(5) 입법 전 정밀조사

2021년 5월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이 초안으로 발표되었다. 데미안 콜린스(Damian Collins)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 및 동료의원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52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4.

52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5.

of MPs and Peer)가 입법 사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2021년 7월 23일 설립되었다. 공동 위원회는 50명 이상의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200개 이상의 서면 증거를 받았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10일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⁵²⁹⁾

정부는 2022년 3월 17일 보고서에 응답하여 도입 당시 이 법에 다음과 같은 많은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⁵³⁰⁾

- a. 2차 법안이 아닌 1차 법안에 우선적 범죄를 포함시키는 것
- b. 모든 온라인 음란물 제공자가 법의 범위에 있음을 의미하는 비이용자 생성 음란물에 대한 새로운 독립형 조항을 포함하는 것
- c. 새로운 온라인 통신범죄에 대한 법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것
- d. 왕실 승인 후 3개월 후에 시작되도록 고위 관리자 책임 위반을 개정하는 것
- e. 카테고리⁵³¹⁾ 제공자에 대하여 선택적 이용자 확인 및 이용자 권한 부여 도구를 해당 사이트에 제공하는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것
- f. 카테고리1 및 카테고리2A 제공자가 온라인상에서 부정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것
- g. 지정되지 않은 유해 콘텐츠의 정의를 단순화하고, 카테고리1 제공자가 2차 입법에서 지정된 합법적이지만 성인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범주만을 다루도록 하는 것

(6) 온라인 안전법

이 법은 다음 주체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부과하고 있다.⁵³²⁾

- a. 다른 이용자가 생성, 업로드 또는 공유하는 콘텐츠, 즉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이용자 간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자
- b. 이용자가 여러 웹 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엔진의 제공자(‘검색 서비스’)
- c. 포르노 콘텐츠가 게시되거나 표시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52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6.

53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7.

531) 카테고리1 서비스는 추가적인 의무가 적용되는 이용자 간 서비스의 하위 개념이다.

53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8.

이 법은 규제를 받는 이용자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⁵³³⁾

- a. 서비스에 존재하는 이용자의 위해 위험을 평가한다.
- b. 불법 콘텐츠 및 활동, (어린이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 및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에 대한 위해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제공자는 우선 범죄의 위탁 또는 촉진을 위해 서비스가 사용되는 위험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를 설계 및 운영해야 한다.
- c. 이용자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특정 유형의 콘텐츠와 활동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 d. 특정 유형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이용하기 쉬운 민원처리 절차를 수립한다.
- e. 안전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할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용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사생활에 대한 법적 권리 침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 f. 감지되었지만 보고되지 않은 CSEA 내용이 NCA에 보고되도록 설계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배치한다.

국무장관이 지정한 카테고리1의 임계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간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 추가적인 법적 요구사항을 적용받는다.⁵³⁴⁾

- a.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 카테고리1의 임계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간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약관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하거나 제한하거나 이용자를 금지하거나 일시 중단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b. 안전 정책 및 절차가 뉴스 게시자 및 저널리즘 콘텐츠에 대한 접근 및 취급,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용자의 법적 권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입증한다.

533)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9.

534)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0.

- c.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사생활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공개 성명서에 명시한다.
- d. 민주적으로 중요한 내용의 자유로운 표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 및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 e. 이러한 콘텐츠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저널리즘 콘텐츠의 자유로운 표현의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 f.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조정하거나 계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인된 뉴스 게시자에게 통지하고 반론권을 제공한다.
- g. 특정 기사내용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및 신속한 민원처리 절차를 마련한다.
- h. 사이트에 있는 성인에게 선택적인 이용자 확인 및 이용자 권한 부여 도구를 제공하고, 등록된 성인 이용자에게 이용자 권한 부여 콘텐츠 도구를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첫 번째 기회에 사전에 질문한다.
- I. 이용자가 부정 광고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카테고리2A의 임계 조건을 충족하는 검색 서비스는 연간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용자가 부정 광고를 접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⁵³⁵⁾

카테고리1, 2A 및 2B 서비스는 또한 사망한 아동 이용자의 부모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 조건 또는 공개 성명서에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의무와 관련하여 불만해결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⁵³⁶⁾

이 법은 Ofcom에게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 그것들을 확립하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Ofcom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부과된 법적 요구사항들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이 법은 Ofcom에게 범위 내 제공자들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범위 내 제공자의 개인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진입과 감사의 권한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숙련된 사람으로부터 보고서를 수행하고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535)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1.

53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2.

을 부여한다. Ofcom은 또한 아동의 사망과 관련하여 정보를 요구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시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⁵³⁷⁾

이 법은 규제를 받는 이용자간 및 검색 서비스가 CSEA 및 테러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해 공인된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하고 비례적인 경우 CSEA 콘텐츠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소스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Ofcom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⁵³⁸⁾

또한 Ofcom에 부여된 새로운 권한에는 집행 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위반 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설정할 수 있음)과 최대 1,800만 파운드 또는 전 세계 적격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재정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Ofcom은 특정 상황에서 공급자에게 업무 중단 조치를 부과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⁵³⁹⁾

이 법은 Ofcom이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며, 제공자가 위에서 설명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권장 단계를 제시한다. 제공자는 행동강령에서 권장하는 조치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공자가 해당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행동강령에서 권장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제공자는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취급된다.⁵⁴⁰⁾

또한 이 법은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연령 확인이나 연령 추정(또는 둘 다)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해당 음란물을 정상적으로 접할 수 없도록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⁵⁴¹⁾

이 법은 허위 통신 범죄와 위협적인 통신 범죄의 처벌규정을 둔다. 그것은 또한 이를 반영하기 위해 1988년 악의적인 통신법, 1988년 악의적인 통신 (북아일랜드) 명령, 그리고 2003년 통신법 제127조의 기존의 통신 범죄들을 개정한다. 또한 사이버플래시 범죄, 뇌전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자적으로 이미지를 보내거나 보여주는 범죄, 그리고 심각한 자해를 조장하거나 돕는 범죄를 만듭니다. 이는 또한 2003년 성범죄법에 새로운 친밀한 이미지

53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3.

53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4.

53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5.

54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6.

541)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7.

남용 범죄를 삽입한다.⁵⁴²⁾

4. 법적 배경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전에 온라인 서비스 규제에 대한 법적 체계는 주로 'EU 전자상거래 지침'(eCD)에 명시되었다. eCD는 투명성과 정보 요구사항, 회원국 간 협력을 위한 규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 그들이 서비스를 주최하는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중개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체계를 상세히 설명했다.⁵⁴³⁾

eCD는 '제공자가 불법 활동이나 정보에 대한 실제 지식이 없고 ... 불법 활동이나 정보가 명백한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회원국이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 수신자가 제공한 정보의 저장으로 구성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 제한은 제공자가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그것을 제거하는 것에 달려 있다. eCD 제15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내용을 감시하거나 불법행위를 나타내는 사실 또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⁵⁴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 영국은 더 이상 eCD의 규정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⁵⁴⁵⁾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규정 2020은 EU의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AVMSD)을 영국법으로 전치시켰다. AVMSD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주요 특징은 이용자가 (동영상의 내용에 대한 편집권이 없는 플랫폼에서) 대중의 구성원과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VSP 프레임워크를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커뮤니케이션 법 2003의 Part 4B로 전치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현행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설명되어 있다.⁵⁴⁶⁾

기타 관련 법안으로는 2017년 디지털 경제법("DEA")이 있다. DEA 제103조는 소셜 미디어

54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8.

543)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29.

544)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30.

545)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31.

54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32.

제공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괴롭힘, 모욕, 위협 및 굴욕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실천 강령을 국무장관이 발표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천 강령은 2019년 4월 8일에 발표되었다. DEA 3부는 아동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상업용 포르노 웹사이트에 대해 법적 요건을 제시했다. 이 법은 2017년 4월에 왕실의 동의를 받았지만 3부는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10월에 2017년 법 3부를 시행하지 않고 대신 3부를 폐지하고 온라인 해악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목표를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3부는 온라인 안전법 제212조에 의해 폐지되었다.⁵⁴⁷⁾

Ofcom은 영국의 통신에 대한 독립적인 규제기관이다. 그들의 권한은 광대역통신과 통신, TV, 라디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및 우편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다. 그들은 또한 라디오 스펙트럼의 효과적인 사용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⁵⁴⁸⁾

Ofcom은 2002년 커뮤니케이션실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Ofcom은 법정 법인이며, 이들의 지배구조 정리는 2002년 커뮤니케이션법에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Ofcom은 인권과 양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1998년 인권법에 따라) 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기타 법적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⁵⁴⁹⁾

Ofcom의 권한은 2003년 통신법과 2006년 무선전신법, 그리고 1990년과 1996년 방송법, 그리고 2011년 우편사업법을 포함한 다른 제정법에 있다. 이 법은 2003년 통신법 제3조에 규정된 Ofcom의 일반적인 의무를 온라인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연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⁵⁵⁰⁾

5. 법령의 규정에 관한 해설

이 법은 12개의 부분으로 나뉜다:⁵⁵¹⁾

a. 파트 1은 소개 섹션과 개요 섹션을 포함하며 이 법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한다.

54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33.

54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34.

54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35.

55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36.

551)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7.

- b. 제2부에는 법이 적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 c. 제3부는 규제를 받는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Ofcom이 그 의무와 관련된 실천 강령을 발행하도록 요구한다.
- d. 제4부는 이용자 신원 확인, CSEA 콘텐츠 및 투명성 보고와 관련된 규제를 받는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 e. 제5부는 공급자의 포르노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규제를 받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 f. 제6부는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 g. 제7부는 Ofcom의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다.
- h. 제8부는 규제 서비스와 관련된 항소 및 불만 절차를 규정한다.
- i. 제9부는 규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의 기능을 규정한다.
- j. 제10부에서는 새롭게 업데이트된 통신 범죄에 대해 설명한다.
- k. 제11부와 제12부는 기타 조항과 일반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규제 대상 서비스의 제공자, 이용자, 인터넷 서비스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6. 법안의 주요 내용

(1) 기본사항

| 원 문 | 번역문 |
|--|--|
| PART 1 Introduction | 제1부 도입 |
| 1 Introduction | 제1조 일반 |
| (1) This Act provides for a new regulatory framework which has the general purpose of making the use of internet services regulated by this Act safer for individuals in the United Kingdom. | (1) 본 법은 영국 내의 개인이 본 법에 의해 규제되는 인터넷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제공한다. |
| (2) To achieve that purpose, this Act (among | (2)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은 (무엇보 |

| | |
|---|--|
| <p>other things)—</p> <p>(a) imposes duties which, in broad terms, require providers of services regulated by this Act to identify, mitigate and manage the risks of harm (including risks which particularly affect individuals with a certain characteristic) from —</p> <p>(i) illegal content and activity, and</p> <p>(ii) content and activity that is harmful to children, and</p> <p>(b) confers new functions and powers on the regulator, OFCOM.</p> <p>(3) Duties imposed on providers by this Act seek to secure (among other things) that services regulated by this Act are —</p> <p>(a) safe by design, and</p> <p>(b) designed and operated in such a way that—</p> <p>(i) a higher standard of protection is provided for children than for adults,</p> <p>(ii) user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are protected, and</p> <p>(iii)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re provided in relation to those services.</p> | <p>다도) —</p> <p>(a) 넓은 의미에서 이 법에 의해 규제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다음으로부터 피해 위험(특정한 성질을 가진 개인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 포함)을 식별, 완화 및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p> <p>(i) 불법 콘텐츠 및 활동, 그리고</p> <p>(ii)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 및 활동,</p> <p>(b) 규제기관인 OFCOM에 새로운 기능과 권한을 부여한다.</p> <p>(3) 본 법에 따라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무엇보다도) 본 법에 의해 규제되는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보장하는 것이다.</p> <p>(a) 설계상 안전하며,</p> <p>(b)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 및 운영된다는 것.</p> <p>(i) 성인보다 어린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제공된다.</p> <p>(ii) 표현의 자유와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된다.</p> <p>(iii)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공된다.</p> |
|---|--|

본 조에서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일반적인 목적과 범위 내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주요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 법이 Ofcom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감독하는 규제자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⁵⁵²⁾

| 원 문 | 번역문 |
|---|--|
| <p>2 Overview of Act</p> <p>(1) Parts 2 to 9 and 11 and 12 of this Act contain provision about the regulation by OFCOM of certain internet services.</p> <p>(2) Part 2 contains key definitions, including</p> | <p>제2조 본법의 개요</p> <p>(1) 본법의 제2~9부, 제11~12부는 특정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OFCOM의 규제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다.</p> <p>(2) 제2부에는 이용자 간 서비스, 검색 서비</p> |

55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8.

| | |
|--|---|
| <p>the definition of a user-to-user service, a search service, a Part 3 service and a regulated service.</p> <p>(3) Part 3 imposes duties of care on providers of user-to-user services and search services and requires OFCOM to issue codes of practice about those duties.</p> <p>(4) Part 4 imposes further duties on providers of user-to-user services and search services.</p> <p>(5) Part 5 imposes duties on providers of internet services (including user-to-user services and search services) that publish certain pornographic content.</p> <p>(6) Part 6, which imposes requirements to pay fees to OFCOM, applies to providers of internet services to which the duties in Part 3, 4 or 5 apply (“regulated services”).</p> <p>(7) Part 7 is about OFCOM’s powers and duties in relation to regulated services (including powers to obtain information and enforcement powers).</p> <p>(8) Part 8 is about appeals and complaints relating to regulated services.</p> <p>(9) Part 9 is about the Secretary of State’s functions in relation to regulated services.</p> <p>(10) Part 10 contains communications offences.</p> <p>(11) Parts 11 and 12 contain supplementary provisions including an index of terms defined in this Act (see section 237).</p> | <p>스, 제3부의 서비스 및 규제 서비스의 정의를 포함한 주요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p> <p>(3) 제3부는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OFCOM 이 이러한 의무에 관한 실천 강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한다.</p> <p>(4) 제4부는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 의무를 부과한다.</p> <p>(5) 제5부는 특정 포르노 콘텐츠를 게시하는 인터넷 서비스(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 포함)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p> <p>(6) OFCOM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요건을 부과하는 제6부는 제3부, 제4부 또는 제5부의 의무가 적용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규제 서비스”)에 적용된다.</p> <p>(7) 제7부는 규제 대상 서비스(정보 획득 권한 및 집행 권한 포함)와 관련된 OFCOM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것이다.</p> <p>(8) 제8부는 규제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항소 및 불만 사항에 관한 것이다.</p> <p>(9) 제9부는 규제 대상 서비스와 관련된 국무장관의 기능에 관한 것이다.</p> <p>(10) 제10부에는 통신범죄가 포함되어 있다.</p> <p>(11) 제11부와 제12부는 본 법에 정의된 용어 색인을 포함한 보충 조항을 포함한다(제237조 참조).</p> |
|--|---|

본 조는 이 법의 여러 부분의 주제에 대해 설명한다.⁵⁵³⁾

| 원 문 | 번역문 |
|-----------------------------------|----------------------|
| <p>PART 2 Key definitions</p> | <p>제2부 주요 정의</p> |

553)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9.

| | |
|--|---|
| <p>3 “User-to-user service” and “search service”</p> <p>(1) In this Act “user-to-user service” means an internet service by means of which content that is generated directly on the service by a user of the service, or uploaded to or shared on the service by a user of the service, may be encountered by another user, or other users, of the service.</p> <p>(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p> <p>(a) it does not matter if content is actually shared with another user or users as long as a service has a functionality that allows such sharing;</p> <p>(b) it does not matter what proportion of content on a service is content described in that subsection.</p> <p>(3) For the meaning of “content” and “encounter”, see section 236.</p> <p>(4) In this Act “search service” means an internet service that is, or includes, a search engine (see section 229).</p> <p>(5) Subsections (6) and (7) have effect to determine whether an internet service that —</p> <p>(a) is of a kind described in subsection (1), and</p> <p>(b) includes a search engine, is a user-to-user service or a search servic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p> <p>(6) It is a search service if the only content described in subsection (1) that is enabled by the service is content of any of the following kinds —</p> <p>(a) content mentioned in paragraph 1, 2 or 3 of Schedule 1 (emails, SMS and MMS messages, one-to-one live aural communications) and related identifying content;</p> | <p>제3조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서비스”</p> <p>(1) 본법에서 “이용자 간 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상에서 직접 생성하거나, 이용자가 서비스 상에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다른 이용자 또는 서비스의 다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다.</p> <p>(2) (1)항의 목적상,</p> <p>(a) 서비스에 그러한 공유를 허용하는 기능이 있는 한 콘텐츠가 실제로 다른 이용자와 공유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p> <p>(b) 서비스 콘텐츠 중 해당 하위 섹션에 설명된 콘텐츠의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p> <p>(3) “내용”과 “접촉”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 236조를 참조.</p> <p>(4) 본법에서 “검색 서비스”는 검색 엔진이거나 검색 엔진을 포함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의미한다(제229조 참조).</p> <p>(5) 제(6)항 및 제(7)항은 다음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p> <p>(a) (1)항에 기술된 종류의 것, 그리고</p> <p>(b) 검색 엔진을 포함하며, 본 법의 목적에 따른 이용자 간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p> <p>(6) 서비스에 의해 활성화되는 제(1)항에 설명된 유일한 콘텐츠가 다음 종류의 콘텐츠인 경우 검색 서비스이다.</p> <p>(a) 별표 1의 1, 2 또는 3항에 언급된 콘텐츠(이메일, SMS 및 MMS 메시지, 일대일 실시간 음성 통신) 및 관련 식별 콘텐츠.</p> |
|--|---|

| | |
|---|--|
| <p>(b) content arising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activities described in paragraph 4(1) of Schedule 1 (comments etc on provider content);</p> <p>(c) content present on a part of the service in relation to which the conditions in paragraph 7(2) of Schedule 1 are met (internal business service conditions).</p> <p>(7) Otherwise, it is a user-to-user service.</p> | <p>(b) 별표 1의 4(1)항에 설명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콘텐츠(제공자 콘텐츠에 대한 의견 등).</p> <p>(c) 별표 1의 7(2)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서비스의 일부(내부 비즈니스 서비스 조건)에 존재하는 콘텐츠.</p> <p>(7) 그 외의 경우에는 이용자 간 서비스이다.</p> |
|---|--|

본 조에서는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한다.⁵⁵⁴⁾ (1)항은 이용자 간 서비스를 해당 서비스에서 다른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 업로드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로 정의한다. (2)항은 서비스가 이러한 공유를 허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 서비스에서 다른 이용자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경우 이 정의의 목적에 상관이 없음을 명시한다. 또한 서비스의 콘텐츠 중 이용자가 생성한 콘텐츠의 비율은 중요하지 않다.⁵⁵⁵⁾

(4)항은 검색 서비스가 인터넷 서비스라고 또는 검색엔진을 포함하는 인터넷 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29조에 따르면, ‘검색 엔진’은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웹사이트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또는 기능으로서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⁵⁵⁶⁾

(5)항부터 (7)항까지에서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검색 엔진을 포함하는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자 간 서비스가 될 것인지 또는 검색 서비스가 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다. 서비스에 의해 가능하게 된 이용자 제작 콘텐츠가 이 법의 별표 1의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종류의 콘텐츠인 경우 그것은 검색 서비스가 될 것이다. 검색 서비스가 다른 형태의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용자 간 서비스가 될 것이다.⁵⁵⁷⁾

별표 1에서는 적용 제외되는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즉, 어

554)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0.

555)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1.

55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2.

55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3.

편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가 규제 의무로부터 면제되는지 규정한다. 제4조 (2)(b)(i)항(‘규제 서비스’, ‘제3부 서비스’ 등)은 이 부칙에 규정된 서비스는 규제되는 이용자 간 서비스 또는 규제되는 검색 서비스가 아니라고 명시한다.⁵⁵⁸⁾

서비스에 의해 활성화된 유일한 유형의 이용자 생성 콘텐츠가 각각 이메일, SMS 및 / 또는 MMS 메시지(제55(1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일대일 라이브 오디오 통신(제 55(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인 경우 그 서비스는 제외된다.⁵⁵⁹⁾ 제한된 기능성 서비스의 제외에 따라, 이용자 간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제외된다.⁵⁶⁰⁾

- a. 제공자 콘텐츠(서비스 제공자가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서비스에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의견 또는 리뷰 게시.
- b.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러한 의견이나 리뷰를 공유하는 것.
- c. (i) ‘좋아요’ 또는 ‘싫어요’ 버튼, (iii) 이모티콘 또는 기호 적용, (iii) 예/무투표 또는 (iv) 제공자 콘텐츠 또는 의견이나 리뷰에 대한 등급이나 점수 부여를 통해 제공자 콘텐츠에 대한 의견이나 리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
- d. 이러한 활동들 중 임의의 것과 관련하여 식별 콘텐츠(예를 들어, 이용자 이름 또는 아바타)를 디스플레이하거나 제작하는 것.

이는 미디어 기사의 ‘선 이하’ 콘텐츠 또는 직접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리뷰 등 유일한 이용자 상호 작용인 서비스를 제외한다. 추가 이용자 간 기능도 포함하는 모든 서비스는 규제 범위로 유지된다.⁵⁶¹⁾ 이용자 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이용자 생성 콘텐츠가 이메일, SMS/MMS 메시지, 일대일 라이브 오디오 통신 또는 제공자 콘텐츠와 관련된 논평 및 리뷰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⁵⁶²⁾

‘내부 비즈니스 서비스’도 면제된다. 이 면제 대상에는 비즈니스 인트라넷, 생산성 및 협업 도구, 콘텐츠 관리 시스템,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55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0.

55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1.

56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2.

561)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3.

56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4.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내부 비즈니스 서비스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별표 1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용자 간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의 일부만을 구성하는 내부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면제에 관한 세부 사항도 규정한다.⁵⁶³⁾

특정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일부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는 규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면제 대상에는 의회 및 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영국의 공공 당국 및 영국 외의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되며, 해당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의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⁵⁶⁴⁾ 교육 또는 보육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이용자 간 또는 검색 서비스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며, 이는 이러한 서비스가 교육 및 보육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이다.⁵⁶⁵⁾ 많은 교육 및 보육 제공자들은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기존의 보호 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이 면제는 목록에 있는 교육 및 보육 제공자들이 영국 전역의 교육에 대한 Ofcom 및 관련 감독기관의 감독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⁵⁶⁶⁾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의 경우 이용자 간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가 면제된다고 명시한다.⁵⁶⁷⁾

- a. 교육 또는 보육에 대한 책임자(예: 영국의 유지되는 학교의 관리 기관).
- b.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교육 또는 보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되거나 종사하는 자로서, 예를 들어 영국의 독립된 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고용된 교사.

위 책임자가 교육 또는 보육을 보장할 고도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예를 들어 정부 부처 장관)가 아닌 관련 교육 또는 보육 제공에 대한 일상적인 책임을 지는 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람’에는 (개인 및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 외에) 모든 사람들의 단체 또는 협회를 포함한다.⁵⁶⁸⁾

563)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6.

564)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7.

565)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8.

56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9.

56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0.

56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1.

| 원 문 | 번역문 |
|--|--|
| <p>4 “Regulated service”, “Part 3 service” etc</p> <p>(1) This section applies for the purposes of this Act.</p> <p>(2) A user-to-user service is a “regulated user-to-user service”, and a search service is a “regulated search service”, if the service —</p> <p>(a) has links with the United Kingdom (see subsections (5) and (6)), and</p> <p>(b) is not —</p> <p>(i) a service of a description that is exempt as provided for by Schedule 1, or</p> <p>(ii) a service of a kind described in Schedule 2 (services combining user-generated content or search content not regulated by this Act with pornographic content that is regulated).</p> <p>(3) “Part 3 service” means a regulated user-to-user service or a regulated search service.</p> <p>(4) “Regulated service” means —</p> <p>(a) a regulated user-to-user service,</p> <p>(b) a regulated search service, or</p> <p>(c) an internet service, other than a regulated user-to-user service or a regulated search service, that is within section 80(2) (including a service of a kind described in Schedule 2).</p> <p>(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a user-to-user service or a search service “has links with the United Kingdom” if</p> <p>(a) the service has a significant number of United Kingdom users, or</p> <p>(b) United Kingdom users form one of the target markets for the service (or the only target market).</p> <p>(6)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a</p> | <p>제4조 “규제 서비스”, “제3부 서비스” 등</p> <p>(1) 본 조는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적용된다.</p> <p>(2) 이용자 간 서비스는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이며,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규제된 검색 서비스”이다.</p> <p>(a) 영국에 링크되어 있으며(제(5)항 및 제(6)항 참조),</p> <p>(b) 다음이 아닌 경우—</p> <p>(i) 별표 1에 규정된 대로 면제되는 서비스, 또는</p> <p>(ii) 별표 2에 기술된 종류의 서비스(본 법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 또는 검색 콘텐츠와 규제되는 포르노 콘텐츠를 결합하는 서비스).</p> <p>(3) “제3부 서비스”는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 또는 규제된 검색 서비스를 의미한다.</p> <p>(4) “규제 서비스”란 다음을 의미한다.</p> <p>(a)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p> <p>(b) 규제된 검색 서비스, 또는</p> <p>(c) 규제된 이용자 대 이용자 서비스 또는 규제된 검색 서비스 이외의 인터넷 서비스로서 제8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별표 2에 설명된 종류의 서비스 포함).</p> <p>(5) 제(2)항의 목적에 따라, 이용자 간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영국에 링크되어 있다”.</p> <p>(a) 해당 서비스에 상당한 수의 영국 이용자가 있는 경우, 또는</p> <p>(b) 영국 이용자가 서비스의 목표 시장 중 하나(또는 유일한 목표 시장)를 형성하는 경우.</p> <p>(6) 제(2)항의 목적에 따라, 이용자 간 서비스</p> |

| | |
|---|--|
| <p>user-to-user service or a search service also “has links with the United Kingdom” if</p> <p>(a) the service is capable of being used in the United Kingdom by individuals, and</p> <p>(b)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re is a material risk of significant harm to individuals in the United Kingdom presented by—</p> <p>(i) in the case of a user-to-user service, user-generated content present on the service or (if the service includes a search engine) search content of the service;</p> <p>(ii) in the case of a search service, search content of the service.</p> <p>(7) A regulated user-to-user service that includes a public search engine is referred to in this Act as a “combined service”. “Public search engine” means a search engine other than one in relation to which the conditions in paragraph 7(2) of Schedule 1 (internal business service conditions) are met.</p> <p>(8) In this section—</p> <p>“search content” has the same meaning as in Part 3 (see section 57);</p> <p>“user-generated content”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55 (see subsections (3) and (4) of that section).</p> | <p>또는 검색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영국에 링크되어 있다”.</p> <p>(a) 영국에서 개인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p> <p>(b) 다음에 의하여 영국 내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p> <p>(i) 이용자 간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에 존재하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검색 엔진이 포함된 경우) 서비스의 검색 콘텐츠.</p> <p>(ii) 검색 서비스의 경우 검색된 해당 서비스의 내용.</p> <p>(7) 공공 검색 엔진을 포함하는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를 이 법에서는 “결합 서비스”라고 한다. “공개 검색 엔진”이란 별표 1의 7(2)항의 조건(내부 비즈니스 서비스 조건)을 충족하는 것과 관련된 검색 엔진 이외의 검색 엔진을 의미한다.</p> <p>(8) 본 조에서는—</p> <p>“검색 콘텐츠”는 제3부(제57조 참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p> <p>“이용자 생성 콘텐츠”는 제55조(해당 조항의 제(3)항 및 제(4)항 참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p> |
|---|--|

본 조에서는 ‘규제 서비스’라는 용어와 법에서 사용되는 기타 관련 용어를 정의한다.⁵⁶⁹⁾

(2)항은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가 언제 규제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서비스가 영국과 링크가 있어야 하며, 별표1 또는 2에 따라 면제되지 않아야 한다. (3)항은 이러한 규제를 받는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를 법에서 ‘제3부 서비스’라고 한다.⁵⁷⁰⁾

56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4.

57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5.

(4)항은 ‘규제된 서비스’란 규제된 이용자 대 이용자 서비스, 규제된 검색 서비스 또는 제공자 포르노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영국과의 링크가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⁵⁷¹⁾ (5)항과 (6)항은 이용자 간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가 영국과 링크되는 상황을 명확히 한다. 서비스는 영국 내에서 상당한 수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영국이 타겟 시장인 경우 범위에 포함된다. 서비스는 개인이 영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영국 내 개인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범위에 포함된다. 제80조 (4)항은 제공자의 포르노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테스트를 적용한다.⁵⁷²⁾ 이 법에 의해 확립된 규제 체계는 영국의 개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영국에 대한 링크가 없는 서비스가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도록 보장한다.⁵⁷³⁾ (7)항은 공공 검색 엔진(즉, 내수 비즈니스 서비스가 아닌 것)을 포함하는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를 ‘결합 서비스’라고 법에서 언급하는 것을 규정한다.⁵⁷⁴⁾

별표 2는 규제를 받는 공급자 포르노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용자 대 이용자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를 규정한다. 제4(2)(b)(ii)조는 이용자 간 서비스 또는 검색 서비스가 별표 2에 설명된 종류의 서비스인 경우 규제 대상 이용자 간 서비스 또는 규제 대상 검색 서비스가 아니라고 규정한다. 별표 2의 효과는 규제 대상 제공자의 포르노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는 특정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가 대신 별표 1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검색 서비스 의무에서만 면제된다는 것이다. 제4(4)(c)조에 따르면, 별표 2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여전히 법 제5부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의 대상이 되는 규제 대상 서비스가 될 것이다.⁵⁷⁵⁾

571)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6.

57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7.

573)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8.

574)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59.

575)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4.

| 원 문 | 번역문 |
|---|---|
| <p>5 Disapplication of Act to certain parts of services</p> <p>(1) This Act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part of a Part 3 service if the conditions in paragraph 7(2) of Schedule 1 (internal business service conditions) are met in relation to that part.</p> <p>(2) This Act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 part of a regulated search service if</p> <p>(a) the only user-generated content enabled by that part of the service is content of any of the following kinds –</p> <p>(i) content mentioned in paragraph 1, 2 or 3 of Schedule 1 (emails, SMS and MMS messages, one-to-one live aural communications) and related identifying content;</p> <p>(ii) content arising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activities described in paragraph 4(1) of Schedule 1 (comments etc on provider content); and</p> <p>(b) no regulated provider pornographic content is published or displayed on that part of the service.</p> <p>(3) In this section –</p> <p>“regulated provider pornographic content” and “published or displayed” have the same meaning as in Part 5 (see section 79);</p> <p>“user-generated content”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55 (see subsections (3) and (4) of that section).</p> | <p>제5조 서비스의 특정 부분에 대한 법률의 적용 배제</p> <p>(1) 이 법은 별표 1(내부 비즈니스 서비스 조건)의 7(2)항의 조건이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충족되는 경우 제3부 서비스의 일부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p> <p>(2) 이 법은 다음의 경우 규제된 검색 서비스의 일부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p> <p>(a) 서비스의 해당 부분을 통해 활성화되는 유일한 사용자 생성 콘텐츠가 다음 종류의 콘텐츠인 경우.</p> <p>(i) 별표 1의 1, 2 또는 3항에 언급된 콘텐츠(이메일, SMS 및 MMS 메시지, 일대일 실시간 음성 통신) 및 관련 식별 콘텐츠,</p> <p>(ii) 별표 1의 4(1)항에 설명된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콘텐츠(제공자 콘텐츠에 대한 의견 등) 그리고</p> <p>(b) 규제 대상 제공업체의 포르노 콘텐츠가 서비스의 해당 부분에 게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는 경우.</p> <p>(3) 본 조에서는</p> <p>“규제된 공급자 포르노 콘텐츠” 및 “게시 또는 표시”는 제5부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제79조 참조).</p> <p>“이용자 생성 콘텐츠”는 제55조(해당 조항의 제(3)항 및 제(4)항 참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p> |

본 조에서는 규제 대상 서비스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규정한다.⁵⁷⁶⁾

57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5.

| 원 문 | 번역문 |
|--|--|
| <p>PART 3 Providers of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 and regulated search services: duties of care</p> <p>CHAPTER 1 Introduction</p> <p>6 Overview of Part 3</p> <p>(1) This Part imposes duties of care on providers of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 and regulated search services and requires OFCOM to issue codes of practice relating to some of those duties.</p> <p>(2) Chapter 2 imposes duties of care on providers of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 in relation to content and activity on their services.</p> <p>(3) Chapter 3 imposes duties of care on providers of regulated search services in relation to content and activity on their services.</p> <p>(4) Chapter 4 imposes duties on providers of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 and regulated search services to assess whether a service is likely to be accessed by children.</p> <p>(5) Chapter 5 imposes duties on providers of certain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 and regulated search services relating to fraudulent advertising.</p> <p>(6) Chapter 6 requires OFCOM to issue codes of practice relating to particular duties and explains what effects the codes of practice have.</p> <p>(7) Chapter 7 i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is Part, and it includes definitions of the following key terms —</p> | <p>제3부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규제된 검색 서비스 제공업체: 주의 의무</p> <p>제1장 도입</p> <p>제6조 제3부의 개요</p> <p>(1) 제3부는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규제된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OFCOM이 이러한 의무 중 일부와 관련된 업무 강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한다.</p> <p>(2) 제2장은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콘텐츠 및 활동과 관련하여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p> <p>(3) 제3장은 서비스 콘텐츠 및 활동과 관련하여 규제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한다.</p> <p>(4) 제4장은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 및 규제된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이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의무를 부과한다.</p> <p>(5) 제5장은 특정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 및 사기 광고와 관련된 규제된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p> <p>(6) 제6장에서는 OFCOM이 특정 직무와 관련된 실천 강령을 제정하고 실천 강령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한다.</p> <p>(7) 제7장은 제3부의 해석에 관한 것이며 다음 핵심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다.</p> |

| | |
|---|--|
| <p>“content that is harmful to children”, “primary priority content that is harmful to children” and “priority content that is harmful to children” (see sections 60 to 62); “illegal content”, “priority offence”, “terrorism content”, “CSEA content” and “priority illegal content” (see section 59); “search content” (see section 57).</p> | <p>“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 “아동에게 유해한 우선순위 콘텐츠” 및 “아동에게 유해한 우선순위 콘텐츠”(제60-62조 참조)</p> <p>“불법 콘텐츠”, “범죄 우선순위”, “테러 콘텐츠”, “CSEA 콘텐츠” 및 “불법 우선순위 콘텐츠”(제59조 참조)</p> <p>“검색 콘텐츠”(제57조 참조).</p> |
|---|--|

이 섹션은 법 제3부에 포함된 각 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⁵⁷⁷⁾

| 원 문 | 번역문 |
|---|--|
| <p>CHAPTER 2 Providers of user-to-user services: duties of care <i>User-to-user services: which duties apply, and scope of duties</i></p> | <p>제2장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 주의 의무 <i>이용자 간 서비스: 적용되는 업무 및 업무 범위</i></p> |
| <p>7 Providers of user-to-user services: duties of care</p> <p>(1) Subsections (2) to (6) apply to determine which of the duties set out in this Chapter (and, in the case of combined services, Chapter 3) must be complied with by providers of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p> <p>(2) All providers of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duties in relation to each such service which they provide—</p> <p>(a) the duties about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s set out in section 9,</p> <p>(b) the duties about illegal content set out in section 10(2) to (8),</p> <p>(c) the duty about content reporting set out in section 20,</p> <p>(d) the duties about complaints procedures</p> | <p>제7조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 주의 의무</p> <p>(1) 제(2)-(6)항은 본 장(결합 서비스의 경우 제3장)에 명시된 의무 중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결정하는 데 적용된다.</p> <p>(2)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p> <p>(a) 제9조에 명시된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에 관한 의무,</p> <p>(b) 제10조 제(2)-(8)항에 규정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의무,</p> <p>(c) 제20조에 명시된 콘텐츠 보고에 대한 의무,</p> <p>(d) 제21조에 명시된 불만 처리 절차에 관</p> |

57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6.

| | |
|--|--|
| <p>set out in section 21,</p> <p>(e) the duties about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set out in section 22(2) and (3), and</p> <p>(f) the duties about record-keeping and review set out in section 23(2) to (6).</p> <p>(3) Additional duties must be complied with by providers of particular kinds of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 as follows.</p> <p>(4) All providers of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 that are likely to be accessed by children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duties in relation to each such service which they provide—</p> <p>(a) the duties about children’s risk assessments set out in section 11, and</p> <p>(b) the duties to protect children’s online safety set out in section 12(2) to (13).</p> <p>(5) All providers of Category 1 services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duties in relation to each such service which they provide—</p> <p>(a) the duty about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s set out in section 10(9),</p> <p>(b) the duty about children’s risk assessments set out in section 12(14),</p> <p>(c) the duties about assessments related to adult user empowerment set out in section 14,</p> <p>(d) the duties to empower adult users set out in section 15,</p> <p>(e) the duties to protect content of democratic importance set out in section 17,</p> <p>(f) the duties to protect news publisher content set out in section 18,</p> <p>(g) the duties to protect journalistic content set out in section 19,</p> <p>(h) the duties about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set out in section 22(4), (6)</p> | <p>한 의무,</p> <p>(e)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 그리고</p> <p>(f) 제23조 제(2)-(6)항에 규정된 기록 보관 및 검토 의무.</p> <p>(3) 특정 종류의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p> <p>(4) 어린이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p> <p>(a) 제11조에 명시된 아동 위험 평가에 관한 의무, 그리고</p> <p>(b) 제12조 제(2)-(13)항에 명시된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보호할 의무.</p> <p>(5) 카테고리 1 서비스의 모든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p> <p>(a) 제10조 제(9)항에 명시된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에 관한 의무,</p> <p>(b) 제12조 제(14)항에 명시된 아동 위험 평가에 관한 의무,</p> <p>(c) 제14조에 명시된 성인 이용자 권한 부여와 관련된 평가에 대한 의무,</p> <p>(d) 제15조에 명시된 성인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의무,</p> <p>(e) 제17조에 명시된 민주적으로 중요한 콘텐츠를 보호할 의무,</p> <p>(f) 제18조에 명시된 뉴스 게시자 콘텐츠를 보호할 의무,</p> <p>(g) 제19조에 명시된 언론 콘텐츠를 보호할 의무,</p> <p>(h) 제22조 제(4), (6), (7)항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의무, 그</p> |
|--|--|

| | |
|--|--|
| <p>and (7), and</p> <p>(i) the duties about record-keeping set out in section 23(9) and (10).</p> <p>(6) All providers of combined services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duties in relation to the search engine of each such service which they provide—</p> <p>(a) if the service is not a Category 2A service and is not likely to be accessed by children, the duties set out in Chapter 3 referred to in section 24(2);</p> <p>(b) if the service is not a Category 2A service and is likely to be accessed by children, the duties set out in Chapter 3 referred to in section 24(2) and (4);</p> <p>(c) if the service is a Category 2A service not likely to be accessed by children, the duties set out in Chapter 3 referred to in section 24(2) and (5);</p> <p>(d) if the service is a Category 2A service likely to be accessed by children, the duties set out in Chapter 3 referred to in section 24(2), (4) and (5).</p> <p>(7) For the meaning of “likely to be accessed by children”, see section 37.</p> <p>(8) For the meaning of “Category 1 service”, see section 95 (register of categories of services).</p> | <p>리고</p> <p>(i) 제23조 제(9)항 및 제(10)항에 명시된 기록 보관 의무.</p> <p>(6) 모든 통합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각 서비스의 검색 엔진과 관련하여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p> <p>(a) 해당 서비스가 카테고리 2A 서비스가 아니고 어린이가 접근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제 24조 제(2)항에 언급된 3장에 명시된 의무;</p> <p>(b) 해당 서비스가 카테고리 2A 서비스가 아니고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제3장에 명시된 의무;</p> <p>(c) 해당 서비스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없는 카테고리 2A 서비스인 경우, 제24조 제(2)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제3장에 명시된 의무;</p> <p>(d) 해당 서비스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 2A 서비스인 경우, 제24조 제(2), (4) 및 (5)항에 언급된 제3장에 명시된 의무.</p> <p>(7) “어린이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의 의미는 제37조 참조.</p> <p>(8) “카테고리 1 서비스”의 의미는 제95조(서비스 카테고리 등록)를 참조.</p> |
|--|--|

본 조에서는 제3부에서 규정한 의무 중 어떤 의무가 어떤 이용자 간 서비스에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검색 서비스에 관한 의무는 다음 장에서 규정한다.⁵⁷⁸⁾ (2)항은 규제를 받는 모든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열거한다.⁵⁷⁹⁾ (3)항은 특정 종류의 규제를 받는 이용자 간 서비스의 제공자는 (4)항부터 (6)항까지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⁵⁸⁰⁾ (4)항은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57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7.

57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8.

58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9.

규제 대상 이용자 간 서비스의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나열한다. 아동이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인지 여부는 제37조에 따라 결정된다.⁵⁸¹⁾ (5)항은 카테고리1 서비스의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나열한다. 카테고리1 서비스로의 지정은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Ofcom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⁵⁸²⁾ (6)항은 결합 서비스의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의 검색엔진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나열한다.⁵⁸³⁾

| 원 문 | 번역문 |
|--|--|
| <p>8 Scope of duties of care</p> <p>(1) A duty set out in this Chapter which must be complied with in relation to a user-to-user service that includes regulated provider pornographic content does not extend to –</p> <p>(a) the regulated provider pornographic content, or</p> <p>(b) the design, operation or use of the service so far as relating to that content. See Part 5 for the duties which relate to regulated provider pornographic content, and the meaning of that term.</p> <p>(2) A duty set out in this Chapter which must be complied with in relation to a combined service does not extend to –</p> <p>(a) the search content of the service,</p> <p>(b) any other content that, following a search request, may be encountered as a result of subsequent interactions with internet services, or</p> <p>(c) anything relating to the design, operation or use of the search engine.</p> <p>(3) A duty set out in this Chapter which must</p> | <p>제8조 주의의무의 범위</p> <p>(1) 규제 대상 공급자 포르노 콘텐츠를 포함하는 이용자 간 서비스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이 장에 명시된 의무는 다음으로 확장되지 않는다.</p> <p>(a) 규제 대상 공급자의 포르노 콘텐츠, 또는</p> <p>(b) 해당 콘텐츠와 관련된 서비스의 설계, 운영 또는 사용. 규제 대상 제공업체의 포르노 콘텐츠와 관련된 의무 및 해당 용어의 의미는 제5부를 참조.</p> <p>(2) 결합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본 장에 명시된 의무는 다음으로 확장되지 않는다.</p> <p>(a) 서비스의 검색 콘텐츠,</p> <p>(b) 검색 요청 후 인터넷 서비스와의 후속 상호 작용의 결과로 접할 수 있는 기타 콘텐츠, 또는</p> <p>(c) 검색엔진의 설계, 운영 또는 사용과 관련된 모든 것.</p> <p>(3) 이용자 대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준</p> |

581)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0.

58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1.

583)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2.

| | |
|--|---|
| <p>be complied with in relation to a user-to-user service extends only to—</p> <p>(a) the design, operation and use of the service in the United Kingdom, and</p> <p>(b) in the case of a duty that is expressed to apply in relation to users of a service, the design, operation and use of the service as it affects United Kingdom users of the service.</p> | <p>수해야 하는 이 장에 명시된 의무는 다음 경우에만 적용된다.</p> <p>(a) 영국 내 서비스의 설계, 운영 및 사용</p> <p>(b)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하여 적용된다고 명시된 의무의 경우, 영국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설계, 운영 및 사용.</p> |
|--|---|

(1)항은 이 장의 의무는 규제를 받는 공급자 포르노 콘텐츠도 포함하는 이용자 간 서비스의 규제를 받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2)항은 제4조 (7)항에서 정의한 결합 서비스의 경우 이 장의 의무는 검색 콘텐츠, 검색 요청 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콘텐츠 또는 검색 엔진의 설계, 작동 또는 사용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⁵⁸⁴⁾ (3)항은 이 장의 의무는 영국의 이용자 간 서비스의 설계, 운영 및 사용에만 관련되며, 그러한 서비스의 이용자와 관련하여 적용하도록 명시된 의무의 경우, 그 설계, 운영 및 사용이 영국의 이용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만 규정한다.⁵⁸⁵⁾

| 원 문 | 번역문 |
|--|---|
| <i>Illegal content duties for user-to-user services</i> | 이용자 간 서비스에 대한 불법 콘텐츠 의무 |
| 9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 duties | 제9조 불법 콘텐츠 위험성 평가 업무 |
| (1) This section sets out the duties about risk assessments which apply in relation to all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 | (1) 본 조에서는 규제된 모든 이용자 간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위험 평가에 대한 의무를 설명한다. |
| (2) A duty to carry out a suitable and sufficient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 at a time set out in, or as provided by, Schedule 3. | (2) 별표 3에 명시되거나 제공되는 시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를 수행할 의무. |
| (3) A duty to take appropriate steps to keep an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 up to date, including when OFCOM make any | (3) OFCOM이 문제의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프로필을 크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를 최신 상태로 유 |

584)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3.

585)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4.

| | |
|--|--|
| <p>significant change to a risk profile that relates to services of the kind in question.</p> <p>(4) Before making any significant change to any aspect of a service’s design or operation, a duty to carry out a further suitable and sufficient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 relating to the impacts of that proposed change.</p> <p>(5) An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 of a service of a particular kind means an assessment of the following matters, taking into account the risk profile that relates to services of that kind—</p> <p>(a) the user base;</p> <p>(b) the level of risk of individuals who are users of the service encountering the following by means of the service—</p> <p>(i) each kind of priority illegal content (with each kind separately assessed), and</p> <p>(ii) other illegal content,taking into account (in particular) algorithms used by the service, and how easily, quickly and widely content may be disseminated by means of the service;</p> <p>(c) the level of risk of the service being used for the commission or facilitation of a priority offence;</p> <p>(d) the level of risk of harm to individuals presented by illegal content of different kinds or by the use of the service for the commission or facilitation of a priority offence;</p> <p>(e) the level of risk of functionalities of the service facilitating the presence or dissemination of illegal content or the use of the service for the commission or facilitation of a priority offence, identifying and assessing those functionalities that present higher levels</p> | <p>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p> <p>(4) 서비스 설계 또는 운영 측면을 현저하게 변경하기 전에 제안된 변경의 영향과 관련 하여 추가로 적절하고 충분한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를 수행할 의무.</p> <p>(5) 특정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는 해당 종류의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 프로필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p> <p>(a) 이용자 기반;</p> <p>(b) 서비스 이용자인 개인이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위험 수준</p> <p>(i) 각 종류의 우선순위 불법 콘텐츠(각 종류가 별도로 평가됨)</p> <p>(ii)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특히)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가 얼마나 쉽고, 빠르고,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는지를 고려한 기타 불법 콘텐츠;</p> <p>(c)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의 위험 수준</p> <p>(d) 다양한 종류의 불법 콘텐츠 또는 우선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장하기 위한 서비스 사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 수준</p> <p>(e) 불법 콘텐츠의 존재나 전파를 촉진하거나 우선 범죄의 의뢰나 촉진을 위한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나타내는 기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서비스의 기능 수준</p> |
|--|--|

| | |
|--|---|
| <p>of risk;</p> <p>(f)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service is used, and the impact of such use on the level of risk of harm that might be suffered by individuals;</p> <p>(g)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harm that might be suffered by individuals from the matters identifi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b) to (f);</p> <p>(h) how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service (including the business model, governance, use of proactive technology, measures to promote users' media literacy and safe use of the service, and other systems and processes) may reduce or increase the risks identified.</p> <p>(6) In this section references to risk profiles are to the risk profiles for the time being published under section 98 which relate to the risk of harm to individuals presented by illegal content.</p> <p>(7) See also —</p> <p>(a) section 23(2) and (10) (records of risk assessments), and</p> <p>(b) Schedule 3 (timing of providers' assessments).</p> | <p>(f) 서비스가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과 그러한 사용이 개인이 겪을 수 있는 피해 위험 수준에 미치는 영향</p> <p>(g) (b)-(f)에 따라 확인된 문제로 인해 개인이 겪을 수 있는 피해의 성격과 심각도,</p> <p>(h) 서비스의 설계 및 운영(비즈니스 모델, 거버넌스, 사전 예방적 기술의 사용,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및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기타 시스템 및 프로세스 포함)이 식별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p> <p>(6) 본 조에서 위험 프로필에 대한 언급은 불법 콘텐츠로 인해 개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과 관련된 제98조에 따라 현재 게시되는 위험 프로필을 의미한다.</p> <p>(7) 다음 참조 -</p> <p>(a) 제23조 제(2) 및 (10)항(위험 평가 기록), 그리고</p> <p>(b) 별표 3(제공자 평가 시기).</p> |
|--|---|

본 조에서는 불법 콘텐츠와 관련하여 규제를 받는 이용자 간 서비스의 모든 제공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를 규정한다. 제공자는 별표3에 명시된 관련 기한까지 적합하고 충분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⁵⁸⁶⁾ (3)항은 Ofcom이 위험 프로파일을 유의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위험 평가를 최신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⁵⁸⁷⁾ (4)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의 설계나 운영을 크게 변경하기 전에 추가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⁵⁸⁸⁾ (5)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평가해야 하는 요소를 열거

58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5.

58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6.

58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7.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에 노출될 가능성 또는 우선 범죄의 의뢰 또는 축진을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요소와 이로 인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의 심각성이 포함된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된 Ofcom의 위험 프로파일(제98조에 따라 공표)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⁵⁸⁹⁾ (10)항에 따른 불법 콘텐츠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조치는 위험 수준에 대한 결론을 포함한 제공자의 위험 평가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⁵⁹⁰⁾ Ofcom은 제99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⁵⁹¹⁾

| 원 문 | 번역문 |
|--|--|
| <p>10 Safety duties about illegal content</p> <p>(1) This section sets out the duties about illegal content which apply in relation to regulated user-to-user services (as indicated by the headings).</p> <p><i>All services</i></p> <p>(2) A duty, in relation to a service, to take or use proportionate measures relating to the design or operation of the service to</p> <p>(a) prevent individuals from encountering priority illegal content by means of the service,</p> <p>(b) effectively mitigate and manage the risk of the service being used for the commission or facilitation of a priority offence, as identified in the most recent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 of the service, and</p> <p>(c) effectively mitigate and manage the risks of harm to individuals, as identified in the most recent illegal content risk</p> | <p>제10조 불법 콘텐츠에 대한 안전의무</p> <p>(1) 본 조에서는 규제된 이용자 간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불법 콘텐츠(제목에 표시된 대로)에 대한 의무를 명시한다.</p> <p><i>모든 서비스</i></p> <p>(2)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위해 서비스의 설계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의무:</p> <p>(a) 개인이 서비스를 통해 우선순위 불법 콘텐츠를 접하는 것을 방지한다.</p> <p>(b) 서비스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관리한다.</p> <p>(c) 서비스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에서 확인된 대로 개인에 대한 피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p> |

58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8.

59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89.

591)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90.

| | |
|--|---|
| <p>assessment of the service (see section 9(5)(g)).</p> <p>(3) A duty to operate a service using proportionate systems and processes designed to –</p> <p>(a) minimise the length of time for which any priority illegal content is present;</p> <p>(b) where the provider is alerted by a person to the presence of any illegal content, or becomes aware of it in any other way, swiftly take down such content.</p> <p>(4) The duties set out in subsections (2) and (3) apply across all areas of a service, including the way it is designed, operated and used as well as content present on the service, and (among other things) require the provider of a service to take or use measures in the following areas, if it is proportionate to do so –</p> <p>(a) regulatory compliance and risk management arrangements,</p> <p>(b) design of functionalities, algorithms and other features,</p> <p>(c) policies on terms of use,</p> <p>(d) policies on user access to the service or to particular content present on the service, including blocking users from accessing the service or particular content,</p> <p>(e) content moderation, including taking down content,</p> <p>(f) functionalities allowing users to control the content they encounter,</p> <p>(g) user support measures, and</p> <p>(h) staff policies and practices.</p> <p>(5) A duty to include provisions in the terms of service specifying how individuals are to be protected from illegal content, addressing each paragraph of subsection</p> | <p>관리한다(제9조 제(5)항 (g) 참조).</p> <p>(3) 다음을 위해 고안된 비례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할 의무:</p> <p>(a) 우선순위 불법 콘텐츠가 존재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p> <p>(b) 제공자가 누군가로부터 불법 콘텐츠가 있다는 경고를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해야 한다.</p> <p>(4)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의무는 서비스의 설계, 운영 및 사용 방식은 물론 서비스에 존재하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서비스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무엇보다도 다음을 요구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경우 다음 영역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한다.</p> <p>(a) 규제 준수 및 위험 관리 약정,</p> <p>(b) 기능, 알고리즘 및 기타 기능의 설계,</p> <p>(c) 이용 약관에 관한 정책,</p> <p>(d) 이용자가 서비스 또는 특정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있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액세스에 대한 정책,</p> <p>(e) 콘텐츠 게시 중단을 포함한 콘텐츠 조정,</p> <p>(f) 이용자가 접하는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p> <p>(g) 이용자 지원 조치, 그리고</p> <p>(h) 직원 정책 및 관행.</p> <p>(5) 불법 콘텐츠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제(3)항의 각 단락을 다루고 ((a)와 관련하여) 테러 콘텐츠, CSEA 콘텐츠(제59조 및 별표 6 참조) 기타 우선순위</p> |
|--|---|

| | |
|---|---|
| <p>(3), and (in relation to paragraph (a)) separately addressing terrorism content, CSEA content (see section 59 and Schedule 6) and other priority illegal content.</p> <p>(6) A duty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terms of service referred to in subsection (5) consistently.</p> <p>(7) A duty to include provisions in the terms of service giving information about any proactive technology used by a service for the purpose of compliance with a duty set out in subsection (2) or (3) (including the kind of technology, when it is used, and how it works).</p> <p>(8) A duty to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e terms of service referred to in subsections (5) and (7) are clear and accessible.</p> | <p>불법 콘텐츠를 별도로 다루는 조항을 서비스 약관에 포함할 의무.</p> <p>(6) 제(5)항에 언급된 서비스 약관 조항을 일관되게 적용할 의무.</p> <p>(7)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의무(기술의 종류, 사용 시기 및 작동 방식을 포함)를 준수하기 위해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사전 예방적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하는 의무.</p> <p>(8) 제(5)항 및 제(7)항에 언급된 서비스 약관 조항이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의무.</p> |
| <p><i>Additional duty for Category 1 services</i></p> <p>(9) A duty to summarise in the terms of service the findings of the most recent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 of a service (including as to levels of risk and as to nature, and severity, of potential harm to individuals).</p> | <p><i>카테고리 1 서비스에 대한 추가 의무</i></p> <p>(9) 서비스에 대한 가장 최근의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 결과(위험 수준, 개인에 대한 잠재적 피해의 성격, 심각도 포함)를 서비스 약관에 요약할 의무.</p> |
| <p><i>Interpretation</i></p> <p>(10) In determining what is proportionat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following factors, in particular, are relevant</p> <p>(a) all the findings of the most recent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 (including as to levels of risk and as to nature, and severity, of potential harm to individuals), and</p> <p>(b) the size and capacity of the provider of a service.</p> <p>(11) In this section “illegal content risk assessment” has the meaning given by</p> | <p><i>해석</i></p> <p>(10) 이 조항의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다음 요소가 관련된다.</p> <p>(a) 가장 최근의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에서 발견된 모든 결과(위험 수준, 개인에 대한 잠재적 피해의 성격, 심각도 포함),</p> <p>(b) 서비스 제공자의 규모와 역량.</p> <p>(11) 본 조에서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는 제9조에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p> |

| | |
|--|---|
| <p>section 9. (12) See also, in relation to duties set out in this section, section 22 (duties about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p> | <p>(12) 본 조에 규정된 의무와 관련하여 제22조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의무) 참조.</p> |
|--|---|

본 조는 서비스의 불법 콘텐츠와 관련하여 모든 이용자 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다.⁵⁹²⁾ (2)항은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설계 또는 운영과 관련된 비례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⁵⁹³⁾

- a.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우선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b. (9조에 따라 수행된 가장 최근의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우선 범죄의 위탁 또는 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서비스의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 c. 가장 최근의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에서 확인된 개인의 위해 위험을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3)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불법 콘텐츠가 존재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불법 콘텐츠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삭제되도록 설계된 비례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한다.⁵⁹⁴⁾

(4)항은 (2)항과 (3)항의 의무는 서비스가 설계, 운영 및 사용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존재하는 콘텐츠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 항은 또한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콘텐츠 안전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하도록 요구될 수 있는 영역을 열거한다. 이러한 영역에는 컴플라이언스 및 위험 관리를 위한 준비, 알고리즘 설계(예: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 설계 변경), 액세스 및 사용에 관한 정책(예: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재범 방지), 콘텐츠 조정(예: 콘텐츠 제거), 이용자 권한 부여 및 지원 조치 및 직원 정책이 포함된다.⁵⁹⁵⁾

(5)항과 (6)항은 개인이 어떻게 불법 콘텐츠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서비스 조건에 명시하고 이러한 서비스 조건 조항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한

59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94.

593)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95.

594)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96.

595)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97.

다.⁵⁹⁶) (7)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불법 콘텐츠와 관련하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사전 예방적 기술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한다.⁵⁹⁷) (8)항은 (5)항과 (7)항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조항이 명확하고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⁵⁹⁸) (9)항은 카테고리1 제공자가 서비스 측면에서 최근 불법 콘텐츠 위험 평가 결과를 요약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요약에는 위험 수준, 개인에 대한 잠재적 피해의 성격 및 심각성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⁵⁹⁹) (12)항의 표지는 제22조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의무가 본조의 불법적인 콘텐츠 안전의 의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게시하고 있다.⁶⁰⁰)

(2) 규제 대상 서비스에 관한 Ofcom의 권한과 의무

| 원 문 | 번역문 |
|--|--|
| <p>PART 7 OFCOM's powers and duties in relation to regulated services</p> <p>CHAPTER 1 General duties</p> <p>91 General duties of OFCOM under section 3 of the Communications Act</p> | <p>제7부 규제 서비스와 관련된 OFCOM의 권한 및 의무</p> <p>제1장 일반의무</p> <p>제91조 통신법 제3조에 따른 OFCOM의 일반적 의무</p> |
| <p>(1) Section 3 of the Communications Act (general duties of OFCOM) is amended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s (2) to (8).</p> <p>(2) In subsection (2), after paragraph (f) insert — “(g) the adequate protection of citizens from harm presented by content on</p> | <p>(1) 통신법 제3조(OFCOM의 일반적 의무)는 제2항 내지 제8항에 따라 개정된다.</p> <p>(2) (2)항에서 (f)호 다음에 삽입한다 “(g) 그러한 위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서비스 제공</p> |

59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98.

59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99.

59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00.

59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01.

60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102.

| | |
|--|---|
| <p>regulated services, through the appropriate use by providers of such services of systems and processes designed to reduce the risk of such harm.”</p> <p>(3) In subsection (4)(c), at the beginning insert “(subject to subsection (5A))”.</p> <p>(4) After subsection (4) insert —</p> <p>“(4A)In performing their duties under subsection (1) in relation to matters to which subsection (2)(g) is relevant, OFCOM must have regard to such of the following as appear to them to be relevant in the circumstances—</p> <p>(a) the risk of harm to citizens presented by regulated services;</p> <p>(b) the need for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for children than for adults;</p> <p>(c) the need for it to be clear to providers of regulated services how they may comply with their duties set out in Chapter 2, 3, 4 or 5 of Part 3, Chapter 1, 3 or 4 of Part 4, or Part 5 of the Online Safety Act 2023;</p> <p>(d) the need to exercise their functions so as to secure that providers of regulated services may comply with such duties by taking measures, or using measures, systems or processes, which are (where relevant) proportionate to —</p> <p>(i) the size or capacity of the provider in question, and</p> <p>(ii) the level of risk of harm presented by the service in question, and the severity of the potential harm;</p> <p>(e)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 use by providers of regulated services of technologies which are designed to reduce the risk of harm to citizens presented by content on regulated services;</p> | <p>자가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규제된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가 제공하는 위해보부터 시민을 적절하게 보호한다.”</p> <p>(3) (4)항 (c)호의 처음에 “(5A)항에 따른다”고 삽입한다.</p> <p>(4) (4)항 이후 삽입 -</p> <p>“(4A) (2)항 (g)호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OFCOM은 해당 상황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p> <p>(a) 규제를 받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시민에 대한 위해의 위험;</p> <p>(b) 성인보다 어린이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p> <p>(c) 규제를 받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3부의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4부의 제1장, 제3장, 또는 제5부에 명시된 의무를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p> <p>(d)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조치를 취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다음에 비례하는 조치,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 기능을 행사할 필요성</p> <p>(i) 해당 제공자의 규모나 용량</p> <p>(ii) 해당 서비스가 제시하는 위해 위험 수준 및 잠재적 위해의 심각도;</p> <p>(e) 규제 서비스에 관한 내용에 의해 제시되는 시민에 대한 위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기술의 규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사용 촉진의 바람직함;</p> |
|--|---|

| | |
|---|---|
| <p>(f) the extent to which providers of regulated services demonstrate, in a way that is transparent and accountable, that they are complying with their duties set out in Chapter 2, 3, 4 or 5 of Part 3, Chapter 1, 3 or 4 of Part 4, or Part 5 of the Online Safety Act 2023.”</p> <p>(5) After subsection (5) insert— “(5A)Subsection (4)(c)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the carrying out of any of OFCOM’s online safety functions.”</p> <p>(6) After subsection (6) insert— “(6ZA)Where it appears to OFCOM, in relation to the carrying out of any of their online safety functions, that any of their general duties conflict with their duty under section 24, priority must be given to their duty under that section.”</p> <p>(7) In subsection (14), at the appropriate places insert— “content on regulated services” means (a) regulated user-generated content present on regulated services, (b) search content of regulated services, (c) fraudulent advertisements present on regulated services, and (d) regulated provider pornographic content present on regulated services;” “online safety functions”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235 of the Online Safety Act 2023, except that it does not include OFCOM’s general duties;”.</p> <p>(8) After subsection (14) insert— “(15)In this section the following terms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Online Safety Act 2023— “content” (see section 236 of that Act); “fraudulent advertisement” (see sections 38 and 39 of that Act); “harm” (see section 234 of that Act);</p> | <p>(f)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제공자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제3편 제2장, 제3장, 제4장 또는 제5장, 제1장, 제4장 또는 제4장 또는 제5장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정도.”</p> <p>(5) (5)항 후 삽입 - “(5A) OFCOM의 온라인 안전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4)항 (c)호는 적용되지 않는다.”</p> <p>(6) (6)항 이후 삽입 - “(6ZA) OFCOM이 온라인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의무가 제 24조에 따른 의무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른 의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p> <p>(7) (14)항에서, 적절한 장소에 삽입한다 “규제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규제 대상 서비스에 존재하는 규제 대상 이용자 생성 콘텐츠, (b)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내용 검색, (c) 규제를 받는 서비스에 존재하는 사기성 광고, 및 (d) 규제 대상 서비스에 존재하는 규제 대상 제공자 음란 콘텐츠;” “온라인 안전 기능”은 OFCOM의 일반적인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023년 온라인 안전법 제235조에 의해 주어진 의미를 가진다;”.</p> <p>(8) (14)항 후에 삽입 - “(15) 이 조에서 다음 용어는 온라인 안전법 2023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 “콘텐츠”(법 제236조 참조); “사기 광고”(법 제38조 및 제39조 참조); “해악”(법 제234조 참조);</p> |
|---|---|

| | |
|---|---|
| <p>“provider”, in relation to a regulated service (see section 226 of that Act); “regulated user-generated content” (see section 55 of that Act); “regulated provider pornographic content” (see section 79 of that Act); “regulated service” (see section 4 of that Act); “search content” (see section 57 of that Act).”</p> <p>(9) In section 6 of the Communications Act (duties to review regulatory burdens)</p> <p>(a) in subsection (2), after “this section” insert “(except their online safety functions)”, and</p> <p>(b) after subsection (10) insert — “(11)In this section “online safety functions”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3.”</p> | <p>규제 서비스와 관련된 “제공자”(법 제226조 참조); “규제된 이용자 생성 콘텐츠”(법 제55조 참조); “규제 제공자 음란물”(법 제79조 참조); “규제 서비스”(법 제4조 참조); “콘텐츠 검색”(법 제57조 참조)</p> <p>(9) 통신법 제6조(규제부담 검토의무)에서-</p> <p>(a) (2)항에서, “이 섹션” 다음에 “(온라인 안전 기능 제외)” 삽입, 그리고</p> <p>(b) (10)항 뒤에 삽입 - “(11) 본 조에서 ‘온라인 안전기능’은 제3절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p> |
|---|---|

본 조는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으로서의 Ofcom의 새로운 역할에 적용할 수 있는 의무를 설정하기 위해 2003년 통신법(CA 2003) 제3조에 따라 Ofcom의 기존 일반의무를 수정한다.⁶⁰¹⁾ 본 조에서는 이러한 위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서비스 제공자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규제된 서비스에 의해 제시되는 위험로부터 시민의 적절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Ofcom에 대한 새로운 일반의무를 도입한다.⁶⁰²⁾

개정안에는 Ofcom이 새로운 일반적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열거하고, Ofcom이 2023년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규제의 촉진 및 촉진의 바람직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⁶⁰³⁾ 또한 ‘콘텐츠’, ‘해약’, ‘제공자’, ‘규제 서비스’라는 용어가 CA 2003에서 2023년 온라인 안전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⁰⁴⁾

601)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71.

60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72.

603)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73.

604)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74.

| 원 문 | 번역문 |
|--|---|
| <p>92 Duties in relation to strategic priorities</p> <p>(1) This section applies where a statement has been designated under section 172(1) (Secretary of State’s statement of strategic priorities).</p> <p>(2) OFCOM must have regard to the statement when carrying out their online safety functions.</p> <p>(3) Within the period of 40 day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statement is designated, or such longer period as the Secretary of State may allow, OFCOM must –</p> <p>(a) explain in writing what they propose to do in consequence of the statement, and</p> <p>(b) publish a copy of that explanation.</p> <p>(4) OFCOM must,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after the end of –</p> <p>(a) the period of 12 month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the first statement is designated under section 172(1), and</p> <p>(b) every subsequent period of 12 months, publish a review of what they have done during the period in question in consequence of the statement.</p> | <p>제92조 전략적 우선순위와 관련된 의무</p> <p>(1) 본 조는 제172조 제1항(국무장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진술)에 따라 진술이 지정된 경우에 적용된다.</p> <p>(2) OFCOM은 온라인 안전 기능을 수행할 때 해당 진술을 고려해야 합니다.</p> <p>(3) 진술이 지정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또는 국무장관이 허용할 수 있는 보다 긴 기간 내에, OFCOM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p> <p>(a) 진술의 결과로 그들이 제안하는 것을 서면으로 설명하고,</p> <p>(b) 그 설명을 서면으로 출판하는 것.</p> <p>(4) OFCOM은 다음 사항이 종료된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빨리 –</p> <p>(a)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최초의 진술이 지정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p> <p>(b) 이후 12개월의 매 기간마다 해당 기간 동안 수행한 작업에 대한 검토서를 발표하여야 한다.</p> |

이 섹션은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지정한 전략적 우선순위 진술과 관련하여 Ofcom의 임무를 규정한다.⁶⁰⁵⁾ 특히, Ofcom은 온라인 안전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이러한 진술을 고려해야 한다.⁶⁰⁶⁾

605)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75.

60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76.

| 원 문 | 번역문 |
|--|--|
| <p>172 Statement of strategic priorities</p> <p>(1) The Secretary of State may designate a statement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if the requirements set out in section 173 (consultation and parliamentary procedure) are satisfied.</p> <p>(2) The statement is a statement prepar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hat sets out strategic priorities of His Majesty's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relating to online safety matters.</p> <p>(3) The statement may, among other things, set out particular outcomes identified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strategic priorities.</p> <p>(4) This section does not restrict the Secretary of State's powers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ct or any other enactment.</p> <p>(5) A statement designated under subsection (1) must be published in such manner as the Secretary of State considers appropriate.</p> <p>(6) A statement designated under subsection (1) may be amended (including by replacing the whole or a part of the statement with new material) by a subsequent statement designated under that subsection, and this section and sections 92 and 173 apply in relation to any such subsequent statement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the original statement.</p> <p>(7) Except as provided by subsection (8), no amendment may be made under subsection (6) within the period of five years beginning with the day on which a statement was most recently designated under subsection (1).</p> <p>(8) An earlier amendment may be made under subsection (6) if —</p> <p>(a) since that day —</p> | <p>제172조 전략적 우선순위의 진술</p> <p>(1) 국무장관은 제173조(협의 및 의회 절차)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조의 목적을 위해 진술을 지정할 수 있다.</p> <p>(2) 이 진술은 국무장관이 온라인 안전 문제와 관련해 영국 국왕폐하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진술이다.</p> <p>(3) 진술은 무엇보다도 전략적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인된 특정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p> <p>(4) 본 조는 국무장관의 권한을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하지 않는다.</p> <p>(5) (1)항에 따라 지정된 진술은 국무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포되어야 한다.</p> <p>(6) (1)항에 따라 지정된 진술은 (진술의 전체 또는 일부를 새로운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조항에 따라 지정된 후속 진술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본 조와 제 92조 및 제173조는 원래 진술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후속 진술에 대하여 적용된다.</p> <p>(7) (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에 따른 진술이 가장 최근에 지정된 날부터 5년의 기간 내에 (6)항에 따른 수정을 할 수 없다.</p> <p>(8) 다음의 경우에는 (6)항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p> <p>(a) 다음 날 이후로 -</p> |

| | |
|--|--|
| <p>(i) a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has taken place, or</p> <p>(ii)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policy of His Majesty's Government affecting online safety matters, or</p> <p>(b) the Secretary of State considers that the statement, or any part of it, conflicts with any of OFCOM's general duti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3 of the Communications Act).</p> | <p>(i)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렸거나</p> <p>(ii) 온라인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왕 정부의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p> <p>(b) 국무장관은 진술 또는 그 일부가 (통신법 제3조의 의미 내에서) OFCOM의 일반적인 의무와 충돌한다고 간주한다.</p> |
|--|--|

본 조에서는 온라인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이 정부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진술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소개한다. 이 권한은 통신, 무선 주파수 및 우편 서비스 관리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이 2003년 통신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과 유사하다.⁶⁰⁷⁾ 진술을 지정하기 전에 국무장관은 먼저 협의를 거쳐 제173조에 규정된 의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⁶⁰⁸⁾ 진술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전달할 목적으로 달성해야 할 특정 결과를 구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무장관은 온라인상에서 아동 성 착취 및 학대(CSEA) 이미지에 대한 목표 근절률을 설정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규제 부담을 줄이려고 할 수 있다.⁶⁰⁹⁾

전략적 우선순위에 대한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제173조의 절차에 따라 후속 진술을 발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온라인 안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경우 등 5년의 기간 내에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존재한다.⁶¹⁰⁾

| 원 문 | 번역문 |
|--|---|
| <p>93 Duty to carry out impact assessments</p> <p>(1) Section 7 of the Communications Act (duty to carry out impact assessments) is</p> | <p>제93조 영향평가 수행의무</p> <p>(1) 통신법 제7조(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60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14.

60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15.

60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16.

61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17.

| | |
|--|--|
| <p>amended as follows.</p> <p>(2) In subsection (2), at the beginning insert “Subject to subsection (2A),”.</p> <p>(3) After subsection (2) insert — “(2A) A proposal to do any of the following is important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to prepare a code of practice under section 41 of the Online Safety Act 2023; (b) to prepare amendments of such a code of practice; or (c) to prepare a code of practice as a replacement for such a code of practice.”</p> <p>(4) After subsection (4) insert — “(4A) An assessment under subsection (3)(a) that relates to a proposal mentioned in subsection (2A) must include an assessment of the likely impact of implementing the proposal on small businesses and micro businesses.</p> <p>(4B) An assessment under subsection (3)(a) that relates to a proposal to do anything else for the purposes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carrying out of OFCOM’s online safety function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35 of the Online Safety Act 2023) must, so far as the proposal relates to such functions, include an assessment of the likely impact of implementing the proposal on small businesses and micro businesses.”</p> | <p>(2) (2)항에서, 처음에 “(2A)항에 따라”를 삽입한다.</p> <p>(3) (2)항 뒤에 삽입 - “(2A)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제안은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중요하다.</p> <p>(a) 2023년 온라인 안전법 제41조에 따른 실천 강령을 작성한다; (b) 그러한 실천 강령의 개정을 준비한다; 또는 (c) 그러한 실천 강령의 대체물로서 실천 강령을 준비한다.”</p> <p>(4) (4)항 이후 삽입 - “(4A) (3)항 (a)호에 따른 평가는 (2A)항에 언급된 제안과 관련하여 소규모 기업 및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제안의 이행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p> <p>(4B) (3)항 (a)호에 따른 평가는 (2023년 온라인 안전법 제235조의 의미 내에서) OFCOM의 온라인 안전 기능의 목적을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다른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과 관련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p> |
|--|--|

본 조는 2003년 통신법(CA 2003) 제7조에 따른 중요 제안에 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Ofcom의 의무를 온라인 안전 기능으로 확장한다.⁶¹¹⁾ CA 2003 제7조 (2A)항은 2023년 온라인 안전법에 따른 실무강령을 도입, 대체 또는 수정하는 모든 제안이 Ofcom의 영향 평가 수행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제안’임을 규정한다. 이는 Ofcom이 이러한 제안

611)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77.

에 대한 영향 평가를 착수하여 발표하거나, 또는 그러한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발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⁶¹²⁾

CA 2003 제7조 (4B)항은 Ofcom의 온라인 안전 기능 수행과 관련된 제안서의 모든 평가는 제안서의 이행이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안서의 일부만이 Ofcom의 온라인 안전 기능과 관련된 경우 해당 부분만 평가하여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해야 한다.⁶¹³⁾

(3) 가짜정보 및 허위정보에 관한 위원회 설립 조항

| 원 문 | 번역문 |
|--|---|
| <p>152 Advisory committee on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p> <p>(1) OFCOM mus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section, exercise their powers under paragraph 14 of the Schedule to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Act 2002 (committees of OFCOM) to establish and maintain a committee to provide the advice specified in this section.</p> <p>(2) The committee is to consist of –</p> <p>(a) a chairman appointed by OFCOM, and</p> <p>(b) such number of other members appointed by OFCOM as OFCOM consider appropriate.</p> <p>(3) In appointing persons to be members of the committee, OFCOM must have regard to the desirability of ensuring that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include –</p> <p>(a) person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United Kingdom users of regulated services,</p> <p>(b) persons representing providers of</p> | <p>제152조 가짜정보 및 허위정보 자문위원회</p> <p>(1) OFCOM은 본 조의 다음 항에 따라 2002년 통신사무법 부칙 제14항(OFCOM의 위원회)에 따라 본 조에 명시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p> <p>(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p> <p>(a) OFCOM이 임명한 의장 및</p> <p>(b) OFCOM에 의하여 OFCOM으로 임명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수의 다른 회원.</p> <p>(3)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할 때, OFCOM은 위원회 구성원이 다음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하여야 한다.</p> <p>(a) 영국 규제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p> <p>(b)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제공자를 대표</p> |

612)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78.

613)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479.

| | |
|---|---|
| <p>regulated services, and</p> <p>(c) persons with expertise in the prevention and handling of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online.</p> <p>(4)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is to provide advice to OFCOM (including other committees established by OFCOM) about —</p> <p>(a) how providers of regulated services should deal with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on such services,</p> <p>(b) OFCOM’s exercise of the power conferred by section 77 to require information about a matter listed in Part 1 or 2 of Schedule 8, so far as relating to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and</p> <p>(c) OFCOM’s exercise of their functions under section 11 of the Communications Act (duties to promote media literacy) in relation to countering disinformation and misinformation on regulated services.</p> <p>(5) The committee must publish a report within the period of 18 months after being established, and after that must publish periodic reports.</p> | <p>하는 자, 그리고</p> <p>(c)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p> <p>(4) 위원회의 기능은 OFCOM(OFCOM에 의해 설립된 다른 위원회 포함)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p> <p>(a) 규제를 받는 서비스의 제공자들이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p> <p>(b) 허위정보 및 가짜정보와 관련하여 별표 8의 제1부 또는 제2부에 열거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제77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행사.</p> <p>(c) 규제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및 잘못된 정보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하여 통신법 제11조(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는 의무)에 따른 OFCOM의 기능 행사.</p> <p>(5) 위원회는 설립 후 18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정기적인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p> |
|---|---|

본조는 Ofcom에 허위정보 및 오보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도와 관계없이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이 특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조는 Ofcom이 위원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위원회의 보고의무는 무엇인지를 정하고 있다.⁶¹⁴⁾

| 원 문 | 번역문 |
|---|---|
| <p>153 Functions of the Content Board</p> <p>(1) Section 13 of the Communications Act (functions of the Content Board) is amended</p> | <p>제153조 콘텐츠 이사회의 기능</p> <p>(1) 통신법 제13조(콘텐츠 위원회의 기능)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

614)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74.

| | |
|---|---|
| <p>as follows.</p> <p>(2) At the beginning of subsection (2), insert “Subject to subsection (3A).”.</p> <p>(3) After subsection (3) insert — “(3A)OFCOM may, but need not, confer on the Content Board functions in relation to matters that concern the nature or kind of online content in relation to which OFCOM have functions under the Online Safety Act 2023 (see Parts 3 and 5 of that Act).”</p> <p>(4) After subsection (7) insert — “(8)In this section references to “matters mentioned in subsection (2)” do not include references to the matters mentioned in subsection (3A).”</p> | <p>(2) “(3A)항에 따라,”를 (2)항의 시작 부분에 삽입한다.</p> <p>(3) (3)항의 뒤에 삽입 - “(3A) OFCOM은 2023년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기능을 갖는 OFCOM과 관련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성격 또는 종류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콘텐츠 위원회 기능을 위임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4) (7)항 이후 삽입 - “(8) 본 조에서 “제2항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언급은 (3A)항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다.”</p> |
|---|---|

콘텐츠 이사회는 주요 Ofcom 이사회의 위원회로 위임 및 자문 책임이 있다. 본 조는 2003년 통신법 제13조(콘텐츠 이사회 기능)를 수정하여 Ofcom이 온라인 안전법 2023에 따른 Ofcom의 콘텐츠 관련 기능과 관련하여 콘텐츠 이사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⁶¹⁵⁾

(4) 허위통신범죄에 관한 내용

| 원 문 | 번역문 |
|---|---|
| <p>179 False communications offence</p> <p>(1) A person commits an offence if —</p> <p>(a) the person sends a message (see section 182),</p> <p>(b) the message conveys information that the person knows to be false,</p> <p>(c) at the time of sending it, the person intended the message, or the information in it, to cause non-trivial psychological</p> | <p>제179조 허위통신범죄</p> <p>(1) 다음의 경우 범죄를 범하는 것이다.</p> <p>(a) 메시지를 보낼 것(제182조 참조).</p> <p>(b) 메시지가 그 사람이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p> <p>(c) 메시지를 보낼 당시 해당 사람이 메시지나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 잠재적인 청중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또는</p> |

615)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675.

| | |
|---|---|
| <p>or physical harm to a likely audience, and</p> <p>(d) the person has no reasonable excuse for sending the message.</p> <p>(2) For the purposes of this offence an individual is a “likely audience” of a message if, at the time the message is sent, it is reasonably foreseeable that the individual —</p> <p>(a) would encounter the message, or</p> <p>(b) in the online context, would encounter a subsequent message forwarding or sharing the content of the message.</p> <p>(3) In a case where several or many individuals are a likely audience, it is not necessary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c) that the person intended to cause harm to any one of them in particular (or to all of them).</p> <p>(4) See section 180 for exemptions from the offence under this section.</p> <p>(5)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liable —</p> <p>(a) on summary conviction in England and Wales,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e maximum term for summary offences or a fine (or both);</p> <p>(b) on summary conviction in Northern Ireland,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6 months or a fine not exceeding level 5 on the standard scale (or both).</p> <p>(6) In subsection (5)(a) “the maximum term for summary offences” means —</p> <p>(a) if the offence is committed before the time when section 281(5) of the Criminal Justice Act 2003 comes into force, 6 months;</p> <p>(b) if the offence is committed after that time, 51 weeks.</p> | <p>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p> <p>(d) 그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는 데 대한 합리적인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p> <p>(2) 이 범죄의 목적상, 메시지가 전송될 당시 해당 개인이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은 메시지의 “예상 청중”이다.</p> <p>(a) 메시지를 접하게 되거나</p> <p>(b) 온라인 환경에서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후속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경우.</p> <p>(3) 여러 명 또는 다수의 개인이 청중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1)(c)항의 목적상 해당 개인이 그들 중 특정 한 사람(또는 그들 중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을 필요는 없다.</p> <p>(4) 본 조에 따른 범죄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제180조 참조.</p> <p>(5) 본 조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p> <p>(a)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약식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약식범죄에 대한 최대 형기를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또는 둘 다)에 처해진다.</p> <p>(b) 북아일랜드에서는 약식재판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표준 등급 5등급 이하의 벌금(또는 둘 다)에 처해진다.</p> <p>(6) (5)항 (a)호에서 “약식범죄의 최대 기간”은 다음을 의미한다.</p> <p>(a) 2003년 형사사법법 제281조 제5항이 발효되기 전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6개월</p> <p>(b) 해당 기간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51주.</p> |
|---|---|

| | |
|---|---|
| <p>(7)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may be brought within the period of 6 months beginning with the date on which evidence sufficient in the opinion of the prosecutor to justify the proceedings comes to the prosecutor's knowledge.</p> | <p>(7) 본 조에 따른 범죄에 대한 소송은 검사가 절차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p> |
| <p>(8) But such proceedings may not be brought by virtue of subsection (7) more than 3 years after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p> | <p>(8) 그러나 그러한 소송은 범죄 발생 후 3년이 지나면 (7)항에 따라 제기될 수 없다.</p> |
| <p>(9) A certificate signed by the prosecutor as to the date on which the evidence in question came to the prosecutor's knowledge is conclusive evidence of the date on which it did so; and a certificate to that effect and purporting to be so signed is to be treated as being so signed unless the contrary is proved.</p> | <p>(9) 문제의 증거가 검사에게 알려진 날짜에 대해 검사가 서명한 증명서는 검사가 그렇게 한 날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다 된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의 증명서와 그렇게 서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증명서는 반대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렇게 서명된 것으로 간주된다.</p> |

본 조는 범죄의 한계를 충족하는 허위 통신의 전송에 대해 형사 범죄를 성립시킨다. 합리적인 변명 없이 자신이 거짓임을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전송할 때 그 메시지가 잠재적인 청중, 즉 메시지 또는 그 내용을 접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는 사람에게 사소하지 않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 해를 가할 의도를 가진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유죄가 된다.⁶¹⁶⁾ 검찰은 발신자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⁶¹⁷⁾

(5)항 (a)호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허위 통신 범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5)항 (b)는 북아일랜드의 허위 통신 범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6)항은 (5)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식 범죄의 최대 기간'의 정의를 정하고 있다.⁶¹⁸⁾ 이 범죄는 1988년 악의적 통신법 제1(a)(iii)조의 범죄와 (잉글랜드와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경우) 2003년 통신법 제127(2)(a)조 및 (b)조의 범죄를 대체한다. 관련된 처벌은 법 제189조에 의해 이루어진다.⁶¹⁹⁾

616)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36.

617)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37.

618)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38.

619)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39.

| 원 문 | 번역문 |
|---|---|
| <p>180 Exemptions from offence under section 179</p> <p>(1) A recognised news publisher cannot commit an offence under section 179.</p> <p>(2) An offence under section 179 cannot be committed by the holder of a licence under the Broadcasting Act 1990 or 1996 in connection with anything done under the authority of the licence.</p> <p>(3) An offence under section 179 cannot be committed by the holder of a multiplex licence in connection with anything done under the authority of the licence.</p> <p>(4) An offence under section 179 cannot be committed by the provider of an on-demand programme service in connection with anything done in the course of providing such a service.</p> <p>(5) An offence under section 179 cannot be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showing of a film made for cinema to members of the public.</p> | <p>제180조 제179조에 따른 범죄로부터의 면제</p> <p>(1) 공인된 뉴스 게시자는 179조에 따른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p> <p>(2) 1990년 또는 1996년 방송법에 따른 허가권 보유자는 허가권에 따라 행해진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제179조에 따른 범죄를 범할 수 없다.</p> <p>(3) 복합 면허 소유자는 면허 권한에 따라 행해진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제179조에 따른 범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p> <p>(4) 주문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제179조에 따른 위반 행위를 범할 수 없다.</p> <p>(5) 제179조에 따른 범죄는 극장용 영화를 일반 대중에게 상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범할 수 없다.</p> |

본 조는 공인된 뉴스 출판사에 대한 면책과 방송 또는 멀티플렉스 영화 면허 소지자, 주문형 프로그래밍 서비스 제공자 및 멀티플렉스 영화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제한된 면책을 포함하여 허위 통신 범죄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본 조는 극장용 영화를 대중에게 상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범죄를 범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⁶²⁰⁾

7. 소결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만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아동 이용자와 성인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

620) EXPLANATORY NOTES, Online Safety Act 2023, 740.

고 있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서비스제공자에게 예방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⁶²¹⁾ 온라인 안전법의 규제대상은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업로드·공유하는 ‘이용자 대 이용자 서비스’(user-to-user service)와 검색 서비스이다.⁶²²⁾

온라인 안전법은 다음과 같은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영국 Ofcom은 유해한 내용의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유포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는 독립규제자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안전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온라인 안전법상 유해 콘텐츠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이를 Ofcom에 알리고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이를 대응해야 한다. 셋째, 독립규제자는 플랫폼 내 유해 콘텐츠 관리 및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매년 유해 콘텐츠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제기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내용에 대한 검색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넷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독립규제자는 독립기관으로부터 검증된 자여야 한다. 다섯째,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가 감시체계 및 기능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적법한 시간 내에 응답한다. 여섯째, 플랫폼 사업자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 중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불법 정보의 유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⁶²³⁾

621) 김지현,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국회도서관 최신입법정보 통권 제 190호, 2022. 4. 12. http://www.shinkim.com/newsletter/2022/GA/2022_vol131/links/2022_vol131_403.pdf

622) 임다혜, “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 발의”, 2023-05-30, <https://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p=1&idx=130694>; GOV.UK, “Online Safety Bill”,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online-safety-bill#guidance>

623) 김재선,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행정법적 대응방안”,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2020. 3, 237면.

제8절 호주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1. 서설

최근 호주는 ‘사이버괴롭힘 콘텐츠’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한 「온라인 안전법 (2021)」(Online Safety Act 2021/이하 ‘온라인 안전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요청·심의를 통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콘텐츠는 ‘불법 콘텐츠’가 중심이고 아동 및 성인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콘텐츠’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 차원에서 규제대상 콘텐츠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들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을 통한 신고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삭제 기간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에 온라인 안전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이 참고가 될 것이다.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대상 사이버괴롭힘 콘텐츠’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사이버괴롭힘 콘텐츠’ 모두 행정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안전법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사이버괴롭힘 콘텐츠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행정기관의 신고 시스템과 미이행 시 민사 처벌 부과로 신속한 콘텐츠 삭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⁶²⁴⁾ 이에 아래에서 온라인 안전법에 대한 주요 조문들을 검토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624) 김지현,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2022-9호, 1면.

2. 호주 「온라인 안전법」 개관

(1) 법률의 목적 및 개요

| Online Safety Act 2021 | 온라인 안전법(2021) |
|--|--|
| <p>3 The objects of this Act are (a) to improve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 (b) to promote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p> | <p>제3조(법률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개선한다. (b)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증진한다.</p> |
| <p>4 Simplified outline of this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is to be an eSafety Commissioner. •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 inclu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promoting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 (b) administering a complaints system for 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child; and (c) administering a complaints system for cyber-abuse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adult; and (d) administering a complaints and objections system for 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s; and (e) administering the online content scheme; and (f) coordinating activities of Commonwealth Departments, authorities and agencies relating to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 The complaints system for cyber 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child includes the following compon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provider of a social media service, a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 a designated internet service may be given a notice (a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removal from the service of 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child; | <p>제4조(이 법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안전국장의 직을 둔다. • 디지털 안전국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증진한다. (b)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시스템을 관리한다. (c)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시스템을 관리한다. (d) 사적인 이미지의 함의되지 아니한 공유에 대한 이의제기 및 거부 시스템을 관리한다. (e) 온라인 콘텐츠 운영 계획을 관리한다. (f)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영연방정부 부처, 당국 및 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에서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

| | |
|---|---|
| <p>(b) a hosting service provider who hosts 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child may be given a notice (a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provider to cease hosting the material;</p> <p>(c) a person who posts 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child may be given a notice (an end-user notice) requiring the person to remove the material, refrain from posting cyber-bullying material or apologise for posting the materi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omplaints system for cyber-abuse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adult includes the following compon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provider of a social media service, a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 a designated internet service may be given a notice (a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removal from the service of cyber-abuse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adult; (b) a person who posts cyber-abuse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adult may be given a notice (a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person to remove the material; (c) a hosting service provider who hosts cyber-abuse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adult may be given a notice (a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provider to cease hosting the material. • The complaints and objections system for non-consensual sharing of intimate images includes the following compon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 person who posts, or threatens to post, an intimate image may be liable to a civil penalty; (b) the provider of a social media service,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 designated | <p>(b)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를 관리하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자료의 관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p> <p>(c)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자료를 게시한 자는 그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이버 폭력 자료의 게시를 삼가거나 자료게시에 대하여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최종이용자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에 대한 이의제거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에서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b)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를 게시한 자는 그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c)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자료를 관리하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자료의 관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 사적인 이미지의 합의되지 아니한 공유에 대한 이의제거 및 거부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사적인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게시한다고 위협한 사람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b)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는 해당 |
|---|---|

| | |
|--|--|
| <p>internet service may be given a notice (a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provider to remove an intimate image from the service;</p> <p>(c) an end-user of a social media service,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 designated internet service who posts an intimate image on the service may be given a notice (a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end-user to remove the image from the service;</p> <p>(d) a hosting service provider who hosts an intimate image may be given a notice (a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provider to cease hosting the im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online content scheme includes the following compon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provider of a social media service,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 designated internet service may be given a notice (a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provider to remove certain material; (b) a hosting service provider may be given a notice (a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provider to cease hosting certain material; (c) the provider of an internet search engine service may be given a notice (a link deletion notice) requiring the provider to cease providing a link to certain material; (d) the provider of an app distribution service may be given a notice (an app removal notice) requiring the provider to cease enabling end-users to download an app that facilitates the posting of certain material on a social media service,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 designated internet service; (e) bodies and associations that represent | <p>서비스에서 사적인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p> <p>(c) 그 서비스에 사적인 이미지를 게시한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최종이용자는 해당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p> <p>(d) 사적인 이미지를 관리하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그 이미지의 관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콘텐츠 운영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는 특정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b) 호스팅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자료의 관리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c) 인터넷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자료 관련 링크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링크 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d) 앱배포서비스 제공자는 특정 자료를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 인터넷서비스에 게시하는 것을 돕는 앱의 최종이용자 다운로드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통지서(앱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e) 온라인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기구나 |
|--|--|

| | |
|---|---|
| <p>sections of the online industry may develop industry codes;</p> <p>(f) the Commissioner may make an industry standard;</p> <p>(g) the Commissioner may make service provider determinations regulating service providers in the online indust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inister may determine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for social media services, relevant electronic services and designated internet services. •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may be requested or required to block access 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material that promotes abhorrent violent conduct; or (b) material that incites abhorrent violent conduct; or (c) material that instructs in abhorrent violent conduct; or (d) material that depicts abhorrent violent conduct. | <p>협회는 업계 규약을 수립할 수 있다.</p> <p>(f) 디지털 안전국장은 산업 표준을 정할 수 있다.</p> <p>(g) 디지털 안전국장은 온라인 산업의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서비스 제공자 결정을 만들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무장관은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및 지정인터넷서비스에 관한 온라인 안전 기본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라는 요청이나 요구를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장려하는 자료 (b)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자료 (c)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가르치는 자료 (d)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 |
|---|---|

온라인 안전법은 제1조부터 제240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 안전법의 목적은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개선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이 법의 개요로는 디지털 안전국장에 대한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우선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증진하고,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시스템을 관리하며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시스템을 관리한다. 사적인 이미지의 합의 되지 않은 공유에 대한 이의제기 및 거부 시스템을 관리하며, 온라인 콘텐츠 운영 계획을 관리하고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영연방정부부처, 당국 및 기관의 활동을 조정한다.

다음으로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시스템에는 소셜 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사이버폭력자료를 게시한 자의 경우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자료 삭제통지서, 중단요구통지서, 사과요구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자료에 대한 이의제기시스템에도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사이버폭력자료를 게시한 자의 경우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자료 삭제통지서, 중단요구통지서, 사과요구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또한 사적인 이미지의 합의되지 아니한 공유에 대한 이의제기 및 거부 시스템에는 사적인 이미지를 게시하거나 게시한다고 위협한 사람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사이버폭력자료를 게시한 자의 경우 호주 아동·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자료 삭제통지서, 중단요구통지서, 사과요구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요소가 포함된다.

온라인 콘텐츠 운영 계획에는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제공자는 특정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인터넷검색엔진서비스 제공자, 앱배포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자료를 요구하는 중단요구통지서(링크 삭제통지서, 앱삭제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라인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기구나 협회는 업계 규약을 수립할 수 있고 디지털 안전국장은 산업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산업의 서비스 제공자를 규제하는 서비스 제공자 규정을 만들 수 있다. 그 밖에 주무장관은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및 지정인터넷서비스에 관한 온라인 안전 기본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장려, 선동, 학습, 묘사하는 자료를 차단하라는 요청이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 Online Safety Act 2021 | 온라인 안전법(2021) |
|--|---|
| <p>5 Definitions</p> <p>In this Act:</p> <p>abhorrent violent conduct has the same meaning as in Subdivision H of Division 474 of the Criminal Code.</p> <p>access includes:</p> <p>(a) access that is subject to a pre</p> | <p>제5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혐오스러운 폭력행위”는 「형법」 제474절 제H하위절에 정의된 바와 같다.</p> <p>“접근”에는 다음이 포함된다.</p> <p>(a) 전제조건(예를 들면, 비밀번호의 사용)</p> |

| | |
|--|---|
| <p>condition (for example, the use of a password); and (b) access by way of push technology; and (c) access by way of a standing request.</p> | <p>이 따르는 접근 (b) 푸시 기술을 통한 접근 (c) 지속적 요청을 통한 접근</p> |
| <p>access-control system, in relation to material, means a system under which: (a) persons seeking access to the material have a password, or a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that provides a means of limiting access by other persons to the material; or (b) persons seeking access to the material have been provided with some other means of limiting access by other persons to the material.</p> | <p>“접근제어시스템”이란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a) 자료 접근을 모색하는 자가 다른 자의 자료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비밀번호나 개인 식별번호를 가지는 시스템 (b) 자료 접근을 모색하는 자에게 다른 자의 자료 접근을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제공되는 시스템</p> |
| <p>account includes: (a) a free account; and (b) a pre-paid account; and (c) anything that may reasonably be</p> | <p>“계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무료 계정 (b) 선납 계정 (c) 계정과 동일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p> |
| <p>adult means an individual who is 18 or older</p> | <p>“성인”이란 18세 이상의 개인을 말한다.</p> |
| <p>app includes a computer program. app distribution service means a service that enables end-users to download apps, where the download of the apps is by means of a carriage service.</p> | <p>“앱”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앱배포서비스”란 앱 다운로드가 통신서비스를 통하는 경우에 최종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 |
| <p>computer game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p> | <p>“컴퓨터 게임”이란 「(출판물, 영화 및 컴퓨터 게임) 등급분류법(1995)」에 정의된 바와 같다.</p> |
| <p>consent, when used in relation to an intimate image or private sexual material,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21.</p> | <p>사적인 이미지 또는 성적 욕망 또는 사적인 성적 자료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동의”는 제21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p> |
| <p>cyber-abuse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adult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7.</p> | <p>“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는 제7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p> |
| <p>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child has the meaning given by</p> | <p>“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는 제6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p> |

| | |
|--|--|
| <p>section 6.</p> <p>data storage device means any article or material (for example, a disk or file server) from which information is capable of being reproduced, with or without the aid of any other article or device.</p> <p>de-identified: information is de-identified if the information is no longer about:</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an identifiable individual; or(b) an individual who is reasonably identifiable. <p>engage in conduct mea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do an act; or(b) omit to perform an act. <p>material means materi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whether in the form of text; or(b) whether in the form of data; or(c) whether in the form of speech, music or other sounds; or(d) whether in the form of visual images (moving or otherwise); or(e) whether in any other form; or(f) whether in any combination of forms. <p>material that depicts abhorrent violent conduct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9.</p> <p>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means the capacity of Australians to use social media services and electronic services in a safe manner.</p> <p>online safety for children means the capacity of Australian children to use social media services and electronic services in a safe manner, and includes the protection of Australian children using those services from 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an</p> | <p>“데이터 저장 장치”란 다른 물품이나 장치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복제할 수 있는 물품이나 재료(예를 들면, 디스크나 파일서버)를 말한다.</p> <p>“비식별화”는 정보가 더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정보는 비식별화된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신원 확인이 가능한 개인(b) 정당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 <p>“행위에 관여”란 다음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행위를 하는 것(b) 행위를 하는 것의 누락 <p>“자료”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a) 문자의 형태이다.(b) 데이터의 형태이다.(c) 발언, 음악 또는 다른 소리의 형태이다.(d) 시각적 이미지(동영상 또는 다른 형식)의 형태이다.(e) 다른 모든 형태이다.(f) 이러한 형태들의 결합이다. <p>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는 제9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p> <p>“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이란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전자서비스를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호주인의 능력을 말한다.</p> <p>“아동의 온라인 안전”이란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전자서비스를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호주 아동의 능력을 의미하며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호주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포함된다.</p> |
|--|--|

Australian child.

private sexual material means:

(a) material that:

(i) depicts a person who is, or appears to be, 18 years of age or older and who is engaged in, or appears to be engaged in, a sexual pose or sexual activity (whether or not in the presence of other persons); and

(ii) does so in circumstances that reasonable persons would regard as giving rise to an expectation of privacy; or

(b) material the dominant characteristic of which is the depiction of:

(i) a sexual organ or the anal region of a person who is, or appears to be, 18 years of age or older; or

(ii) if a person is a female person, or a transgender or intersex person, who is, or appears to be, 18 years of age or older—either or both of the person’s breasts; where the depiction is in circumstances that reasonable persons would regard as giving rise to an expectation of privacy.

serious harm means serious physical harm or serious harm to a person’s mental health, whether temporary or permanent.

serious harm to a person’s mental health includes:

(a) serious psychological harm; and

(b) serious distress;

but does not include mere ordinary emotional reactions such as those of only distress, grief, fear or anger.

“사적인 성적 자료”란 다음을 말한다.

(a) 다음과 같은 자료

(i) 18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으로 보이며(다른 사람 앞에서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성적인 자세 또는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를 묘사한다.

(ii) 합리적인 자가 사생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묘사를 한다.

(b)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묘사하는 것이 지배적 특성인 자료

(i) 18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으로 보이는 자의 성기나 항문 부위

(ii) 특정인이 여성 또는 성전환자나 간성(間性)이고, 18세 이상이거나 18세 이상으로 보이는 경우 유방 한쪽 또는 양쪽
다만, 그 묘사가 합리적인 자가 사생활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야 한다.

“심각한 피해”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심각한 신체 손상 또는 정신건강의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정신건강의 심각한 피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심각한 심리학적 피해

(b) 심각한 고통

다만, 단순한 고통, 슬픔, 공포나 화와 같은 일반적인 정서적 반응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 target of cyber-abuse material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7. | “사이버 학대 자료의 대상”이란 제7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
| target of cyber-bullying material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6. | “사이버 폭력 자료의 대상”이란 제6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
| threat includes a threat made by any conduct, whether express or implied and whether conditional or unconditional. | “위협”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고 조건부이거나 무조건부인 행위에 의한 위협이 포함된다. |

온라인 안전법 제5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는 호주 형법 제474절 제H절 하위에 정의된 바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 형법 제474절 제H절 하위에는 “혐오스러운 폭력행위”에 대해 테러, 살인, 살인시도, 고문, 강간, 납치⁶²⁵⁾의 형태로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접근”의 경우에는 전제조건이 따르는 접근, 푸시 기술을 통한 접근, 지속적 요청을 통한 접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계정”에는 무료계정, 선납(유료)계정, 계정과 동일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계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법상 ‘성인’은 18세 이상의 개인을 말하고 사적인 이미지 또는 성적 욕망 또는 사적인 성적 자료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동의”는 본법 제21조에 정의된 내용으로 같음하고 있다. 동의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이며 정보에 근거한다. 다만 아동의 동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리고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은 정신 상태나 신체 상태에 있는 성인의 동의로 첫째, 성인이 동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 둘째, 성인의 동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상태의 동의는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다.⁶²⁶⁾

625) 474.32 Abhorrent violent conduct

- (1) For the purposes of this Subdivision, a person engages in abhorrent violent conduct if the person:
- (a) engages in a terrorist act; or
 - (b) murders another person; or
 - (c) attempts to murder another person; or
 - (d) tortures another person; or
 - (e) rapes another person; or
 - (f) kidnaps another person.

626)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is Act to an intimate image or private sexual material, consent means consent that is:

- (a) express; and
- (b) voluntary; and

또한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자료”,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자료”는 본법 제7조, 제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료”의 경우 문자 및 데이터, 발언, 음악 또는 다른 소리의 형태, 시각적 이미지(동영상 또는 다른 형식)의 형태, 그리고 다른 모든 형태 및 이러한 형태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는 제9조⁶²⁷⁾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호주 형법 제474절 제H절 하위에 명시되어 있는 혐오스러운 폭력행위 자료의 형태가 청각, 시각, 시청각 자료의 형태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아동의 온라인 안전”, “사적인 성적 자료”, “심각한 피해”, “정신건강의 심각한 피해”, “위협”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사적인 성적 자료”와 “위협”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혐오스러운 폭력행위”의 형태로는 이러한 추가적인 법적 침해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용어 정의를 통해 온라인 안전법의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보호법익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c) informed;

but does not include:

(d) consent given by a child; or

(e) consent given by an adult who is in a mental or physical condition (whether temporary or permanent) that:

(i) makes the adult incapable of giving consent; or

(ii) substantially impairs the capacity of the adult to give consent.

627) (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material that depicts abhorrent violent conduct means material that is:

(a) audio material; or

(b) visual material; or

(c) audio-visual material; that records or streams abhorrent violent conduct.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it is immaterial whether the material has been altered.

(3)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자료

| Online Safety Act 2021 | 온라인 안전법(2021) |
|--|---|
| <p>6 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child</p> <p>(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if material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p> <p>(a) the material is provided on:</p> <p>(i) a social media service; or</p> <p>(ii) a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p> <p>(iii) a designated internet service;</p> <p>(b) an ordinary reasonable person would conclude that:</p> <p>(i) it is likely that the material was intended to have an effect on a particular Australian child; and</p> <p>(ii) the material would be likely to have the effect on the Australian child of seriously threatening, seriously intimidating, seriously harassing or seriously humiliating the Australian child;</p> <p>(c) such other conditions (if any) as are set out in the legislative rules; then:</p> <p>(d) the material is 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the Australian child; and</p> <p>(e) the Australian child is the target of the material.</p> <p>(2) An effect mentioned in subsection (1) may be:</p> <p>(a) a direct result of the material being accessed by, or delivered to, the Australian child; or</p> <p>(b) an indirect result of the material being accessed by, or delivered to, one or more other persons.</p> <p>(3) Subsection (1) has effect subject to subsection (4).</p> <p>(4)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if:</p> | <p>제6조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자료)</p> <p>(1) 이 법의 목적상, 자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제(d)호와 제(e)호에 해당한다.</p> <p>(a) 그 자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공된다.</p> <p>(i) 소셜미디어서비스</p> <p>(ii) 관련전자서비스</p> <p>(iii) 지정인터넷서비스</p> <p>(b) 합리적인 일반인이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p> <p>(i) 그 자료에 특정 호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p> <p>(ii) 그 자료가 호주 아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p> <p>(c) (경우에 따라) 다른 조건이 입법규칙에 규정된다.</p> <p>(d) 그 자료는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이다.</p> <p>(e) 호주 아동은 그 자료의 대상이다.</p> <p>(2) 제(1)항에 규정된 결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p> <p>(a) 호주 아동이 접속을 하거나 호주 아동에게 전달된 자료의 직접적 결과</p> <p>(b) 1명 이상의 다른 자가 접속을 하거나 이와 같이 전달된 자료의 간접적 결과</p> <p>(3) 제(1)항은 제(4)항에 따라 적용된다.</p> <p>(4)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 그</p> |

| | |
|--|--|
| <p>(a) a person is:</p> <p>(i) in a position of authority over an Australian child; and</p> <p>(ii) an end-user of a social media service,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 designated internet service; and</p> <p>(b) in the lawful exercise of that authority, the person posts material on the service; and</p> <p>(c) the posting of the material is reasonable action taken in a reasonable manner; the material is taken not to be 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the Australian child.</p> | <p>자료를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p>(a) 특정인이 다음에 해당한다.</p> <p>(i) 호주 아동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다.</p> <p>(ii)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최종이용자이다.</p> <p>(b) 그 권한의 적법한 행사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에 자료를 게시한다.</p> <p>(c) 자료의 게시가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이다.</p> |
|--|--|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자료는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해당 자료가 특정 호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거나 호주 아동을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괴롭히거나, 모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호주 아동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거나 소셜 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의 최종이용자가 그 권한의 적법한 행사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에 자료를 게시하거나 자료의 게시가 정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인 경우에는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한다.

(4)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자료

| Online Safety Act 2021 | 온라인 안전법(2021) |
|---|---|
| <p>7 Cyber-abuse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adult</p> <p>(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if material satisfies the following conditions:</p> <p>(a) the material is provided on:</p> | <p>제7조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p> <p>(1) 이 법의 목적상, 자료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제(e)호와 제(f)호에 해당한다.</p> <p>(a) 그 자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공</p> |

| | |
|---|---|
| <p>(i) a social media service; or (ii) a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 (iii) a designated internet service; (b) an ordinary reasonable person would conclude that it is likely that the material was intended to have an effect of causing serious harm to a particular Australian adult; (c) an ordinary reasonable person in the position of the Australian adult would regard the material as being, in all the circumstances, menacing, harassing or offensive; (d) such other conditions (if any) as are set out in the legislative rules; then: (e) the material is cyber-abuse material targeted at the Australian adult; and (f) the Australian adult is the target of the material. (2) An effect mentioned in paragraph (1)(b) may be: (a) a direct result of the material being accessed by, or delivered to, the Australian adult; or (b) an indirect result of the material being accessed by, or delivered to, one or more other persons.</p> | <p>된다. (i) 소셜미디어서비스 (ii) 관련전자서비스 (iii) 지정인터넷서비스 (b) 합리적인 일반인이 그 자료에 특정 호주 성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c) 호주 성인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인 일반인이 그 자료가 모든 상황에서 위협적이거나 괴롭히거나 불쾌하다고 본다. (d) (경우에 따라) 다른 조건이 입법규칙에 규정된다. (e) 그 자료는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이다. (f) 호주 성인은 그 자료의 대상이다. (2) 제(1)항에 규정된 결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일 수 있다. (a) 호주 성인이 접속을 하거나 호주 성인에게 전달된 자료의 직접적 결과 (b) 1명 이상의 다른 자가 접속을 하거나 이와 같이 전달된 자료의 간접적 결과</p> |
|---|---|

호주는 온라인 안전이 단지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호주 국민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본법 제7조는 합리적인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해당 온라인 자료가 특정 호주 성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거나, 모든 상황에서 위협적이거나, 괴롭히거나, 불쾌한 경우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자료가 불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 Online Safety Act 2021 | 온라인 안전법(2021) |
|--|---|
| <p>8 Determining whether material is offensive</p> <p>(1) The matter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ciding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whether an ordinary reasonable person in the position of a particular Australian adult would regard particular material as being, in all the circumstances, offensive, include:</p> <p>(a) the standards of morality, decency and propriety generally accepted by reasonable adults; and</p> <p>(b) the literary, artistic or educational merit (if any) of the material; and</p> <p>(c) the general character of the material (including whether it is of a medical, legal or scientific character).</p> <p>(2) If:</p> <p>(a) material is provided on:</p> <p>(i) a social media service; or</p> <p>(ii) a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p> <p>(iii) a designated internet service; and</p> <p>(b) the material is private sexual material; then, in deciding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whether an ordinary reasonable person in the position of a particular Australian adult would regard the material as being, in all the circumstances, offensive, regard must be had to whether the subject, or each of the subjects, of the private sexual material gave consent to the material being provided on the service.</p> <p>(3) Subsection (2) does not limit subsection (1).</p> | <p>제8조(자료가 불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p> <p>(1)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호주 성인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인 일반인이 특정 자료가 모든 상황에서 불쾌하다고 판단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p> <p>(a) 합리적 성인이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도덕성, 품위 및 적절성의 기준</p> <p>(b) (해당되는 경우) 그 자료의 문학적, 예술적 또는 교육적 가치</p> <p>(c) 그 자료의 일반적 성격(의학적, 법률적 또는 학술적 성격인지가 포함된다).</p> <p>(2) 다음과 같은 경우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호주 성인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 일반인이 특정 자료가 모든 상황에서 불쾌하다고 판단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성적 자료의 대상인 개개인이 그 자료가 해당 서비스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p> <p>(a) 그 자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공된다.</p> <p>(i) 소셜미디어서비스</p> <p>(ii) 관련전자서비스</p> <p>(iii) 지정인터넷서비스</p> <p>(b) 그 자료가 사적인 성적 자료이다.</p> <p>(3) 제(2)항은 제(1)항을 제한하지 아니한다.</p> |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상 자료가 불쾌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첫째, 합리적 성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도덕성, 품위, 타당성의 기준, 둘째,

해당 자료의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 셋째, 해당 자료의 일반적인 성격(의학적, 법적, 과학적 특징을 포함하는지 등)이다. 또한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자료, 지정인터넷서비스에서의 사적인 성적 자료가 이 법의 목적을 위하여 특정 호주 성인의 지위에 있는 합리적인 일반인의 특정 자료가 모든 상황에서 불쾌하다고 판단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성적 자료의 대상인 개개인이 그 자료가 해당 서비스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 동의의 기준

| Online Safety Act 2021 | 온라인 안전법(2021) |
|--|--|
| <p>21 Consent</p> <p>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this Act to an intimate image or private sexual material, consent means consent that i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express; and (b) voluntary; and (c) informed; but does not include: (d) consent given by a child; or (e) consent given by an adult who is in a mental or physical condition (whether temporary or permanent)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makes the adult incapable of giving consent; or (ii) substantially impairs the capacity of the adult to give consent. | <p>제21조(동의)</p> <p>사적인 이미지 또는 사적인 성적 자료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을 위하여 동의란 다음과 같은 동의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명시적이다. (b) 자발적이다. (c) 정보에 근거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d) 아동의 동의 (e)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은 정신 상태나 신체 상태에 있는 성인의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성인이 동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상태 (ii) 성인의 동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상태 |

본 법상 동의의 기준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해당 자료의 대상이 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단 개인적 이미지 등에 대한 동의는 명시적이고, 자발적이며, 정보에 근거해야 하되 아동이나 동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성인의 동의는 포함되지 않는다.⁶²⁸⁾

628) 김여라, “호주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2021))」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언론통제 2022, 90면. 그 밖에 「온라인안전법」은 규제 대상 자료를 ‘1종 자료(class 1 material)’

(7) 온라인 안전의 핵심요건

| Online Safety Act 2021 | 온라인 안전법(2021) |
|---|---|
| <p>46 Core expectations</p> <p>(1) A determination under section 45 must specify each of the following expectations:</p> <p>(a) the expectation that the provider of the service will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at end-users are able to use the service in a safe manner;</p> <p>(b) the expectation that, in determining what are such reasonable steps, the provider will consult the Commissioner;</p> <p>(c) the expectation that the provider of the service will take reasonable steps to minimise the extent to which the following material is provided on the service:</p> <p>(i) 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child;</p> <p>(ii) cyber-abuse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adult;</p> <p>(iii) a non-consensual intimate image of a person;</p> <p>(iv) class 1 material;</p> <p>(v) material that promotes abhorrent violent conduct;</p> <p>(vi) material that incites abhorrent violent conduct;</p> <p>(vii) material that instructs in abhorrent violent conduct;</p> <p>(viii) material that depicts abhorrent violent conduct;</p> | <p>제46조(핵심 요건)</p> <p>(1) 제45조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p> <p>(a)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이용자가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요건</p> <p>(b) 합리적 조치를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안전국장과 협의할 것이라는 요건</p> <p>(c) 서비스 제공자가 다음과 같은 자료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요건</p> <p>(i)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자료</p> <p>(ii)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p> <p>(iii) 합의되지 아니한 특정인의 사적인 이미지</p> <p>(iv) 1종 자료</p> <p>(v)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장려하는 자료</p> <p>(v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자료</p> <p>(vi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가르치는 자료</p> <p>(vii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p> |

와 '2종 자료(class 2 material)'로 분류하여 각 조건에 맞게 규제한다. 1종 자료란 등급 분류위원회가 등급 거부로 분류한(또는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영화·출판물·컴퓨터 게임 및 기타 자료를 말한다(제106조). 제2종 자료는 등급분류위원회가 상영 불가·청소년 관람 불가로 분류한(또는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영화, 1급 및 2급 성인 출판물,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및 기타 자료를 말한다.

- (d) the expectation that the provider of the service will take reasonable steps to ensure that technological or other measures are in effect to prevent access by children to class 2 material provided on the service;
- (e) the expectation that the provider of the service will ensure that the service has clear and readily identifiable mechanisms that enable end-users to report, and make complaints about, any of the following material provided on the service:
 - (i) cyber-bullying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child;
 - (ii) cyber-abuse material targeted at an Australian adult;
 - (iii) a non-consensual intimate image of a person;
 - (iv) class 1 material;
 - (v) class 2 material;
 - (vi) material that promotes abhorrent violent conduct;
 - (vii) material that incites abhorrent violent conduct;
 - (viii) material that instructs in abhorrent violent conduct;
 - (ix) material that depicts abhorrent violent conduct;
- (f) the expectation that the provider of the service will ensure that the service has clear and readily identifiable mechanisms that enable end-users to report, and make complaints about, breaches of the service's terms of use;
- (g) the expectation that, if the Commissioner, by written notice given to the provider of the service, requests the provider to give the Commissioner a statement that sets out the number of complaints made

- (d)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에 제공된 2종 자료에 대한 아동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나 다른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요건
- (e)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이용자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명하고 즉시 인식이 가능한 제도가 서비스에 구비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는 요건
 - (i)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폭력 자료
 - (ii) 호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학대 자료
 - (iii) 합의되지 아니한 특정인의 사적인 이미지
 - (iv) 1종 자료
 - (v) 2종 자료
 - (v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장려하는 자료
 - (vi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자료
 - (vii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가르치는 자료
 - (ix)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
- (f)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의 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명하고 즉시 인식이 가능한 제도가 서비스에 구비된다는 것을 보장할 것이라는 요건
- (g) 디지털 안전국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여 특정 기간(6개월 이상)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기된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 대한 이의 건수를 기재한 내역서를 디지털 안전국장에게 제출

| | |
|---|--|
| <p>to the provider during a specified period (not shorter than 6 months) about breaches of the service's terms of use, the provider will comply with the request within 30 days after the notice of request is given;</p> <p>(h) the expectation that, if the Commissioner, by written notice given to the provider of the service, requests the provider to give the Commissioner a statement that sets out, for each removal notice given to the provider during a specified period (not shorter than 6 months), how long it took the provider to comply with the removal notice, the provider will comply with the request within 30 days after the notice of request is given;</p> <p>(i) the expectation that, if the Commissioner, by written notice given to the provider of the service, requests the provider to give the Commissioner specifie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easures taken by the provider to ensure that end-users are able to use the service in a safe manner, the provider will comply with the request within 30 days after the notice of request is given.</p> <p>(2) Subsection (1) does not limit the expectations that may be specified in a determination under section 45.</p> | <p>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을 준수할 것이라는 요건</p> <p>(h) 디지털 안전국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여 특정 기간(6개월 이상)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교부된 삭제통지서마다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통지서 이행에 소요된 기간을 기재한 내역서를 디지털 안전국장에게 제출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 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을 준수할 것이라는 요건</p> <p>(i) 디지털 안전국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여 최종이용자가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조치에 관한 특정 정보를 디지털 안전국장에게 제공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요청 통지서가 교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을 준수할 것이라는 요건</p> <p>(2) 제(1)항은 제45조에 따른 결정에 명시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지 아니한다.</p> |
|---|--|

온라인 안전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책임을 강조한다. 정부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온라인 안전과 관련한 규칙(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각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규칙(code)을 제정하여 온라인 안전 관련 정책을 투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 법률의 대상자인 온라인 산업은 여러 영역을 포괄하는데,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자 메시지 서비스·채팅·온라인 게임 등 관련 전자서비스, 웹사이트와 인터넷서비스, 검색 엔진, 애플리케이션

이선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서비스 접근에 사용되는 장비 제조 및 공급 업체와 장비 설치·유지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서비스 산업의 모든 영역(segments)은 온라인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하는데,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하고 다룰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고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특히 어린이의 온라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들의 온라인 콘텐츠 접근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독하는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콘텐츠 및 서비스의 문제가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불평과 이의를 처리해야 한다.⁶²⁹⁾

온라인 안전법 제46조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하는 온라인 안전의 핵심은 첫째, 최종이용자가 안전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둘째, 합리적 조치의 판단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온라인 안전국(장)과 협의하며, 셋째,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폭력, 개인적 이미지, 혐오 폭력을 장려하고 선동하고 가르치고 묘사하는 자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넷째, 온라인 자료(콘텐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쉬운 방식의 이의제기 시스템을 보장하며, 다섯째, 온라인 안전국(장)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서 등을 통해 요청한 내용을 기한 내에 지킬 것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8) 디지털안전국장의 직무와 권한

| Online Safety Act 2021 | 온라인 안전법(2021) |
|---|--|
| <p>27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p> <p>(1) The functions of the Commissioner are:</p> <p>(a) such functions as are conferred on the Commissioner by:</p> <p>(i) this Act; or</p> <p>(ii) any other law of the Commonwealth;</p> <p>and</p> <p>(b) to promote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p> <p>and</p> | <p>제27조(디지털 안전국장의 직무)</p> <p>(1) 디지털 안전국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a) 다음 중 어느 하나로 디지털 안전국장에 부여되는 직무</p> <p>(i) 이 법</p> <p>(ii) 호주의 다른 법률</p> <p>(b)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활성화</p> |

629) 김여라, 앞의 글, 90-91면.

- | | |
|---|---|
| <p>(c) to support and encourage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improve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p> <p>(d) to coordinate activities of Commonwealth Departments, authorities and agencies relating to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p> <p>(e) to collect, analyse, interpret and disseminate information relating to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p> <p>(f) to support, encourage, conduct, accredit and evaluate educational, promotional and community awareness programs that are relevant to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p> <p>(g) to make,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grants of financial assistance in relation to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p> <p>(h) to support, encourage, conduct and evaluate research about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p> <p>(i) to publish (whether on the internet or otherwise) reports and papers relating to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p> <p>(j) to give the Minister reports about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p> <p>(k) to advise the Minister about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p> <p>(l) to consult and cooperate with other persons, organisations and governments on online safety for Australians; and</p> <p>(m) to advise and assist persons in relation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ct; and</p> <p>(n) to monitor compliance with this Act; and</p> <p>(o) to promote compliance with this Act; and</p> <p>(p) to formulate, in writing, guidelines or statements that:</p> <p>(i) recommend best practices for persons and bodies involved in online safety</p> | <p>(c)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개선하는 조치의 실행에 대한 지원과 장려</p> <p>(d)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정부부처, 당국 및 기관의 활동 조정</p> <p>(e)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해석 및 보급</p> <p>(f)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과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역사회 인식 제고 사업의 지원, 장려, 수행, 인증 및 평가</p> <p>(g) 국가를 대리하여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재정지원의 지급</p> <p>(h)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연구의 지원, 장려, 수행 및 평가</p> <p>(i) (인터넷 또는 다른 방식으로)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보고서와 논문의 공표</p> <p>(j) 주무장관에게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보고서 제출</p> <p>(k) 주무장관에게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에 대하여 조언</p> <p>(l)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에 대하여 다른사람, 단체 및 정부와 협의 및 협조</p> <p>(m)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조언과 지원</p> <p>(n) 이 법의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p> <p>(o) 이 법의 준수 장려</p> <p>(p) 다음과 같은 지침이나 성명서의 성문화</p> <p>(i)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에 관여하는 자와 기관을 위한 모범실무를 추천한다.</p> |
|---|---|

| | |
|---|---|
| <p>for Australians; and</p> <p>(ii) are directed towards facilitating the timely and appropriate resolution of incidents involving material provided on a social media service, relevant electronic service or designated internet service; and</p> <p>(q) to promote guidelines and statements formulated under paragraph (p); and</p> <p>® such other functions (if any) as are specified in the legislative rules; and</p> <p>(s) to do anything incidental to or conducive to the performance of any of the above functions.</p> <p>Grants</p> <p>(2) Financial assistance may be granted under paragraph (1)(g) to:</p> <p>(a) a State; or</p> <p>(b) a Territory; or</p> <p>(c) a person other than a State or Territory.</p> <p>(3) The terms and conditions on which financial assistance is granted under paragraph (1)(g) are to be set out in a written agreement between the Commonwealth and the grant recipient.</p> <p>(4) An agreement under subsection (3) is to be entered into by the Commissioner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p> <p>Guidelines and statements are not legislative instruments</p> <p>(5) Guidelines and statements formulated under paragraph (1)(p) are not legislative instruments.</p> <p>28 Powers of the Commissioner</p> <p>The Commissioner has power to do all things necessary or convenient to be done for or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the Commissioner's functions.</p> | <p>(ii) 소셜미디어서비스, 관련전자서비스 또는 지정인터넷서비스에 제공된 자료를 포함한 사건의 시기적절한 해결의 추진을 목표로 한다.</p> <p>(q) 제(p)호에 따라 성문화된 지침과 성명서의 홍보</p> <p>(r) (경우에 따라) 입법규칙에 명시된 다른 직무</p> <p>(s) 상기 직무 수행에 부수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일의 수행</p> <p>보조금</p> <p>(2) 제(1)항(g)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재정지원이 승인될 수 있다.</p> <p>(a) 주</p> <p>(b) 준주</p> <p>(c) 주나 준주 이외의 자</p> <p>(3) 제(1)항(g)에 따라 재정지원이 승인되는 조건은 국가와 보조금 수령인 사이의 협약서에 규정된다.</p> <p>(4) 디지털 안전국장은 국가를 대리하여 제(3)항의 협약을 체결한다.</p> <p>지침과 성명서는 법령이 아니다.</p> <p>(5) 제(1)항(p)에 따라 성문화된 지침과 성명서는 법령이 아니다.</p> <p>제28조(디지털 안전국장의 권한)</p> <p>디지털 안전국장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알맞은 모든 일을 할 권한이 있다.</p> |
|---|---|

온라인 안전법 제4조는 디지털안전국의 직무를 규정한다. 디지털안전국의 기본적인 임무는 호주인의 디지털 안전을 증진하는 것인데, 첫째,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 운영, 둘째, 호주 성인 대상 사이버폭력 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시스템 운영, 셋째, 합의되지 않은 개인 이미지 공유에 대한 이의제기 및 거부 시스템 운영, 넷째, 온라인 콘텐츠 제도 운영, 다섯째,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관련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활동 조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안전국은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 증진과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장려,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활동 조정, 온라인 안전 관련 정보 수집·분석·해석·보급, 온라인 안전 교육·홍보, 인식 제고 프로그램 지원·장려·수행, 재정 지원, 연구 지원 장려·수행,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조언, 이해관계자와의 협조, 모니터링, 법 준수 장려, 모범 사례 추천, 인터넷서비스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대한 시의성 있고 적절한 대처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9) 차단요청서

| Online Safety Act 2021 | 온라인 안전법(2021) |
|--|---|
| <p>95 Blocking request</p> <p>(1) If:</p> <p>(a) material can be accessed using an internet carriage service supplied by an internet service provider; and</p> <p>(b) the Commissioner is satisfied that the material:</p> <p>(i) promotes abhorrent violent conduct; or</p> <p>(ii) incites abhorrent violent conduct; or</p> <p>(iii) instructs in abhorrent violent conduct;</p> <p>or</p> <p>(iv) is material that depicts abhorrent violent conduct; and</p> | <p>제95조(차단요청서)</p> <p>(1) 다음과 같은 경우 디지털 안전국장은 자료 접속을 불가하도록 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는 차단요청서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p> <p>(a)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공급하는 인터넷통신서비스를 사용하여 자료에 접속할 수 있다.</p> <p>(b) 디지털 안전국장이 그 자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p> <p>(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장려한다.</p> <p>(i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선동한다.</p> <p>(iii)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가르친다.</p> <p>(iv) 혐오스러운 폭력행위를 묘사하는 자료이다.</p> |

| | |
|---|---|
| <p>(c) the Commissioner is satisfied that the availability of the material online is likely to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Australian community; the Commissioner may give the provider a written request, to be known as a blocking request, requesting the provider to take one or more specified steps to disable access to the material.</p> <p>(2)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steps that may be specified in the blocking request:</p> <p>(a) steps to block domain names that provide access to the material;</p> <p>(b) steps to block URLs that provide access to the material;</p> <p>(c) steps to block IP addresses that provide access to the material.</p> <p>(3) The Commissioner is not required to observe any requirements of procedural fairness in relation to the giving of the blocking request.</p> <p>(4) In determining whether the availability of the material online is likely to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Australian community, the Commissioner must have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p> <p>(a) the nature of the material;</p> <p>(b) the number of end-users who are likely to access the material;</p> <p>(c) such other matters (if any) as the Commissioner considers relevant.</p> <p>(5) In deciding whether to give the blocking request, the Commissioner must have regard to the following matters:</p> <p>(a) whether any other power conferred on the Commissioner could be used to minimise the likelihood that the availability of the material online could cause significant harm to the Australian community;</p> | <p>(c) 디지털 안전국장이 온라인에서 그 자료를 입수할 가능성이 호주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p> <p>(2) 다음은 차단요청서에 명시될 수 있는 조치의 예시이다.</p> <p>(a) 해당 자료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을 차단하는 조치</p> <p>(b) 해당 자료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URL을 차단하는 조치</p> <p>(c) 해당 자료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IP 주소를 차단하는 조치</p> <p>(3) 디지털 안전국장은 차단요청서 교부와 관련하여 절차적 공정성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p> <p>(4) 온라인에서 자료를 입수할 가능성이 호주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디지털 안전국장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야 한다.</p> <p>(a) 자료의 본질</p> <p>(b) 그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수</p> <p>(c) (해당되는 경우) 디지털 안전국장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안</p> <p>(5) 차단요청서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디지털 안전국장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야 한다.</p> <p>(a) 디지털 안전국장에게 부여된 다른 권한이 온라인에서 그 자료를 입수할 가능성이 호주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p> |
|---|---|

(b) such other matters (if any) as the Commissioner considers relevant.

(b) (해당되는 경우) 디지털 안전국장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안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는 사이버 괴롭힘 등의 부적절한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온라인안전국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온라인안전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요청서(또는 차단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조치의 예로는 해당 자료 접속 도메인 차단, URL 차단, IP주소 차단 등이 있다. 차단요청서 교부와 관련하여 온라인안전국이 절차적 공정성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제95조 제3항)에서 볼 수 있듯이 차단 요청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 자료가 호주 공동체에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온라인안전국은 자료의 본질, 해당 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최종이용자의 수, 기타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⁶³⁰⁾

(10)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시적 자유

| Online Safety Act 2021 | 온라인 안전법(2021) |
|---|--|
| <p>233 Implied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p> <p>(1) This Act does not apply to the extent (if any) that it would infringe any constitutional doctrine of implied freedom of political communication.</p> <p>(2) Subsection (1) does not limit the application of section 15A of the Acts Interpretation Act 1901 to this Act.</p> | <p>제233조(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시적 자유)</p> <p>(1) 이 법은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목시적 자유라는 헌법적 원칙을 (경우에 따라) 침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p> <p>(2) 제(1)항은 이 법에 대한 「법률해석법(1901)」 제15A조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p> |

630) 김여라, 앞의 논문, 92면; 그 밖에 온라인 안전법 제104조는 법 집행이나 이행감시 및 위반 조사, 법원이나 행정심판의 절차·과학·의학·학술 또는 역사 연구 수행이나 지원, 전문 언론인에 의한 공익 뉴스 보도나 시사보도, 공무원의 공무나 직무 수행, 예술작품을 선의로 구성·공연·전시·유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온라인안전국의 요청서 및 통지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직전 12개월간 벌금 조항 위반 사유가 2건 이상이고 공동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한다고 판단하면 온라인서비스 공급 중단 명령을 연방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연방법원은 판단에 따라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156조~159조).

호주 온라인 안전법은 호주 아동과 성인에 대한 사이버괴롭힘 콘텐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헌법적 원칙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괴롭힘의 콘텐츠의 형태가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호주 헌법의 원칙에 해당되면 처벌 등 제재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3. 소결 및 시사점

호주는 최근 온라인 안전을 미성년자인 아동에서 성인 모두로 확대하고 사이버 괴롭힘과 폭력, 온라인 혐오표현 등의 콘텐츠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의 「온라인 안전법」은 기존의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 콘텐츠만이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부당하게 겪을 수 있는 사이버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안전국의 권한을 강화하며, 동시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여 책임을 부여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 접근은 단지 호주만의 사례는 아니다. 2022년 3월 17일 영국 의회에는 「온라인 안전법」안(Online Safety Bill)이 발의되었고, 이 법안은 영국 의회 양원을 통과하여 2023년 10월 26일 국왕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성착취와 괴롭힘, 자해나 섭식장애 등 적법하지만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테러리즘 등 불법 콘텐츠와 사기 광고 등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용자 간 서비스(user-to-user service), 검색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 이용자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플랫폼은 불법 및 유해 콘텐츠에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통신규제기관인 Ofcom으로 하여금 사업자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영국은 이러한 온라인 안전 관련 규제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자가 체계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한다. 사업자는 부모와 자녀가 유해 콘텐츠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어린이 대상 성착취와 괴롭힘 콘텐츠는 국가범죄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콘텐츠(일부는 불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는 아

이기 때문에 성인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규칙과 이행 등을 잘 판단하고 통제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저널리즘과 민주적 정치토론의 보호를 위해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이 고정하지 않게 취급당할 때는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⁶³¹⁾

우리나라 또한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폭력·괴롭힘 등 다양한 온라인 안전의 문제를 겪고 있고,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5장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해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는 금지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의하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 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교육·홍보 등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권리 침해 정보의 삭제 요청, 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에 관하여도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구체적인 불법정보의 유형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에 의하면 명예훼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에 관하여 규제한다. 이처럼 호주와 영국이 사이버 괴롭힘과 폭력, 특히 적법하지만 유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정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국가 안보 등 불법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따돌림, 왕따 등의 사이버 괴롭힘이나 동의받지 않은 개인적 이미지, 다양한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 등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⁶³²⁾

호주와 영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구분하고, 콘텐츠를 수준에 맞게 분류하며, 사업자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규제기구의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면, 우리는 불법정보 금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삭제 요청에 대한 조

631) 김여라, 앞의 논문 93-94면.

632) 김여라, 앞의 글, 94면.

치 등에 그치고 있다. 물론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온라인 안전 문제 해결의 답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또 앞으로 더 심각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고 논의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온라인 안전과 권리 보호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발전하고, 온라인 정보는 예전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넘쳐나며, 플랫폼과 콘텐츠 이용을 위해 우리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메타버스 세상을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메타버스 내 미성년자 그루밍, 성범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사회가 주는 긍정적인 부분만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디지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에 앞서 살펴본 온라인 안전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제9절 싱가포르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 2019)

1. 입법개요

싱가포르는 가짜뉴스의 규제를 위해 2019년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이하 허위조작정보법)을 입법한 바 있다.⁶³³⁾ 이러한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입법과정은 다인종, 다종교 국가인 싱가포르의 사회적 배경과 싱가포르인의 가짜뉴스에 대한 심각성 인지 및 규제입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등 일련의 사회적 합의과정도 함께 수행되었다.

기본적으로 가짜뉴스는 인터넷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세계 각국이 가짜뉴스의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싱가포르도 예외로 볼 수 없었다. 2014년 싱가포르의 페어프라이스(FairPrice)라는 슈퍼마켓에 할랄이 인증된 돼지고기가 판매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첨부된 가짜뉴스가 퍼진 적이 있다.⁶³⁴⁾ 2016년에는 싱가포르의 유명한 관광지인 풍골 테라스(Punggol Waterway Terraces)가 무너졌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유포되기도 하였다.⁶³⁵⁾ 이와 같은 가짜뉴스는 다인종, 다종교 국가인 싱가포르에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거나 경찰, 소방 등 사회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공권력이 낭비되어 문제라는 인식이 생겼다.⁶³⁶⁾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6월 가짜뉴스 확산과 그에 대한 대응 문제에 대하여 싱가포르 법무부장관인 산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은 새로운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633) 허위조작정보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동법을 상세히 소개한 문헌으로, 최유리, “가짜뉴스 규제논의 동향 및 제도 연구 - 싱가포르의 가짜뉴스 규제를 중심으로 -”, 국외혼련검사 연구논문집(III), 법무연수원, 562면 이하.

634) Chua, G., ‘Halal’ pork label an insensitive hoax: Fairprice(2014, Jan 27), The Straits Times. www.straitstimes.com/singapore/halal-pork-label-an-insensitive-hoax-fairprice.

635) Report of Punggol Waterway Terraces roof collapse a ‘hoax’: HDB.(2016, Nov 11), CNA, 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report-punggol-waterway-terraces-roof-collapse-hoax-hdb-1034736.

636) <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singapore-fake-news-protectiononline-falsehoods-manipulation/>.

입법배경에는 싱가포르인의 강력한 대응에 대한 지지가 바탕이 되었는데,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인의 91%가 “가짜뉴스의 제거 및 수정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률을 지지한다고 언급하였다. 2018년에는 가짜뉴스의 제양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도입될 것을 천명하였다.⁶³⁷⁾

싱가포르 국회는 2018년 1월 10일 온라인상 거짓의 원인, 결과 그리고 대책에 대해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미디어 기관, 테크놀로지 회사, 외국과 지역 학계 및 전문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총 170건의 서면 진술을 받았으며, 2018년 3월 14~16일, 22~23일, 27~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가 진행하였다.⁶³⁸⁾ 공청회 과정에서 공청회 증인 일부가 자신들의 견해가 잘못 요약되어 전달되었다고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⁶³⁹⁾ 또한 170명 이상의 국내외 학자들이 공청회 증인이자 법안에 반대한 역사학자에 대한 장시간의 심문이 있었다. 법무부장관의 다소 강경한 태도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학문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⁶⁴⁰⁾ 이러한 진통을 거쳐 위원회는 2018년 9월 가짜뉴스의 제양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에게 온라인 허위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⁶⁴¹⁾ 이러한 움직임은 통해 가짜뉴스 규제 입법을 위한 사전작업이 완료되었다.⁶⁴²⁾

이후 동법은 2019년 4월 1일 국회에 상정되었는데, 싱가포르 총리인 리셴룽(Lee Hsien

637) Ng, K., Law tackling fake news to be introduced next year : Shanmugam(2017, June 19), TO DAY.www.todayonline.com/singapore/new-laws-tackle-fake-news-be-introduced-nextyear-shanmu-gam.

638) www.parliament.gov.sg/sconlinefalsehoods.

639) Yahya, Y., Panel okay some changes to evidence summaries(2018. April 10), The Straits Times, www.straitstimes.com/politics/panel-okays-some-changes-to-evidence-summaries.

640) Seow, J., 170 academics sign open letter expressing concern about academic freedom in Singapore(2018. April 13), The Straits Times, www.straitstimes.com/politics/170-academicssign-open-letter-expressing-concern-about-academic-freedom-in-singapore.

641) Sim, R., Select Committee on fake news : 22 recommendations unveiled to combat online falsehoods(2018. Sep 20), The Straits Times, www.straitstimes.com/singapore/select-committee-on-fake-news-22-recommendations-unveiled-to-combat-onlinefalsehoods.

642) 최유리, 앞의 논문, 562면.

Loong)은 가짜뉴스를 다루는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이거나 통제되지 않는 사회는 없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람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정보, 생각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제안된 법률이 가짜뉴스가 지닌 나쁜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동법을 지지하였다.⁶⁴³⁾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집권당이자 다수당인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⁶⁴⁴⁾의 주도하에 2019년 5월 8일 통과되고 동년 10월 2일자로 발효되었다.⁶⁴⁵⁾

2.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의 주요 내용⁶⁴⁶⁾

(1) 입법목적

동법은 제5조(section 5)에서 다섯 가지의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싱가포르에서 사실에 대한 거짓 진술의 전달을 방지하고, 그러한 통신의 영향에 대응하는 조치(명령)를 가능하게 하며, 둘째, 싱가포르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온라인 위치(웹사이트, 웹페이지, 채팅방 등)를 지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며, 셋째, 조직화된 부정행위와 온라인 계정과 봇(Bot)의 악용을 발견, 통제, 저지하기 위한 조치(명령)를 가능하게 하고, 넷째, 정치적 목적의 유료콘텐츠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명령)를 취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제2조의 제2항 제2호 a목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에 대한 진술에만 적용되어(section 2(2)(a)), 의견, 비판, 풍자 또는 패러디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643) Wong, C., Fake news must be curbed before it affects society : PM Lee(2019. April29), The Strait Times, www.straittimes.com/singapore/fake-news-must-be-curbedbefore-it-affects-society-pm.

644) Lee, H & Lee, T., From contempt of court to fake news : public legitimisation and governance in mediated Singapore, Media International Australia, 173(1)(2019), 81-92.

645) www.parliament.gov.sg/parliamentary-business/votes-and-proceedings.

646)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2019.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주요 내용

1) 제2절: 싱가포르에서 허위사실 전달 금지

제2절(PART 2)은 싱가포르 내에서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7조(section 7)에서는 싱가포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싱가포르 내의 전달을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허위진술은 사실에 대한 허위의 진술이어야 하고, 싱가포르의 안보, 공중보건, 공공의 안전, 공공의 평온 또는 공공 재정, 싱가포르와 다른 나라 사이 우호적 관계에 해를 미치거나, 각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집단의 사람들 사이 증오, 악의 조장하거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하는 것이어야 한다.⁶⁴⁷⁾ 이를 위반한 개인의 경우 S\$50,000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비개인의 경우 S\$50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을 전파하는데 가짜 온라인 계정이나 봇이 사용된 경우, 개인의 경우 100,000 싱가포르달러(SS)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비개인의 경우 1,000,000 싱가포르달러(S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제8조 및 제9조(section 8, 9)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봇(Bot)을 만들거나 개조한 자, 위와 같은 행위에 사용되거나 될 것임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3절: 싱가포르에서의 허위사실유포를 다루기 위한 명령

제3절(PART 3)에서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주무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었거나 전달되고 있고, 공익을 위하여 명령을 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권한 있는 기구(허위조작정보법 사무국, 이하 사무국, POFMA office)⁶⁴⁸⁾에 제3절에 규정된 명령을 내리도록 지

647) 관련 번역은, 최유리, 앞의 논문, 565면 참조.

648) 2019. 5. 8. 싱가포르 통신 및 정보부 장관인 S Iswaran은 의회연설에서 허위조작정보법 제6조 제1항[POFMA section 6(1)]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법 집행을 위한 사무국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Speech by Mr S Iswaran, Minister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시할 수 있다. 제10조(section 10)에서는 대상 진술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다고 한다.

제11조(section 11)에서는 지시에 따르면 허위진술 전달한 자에게 수정지시(Correction Direction(이하 “수정지시(CD)”라 함))가 내려질 수 있는데, 수정지시를 받은 사람은 대상 진술이 거짓인 사실 또는(과) 정확한 사실 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수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정통지는 온라인에 게재하거나 싱가포르 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게시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정지시는 대상자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2조(section 12)는 허위진술을 전달한 자에게는 통신 중지 지시(Stop Communication Direction)가 내려질 수도 있고, 해당 지시를 받은 사람은 대상 진술의 싱가포르 내 전달을 중단하여야 한다. 통신 중지 지시 역시 대상자의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조(section 13)에서 이러한 제3편상 규정된 지시는 허위진술이 인터넷을 통해 싱가포르 내 한 명 이상의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되지만 한다면, 대상자나 그 행위 장소가 싱가포르 내인지 외인지를 불문하고 발령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3절에 규정된 지시를 합리적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15조(section 15)에는 개인은 20,000 싱가포르달러(SS) 이하의 벌금형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비개인인 500,000 싱가포르달러(S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6조(section 16)은 액세스 차단 명령(Access Blocking Order)이 발령되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허위진술이 유통된 온라인 위치에 대한 최종 유저들의 접근을 차단하게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다. 제17조(section 17)는 제3편에 규정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지시를 발행한 장관에게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장관이 위 신청을 거부한 경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during the Second Reading for 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Bill on 8 May 2019 / <https://www.mci.gov.sg/pressroom/news-and-stories/pressroom/2019/5/speech-by-mr-s-iswaran-during-the-second-reading-for-pofmb-on-8-may-2019?pagesize=6&year=2019&page=12>.

3) 제4절: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시

제4절은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에 대한 지시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제20조(section 20)에서 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내지는 중개자(Google, Facebook, Twitter 등)⁶⁴⁹⁾나 매스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해당 서비스를 통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그것으로 구성된 자료가 전달되었거나 전달되고 있고, 공익을 위하여 지시를 발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4편의 지시를 명령할 수 있다. 대상 자료가 수정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도 지시가 발령될 수 있다.

제21조와 제23조(section 21, 23)에는 제4편의 지시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매스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고, 수정지시를 받은 자는 대상 진실이 거짓인 사실 또는(과) 정확한 사실 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수정통지를 해당 서비스에 게재하여 최종 유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제4절의 지시에는 지정수정지시(Targeted Correction Direction, TCD)와 일반수정지시(General Correction Direction, GCD)가 있다.⁶⁵⁰⁾ 지정수정지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상 자료에 접근하는 이용자들에게 수정통지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이고, 일반수정지시는 지정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매스미디어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수정통지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서, 동법의 발효 당시 구글, 바이두, 페이스북, 트위터를 포함한 일부 인터넷 중개자에 대해 일반수정지시의 적용이 면제되었으나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적용 면제가 해제되었다.⁶⁵¹⁾

제25조(section 25)에서는 제4편의 지시는 허위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싱가포르 내에 있는 한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전달되기만 한다면, 대상자나 그 행위 장소가 싱가포르 내인지 외인지를 불문하고 발령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7조(section 27)는 제4편에 규정된

649) <https://singaporelegaladvice.com/law-articles/singapore-fake-news-protectiononline-falsehoods-manipulation/>

650) 특정 수정지시로 번역하고 있는 문헌으로, 최유리, 앞의 논문, 567면.

651) Kurohi, R., Wuhan virus: Pofma exemptions lifted amid spread of fake news on outbreak(2020. Jan 31), The Straits Times, www.straitstimes.com/singapore/pofma-exemptionslifted-amid-spread-of-fake-news-on-virus.

지시를 합리적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20,000 싱가포르 달러(S\$) 이하의 벌금형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단체는 1,000,000 싱가포르달러(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 100,000 싱가포르달러(S\$)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제28조(section 28)는 액세스 차단 명령(Access Blocking Order)이 발령되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 하여금 허위자료가 게시된 온라인 위치에 대한 최종 유저들의 접근을 차단하게 할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29조는 제4절에 규정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지시를 발행한 장관에게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장관이 위 신청을 거부한 경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5절: 온라인 위치 선언

제32조(section 32)에서 장관은 특정 온라인 위치 또는 웹사이트에 유효한 제3절 또는 제4절의 지시대상인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진술이 선언 전 6개월 동안 유통된 경우 해당 위치 또는 웹사이트를 선언된 온라인 위치 선언(Declared Online Location, DOL, 이하 온라인위치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해당 온라인 위치의 URL, 도메인 이름 또는 기타 고유 식별자, 선언의 효력발생 시점 등이 포함되고, 해당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그 온라인 위치에 접근하는 최종 유저들에게 선언된 온라인 위치임을 알릴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선언된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위 통지의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개인은 40,000 싱가포르달러(S\$)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단체는 500,000 싱가포르달러(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33조와 제34조(section 33, 34)는 선언된 온라인 위치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위 통지의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장관은 접속차단명령(Acess Blocking Order, Order disable access)을 발령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나 중개업체(Internet intermediary)로 하여금 위 온라인 위치에 대한 최종 유저들의 접근을 차단하게 할 수도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제35조(section)는 온라인위치선언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선언을 한 장관에게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장관이 위 신청을 거부한 경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36조(section 36)에는 선언된 온라인 위치의 운영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받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개인은 40,000싱가포르달러(SS)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단체는 500,000싱가포르달러(S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때 법원은 위와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을 벌금으로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38조(section 38)는 또한 누구든지 선언된 온라인 위치에서의 허위사실 유통을 돕거나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⁶⁵²⁾

5) 제6절: 가짜계정과 조직화된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지시

제40조(section 40)에서 장관은 특정 온라인 계정을 통해 허위정보가 전달하거나 조직화된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계정이 가짜계정이거나 봇에 의해 조작되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넷 중개자에게 계정 제한지시를 발령할 수 있다. 계정 제한지시가 떨어지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그 계정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나 계정 소유자가 싱가포르에서 해당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42조(section 42)는 벌칙규정으로, 계정 제한지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개인은 20,000 싱가포르달러(SS) 이하의 벌금형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형, 단체는 1,000,000 싱가포르달러(SS)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규정한다. 제43조(section 43)는 가중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 위반이 계속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 하루 100,000 싱가포르달러(SS) 이하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으며, 접속차단명령(Access Blocking Order)이 발령되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로 하여금 해당 온라인 위치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게 할 수도 있다. 제44조(section 44)는 계정 제한지시를 받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해당 온라인 계정의 소유자 등은 위 계정 제한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장관에게 먼저 지시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고, 장관이 위 요청을 거부한 경우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52) 이와 같은 점을 명시한 사례로는 “National Times Singapore”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온라인 위치선언사례 등이 있다. <https://www.mci.gov.sg/pressroom/news-and-stories/pressroom/2020/5/nationaltimes-singapore-facebook-page-made-a-declared-online-location-under-pofma>.

3.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 적용 사례

(1) 지시 및 조치 종류

싱가포르 각 부처 장관들은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38회⁶⁵³⁾에 걸쳐 사무국(POFMA Office)에 동법에 따른 각종 지시를 발령하도록 지시하였다.⁶⁵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직접 당사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수정지시(CD)가 가장 빈번하게 발령되었고, 인터넷 중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4절의 지시 중 지정수정지시(TCD)가 9차례, 일반수정지시(GCD)가 2차례 내려졌다. 사무국은 먼저 진술을 한 직접 당사자에게 수정지시(CD)를 발령하고 그 대상자가 이 수정지시(CD)에 따른 수정통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곧이어 관련 인터넷 중개자에 대해 지정수정지시를 발령하거나, 처음부터 진술의 당사자에게는 수정지시(CD), 인터넷 중개자에게는 지정수정지시를 같이 발령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진술 당사자가 지시를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인다.

동법 시행 이후 각종 지시의 대상이 된 진술 중 상당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된 만큼 페이스북이 지정수정지시(TCD)를 가장 빈번하게 받았다. 페이스북은 2019년 11월 29일 알렉스 탄(Alex Tan)이 운영하는 스테이트 타임즈 리뷰(State Times Review)와 관련하여 발령된 지정수정지시(TCD)를 시작으로 다수의 지시를 받았으나 법의 신중하고 투명한 운용을 기대하며 위 지시를 대체로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⁶⁵⁵⁾ 다만, 정부가 반복적인 허위사실 전달을 이유로 위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명령(Access Blocking Order)을 내리자 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⁶⁵⁶⁾

지정된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허위진술이 포함된 자료에 접근하려는 이용자와 서비스에 접속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수정통지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수정지시는 두 차례 발령되었는데,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

653) 정부 발표 횟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1회 발표 시 다수의 대상자를 상대로 각종 지시가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대상자나 지시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면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음.

654) <https://www.pofmaoffice.gov.sg/media-centre/>.

655) Facebook bows to Singapore's 'fake news' law with post 'correction'(2019, November 30), BBC, <https://www.bbc.com/news/world-asia-50613341>.

656) Facebook expresses 'deep concern' after Singapore orders page block(2020, February 19), BBC, <https://www.bbc.com/news/world-asia-51556620>.

위진술에 대한 것이었고, 그 중 두 번째 일반수정지시는 구글, 바이두,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대한 일반수정지시(GCD) 적용 면제가 해제된 2020년 1월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 SPH 매거진(SPH Magazines)이 지시대상이 되었다. 페이스북, 트위터, SPH 매거진(SPH Magazines)은 싱가포르 내 자사 서비스이용자들을 상대로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 변이 발생'에 대한 진술이 허위라고 결정하고 수정통지를 지시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수정통지를 하여 일반수정지시(GCD)를 이행하였다.⁶⁵⁷⁾

3회 이상 서로 다른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전달한 웹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한 DOL(온라인 위치선언)이 세 차례 발령되었다.⁶⁵⁸⁾ 스테이트 타임즈 리뷰(The State Times Reviews), 싱가포르 타임즈(The Singapore States Times), 내셔널 타임즈 싱가포르(National Times Singapore) 및 알렉스 탄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대상이었다. 위의 각 페이지는 모두 허위조작정보법에 의한 수정지시를 가장 많은 받은 개인인 싱가포르 반체제 인사 알렉스 탄이 운영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수정지시는 물론 온라인위치선언에 따른 지시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관은 동법 제34조에 따라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대한 접속차단명령을 발하였다.

(2) 적용 사유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에 따른 각종 지시 및 조치들이 각 부처 장관들의 판단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지시 및 조치들의 대상은 대체로 국가의 정책이나 정부와 관련된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다. 예컨대 정부 및 국영 투자회사의 관계 내지 투자 상황,⁶⁵⁹⁾ 정부의 인구 노동정책,⁶⁶⁰⁾ 교육정책,⁶⁶¹⁾ 사형제,⁶⁶²⁾ 경찰권 행사⁶⁶³⁾ 등에 관한 것이

657) Yong, M., POFMA directive issued to Facebook, Twitter, SPH Magazines over 'Singaporevariant' of COVID-19 falsehood (2021. May 29), Channel Newsasi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pofma-covid-19-singapore-variant-facebook-twitter-hardwarezone-14843832>.

658) <https://www.pofmaoffice.gov.sg/media-centre/>.

659) www.gov.sg/article/factually-clarifications-on-falsehoods-posted-by-mr-brad-bowyer.

660) <https://www.gov.sg/article/factually-corrections-on-falsehoods-posted-by-sdp>, <https://www.gov.sg/article/factually030720a>, <https://www.gov.sg/article/factually040720a>.

다. 동법의 시행 이후 발생한 코로나 19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되었다. 즉 코로나 19와 관련된 각종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정부가 동법상의 지시와 조치를 취하여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코로나 19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발령된 각종 지시 및 조치 횟수는 총 12차례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⁶⁶⁴⁾

(3)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 지시에 대한 당사자들의 항소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의 제정 이후 정부가 발령한 다수의 허위조작정보법 지시에 대한 항고소송의 수는 많지 않았다. 이하에서 간략하게 해당 사건을 소개하도록 한다. 정부는 2020년 1월 말레이시아 비정부기구(NGO)인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 [Lawyers For Liberty(LFL)]이라는 단체에서 싱가포르교도소가 불법적인 처형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수정지시(CD)를 내렸으나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이 이행하지 않아 곧이어 접속차단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해당 사이트는 싱가포르에서 접속이 차단되었다.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은 해당 명령이 말레이시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는 점과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 시민에게 법을 확장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쿠알라룸푸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⁶⁶⁵⁾ 또한 당시 자유 쟁취를 위한 변호사들의 게시물을 인용한 매체인 온라인 시민[The Online Citizen(TOC)]에도 수정지시(CD)가 내려졌는데, 온라인 시민 측에서도 부당하다며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원은 수정지시는 대상자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시민들 측이 문제되는 정보의 진실 여부의 인지와는 상관없이 수정지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⁶⁶⁶⁾

661) <https://www.gov.sg/article/factually-corrections-on-falsehoods-posted-by-mr-lim-tean>.
<https://www.gov.sg/article/factually020720a>.

662) www.gov.sg/article/factually-clarifications-on-falsehoods-posted-by-lawyers-forliberty.

663) www.gov.sg/article/factually-clarification-on-falsehood-posted-by-ttr-on-fooddelivery-rider.
<https://www.gov.sg/article/factually210521>.

664) 최유리, 앞의 논문, 572면.

665) Kanyakumari, D., Malaysian rights group Lawyers for Liberty files motion in KL High Court against Shanmugam over correction direction(2020. Jan 24), Channel Newsasi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pofma-singapore-malaysia-lawyersfor-liberty-shanmugam-execution-12322456>.

다른 항고소송 사례로는, 야당인 싱가포르 민주당(Singapore Democratic Party, SDP)과 관련된 사건이다. 싱가포르 민주당은 싱가포르 인구정책에 관한 자신들의 온라인 기사 2개와 페이스북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전파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수정지시를 받았다.⁶⁶⁷⁾ 그러나 싱가포르 민주당은 수정지시를 내린 노동부 장관에 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장관이 이를 거부하였다.⁶⁶⁸⁾ 이후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지만,⁶⁶⁹⁾ 법원은 SDP의 게시물이 사실에 대한 두 가지 허위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민주당의 소를 기각했다.⁶⁷⁰⁾ 이 사건에서 법원은 SDP의 소를 기각하면서도 문제되는 진술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백한 정보 비대칭을 이유로 정부가 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⁶⁷¹⁾ 특히할 만한 점은 전술한 온라인 시민측이 제기한 소에서 정부가 아닌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⁶⁷²⁾ 싱가포르 민주

666) Chang, N., Judge dismisses The online Citizen's POFMA challenge(2020. Feb 19), CN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the-online-citizen-toc-pofmachallenge-appeal-dismiss-12449826>.

667) SDP article, Facebook posts contain falsehood : POFMA office(2019, Dec 14), YahooNews Singapore, https://sg.news.yahoo.com/sdp-article-facebook-posts-containfalsehoods-pofma-office-0928_13061.html.

668) SDP applies to cancel 3 correction order issued by Manpower Ministry under POFMA(2020. Jan 3), Yahoo News Singapore, <https://sg.news.yahoo.com/sdp-applies-to-cancel-3-correction-orders-issued-by-manpower-ministry-under-pofma-105725147.html>. Josephine Teo rejects SDP's application to cancel 3 correction directives(2020, Jan 6), Yahoo News Singapore, <https://sg.news.yahoo.com/josephine-teo-rejects-sd-psapplication-to-cancel-3-correction-directives-123350404.html>.

669) SDP files case in High Court against Manpower Minister Josephine Teo over POFMAorders(2020. Jan 8), Yahoo News Singapore, <https://sg.news.yahoo.com/sdp-filescase-in-high-court-against-manpower-minister-josephine-teo-over-pofma-orders-133418195.html>.

670) Tang, L, High Court dismisses SDP's Pofma appeal, calls party's arguments 'problematic'(2020, Feb 5), Today online, <https://www.todayonline.com/singapore/high-court-dismisses-sdps-pofma-appeal-calls-partys-arguments-problematic>.

671) Yuen-c, T, Burden falls on govt to prove statements are false(2020. Feb 6), The straits times. www.straitstimes.com/politics/burden-falls-on-govt-to-prove-statements-are-false.

672) Ng Jun Sen., Burden of proof doesn't fall on Govt for Pofma appeals, says High court judge who disagrees with fellow judge(2020. Feb 19), Today Online, <https://www.todayonline.com/singapore/burden-proof-doesnt-fall-govt-pofma-appeals-says-high>

당 사건에서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⁷³⁾

해당 사례에 대해 온라인 시민과 싱가포르 민주당은 모두 싱가포르 대법원에 상고하여 진술이 허위 여부, 입증책임의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으나,⁶⁷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⁷⁵⁾ 이외에도 온라인 시민이 싱가포르 국영기업 테마섹(Temasek)의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보도한 이후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정지시를 발령받은 사건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항고가 제기되었으나 장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⁶⁷⁶⁾

(4)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싱가포르 정부는 가짜뉴스 즉 허위정보에 대해 각종 수정지시를 내리고 대상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 별도의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⁷⁷⁾ 법안 통과 무렵 법무부의 전임 장관(Senior Minister)이 동법의 취지가 허위정보가 미치는 악영향을 시정하는데 있을 뿐 부정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⁶⁷⁸⁾ 실제 수정지시를 받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수정통지를 이행하였고, 지시에 대해 반발⁶⁷⁹⁾하거나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다룬 당사자⁶⁸⁰⁾들도 일단 수정통

court-judge-who-disagrees-fellow.

673) 최유리, 앞의 논문, 574면.

674) Lam, L., Judgment reserved in The Online Citizen, SDP's POFMA appeals, as court grapples with legal issues including burden of proof(2020. Sep 17), Channel Newsasi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toc-sdp-pofma-appeals-judgement-court-appeal-13121094>.

675) 최유리, 앞의 논문, 574면.

676) Mahmud, A., High Court to decide if minister's POFMA order should be upheld in case related to Temasek CEO's salary(2020. May 5), Channel Newsasi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high-court-review-pofma-tocho-ching-salary-temasek-12703692>.

677) 최유리, 앞의 논문, 574면.

678) Kit, T., Measures targeting online falsehoods aim to 'remedy' impact, 'not punish wrongdoers': Edwin Tong(2019. May 7), Channel Newsasi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online-falsehoods-bill-aim-to-remedy-impact-edwin-tong-11511674?cid=h3_referral_inarticlelinks_24082018_cna.

지는 이행하는 쪽을 택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현재까지 없었다.

말레이시아의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과 반체제 인사 알렉스 탄 및 그가 운영하는 각종 온라인 페이지가 정부의 수정지시에 불응하여 접속이 차단되었으나, 이들 모두 싱가포르 외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다른 형사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⁶⁸¹⁾

4.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에 대한 평가

(1) 개관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개롭게도 코로나 19 팬데믹이 발발하여 싱가포르는 코로나 19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짜뉴스에 선제적으로 유용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실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사회적, 경제적 혼란에 휩싸였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효과적인 대응을 취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나 정부의 대응방안, 백신 관련 정책 등 수많은 허위사실들이 가짜뉴스의 형식으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확대·재생산되어 혼란에 쌓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⁶⁸²⁾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의 전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이 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회를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었다. 실제 싱가포르 코로나와 관련된 허위사실에 보도되거나 유포될 때마다 신속히 수정지시를 내려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및 이에 따른 혼란을 효과적으로 통제한 것이다.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에 찬성하는 측은 온라인 허위사실의 확산과 영향력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 법원이 아닌 행정부가 초기 의사결정자가 되어서는 안된

679) New Naratif's Response to the POFMA Correction Direction(2020, May 14), New Naratif, <https://newnaratif.com/new-naratifs-response-to-the-pofma-correction-direction>.

680) SDP says MOM decision a 'cop-out', will contest POFMA order in court(2020, Jan 7), Yahoo News Singapore, <https://sg.news.yahoo.com/sdp-says-mom-decision-copoutwill-contest-pofma-orders-in-court-024449602.html>.

681) Romero, A. 6th correction direction issued under POFMA to Alex Tan. The independent. <https://theindependent.sg/6th-correction-direction-issued-under-pofma-to-alex-tan/>

682) 이문한,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과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법학평론, 11(2021), 201-251.

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부를 통해서도 신속한 결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동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⁶⁸³⁾ 또한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에 따르면 정부가 바로 대상 게시물의 삭제나 대상 게시물로의 접근 차단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게시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내린 수정지시를 함께 확인되도록 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있다.⁶⁸⁴⁾ 이러한 장점과 현실적인 효용 사례와는 별개로 여전히 이 법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과도한 규제 범위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은 정부가 가짜뉴스로 규정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우려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⁶⁸⁵⁾ 먼저, 동법은 싱가포르에 있는 이용자가 접근할 수만 있다면 싱가포르 밖에서 유통되는 콘텐츠까지 통제된다. 말레이시아의 자유를 위한 변호사들 사건에서도 싱가포르 외부에 소재한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정지시를 발하였고, 이행을 거부하자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또한 문제되는 콘텐츠를 작성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도 그들의 고의나 부주의 유무와 관계없이 각종 명령을 발령할 수 있고 그 지시의 종류도 해당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수정 통지를 하라는 지시뿐 아니라 콘텐츠와 무관한 서비스 이용자 전체에게 일반수정지시부터 접근차단명령,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예정되어 있어 침익적이다.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은 정부의 이러한 각종 지시에 대

683) Chong, A., May not be possible for courts to decide on a falsehood 'in a matter of hours': shanmugam(2019. May 9), Channel Newsasi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online-falsehoods-bill-courts-decidepofma-shanmugam-pritam-11514102?cid=h3_referral_inarticlelinks_24082018_cna.

684) Kit, T., Measures targeting online falsehoods aim to 'remedy' impact, 'not punish wrongdoers': Edwin Tong(2019. May 7), Channel Newsasia,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online-falsehoods-bill-aim-toremedy-impact-edwin-tong-11511674?cid=h3_referral_inarticlelinks_24082018_cna.

685) 최유리, 앞의 논문, 576면.

해 소송을 통해 적절히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문제가 되는 콘텐츠 작성의 주체가 아닌 인터넷 중개자 입장에서는 법을 이유로 정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으로 보일 뿐 콘텐츠의 진실성이나 지시의 합법성에 대해 직접 나서 다룰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직접 콘텐츠를 작성한 측이라도 그들이 충분한 자본이나 시간을 가지지 못한 독립 언론이거나 개인의 경우 항소를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⁶⁸⁶⁾

심지어 수정이나 삭제된 경우에도 동법에 의해 정부가 지시를 내릴 수 있고(「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 제10조, 제20조), 당사자가 소를 통해 지시에 대해 다투더라도 법원의 결정이나 장관의 수정, 취소 전까지는 위 지시는 여전히 유효하다(제17조 제6항, 제29조 제7항). 이처럼 이미 수정이나 삭제된 것에 대한 소급적 효력을 발한다는 점과 별도의 가치분 없이 본안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동법은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특히 소송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의 명령은 곧 실효성을 가진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다.

(3) 용어의 불분명함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은 정의규정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자의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다.⁶⁸⁷⁾ 동법은 진술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도 동법의 규율 대상인 허위 사실로 보고 있는데(제2조 제2항). ‘오해의 소지’(misleading)가 있고 해석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의적 적용을 통한 명령을 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단순허위사실 뿐 아니라 그것이 싱가포르의 안보, 공중보건, 공공의 안전, 공공의 평온 또는 재정, 싱가포르와 다른 나라 사이 우호적 관계에 해를 미치거나 각종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집단의 사람들 사이 증오, 악을 조장하거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

686) RSF explains why Singapore's anti-fake news bill is terrible(2019. April 8), Reporters without borders, <https://rsf.org/en/news/rsf-explains-why-singapores-anti-fake-news-bill-terrible>.

687) Mahmud, A., 'Very onerous' process to challenge order on content deemed as online falsehood: Sylvia Lim(2019. May 8), Channel Newsasia, <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online-falsehoods-bill-workers-partyonerous-appeal-process-877101>.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규제의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위 항목들이 광범위하고 개념적으로 모호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현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게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⁶⁸⁸⁾ 실제 동법에 따라 지시가 발령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가의 중요 정책이나 보전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경찰과 시민 사이 가벼운 충돌이나 루머에 가까운 내용에 대해서도 공익과 관련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4) 사전 검열 효과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에 의한 광범위한 규제와 불분명한 용어에서 오는 잠재적 제재 가능성은 언론과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들의 진술이나 주장을 사전 검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⁶⁸⁹⁾

싱가포르의 언론인 단체는 동법의 제정 이전에 통신정보부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 법이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실수를 구분하지 못해 선의로 행동하는 언론인에게 불필요하게 무거운 부담을 안겨준다.”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고 한다.⁶⁹⁰⁾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와 달리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대방, 특히 소규모 자본과 인력을 보유한 독립 언론에게는 이 법이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진실에 기반한 정부 비판이라도 선뜻 제기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자기 검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독립 언론이나 개인이 취급하는 콘텐츠에는 사실과 의견이 혼재하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 막강한 자본, 인력과 정보력을 보유한 정부가 허위사실로 단정할 경우 그것이 전체 진술 중 일부에 대한 것이라도 전체적으로 해당 언론이나 개인의 신뢰도를 하락시켜 콘텐츠의 전체 의도가 왜곡될 수 있고, 이 모든 상황이 언론이나 개인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688) 최유리, 앞의 논문, 578면.

689) 최유리, 앞의 논문, 578면.

690) Han, K., Big Brother's regional ripple effect, Index on Censorship, 48(2)(2019. June 18), 67-69, <https://doi.org/10.1177/0306422019858296>.

(5) 사법 통제의 유효성 여부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의 제정 및 시행을 찬성한 정부 측은 당연히도 어떤 것이 거짓이라는 선언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독할 수 있으므로, 사법부에 의한 명백한 감독 체계 및 점검이 존재하여, 정부가 동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⁶⁹¹⁾

그러나 싱가포르가 삼권분립을 택하고 있고, 헌법과 각종 하위 법률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실제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있다.⁶⁹²⁾ 이는 명예훼손소송과 같은 사례에서 정부나 여당 의원이 승소한 사건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⁶⁹³⁾ 이와 관련하여 국제변호사협회 인권연구소(IBAHR)는 싱가포르의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였다.⁶⁹⁴⁾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14-2015년 조사에 의하더라도⁶⁹⁵⁾ 싱가포르의 전반적 경쟁력이 144개국 중 2위이고, 재산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부분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자유에 있어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사법적 독립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인 20위에 올라와 있다. 이처럼 다른 영역에 비해 싱가포르의 사법부의 독립성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충분히 보장되었는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691) Ho, J. & Kwang, K., Proposed law on falsehoods has 'clear oversight mechanism' to prevent abuse by Government, says Shanmugam(2019, Apr 13), Channel Newsasia, <https://www.channelnewsasia.com/singapore/proposed-law-falsehoods-has-clearoversight-mechanism-prevent-abuse-government-says-shanmugam-885816>.

692) 최우균, “싱가포르의 사법제도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2019), 제19면.

693)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Question of the human right of all persons subjected to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1996, March 1), <https://web.archive.org/web/20110629193901/http://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0/75bbf673df4b38ed802566b1003dd2d1>.

694) Montgomery, D., Singapore speak out against criticism of its judiciary(2008, July 11), Jurist, <https://www.jurist.org/news/2008/07/singapore-speaks-out-against-criticism/>

695)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2014, Aug 21), World Economic Forum, <https://www.weforum.org/reports/global-competitiveness-report-2014-2015>.

(6) 실질적인 권리구제 요건의 미비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은 정부의 제재 및 규제에 대해 법원에 항고를 제기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절차적 요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인지는 의문이 간다. 왜냐하면 지시의 효력이 지닌 강제성과 각종 지시와 명령 등 조치가 가져올 표현의 자유는 소송기간 동안 정지가 되어 침해를 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절차적 요건에서는 별도의 가처분신청제도가 없다. 따라서 본안소송에 앞서 피처분자의 침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본안소송에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장관의 지시는 중국적인 효력을 가진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5. 소결

싱가포르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은 인터넷상의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한 법률로 평가된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근거에는 싱가포르의 독특한 정치·사회적 특징과 국민의 법감정 등 법문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싱가포르의 지리적 특징은 말레이시아 남부의 자그마한 도시국가로 인구는 서울의 절반이 좀 넘는 570여만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는 중앙집권적 통치가 효율적이고 국민들에 대한 감시나 통제가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 초대총리인 리관유(李光耀, 1923-2015)가 실권을 잡고 통치한 기간이 무려 40여년에 이르고(1959-1990), 그나마도 총리직을 퇴임한 이후에는 국무자정(1990-2004)과 내각자정(2004-2011)을 역임하며 사실상 상왕으로 통치를 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現 총리인 리셴 룡은 리관유의 장남으로 사실상 권력을 아들에게 승계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특징은 언론자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의 세계언론 자유지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 시행 이전인 2018년에도 세계 151위로 매우 나쁜 수준이다. 싱가포르의 언론환경도 두 개의 회사가 싱가포르 전체 인쇄, 방송 매체를 통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국영회사가 하나를 소유하고, 나머지 하

나는 형식은 민간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경영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연하게도 언론에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해서는 탄압에 가까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⁶⁹⁶⁾ 이러한 싱가포르의 정치·문화적 특징은 독특한 법문화로도 이어지는데, 동법의 제정을 시민들이 원했다는 점이나 현재에도 태형이 집행되는 엄격한 형벌이 유지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의 제정과 집행에는 싱가포르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국민들의 법감정이 결합되어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법률 자체가 지닌 오해의 소지와 같은 모호한 정의규정이나 대상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동법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가짜뉴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였으므로,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시사점은 찾을 수 있다.

그 밖에도 항고소송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가치분신청이 없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이처럼 싱가포르는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와 효율적 규제라는 측면에 과도하게 경시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입을 모색하더라도 피처분자에게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치분신청과 같은 절차적 요건 구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96) <https://rsf.org/en/singapore>.

제10절 일본에서 인격권 침해 관련 법령

1. 인격권 개요

(1) 일본국 헌법상 근거 규정: 제13조

일본에서 인격권의 의미에 대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격권은 자연권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일본 실정법에 관한 논의에서 인격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 제13조를 근거로 실체법상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⁶⁹⁷⁾

(2) 법적 성질

인격권은 절대권으로서 방해 배제·예방의 근거가 되고 불법행위의 피침해 권리가 되며, 사람의 인격에 전속하는 권리로 일신전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양도, 상속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다만 이것에 따른 손해배상권에 대해서는 일신전속성이 없다.⁶⁹⁸⁾

(3) 인격권의 구분

인격권은 개별적 인격권의 총체인 일반적 인격권이 있고, 실정법에서는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같이 한정된 구성요건을 가진 권리로 개별적 인격권이 있다.⁶⁹⁹⁾ 개별적 인격권은 신체적 인격권과 정신적 인격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정신적 인격권이다. 전자는 생명·신체·건강 등 인간의 신체적 속성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이것이 인격권에 해당하는 것에는 거의 이론이 없다. 후자는 지금까지는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⁷⁰⁰⁾

697) 企業法務 債權回収, 人格権の基本(概念・法的性質・根拠・分類)】, 弁護士法人みずほ中央法律事務所・司法書士法人みずほ中央事務所, 2021.05.13. 자
<<https://www.mc-law.jp/kigyohomu/27248/>>.

698) 企業法務 債權回収, 人格権の基本(概念・法的性質・根拠・分類)】, 弁護士法人みずほ中央法律事務所・司法書士法人みずほ中央事務所, 2021.05.13. 자
<<https://www.mc-law.jp/kigyohomu/27248/>>.

699) 企業法務 債權回収, 人格権の基本(概念・法的性質・根拠・分類)】, 弁護士法人みずほ中央法律事務所・司法書士法人みずほ中央事務所, 2021.05.13. 자
<<https://www.mc-law.jp/kigyohomu/27248/>>.

또한 인격권은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수동적인 것이 주였지만 최근에는 능동적인 인격권이 인정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제3자에 의한 침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고, 후자는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하여 「자기정보통제권」으로 이동하여 「자율적 자기결정권」이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⁷⁰¹⁾

2.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직접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책임,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의무(통신의 검열 금지, 통신비밀의 침해금지 등)와 관련한 책임,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책임(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 등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⁷⁰²⁾

특히, 세 번째의 경우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방치한 경우에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② 실제로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정보를 삭제한 경우에 발신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인터넷상의 위법·유해정보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와 발신자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중요한 권리·이익의 긴장 관계가 있다.⁷⁰³⁾

700) 企業法務 債権回収, 人格権の基本(概念・法的性質・根拠・分類)】, 弁護士法人みずほ中央法律事務所・司法書士法人みずほ中央事務所, 2021.05.13. 자
<<https://www.mc-law.jp/kigyohomu/27248/>>.

701) 企業法務 債権回収, 人格権の基本(概念・法的性質・根拠・分類)】, 弁護士法人みずほ中央法律事務所・司法書士法人みずほ中央事務所, 2021.05.13. 자
<<https://www.mc-law.jp/kigyohomu/27248/>>.

702) 内布 光, ソーシャル・メディアの発展と個人情報保護を中心とした運営責任, 現代法学, 東京経済大学現代法学会 23・24合併号, 2013년2월27일, 49-58頁.

703) 総務省, インターネット上の違法・有害情報に対する対応(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 法律の図解資料,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850215.pdf>.

3.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발신자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과 발신자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일본은 아래와 같은 취지에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과 발신자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다.

| 원 문 | 번역문 |
|---|--|
| <p>(趣旨) 第一条 この法律は、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権利の侵害があった場合について、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を請求する権利について定めるとともに、発信者情報開示命令事件に関する裁判手続に關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p> | <p>(취지) 제1조 이 법률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발신자정보 개시명령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p> |

이 조항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규정한다. 2008년에 법 개정에 의해 새롭게 발신자정보개시명령사건에 관한 재판절차가 규정되면서 그 취지가 이것에 추가되었다.⁷⁰⁴⁾

(2) 권리의 침해와 제한

이 법에서 “권리의 침해”는 독자적으로 정의되지 않지만 개인 법익의 침해로 민사상의 불법행위 등의 요건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되는 권리는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포함되고 일반 불법행위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 횡단적으로 대상으로 한다.⁷⁰⁵⁾ 즉, 이 법률은 특정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신청자, 발신자 각각에 대해 면책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⁷⁰⁶⁾

704) 総務省総合通信基盤局消費者行政第二課,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逐条解説, 2023年 3月, 3頁.

705) 総務省総合通信基盤局消費者行政第二課,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逐条解説, 2023年 3月, 4頁.

706)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ガイドライン等検討協議会,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名誉毀損・プライバシー関係ガイドライン(第6版), 令和 4年 6月, 2頁.

그렇지만 형법상의 외설에 해당하는 정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정보의 유통에 의해 사회적 법익이 침해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특정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면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폭력적인 표현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 등 유해하지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의 유통이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⁷⁰⁷⁾ 다만 형사상 불법인 정보에 관한 형사책임의 존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책임을 면할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⁷⁰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특정전기통신 이외의 통신(전자메일에서의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비방 중상 등)
- 형사상 불법인 정보에 관한 형사책임의 존부 여부 : 형사상의 불법인 정보로는 명예훼손, 신용훼손, 모욕 등과 같이 특정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외에 외설 이미지, 타인의 ID나 패스워드(부정 액세스 금지법), 아동 포르노(아동 매춘 등 처벌법), 풍문의 유포(금융상품거래법) 등과 같이 특정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닌 경우다. 다만 외설 이미지, 아동 포르노에서는 형사상, 외설 도화 진열죄, 아동 포르노 진열죄에 대한 해당성이 문제가 되는 한편, 민사상으로도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 유해한 정보(불법정보는 아니지만, 수신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 예를 들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폭력적 표현, 성적 표현 등)⁷⁰⁹⁾

이 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제한되는 책임은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한 책임 및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잘못 취한 것에 의한 발신자에 대한 책임이다.⁷¹⁰⁾

707) 総務省総合通信基盤局消費者行政第二課,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逐条解説, 2023年 3月, 4頁.

708)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ガイドライン等検討協議会,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名誉毀損・プライバシー関係ガイドライン(第6版), 令和 4年 6月, 2頁.

709)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ガイドライン等検討協議会,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名誉毀損・プライバシー関係ガイドライン(第6版), 令和 4年 6月, 2~3頁.

710) 総務省総合通信基盤局消費者行政第二課,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逐条解説, 2023年 3月, 4頁.

(3) 용어의 정의

| 원 문 | 번역문 |
|---|---|
| <p>(定義)</p> <p>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掲げる用語の意義は、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る。</p> <p>一 特定電気通信 不特定の者によって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する電気通信（電気通信事業法（昭和五十九年法律第八十六号）第二条第一号に規定する電気通信をいう。以下この号及び第五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の送信（公衆によって直接受信されることを目的とする電気通信の送信を除く。）をいう。</p> <p>二 特定電気通信設備 特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電気通信設備（電気通信事業法第二条第二号に規定する電気通信設備をいう。第五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をいう。</p> <p>三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 特定電気通信役務（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て提供する電気通信役務（電気通信事業法第二条第三号に規定する電気通信役務をいう。第五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をいう。同条第三項において同じ。）を提供する者をいう。</p> <p>四 発信者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用いる特定電気通信設備の記録媒体（当該記録媒体に記録された情報が不特定の者に送信されるものに限る。）に情報を記録し、又は当該特定電気通信設備の送信装置（当該送信装置に入力された情報が不特定の者に送信されるものに限る。）に情報を入力した者をいう。</p> <p>五 侵害情報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自己の権利を侵害されたとする者が当該権利を侵害したとする情報をいう。</p> <p>六 発信者情報 氏名、住所その他の侵害情報の発信者の特定に資する情報であって総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p> | <p>(정의)</p> <p>제2조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용어의 뜻은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p> <p>一 특정전기통신 : 불특정인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전기통신사업법(소화 59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조 제3항에서 같다.)의 송신(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p> <p>二 특정전기통신설비 : 특정전기통신의 용도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제5조 제2항에서 같다.)를 말한다.</p> <p>三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 특정전기통신역무(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5조 제2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p> <p>四 발신자 : 특정전기통신설비가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설비의 기록매체(해당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정한다.)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설비의 송신장치(해당 송신장치에 입력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정한다.)에 정보를 입력한 자를 말한다.</p> <p>五 침해정보 :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자가 해당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말한다.</p> <p>六 발신자정보 : 성명, 주소 및 그 외에 침해정보 발신자의 특정에 기여하는 정보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

| | |
|---|--|
| <p>七 開示關係役務提供者 第五條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及び同條第二項に規定する関連電気通信役務提供者をいう。</p> <p>八 発信者情報開示命令 第八條の規定による命令をいう。</p> <p>九 発信者情報開示命令事件 発信者情報開示命令の申立てに係る事件をいう。</p> | <p>七 개시관계역무제공자 :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관련전기통신역무제공자를 말한다.</p> <p>八 발신자정보개시명령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말한다.</p> <p>七 발신자정보개시명령사건 : 발신자정보공개명령의 신청에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p> |
|---|--|

위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말하는데, 특정전기통신역무는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를 말하고, 특정전기통신설비는 특정전기통신의 용도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하며, 특정전기통신은 불특정인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전기통신사업법(소화 59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조 제3항에서 같다.)의 송신(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또한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그 외에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을 말한다.

“발신자”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설비의 기록매체(해당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정한다.)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설비의 송신장치(해당 송신장치에 입력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정한다.)에 정보를 입력한 자”를 말하고, “침해정보”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자가 해당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말하며, “발신자정보”는 “성명, 주소 및 그 외에 침해정보 발신자의 특징에 기여하는 정보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취지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은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4조는 공직후보자에 관한 특례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제3조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관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권리의 피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1항) 및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작위를 이유로 하는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2항)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다.⁷¹¹⁾

| 원 문 | 번역문 |
|--|---|
| <p>(損害賠償責任の制限) 第三条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り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たときは、当該特定電気通信の用に供される特定電気通信設備を用いる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以下この項において「関係役務提供者」という。）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が技術的に可能な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でなければ、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ただし、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権利を侵害した情報の発信者で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p> <p>一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っていたとき。</p> <p>二 当該関係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を知っていた場合であって、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侵害されていることを知ることができたと認め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とき。</p> <p>2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は、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じた場合において、当該措置により送信を防</p> | <p>(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제3조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용으로 제공되는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이하 이 항에서 「관계역무제공자」라고 한다.)는 이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아니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관계역무제공자가 해당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一 해당 관계역무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p> <p>二 해당 관련관무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고,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p> <p>2.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조치에 의해 송신이 방</p> |

711) 総務省総合通信基盤局消費者行政第二課,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逐条解説, 2023年 3月, 12頁.

止された情報の発信者に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当該措置が当該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

- 一 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が当該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他人の権利が不当に侵害されていると信じるに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ったとき。
- 二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の流通によって自己の権利を侵害されたとする者から、侵害情報、侵害されたとする権利及び権利が侵害されたとする理由（以下この号において「侵害情報等」という。）を示して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に対し侵害情報の送信を防止する措置（以下この号において「送信防止措置」という。）を講ずるよう申出があった場合に、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が、当該侵害情報の発信者に対し当該侵害情報等を示して当該送信防止措置を講ずることに同意するかどうかを照会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発信者が当該照会を受けた日から七日を経過しても当該発信者から当該送信防止措置を講ずることに同意しない旨の申出がなかったとき。

지된 정보의 발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해당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진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책임에 지지 아니한다.

- 一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 二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자로부터 침해정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권리 및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이하 이 호에 있어서 「침해정보등」이라고 한다.)를 표시하여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해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이하 이 호에 있어서 「송신방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도록 하는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해당 침해정보의 발신자에 대해 해당 침해정보 등을 표시하여 해당 송신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회한 때에 해당 발신자가 해당 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도 해당 발신자로부터 해당 송신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취지의 신청이 없었을 때.

2) 제1항

제1항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게 작위의무의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정보의 유통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부작위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한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의한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고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부작위책임에 대한 우려로 과도하게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 발신자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

하게 침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⁷¹²⁾

3) 제2항

제2항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해 유통되는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관하여 해당 정보의 발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작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총무성은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한 경우가 아니면 발신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명확해지므로 과도하게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을 도모할 수 있다.⁷¹³⁾

(4)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특례

제183회 일본 국회에서 성립한 공직선거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세이 25년 법률 제110호)에 의해 이 법률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 조(공직의 후보자 등에 관련된 특례)가 추가되었다. 이 조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포된 문서도화에 관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작위에 기초한 발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대해 규정한다.⁷¹⁴⁾

| 원 문 | 번역문 |
|--|---|
| <p>(公職の候補者等に係る特例) 第四条 前条第二項の場合のほか、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は、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選挙運動の期間中に頒布された文書図画に係る情報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の送信を防止する措置を講じた場合において、当該措置により送信を防止された情報の発信者に生じた損害については、当該措</p> | <p>(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특례) 제4조 전조 제2항의 경우 외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선거운동의 기간 중에 반포된 문서도화(文書図画)에 관한 정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조치에 의해 송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해당</p> |

712) 総務省総合通信基盤局消費者行政第二課,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逐条解説, 2023年 3月, 12~13頁.

713) 総務省総合通信基盤局消費者行政第二課,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逐条解説, 2023年 3月, 16頁.

714) 総務省総合通信基盤局消費者行政第二課, プロバイダ責任制限法逐条解説, 2023年 3月, 24頁.

置が当該情報の不特定の者に対する送信を防止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場合であって、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賠償の責めに任じない。

一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であって、選挙運動のために使用し、又は当選を得させないための活動に使用する文書図画（以下この条において「特定文書図画」という。）に係るものの流通によって自己の名誉を侵害されたとする公職の候補者等（公職の候補者又は候補者届出政党（公職選挙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号）第八十六条第一項又は第八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をいう。）若しくは衆議院名簿届出政党等（同法第八十六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をいう。）若しくは参議院名簿届出政党等（同法第八十六条の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をいう。）をいう。次号において同じ。）から、当該名誉を侵害したとする情報（以下この条において「名誉侵害情報」という。）、名誉が侵害された旨、名誉が侵害されたとする理由及び当該名誉侵害情報が特定文書図画に係るものである旨（以下この条において「名誉侵害情報等」という。）を示して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に対し名誉侵害情報の送信を防止する措置（以下この条において「名誉侵害情報送信防止措置」という。）を講ずるよう申出があった場合に、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が、当該名誉侵害情報の発信者に対し当該名誉侵害情報等を示して当該名誉侵害情報送信防止措置を講ずることに同意するかどうかを照会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発信者が当該照会を受けた日から二日を経過しても当該発信者から当該名誉侵害情報送信防止措置を講ずることに同意しない旨の申出がなかったとき。

二 特定電気通信による情報であって、特定

조치가 해당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행해진 것인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책임에 지지 아니한다.

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당선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문서도화(이하 이 조에서 「특정문서도화」라고 한다.)에 관한 것의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공직후보자 등(공직후보자 또는 후보자신고정당(공직선거법(쇼와 25년 법률 제10호) 제86조 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그 외의 정치단체를 말한다.),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동법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그 외의 정치단체를 말한다.)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동법 제8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그 외의 정치단체를 말한다.)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해당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명예침해정보」라고 한다.), 명예가 침해된 취지,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및 해당 명예침해정보가 특정문서도화에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이하 이 조에 있어서 「명예침해정보 등」이라고 한다.)를 표시하여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해 명예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명예침해정보송신방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도록 하는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해당 명예침해정보의 발신자에 대해 해당 명예침해정보 등을 표시하여 해당 명예 침해정보송신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회한 때에 해당 발신자가 해당 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을 경과하여도 해당 발신자로부터 해당 명예침해정보송신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청이 없었을 때.

二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로, 특정문서도

文書図画に係るものの流通によって自己の名誉を侵害されたとする公職の候補者等から、名誉侵害情報等及び名誉侵害情報の発信者の電子メールアドレス等（公職選挙法第百四十二条の三第三項に規定する電子メールアドレス等をいう。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が同項又は同法第百四十二条の五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表示されていない旨を示して当該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に対し名誉侵害情報送信防止措置を講ずるよう申出があった場合であって、当該情報の発信者の電子メールアドレス等が当該情報に係る特定電気通信の受信をする者が使用する通信端末機器（入出力装置を含む。）の映像面に正しく表示されていないとき。

화에 관한 것의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 명예침해정보 등 및 명예침해정보 발신자의 전자메일주소 등(공직선거법 제142조의3 제3항에 규정하는 전자메일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동항 또는 동법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어 있지 않은 취지를 표시하여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해 명예침해정보송신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신청이 있었던 때에, 해당 정보 발신자의 이메일주소 등이 해당 정보에 관한 특정전기통신의 수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의 영상면(映像面)에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

4.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목적은 “최근 수년간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의 진전에 의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어 세계적 규모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디지털플랫폼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자주성 및 자율성을 배려하면서 상품 등 제공 이용자 등의 이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과제가 된 상황을 감안하여,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지정,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의한 제공조건 등의 개시,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평가,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함에 의해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특정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제1조). 그리고 이 법률은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조치 등(제4조-제16조)’, ‘제3장 잡칙(제17조-제22조)’ 및 ‘제4장 벌칙(제23조-제2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제4장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입법 개선방안

허위조작정보, 인격권 침해,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송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으로는 허위조작정보, 인격권 침해,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어렵다. 「방송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공공성’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방송법」에는 ‘가짜뉴스’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정이 없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 등 제한된 대상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한 사안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아니라, 신문과 뉴스통신 등을 ‘진흥’하기 위해 제정된 진흥법이다. 이러한 법률들에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정은 없다. 이렇듯 현행법은 의사형성과 의견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영역에 대한 작금의 법률 제·개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디지털·미디어를 아우를 수 있는 독립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

(1) 별도의 특별법 제정방안의 검토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가짜뉴스를 규율하는 방안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는 방식과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두 가지 방향 모두 일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략하게 양자를 비교한 후 그 방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전자(前者)와 같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는 2019년 「온라

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을 제정하여 이른바 가짜뉴스를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⁷¹⁵⁾ 이와 같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탄력적인 입법이 가능하다. 특정한 적용범위를 설정하여 놓고 입법을 진행하기 때문에, 규율범위나 벌칙사항 등 필요한 내용들을 간편하게 규율할 수 있다. 싱가포르 「온라인 허위정보 및 정보조작방지법」은 성립범위와 처벌, 주무장관의 지시와 종류, 불복절차 등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별법의 형태는 법률의 규모나 크기가 간소하여 성립범위의 변경이나 벌칙, 절차 등 법률의 개정이 요청될 시 필요한 사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둘째, 효율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가짜뉴스라는 정의와 성립범위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모두 새로운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성립범위를 넓히고 처벌규정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가짜뉴스를 다룰 수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전파속도를 고려한다면 가처분 형태의 긴급 유통 금지의 명령을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개별 입법을 통한다면 정보통신망법과는 별개의 절차로 규정될 수 있다. 이처럼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가짜뉴스의 규제를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하게 된다면 싱가포르의 허위정보조작방지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편화된 법률로 인한 적용상의 어려움이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를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해석 여하에 따라 가짜뉴스도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물론 현재 방심위 실무에서는 가짜뉴스를 통신심의규정의 사회 혼란정보로 심의하고 있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불법정보로 보고 있지지는 않지만, 불분명한 법적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형법각칙 외에도 성폭력 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소위 아청법), 전자장치부착법(소위 전자발찌법), 성충동약물 치료법(소위 화학적 거세법), 특정강력범죄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소위 디엔에이법) 등 다양한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한다.

715) 싱가포르 입법례의 상세한 소개는 전술하는 제3장 제9절 참조.

둘째, 성립범위와 처벌의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벌칙규정의 경우에는 형의 양정에서 양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대개의 형사특별법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에서 비롯되고, 입법부의 호응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선호된다. 형법 각칙상의 기본범죄와 불법성, 책임의 가중을 비교하여 면밀하게 따지면 지난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은 체계적 검토를 간략히 하여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특별법은 범죄의 성립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폭행죄의 공동정범이 있다. 폭행죄의 공동정범은 본래 형법 제260조(폭행)과 제30조(공동정범) 규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소위 폭력행위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면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고(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받지 않아(동조 제4항) 과잉처벌의 대표적인 규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여기서는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으며, 방송, 라디오 등 전파를 타는 내용은 심의를 거쳐 징계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행 법령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내용을 검토하여 정보통신망법을 위주로 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2) 개별 법률 개정방안

1)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및 판단기준 신설

| 정보통신망법 | 개선안 |
|--|--|
|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u>허위조작정보</u>”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정보이고 그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p> |

| | |
|--|---|
| | <p><u>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u> <u>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u> <u>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u> <u>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u> <u>마.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u></p> |
| <p>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p> <p>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p>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p> <p>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라는 사실 또는 그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p> <p>② 좌동</p> |

| | |
|--|-------------|
|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p> | <p>③ 좌동</p> |
|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p> | <p>④ 좌동</p> |
| <p>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p> | <p>⑤ 좌동</p> |
| <p>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p> | <p>⑥ 좌동</p> |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허위조작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성’, ‘목적’, ‘형식’의 개념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가짜뉴스는 허위성의 표현이 뚜렷히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적 측면에서 그 표현상 ‘허위성’을 담고 있다. 둘째, 가짜뉴스는 고의가 있는지 아니면 과실로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 허위정보에 ‘일정한 의도(목적)’가 포함되는 정보일 때 허위조작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한 목적으로 인해 특정인 내지 특정집단에게 일정한 경제적·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가짜뉴스는 그 형식에 있어서 ‘뉴스’이어야 한다.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신문·인터넷신문·방송에 국한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통신망에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이를 규율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페이스북(facebook), X(옛 트위터), 유튜브(Youtube) 등에 게시된 뉴스 형식을 띤 정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보다는 허위조작정보가 적절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및 영국 하원에서는 ‘가짜뉴스

(Fake News)’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라는 용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⁷¹⁶⁾ 허위조작정보는 ‘내용(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정보)’, ‘목적(의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의 개념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법률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중매체인 신문·방송·인터넷신문뿐만 아니라 SNS 등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여론형성과 공직선거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해 중요한 공익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아래의 2023년 9월 27일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4795)은 참조할 가치가 있다.

| 정보통신망법 | 개선안 |
|-------------------|---|
| <p><신설></p> | <p>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p> <p>① 누구든지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해당 조치의 내용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p> |

716)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8270636i> (2023. 10. 20. 최종 접속).

| | |
|--|---|
| | <p>위한 제2항 또는 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⑥ 그 밖의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4조의12(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p> <p>①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제44조의11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위조작정보의 삭제·임시조치 등 유통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p> <p>③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인터넷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정보는 그대로 피해자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1차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방지를 위한 노력의무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해당 정보의 추가적인 유포를 방지하고 차단할 의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차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의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응할 의무도 규정하였다.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각종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2) 신속심의

| 방통위 설치법 | 개선안 |
|---|----------------------------------|
| <p>제22조(회의 등)</p> <p>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좌동) |
|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p> |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p> |

| | |
|---|---|
| <p>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 <p>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피해자 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허위조작 정보로 판단되는 정보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신속심의를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크고 회복불가능하여 이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나, 현행 신속심의 규정은 불법촬영물등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동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신설이 필요하다.

3) 통합심의

| 방통위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 | 개선안 |
|---|---|
| <p>방통위 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현행유지)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p> | <p>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p> |
| <p>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p> | <p>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에 따른 불법정보,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p> |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심위 직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가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정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 ‘허위조작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허위조작정보 관련 심의위원회의 직무

| 방통위 설치법 | 개선안 |
|-------------------|--|
| <p><신설></p> | <p>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8. 29.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결정 공시 심의 30.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3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아니할 의무사항 심의 32.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자율기구 등에 필요한 사항 33.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호 중 1호에서 28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29.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결정 공시 심의, 30.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3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아니할 의무사항 심의, 32.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하여 자율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할 수 있다.

5) 자율규제

| 방통위 설치법 | 개선안 |
|-------------------|---|
| <p><신설></p> | <p>방통위 설치법 제24조2(허위조작정보 관련 자율규제)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 기술발전 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는 활동(이하 “자율규제”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② 방송사업자는 효율적인 자율규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자율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정부는 자율규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선 2. 이용자 불만사항의 처리 3.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4.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 5. 그 밖에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 |

|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 개선안 |
|-------------------|---|
| <p><신설></p> | <p>방통위 설치법 시행령 제13조2(허위조작정보 관련 자율규제) 법 제24조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 2. 자율기구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자체 모니터링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자율기구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책 4. 이용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스템 운영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자율기구에 신고한 자에게 심의 사실 통보 및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중대한 허위조작정보의 ‘심의 중’ 표시 6. 자율기구의 허위조작정보 판단 시 삭제 또는 임시조치 |
|--|--|

디지털 미디어에서 생산·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자율규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행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에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

(1) 혐오표현의 정의와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 및 보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상 ‘혐오표현’에 관한 정의가 없으므로 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혐오표현과 허위조작정보의 규제에 관한 방침을 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 개선안 |
|---|--|
|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신설></p> |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p> <p>14. “혐오표현”이란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질병, 외모, 종교, 나이, 출신지역, 신체적 특징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이나 폭력을 선전하거나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 또는 강화하는 효과를 갖</p> |

| | |
|--|--|
| <p>제44조의1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 및 보고) 〈신설〉</p> | <p>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말한다.</p> <p>제44조의1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 및 보고)</p> <p>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년마다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 정책을 담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1. 혐오표현 2. 허위조작정보</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에 유해정보임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유해정보임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2) 법률 개선의 이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22년 이른바 「혐오표현 등 규제법」(AB 587)이라고 불리는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률은 “소셜미디어(SNS) 기업이 혐오표현, 허위조작정보, 괴롭힘, 극단주의에 관한 정책을 자사 플랫폼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이 정책 집행에 관한 데이터를 주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⁷¹⁷⁾ AB 587은 소셜미디어로 하여금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정보가 혐오표현이나 인종차별 또는 가짜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들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를 피하고 있다. 따라서 AB 587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고 혐오표현이나 허위조작정보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AB 587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를 강화함

717) 유병훈, 머스크의 X, 美 캘리포니아주 ‘혐오표현 등 규제법’ 두고 소송, 조선비즈 2023년 9월 10일자 기사,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3/09/10/KXWIXESLEZEZN_B3RK6F2CIY2C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으로써 혐오표현이나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대한 개정 여부 검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명시되어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리고 앞의 규정을 토대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두 가지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본 규정은 혐오표현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으나 본 규정에서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태양에 대해서는 판례의 해석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혐오표현은 장애, 성별, 인종, 민족을 대상으로 혐오를 표현하며 우리 사회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성별 등의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발언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문제화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규정이 신설되거나 개정된다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개정을 위해서는 동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혐오표현을 포함시킴으로써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적 요정을 준수하면서 혐오표현 규제를 전제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혐오표현 개념을 정의하되 최대한 넓은 범위의 혐오표현 유형을 개념 내에 포섭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인격권 침해에 대한 입법 개선방안

(1) 서설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오프라인에서는 침해의 파급범위가 좁고 침해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인터넷에서의 인격권의 침해는 그 파급범위가 대단히 넓고 지속적인 경우가 상당하다. 게다가 오프라인에서의 문제가 인터넷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들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오프라인에

비해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격권 침해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왔고, 언론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통제를 하여 왔다. 이런 결과로 특정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다수의 민사 및 형사 판례가 쌓여 왔고 형사정책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격권은 개인이 자신의 인격과 관련하여 가지는 권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인격에 관한 권리이므로 개인의 인격과 관련한 피침해 대상이 모두 인격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인격권은 광범위하게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인격권은 형사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지만, 민법적 관점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재산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법은 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등과 같은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외에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등과 같은 법률에서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 인격권은 형법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기에 어려운 가운데, 현행 법률 규정에 기술된 특정한 유형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형사처벌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들도 있을 수 있으며,⁷¹⁸⁾ 국가질서유지를 지향하는 형법에 의해서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의 인터넷 환경에서 불측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민사 및 형사상의 방조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등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에 의해 인격에 관한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격권의 침해⁷¹⁹⁾를 저지하고 이에 대한 보상의 견지에서 입법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718)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로서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 피해자는 민사소송에 의한 민사적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학교 폭력의 사례를 보더라도 14세가 되지 않은 자들에 의한 인격권 침해는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

719) 딥페이크 기술에 의한 인격권 침해(안면, 외모, 음성 등), 메타버스 아바타에 대한 침해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바람직해 보인다. 인격권 침해에 대해 계속적 침해를 금지 및 예방하면서 개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구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미디어상에서의 인격권 보호 관련 제도 개선 논의는 크게 「민법」상 인격권 개념 규정의 신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규정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의 보완·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인격권의 개념은 현재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로 독일 등 외국법을 참조하여 인격권의 개념 규정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인격권 침해의 제거, 방지 또는 예방을 위한 제도로 현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제750조)과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및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 등이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 의해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는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삭제의무, 임시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6, 제44조의7)하고 있고, 「언론중재법」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권, 추후보도청구권 등이 규정(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별법상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완·개선하자는 의견은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AI 등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개념의 정비, 아동·청소년의 정보 삭제 요청권 신설, 「언론중재법」상 열람차단청구권 및 기사제공언론사의 정정보도청구 등 표시 의무 신설 방안이 있다.

(2) 정보통신망법

1) 불법정보 개념의 정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는 그 자체로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면서, 불법정보에 해당 하는 정보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 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 8. 생략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 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 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 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 을 것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내용의 정보가 불법 정보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상 인격권에 관한 정의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해석상’ 불법정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지는 분명 하지 않다. 만약 인격권의 범주에 속하는 권리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모두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즉, 「정보통신 망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인격권에는 명예권이 포함되므로, 인격권 규정이 신설되면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인격권 중 특히 명예권에 대한 침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 조문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되면 정보통신망에서 인격권 침해 정보의 유통금지라고 하는 동법의 목적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은 불법정보(불법콘텐츠)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위법한 내용의 콘텐츠를 가짜뉴스(허위정보), 혐오 표현·차별표현, 인격권 침해 표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 자체로 또는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활동과 관련하여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정보’로 정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정보 삭제 요청권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2020년 가구 기준 99.7%에 달하고,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3~9세가 91.2%, 10대가 100%에 달한다. 그러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주체로서, 이들이 행한 온라인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성년이 된 이후에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제안의 취지는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① 아동·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에 자신이 게재한 정보로서 이용자 스스로 삭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 성년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⁷²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⁷²¹⁾이 마련되어,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

720) 관련 의안으로 김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110440)이 제안되어 있다.

721)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2016.4.

리(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이 보장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 또는 사자(死者)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게시판 관리자 또는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검색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배제를 취한 경우 검색목록에서 배제해야 하며, 게시판 관리자의 사업 폐지 등으로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검색 목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 대상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게시물 내용을 인터넷에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됨에 따라 이용자 본인이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인 경우
- ◆ 회원 계정정보를 분실하여 이용자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 ◆ 게시판 관리자가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이트 관리를 중단한 경우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검색목록 배제의 방법으로 접근배제를 요청)
- ◆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 또는 유족이 사자(死者)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 ◆ 게시판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이 현재도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 본인이 게시판 관리자 및 검색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접근배제요청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보호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정보 삭제 요구권을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손해의 추정 신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의한 이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동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규정에서의 노력 의무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입증해야 할 부분인데, 노력의 의무는 주관적이고 불분명한 기준일 수 있다. 다만, 제44조의2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도록 작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⁷²²⁾할 수 있다.

인격적 침해는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는 검사에게 강한 입증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민사 사건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받으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작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은 곤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인격권 침해의 방지를 유도하기 위해 책임요소를 강화하고 이용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민법은 제750조 불법행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51조에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인격권 침해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인격권 침해는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데, 원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계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위자료이며, 이와 같이 위자료의 본질을 손해배상으로 파악하는 것을 배상설이 있고, 이에 반하여 위자료의 제재적 기능을 강조하여 가해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강한 때에는 행위주체에 대하여 그 행위를 억제하는데 알맞은 위자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제재설이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복수심의 만족이 아니라 가해행위를 억제하는 데 위자료의 기능이 있고 위자료에는 손해의 전보배상과 제재라는 두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절충설도 있다.⁷²³⁾

722)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및 인과관계의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제33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76면.).

723) 金學洙, “慰藉料請求權에 관한 一考察”, 民法學論叢(厚巖 郭潤直教授華甲紀念), 1985, 774면; 尹喆洪, “人格權 侵害에 대한 私法的 考察”, 民事法學 16호, 1998, 215면.

또한 법원은 위자료를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 쌍방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자산상태, 가해의 동기,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참작하여 공평의 관념에 따라서 그 액수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를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당사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지 알 수 없다. 언론피해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재판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⁷²⁴⁾

그런데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과실 인정의 경우에 흔히 되풀이될 수 있는 통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경우인 정형적 사상경과가 문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이론에 따르면,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추정의 전제사실 즉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주요사실에 관한 추정이 성립되면 상대방이 그 추정에 의문이 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으로 일단 증명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간접반증은 주요사실에 대하여 일응의 추정이 생긴 경우에 그 추정의 전제사실과 양립되는 별개의 간접사실을 증명하여 일응의 추정을 번복하는 증명활동으로 피고측의 방어방법이다.⁷²⁵⁾ 예를 들어 대기오염·수질오염 등 공해소송, 의료과오소송, 제조물책임소송 등에서 이러한 이론이 적용된 판결 및 법률규정이 적용되어 왔다.⁷²⁶⁾

대법원은 허위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기사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⁷²⁷⁾ 이러한 판시도 인격권을 침해받은 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24) 김재형, 앞의 논문, 70~72면.

72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6판)」, 박영사, 2023, 551~553면.

72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6판)」, 박영사, 2023, 554~557면.

또한 인격권 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자신이 법률에 의한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및 제4조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3) 언론중재법

1)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디지털·미디어에서의 정보 유통은 신속성, 확장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생활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민사상 구제절차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언론보도의 공신력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어, 현행법은 언론분쟁의 신속한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동 위원회에 ① 정정보도, ② 반론보도, ③ 추후보도, ④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및 중재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잘못된 기사가 남아 지속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정정보도 등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후 인터넷신문 사업자 등과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합의하는 방식으로 구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 동안 언론보도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한 사례 중 70% 이상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 사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뉴스 플랫폼과 달리 언론보도 등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급속히 전파됨에 따라 기존의 정정보도 등의 청구권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피해구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 논의가 있다. 개정 제안은 「언론중재법」에 기사의 열람 차단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727)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2) 손해의 추정 신설

현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동법 제5조의2는 제5조 제1항의 타인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언론등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제30조 제1항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언론등의 침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언론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은 곤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에 기술한 일용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이론 및 간접반증은 언론중재법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언론중재법에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 상응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격권의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인격권의 모호성으로 인해 개인이 인격권 침해에 의한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거나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언론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법에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입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 이는 형사적 구제 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사처벌은 징역과 벌금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인 제재 및 질서유지 외에 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못한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인 제도를 강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손해의 산정은 그 침해와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사인이 이를 입증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린 점에서 사인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입증의 책임을 전환하거나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격권 침해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고 피해자에 대해 법에 의한 피해 보상 기능을 강화하면서 형사적 구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민사적 구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기사제공 언론사의 정정보도청구등 표시 의무 신설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⁷²⁸⁾(이하 “정정보도청구 등”이라고 함)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3,175건 중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당사자인 신청수는 2,307건(72.7%)으로, 디지털 환경에 따른 매체이용률의 증가와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다른 언론사에 비해 조정 신청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72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표 4-1> 2022년도 언론중재위원회 매체유형별 조정 신청 현황⁷²⁹⁾

(2022년 12월말 기준 / 단위: 건(%))

| 총 건수 | 신문 | | 방송 | 잡지 | 뉴스 통신 | 인터넷 | | 기타 |
|------------|----------|----------|-----------|--------|----------|-------------|--------------|---------|
| | 일간 신문 | 주간 신문 | | | | 인터넷 신문 | 인터넷 뉴스서비스 | |
| 3,175(100) | 234(7.4) | 75(2.4) | 387(12.2) | 6(1.9) | 149(4.7) | 1,857(58.5) | 450(14.2) | 17(0.5) |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제안은 기사제공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부터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사전에 보호하여 향후 정정보도 청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7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기사 접근 차단 등 임시조치 신설> ■ 김승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2955호), 2023.9.), 4면.

제2절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가이드라인(안) 제언

1.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

(1) 국민의 피해 감소와 디지털 미디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디지털 미디어에 의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 법제도로는 이러한 피해를 만족할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와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고 디지털·미디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부작용 완화와 부작용 예방을 할 수 있는 윤리 가이드라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미디어 윤리 기반 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고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그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한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

2. 목적과 개념 정의

(1) 가이드라인의 목적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미디어 사업자와 이용자의 건전한 정보 유통과 공정한 정보 형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이드라인에서 새로운 개념 정의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건전한 정보 유통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및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기로 한다. 이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적용 대상인 정보는 정보의 성격과 규율영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로 구분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란 영상, 음성, 데이터 등 상이한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에 따라 통합적으로 처리, 전송, 표시하는 미디어를 말한다.

2) 인터넷 포털 사업자

‘인터넷 포털 사업자’란 온라인에서 이용자 간의 재화, 용역 또는 콘텐츠의 거래,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등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허위조작정보

‘허위조작정보’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정보이며 그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
3.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
4.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4) 유해정보

‘유해정보’란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정보로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5) 불법정보

‘불법정보’란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디지털·미디어에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상 폭넓게 적용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 사업자를 제외한 인터넷뉴스사업자 등 언론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및 이용자들도 그 적용범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도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성, 공유할 수 있어 이를 규율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인터넷언론사가 종종 부정확하거나 유해한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언론사까지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포털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함)에게 적용된다.

4. 기본원칙

기본원칙을 규정한 이유는 디지털·미디어에서 가이드라인 적용시 효율적 실효적으로 실행되게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정 가이드라인 조항의 해석이 모호할 때 이러한 조항을 해석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 다음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정보가 생산 또는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실에 근거한 정보유통 의무

사업자는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공정한 입장에 의거하여 정보를 유통하여야 한다.

(2) 정보제공의 공정성·객관성 유지 의무

사업자는 정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여론을 왜곡하는 정보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정보취득의 정확성 유지 및 출처 명시 의무

사업자는 정보취득에 있어서 그 정보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취득정보의 출처를 명시하

여야 한다.

(4) 사회질서 저해 정보 제공·유통 금지 의무

사업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사업자 의무사항

모니터링 및 신고처리 규정을 둔 이유는 디지털·미디어에서 생산,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를 신속히 발견하고, 그 부작용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며, 신고처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등의 방지를 위함이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를 생산, 유통하지 않도록 하며, 이용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한다. 또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통해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1) 모니터링 및 신고처리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을 하여 접속차단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의 처리에 관하여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함)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3) 보호책임자 지정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유해

정보, 불법정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를 차단·관리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으로부터의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용자 보호업무를 해야 한다.

(4)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사업자와 이용자는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참여수·투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조작 또는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업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이용자 권익 보호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를 삭제·관리하였음을 홈페이지에 표시하여 이용자를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로부터의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업자가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1)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삭제 표시 의무

사업자는 유통되는 정보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삭제하였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허위조작정보의 삭제·반박내용의 게재·임시조치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정보게재자'라 함)는 문자메시지, 전자

우편 등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3)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사업자는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을 하기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7. 협의체 운영 및 관련 법령 준수

자율기구인 사업자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 간의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가 사업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가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위반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1) 협의체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건전한 정보 유통과 공정한 정보 형성을 위하여 사업자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정보 유통을 위하여 사업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법령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 록

(가칭) 디지털 미디어 윤리 가이드라인(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미디어 사업자와 이용자의 건전한 정보 유통과 공정한 정보 형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게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영상, 음성, 데이터 등 상이한 형태의 정보를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에 따라 통합적으로 처리, 전송, 표시하는 미디어를 말한다.
2. “인터넷 포털 사업자”란 온라인에서 이용자 간의 재화, 용역 또는 콘텐츠의 거래,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등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허위조작정보”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정보이며 그 내용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
 -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
 - 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
 - 라. 「공직선거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한 정보
 - 마.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4. “유해정보”란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정보로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5. “불법정보”란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생산된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②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포털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제4조(기본원칙) 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 정보가 생산 또는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실에 근거한 정보유통 의무
2. 정보제공의 공정성·객관성 유지 의무
3. 정보취득의 정확성 유지 및 출처 명시 의무
4. 사회질서 저해 정보 제공·유통 금지 의무

제2장 사업자 의무사항

제5조(계획 수립) ① 사업자는 디지털 미디어에서 건전한 정보 유통, 공정한 정보 형성 및 유통을 위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유통 정보의 실태와 분석
3. 디지털 미디어상 정보 유통에 있어서 개선사항
4. 디지털 미디어상 건전한 정보·공정한 정보 유통을 위한 교육, 상담 및 홍보
5. 디지털 미디어상 건전한 정보·공정한 정보 유통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6.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상 건전한 정보·공정한 정보 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모니터링 및 신고처리)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

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을 하여 접속차단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조작정보

2. 유해정보

3. 불법정보

②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정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속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⁷³⁰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30)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6항 제5호. 그 밖에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정보통신망법(안) 제35조의2 제1항).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의 사업자’(넷플릭스방지법(안)) ⇒ 5개 사업자(구글,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메타)

제8조(보호책임자 지정 등) ①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를 차단·관리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등으로부터의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용자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① 누구든지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게시판에 특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추천수·참여수·투표수를 조작하는 등 여론 형성을 조작 또는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자 권익 보호

제10조(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 삭제 표시 의무) 사업자는 유통되는 정보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삭제하였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허위조작정보의 삭제·반박내용의 게재·임시조치)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

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계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① 사업자는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教案)·교구(教具)·교재의 개발·보급
2.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장비의 설치
3.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지원
4.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향상에 필요한 연구
5.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홍보 및 포상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역량 지원센터의 지원과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에 관한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역량 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활동에 대한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
2.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관련 법·제도·정책 연구
3.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을 위한 민관협력 및 홍보
4.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5.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지원
6. 디지털 미디어 역량교육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디지털 미디어 역량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관리 지원

제4장 협의체 운영 및 관련 법령 준수

제13조(협의체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건전한 정보 유통과 공정한 정보 형성을 위하여 사업자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건전한 정보 유통

을 위하여 사업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법령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붙임 1]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네트워크 집행법 - NetzDG)

제1조(적용범위)

- (1) 이 법은 이용자가 임의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플랫폼(소셜네트워크)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편집하여 제공하는 언론보도 형식의 플랫폼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플랫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인의 통신 또는 특정 콘텐츠의 유포를 위하여 만든 플랫폼도 그러하다.
- (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에 등록된 이용자가 2백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2a) 제2조와 제3조a는 테러적 온라인 콘텐츠의 퇴치를 위한 2021년 4월 29일자 유럽연합 2021/784 명령(ABl. L 172 vom 17.5.2021, S. 79) 제2조 제2호 제7호상의 테러적 콘텐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와 제3조b, 제3조c는 관할 행정관청이 유럽연합 2021/784 명령 제5조 제3항상의 결정이 내리지 않는 경우에만 유럽연합 2021/784 명령 제2조 제2호 제7호상의 테러적 콘텐츠에 대하여 적용된다.
- (3) 위법한 콘텐츠란 제1항의 콘텐츠로서 형법 제86조, 제86조a, 제89조a, 제91조, 제100조a, 제111조, 제126조, 제129조 내지 제129조b, 제130조, 제131조, 제140조, 제166조, 제184조b, 제185조 내지 제187조, 제189조, 제201조a, 제241조 또는 제269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보고의무)

- (1)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이 1년에 100건 이상 접수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독일어 보고서를 제2항에 따른 정보와 함께 반년마다 작성하여 연방관보 및 자체 홈페이지에 늦어도 반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공표할 의무가 있다. 자체 홈페이지에 공표한 보고서는 쉽게 식별 가능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항상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2) 보고서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에서 범죄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관계망 제공자가 기울인 노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2. 경우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할 콘텐츠의 자동 감지에 사용된 절차의 종류, 주요 작동방식, 범위 및 사용된 훈련 데이터와 이러한 절차의 결과 검증에 관한 일반 정보

- 및 이러한 절차의 평가를 위한 학계의 지원 여부 및 연구집단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정보
3.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의 전송 메커니즘, 불법 콘텐츠의 삭제 또는 차단을 위한 결정기준, 불법 콘텐츠의 존재 여부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된 계약 규정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순서를 포함한 심사절차에 관한 서술
 4. 불법 콘텐츠에 관하여 보고기간에 접수된 불만 건수를 불만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만, 이용자의 불만 및 불만 사유별로 분류하여 서술
 5. 불만 처리 부서의 조직, 인력 충원, 전문성, 언어 능력 및 불만 처리 직원의 교육과 지원에 관한 정보
 6. 가입한 산업협회 및 이 산업협회에 불만신고센터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
 7. 결정 준비 시 외부 기관의 조언을 받은 불만 건수
 8. 보고기간에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 중에서 삭제 또는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불만의 총계 및 불만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만, 이용자의 불만 및 불만 사유별 건수, 제3조 제2항 제3호 a목에 따른 사례의 존재 여부, 이 경우 이용자에게 추가 전달하였는지, 제3호에 따른 심사순서의 어느 단계에서 삭제 또는 차단이 이루어졌는지 및 제3조 제2항 제3호 b목에 따른 공인 자율규제기관에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9.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의 접수 후 24시간, 48시간, 1주일 이내에 또는 나중에 불법 콘텐츠의 삭제 또는 차단이 이루어진 불만 건수를 불만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만, 이용자의 불만 및 불만 사유별로 분류하여 서술
 10. 불만제기인 및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에게 불만에 관한 결정을 고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11. 보고기간에 접수된 제3b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항의의 총계, 불만제기인 및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별 항의 수, 항의에 따라 시정이 이루어진 사례 수에 관한 정보
 12. 보고기간에 접수된 제3b조 제3항 제1문에 따른 항의 건수, 제3b조 제3항 제3문에 따라 검증을 생략한 사례 및 항의에 따른 시정이 이루어진 사례의 수에 관한 정보
 13. 보고기간에 익명 평가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연구집단의 유무와 허용 범위 및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
 - a) 삭제 또는 차단된 불법 콘텐츠가 2013년 4월 3일 법률(연방법률관보 제부 610면) 제8조의 내용과 같이 최종 개정된 2006년 8월 14일 「일반평등대우법」(연방법률관보 제부 1897면) 현행판 제1조에서 의미하는 특성과 결부된 정도
 - b) 불법 콘텐츠의 유포로 인하여 특정 이용자집단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 c) 유포에 기여한 조직된 구조 또는 조율된 행동방식의 유무 및 그 정도

14. 불법 콘텐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그 밖의 조치
15. 접수된 불법 콘텐츠 관련 불만의 총 건수, 이러한 불만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된 콘텐츠의 비율, 제3b조 제1항 제2문 및 제3b조 제3항 제1문에 따른 항의의 수 및 이러한 항의에 따라 수정된 결정의 비율을 지난 2개 보고기간의 관련 수치와 비교한 표 형식의 개요 및 보고기간 간 주요 차이와 그 가능한 이유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 요약문
16.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와 계약 시 사용한 약관에서 소셜네트워크에 콘텐츠를 유포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련된 규정에 관한 설명
17. 제16호에 따른 규정이 「민법」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및 그 밖의 법과 일치하는 정도에 관한 서술

제3조(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불만의 처리)

-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의 전송절차를 쉽게 식별 가능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항상 이용 가능하게 콘텐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 이러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불만을 지체 없이 인지하고 신고된 콘텐츠의 불법 여부 및 삭제 또는 접근차단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가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불만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접근차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명백한 불법 콘텐츠의 삭제 또는 차단을 위한 기간을 관할 형사소추기관과 더 길게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불법 콘텐츠를 지체 없이, 원칙적으로는 불만 접수 후 7일 이내에 삭제 또는 접근차단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7일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a) 콘텐츠의 불법성에 관한 결정이 사실 주장의 진위 또는 그 밖의 사실적 정황에 따라 명백히 좌우되는 경우, 이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결정 전에 이용자에게 불만에 대한 입장표명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
 - b)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성에 관한 결정을 불만 접수 후 7일 이내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공인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경우
 4. 삭제 시 증거 목적으로 콘텐츠를 백업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역내시장에서

정보사회 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정한 법적 측면에 관한 2000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2000년 7월 17일 관보 제L178호 1면) 및 지침(EU) 2018/1808(2018년 11월 28일 관보 제L303호 69면)의 내용과 같이 개정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관한 회원국의 특정 법률·행정규정 조율을 위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지침」)(2010년 4월 15일 관보 제L95호 1면, 2010년 10월 6일 관보 제L263호 15면)의 적용범위에서 10주 동안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자가 불만제기인 및 이용자에게 모든 결정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문 제3호 b목의 경우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공인 자율규제기관에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 콘텐츠의 공유 또는 공개 시점 및 유포 범위에 관한 정보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콘텐츠와 명백히 연관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다. 자율규제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1문 제3호 b목의 경우에 공인 자율규제기관이 내린 결정이 경우에 따라 부정확하더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제1문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3) 해당 절차에서는 지침 2000/31/EC 및 지침 2010/13/EU의 적용범위에서 발생한 모든 불만 및 그 시정조치를 기록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4) 소셜네트워크 관리자는 월별 점검을 통하여 불만 처리를 감독하여야 한다. 접수된 불만을 처리하는 조직이 불충분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소셜네트워크 관리자는 불만 처리 직원에게 수시로, 그러나 적어도 반년마다 독일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5) 제1항에 따른 절차는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이 법에서 의미하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소속 심사관의 독립성과 전문지식이 보장된 경우
 2. 적절한 장비 및 7일 이내의 신속한 심사 능력이 보장된 경우
 3. 심사의 범위와 경과, 연결된 소셜네트워크의 제출의무 및 불만제기인 또는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결정의 검증 방법을 정한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4. 적절한 장비를 제공하는 복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관에서 해당 기관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기관은 특히 소셜네트워크와 관련된 추가 서

비스 제공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 (7) 자율규제기관의 인정에 관한 결정은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이 내린다. 행정관청은 인정에 관한 결정 전에 소년 미디어보호를 관할하는 주(州)의 중앙 감독기관에 입장표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정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의 기한은 5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8) 인정과 관련된 정황 및 인정신청 시 통지한 그 밖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공인 자율규제기관은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에 이를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 (9) 공인 자율규제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전년도 활동보고서를 자체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하고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 (10) 인정을 위한 요건이 추후에 사라진 경우 인정을 전부 또는 일부 철회하거나 인정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11) 제4조에 따른 행정관청은 제2항 제3호의 의무 이행이 민간자율규제로 보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제2항 제3호 b목에 따른 결정의 위임이 한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3조b(항의절차)

-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불만제기인 및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을 제기로 콘텐츠 삭제 또는 접근차단에 관하여 내린 결정(원래 결정)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제2항에 따라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 제3조 제2항 제1문 제3호 b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검증은 불만제기인 또는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가 원래 결정의 고지 후 2주 이내에 이유제시와 함께 검증신청(항의)을 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간편한 전자 연락 및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쉽게 식별 가능한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 제1문 제5호 b목에 따른 고지의 틀 안에서 연락 가능성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제1항 제1문에 따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항의를 받고 시정조치를 취하려는 경우 불만제기인이 항의한 경우에는 관련 이용자에게 그리고 이용자가 항의한 경우에는 불만제기인에게 항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지하고 첫 번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불만제기인에게 적절한 기간 내에 입장을 표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입장표명 내용이 불만제기인에게 그리고 불만제기인의 입장표명 내용이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원래 결정에 관하여 지체 없이 원래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증결정을 불만제기인 및 관련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다만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만제기인 및 관련 이용자가 항의절차에 이미 참여하였던 경우에만 통지한다.
 5. 절차에서 불만제기인 및 관련 이용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3) 콘텐츠 삭제 또는 접근차단에 관한 결정이 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에 기초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결정이 콘텐츠에 관한 제3자의 이의제기에 기초한 경우 이의제기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불만제기인을 갈음한다. 제2항 제3호와 달리 원래 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검증을 할 필요는 없다. 콘텐츠가 명백히 바람직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을 위반하는 상업적 소통에 해당하고 수많은 사례에서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였거나 일반에 공개하였으며 항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문과 달리 제1문에 따른 검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4) 재판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c(조정)

- (1)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은 제3조 제2항 제1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내린 결정에 관하여 불만제기인 또는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재판 외 해결을 위한 조정기관으로 사법(私法)상의 기관을 인정할 수 있다.
- (2) 사법상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정기관으로 인정한다.
 1. 기관의 권리주체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함
 - a)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지침 2010/13/EU가 적용되는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다른 계약국에 소재한 법인
 - b) 장기간 지속되는 법인
 - c) 재원이 확보된 법인
 2. 조정을 담당할 사람의 독립성, 중립성 및 전문지식이 보장되어야 함
 3. 적절한 장비 및 조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능력이 보장되어야 함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 불만제기인 및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간편하고 저렴하며 구속력이 없고 공정한 조정절차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조정절차의 세부 사항과 권한을 정하는 조정규칙을 갖추어야 함

5. 조정규칙을 포함하여 조정기관의 연락 방법과 권한 및 조정절차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7항 제2문 및 제3문과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 (3) 이미 제3b조에 따른 항의절차가 실행되었거나 제3조 제6항 제3호에서 의미하는 결정의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불만제기인과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는 조정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조정기관의 조정 전체에 또는 사안별로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조정에 참여하는 경우 조정기관에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 콘텐츠의 공유 또는 공개 시점 및 유포 범위에 관한 정보 및 조정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콘텐츠와 명백히 연관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불만제기인이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의 연락처를 그리고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가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불만제기인의 연락처를 전달할 수 있다. 조정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기관은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때 불만제기인 및 불만이 제기된 콘텐츠를 저장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4) 조정절차 참여는 자유의사에 따른다. 재판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020년 6월 25일 법률(연방법률관보 제부 1474면) 제2조제3항의 내용과 같이 최종 개정된 2016년 2월 19일 「소비자분쟁해결법」(연방법률관보 제부 254면, 1039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d(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관련 정의)

-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란 다음을 말한다.

- a) 서비스 제공자가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방송물 또는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일반에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 또는 주요 기능으로 하는 텔레미디어. 이때 서비스 제공자는 방송물 또는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의 조직을 자동 수단 등을 사용하여 좌우할 수 있다

- b) 텔레미디어의 분리 가능한 일부에 대하여 a목에 언급된 주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일부

2.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이란 이용자가 생성하였고 음향이 있거나 없는 일련의 동영상으로서 길이와 상관없이 독립된 단위를 이루며 해당 이용자 또는 다른 이용자가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에 업로드한 것을 말한다

3. “방송물”이란 음향이 있거나 없는 일련의 동영상으로서 길이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한 방송계획 또는 카탈로그의 독립된 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4. “회원국”이란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지침 2010/13/EU가 적용되는 유럽경제지역협정의 다른 모든 계약국을 말한다.
 5. “모회사”란 1개 이상의 자회사를 통제하는 회사를 말한다.
 6. “자회사”란 직간접적으로 모회사의 통제를 받는 회사를 말한다.
 7. “그룹”이란 모회사, 모회사의 모든 자회사 및 모회사 또는 그 자회사와 경제적으로 및 법적으로 결합된 다른 모든 회사 전체를 말한다
- (2) 이 법에서 의미하는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의 “소재국”이란 서비스 제공자의 개업이 이루어진 지역의 회원국을 말한다.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국의 영토에서 개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회원국을 소재국으로 본다
- 서비스 제공자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개업한 지역
서비스 제공자가 속한 그룹의 다른 회사가 개업한 지역
- (3) 제2항 제2문의 경우에 모회사, 자회사 또는 그룹의 다른 회사가 서로 다른 회원국에서 개업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그 모회사가 개업한 지역 또는 이러한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개업한 지역 또는 이러한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그룹의 다른 회사가 개업한 지역의 회원국에서 개업한 것으로 본다. 자회사가 여럿이고 각 자회사가 서로 다른 회원국에서 개업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자회사의 활동이 먼저 개시되었고 자회사가 이러한 회원국의 경제와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지역의 회원국에서 개업한 것으로 본다. 그룹에 속한 여러 다른 회사가 있고 각 회사가 서로 다른 회원국에서 개업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회사의 활동이 먼저 개시되었고 회사가 이러한 회원국의 경제와 장기적이고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지역의 회원국에서 개업한 것으로 본다.
- (4)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과 다른 회원국의 관청 사이에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의 소재국에 관하여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e(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

- (1) 제2항 및 제3항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 (2) 등록된 국내 이용자가 200만 명 미만인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제3d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재국이거나 소재국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11조, 제

130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31조, 제140조, 제166조 또는 제184b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콘텐츠가 담긴 제3d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 및 방송물과 관련하여서만 이 법을 적용한다. 제1조 제2항과 달리 이러한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는 제2조, 제3조 제2항 제1문 제3호 및 제4호와 제4항 및 제3a조에 따른 의무가 면제된다.

- (3) 제3d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이외의 회원국이 소재국이거나 소재국으로 간주되는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제2항 제2문에 언급된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 및 방송물과 관련하여 제4조에 언급된 관청의 명령을 근거로 이러한 명령의 범위에서만 제2조, 제3조 및 제3b조에 따른 의무를 적용한다. 2021년 3월 30일 법률(연방법률관보 제1부 448면) 제12조의 내용과 같이 최종 개정된 2007년 2월 26일 「텔레미디어법」(연방법률관보 제1부 179면, 251면) 현행판 제3조 제5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이에 따라 필요한 절차단계를 준수하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은 「텔레미디어법」 제3조 제5항 제1문의 조건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심사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에게 제2항 제2문에 언급된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 및 방송물과 관련하여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 제2문에 언급된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 및 방송물의 유포금지에 관하여 이용자와 유효한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제3f조(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의 공식 조정)

- (1)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에 공식 조정기관을 설치한다. 공식 조정기관은 제3e조 제2항 제2문에 언급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콘텐츠가 담긴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 및 방송물과 관련하여 제3조 제2항 제1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결정에 관한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와의 분쟁에 대한 재판 외 해결을 모색한다. 공식 조정기관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제3d조 제2항에 따라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의 소재국이거나 소재국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가 제3c조 제1항에 따른 공인 조정기관의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제3c조 제1항에 따른 조정기관으로 인정받은 사법상 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자와의 분쟁을 관할한다.
- (2) 공식 조정기관에 대하여 제3c조 제2항 제1문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조 제9항과 제3c조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준용한다
- (3) 공식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의 실행에 대하여 조정규칙에 언급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규정)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하는 사람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1. 제2조 제1항 제1문에 반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올바로, 완전히 또는 적시에 작성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보고서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올바로, 완전히, 규정대로 또는 적시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3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3b조 제1항 제1문에 반하게 불만신고센터 또는 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지가 있는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또는 결정의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올바로 또는 완전히 마련하지 아니하는 사람
 3. 제3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3b조 제1항 제3문에 반하게 그곳에 언급된 절차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올바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람
 4. 제3조 제4항 제1문에 반하게 불만 처리를 감독하지 아니하거나 올바로 감독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3조 제4항 제2문에 반하게 불충분한 조직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적시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사람
 6. 제3조 제4항 제3문에 반하게 교육 또는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적시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사람
 7. 제5조에 반하게 국내 송달대리인 또는 국내 수령권자를 지명하지 아니하는 사람
 8. 제5조 제2항 제2문에 반하게 수령권자로서 정보 촉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2)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50만 유로 이내의 과태료를, 제1항의 나머지 경우에는 500만 유로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서위반법」 제30조 제2항 제3문을 적용한다
- (3) 국내에서 범하지 아니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4) 「질서위반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미하는 행정관청은 연방법무청이다.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는 연방내무·건설·향토부, 연방경제에너지부 및 연방교통·디지털기반시설부와 협의하여 과태료절차의 개시 및 과태료 산정 시 과태료관청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일반 행정원칙을 공포한다.
- (5) 삭제 또는 차단되지 아니한 콘텐츠가 제1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불법 콘텐츠라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결정을 내리려는 행정관청은 불법성에 관하여 사전에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재판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사전결정 신청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의 입장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하여 구두심리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해당 재판은 불복할 수 없으며 행

정관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진다.

제4조a(감독)

- (1)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은 이 법의 규정 준수를 감독한다.
- (2)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 중인 사실을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에서 확인한 경우 행정관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히 위반행위를 중지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하여 재판하는 법원이 관할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4조 제5항을 준용한다.
- (3) 제2항에 따른 행정절차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법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 등록된 국내 이용자 수 및 전년도에서 접수된 불법 콘텐츠 관련 불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대리인 및 법인, 회사 또는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요구받은 정보를 회사의 이름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보 요구는 비례원칙에 맞아야 한다. 제1문에 따라 협조의무가 있는 자연인은 정보 획득이 다른 방법으로는 매우 어렵거나 기대 불가능한 경우 범죄 또는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소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도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1문에 따라 자연인이 제공한 정보는 이러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형사절차 또는 「질서위반법」에 따른 절차에서 이러한 사람 또는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언급된 친족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1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질서위반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확정절차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 (4) 증인은 제2항에 따른 행정절차에서 진술할 의무가 있다. 증인은 답변 시 본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언급된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질서위반법」에 따른 절차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그 밖에는 증인의 진술의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은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 송달대리인)

-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국내에 있는 송달대리인을 지명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쉽게 식별 가능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및 제4a조에

다른 과태료절차와 감독절차 또는 불법 콘텐츠의 유포 또는 이유 없는 유포 가정에 관한 독일 법원의 재판절차, 특히 삭제 또는 차단된 콘텐츠의 복구를 청원하는 사건에서 송달대리인에게 송달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서류의 송달, 법원 중국재판서의 송달 및 집행·실행절차의 송달도 또한 같다.

- (2) 국내 형사소추기관의 정보 촉탁을 위하여 국내 수령권자를 지명하여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령권자는 제1문에 따른 정보 촉탁을 받은 경우 48시간 이내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 정보 촉탁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답변 시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 언급된 행정관청은 수령권자 목록을 관리한다. 행정관청은 국내 형사소추기관의 문의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경과규정)

- (1) 제2조에 따른 최초의 보고는 2018년 상반기에 하여야 한다.
- (2) 제3조가 정한 절차는 이 법률이 발효한 후 3개월 이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의 요건을 이 법률이 발효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절차는 그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개월 안에 마련되어야 한다.
- (3)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보고서에 대하여는 2017년 9월 1일 개정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연방법률관보 제I부 3352면) 제2조를 적용한다.
- (4) 제3조 제9항에 따른 보고서는 2022년 7월 31일에 최초로 제출한다.
- (5) 2021년 6월 28일에 이미 인정을 받은 자율규제기관에 대하여는 2022년이 경과할 때까지 2017년 9월 1일 개정 「소셜네트워크에서 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연방법률관보 제I부 3352면) 제3조 제6항 제3호를 적용한다.
- (6) 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제3b조를 적용한다.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이용자가 제작한 동영상 또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2021년 10월 1일부터 제3조b를 적용한다.

[붙임 2]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과 발신자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제한과 발신자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제1조 및 제2조)

제2장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제3조, 제4조)

제3장 발신자정보의 공개 요구(제5조-제7조)

제4장 발신자정보공개명령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제8조-제19조)

보칙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 이 법률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권리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발신자정보개시명령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용어의 뜻은 해당 각 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一 특정전기통신 : 불특정인에 의해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전기통신사업법(소화 59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5조 제3항에서 같다.)의 송신(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의 송신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二 특정전기통신설비 : 특정전기통신의 용도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제5조 제2항에서 같다.)를 말한다.
- 三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 특정전기통신역무(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5조 제2항에서 같다.)를 말한다. 동조 제3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四 발신자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설비의 기록매체(해당 기록매체에 기록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정한다.)에 정보를 기록하거나 또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설비의 송신장치(해당 송신장치에 입력된 정보가 불특정인에게 송신되는 것에 한정한다.)에 정보를 입력한 자를 말한다.
- 五 침해정보 :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자가 해당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말한다.
- 六 발신자정보 : 성명, 주소 및 그 외에 침해정보 발신자의 특징에 기여하는 정보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七 개시관계역무제공자 :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관련전기통신역무제공자를 말한다.
- 八 발신자정보개시명령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말한다.
- 七 발신자정보개시명령사건 : 발신자정보공개명령의 신청에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제2장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제3조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용으로 제공되는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이하 이 항에서 「관계역무제공자」라고 한다.)는 이것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가 아니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관계역무제공자가 해당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발신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一 해당 관계역무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 二 해당 관련관무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었던 경우이고,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2.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조치에 의해 송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해당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진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책임에 지지 아니한다.
- 一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二 특정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자로부터 침해정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권리 및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이하 이 호에 있어서 「침해정보등」이라고 한다.)를 표시하여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해 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이하 이 호에 있어서 「송신방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도록 하는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해당 침해정보의 발신자에 대해 해당 침해정보 등을 표시하여 해당 송신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회한 때에 해당 발신자가 해당 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여도 해당 발신자로부터 해당 송신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취지의 신청이 없었을 때.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특례)

제4조 전조 제2항의 경우 외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선거운동의 기간 중에 반포된 문서도화(文書圖畵)에 관한 정보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조치에 의해 송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해당 조치가 해당 정보의 불특정인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에서 행해진 것인 경우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책임에 지지 아니한다.

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당선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문서도화(이하 이 조에서 「특정문서도화」라고 한다.)에 관한 것의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공직후보자 등(공직후보자 또는 후보자신고정당(공직선거법(쇼와 25년 법률 제10호)) 제86조 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그 외의 정치단체를 말한다.),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동법 제8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그 외의 정치단체를 말한다.) 또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동법 제8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정당 그 외의 정치단체를 말한다.)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으로부터 해당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명예침해정보」라고 한다.), 명예가 침해된 취지,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및 해당 명예침해정보가 특정문서도화에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이하 이 조에 있어서 「명예침해정보 등」이라고 한다.)를 표시하여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해 명예침해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이하 이 조에서 「명예침해정보송신방지조치」라고 한다.)를 취하도록 하는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해당 명예침해정보의 발신자에 대해 해당 명예침해정보 등을 표시하여 해당 명예침해정보송신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회한 때에 해당 발신자가 해당 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을 경과하여도 해당 발신

자로부터 해당 명예침해정보송신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청이 없었을 때.

- 二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로, 특정문서도화에 관한 것의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공직후보자 등으로부터 명예침해정보 등 및 명예침해정보 발신자의 전자메일주소 등(공직선거법 제142조의3 제3항에 규정하는 전자메일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동향 또는 동법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어 있지 않은 취지를 표시하여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해 명예침해정보송신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신청이 있었던 때에, 해당 정보 발신자의 이메일주소 등이 해당 정보에 관한 특정전기통신의 수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통신단말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의 영상면(映像面)에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

제3장 발신자정보의 공개 요구

(발신자정보의 개시청구)

제5조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자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용으로 제공되는 특정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에 대하여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보유하는 해당 권리침해에 관한 발신자정보 중 특정발신자정보(발신자정보로 전적으로 침해 관련 통신에 관련된 것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5조 제2항에서 같다.) 이외의 발신자정보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때, 특정발신자정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때는 각각 그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 一 해당 개시의 청구에 관한 침해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해당 개시의 청구를 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분명한 때.
- 二 해당 발신자정보가 해당 개시의 청구를 하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외에 해당 발신자정보의 공개를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 三 다음 ㄱ에서 ㄴ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ㄱ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해당 권리의 침해에 관한 특정발신자정보 이외의 발신자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 ㄴ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보유하는 해당 권리침해에 관한 특정발신자정보 이외의 발신자정보가 다음에 해당하는 발신자정보 이외의 발신자정보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뿐이라고 인정하는 때.
 - (1) 해당 개시의 청구에 관한 침해정보의 발신자의 성명 및 주소
 - (2) 해당 권리침해에 관한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발신자정보

- ハ 해당 개시의 청구를 하는 자가 이 항의 규정에 의해 개시를 받은 발신자정보(특정 발신자정보를 제외한다)에 의해서는 해당 개시의 청구에 관한 침해정보의 발신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때는 해당 특정전기통신에 관한 침해관련통신의 용도로 제공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해당 특정전기통신에 관한 전항에 규정하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인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관련전기통신역무제공자」라고 한다.)에 대해 해당 관련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보유하는 해당 침해관련통신에 관한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 할 수 있다.
- 一 해당 개시의 청구에 관한 침해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해당 개시의 청구를 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 분명한 때.
 - 二 해당 발신자정보가 해당 개시의 청구를 하는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외에 해당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전2항에 규정하는 「침해관련통신」이란 침해정보의 발신자가 해당 침해정보의 송신에 관한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종료하기 위하여 한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식별부호(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해당 특정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다른 자와 구별하여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 번호, 기호 및 그 외의 부호를 말한다.), 그 외의 부호의 전기통신에 의한 송신이고, 해당 침해정보의 발신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인 것으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시관련역무제공자의 의무 등)

제6조 개시관계역무제공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시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개시청구에 관한 침해정보의 발신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시청구에 응할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발신자의 의견(해당 개시청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2. 개시관계역무제공자는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을 받았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청취(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서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시청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서술한 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에 관한 침해정보의 발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해당 발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시관계역무제공자는 제15조 제1항(제2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

을 받은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로부터 해당 명령에 의한 발신자정보의 제공을 받은 때는 해당 발신자정보를 그 보유하는 발신자정보(해당 제공에 관한 침해정보에 관한 것에 한한다.)를 특정하는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개시관계역무제공자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시청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개시청구를 한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책임에 지지 않는다. 다만, 해당 개시관계역무제공자가 해당 개시청구에 관한 침해정보의 발신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은 자의 의무)

제7조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받은 자는 해당 발신자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해당 발신자정보에 관한 발신자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발신자정보개시명령사건에 관한 재판절차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제8조 재판소는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고 판단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권리의 침해에 관한 개시관계역무제공자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근거한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일본재판소의 관할권)

제9조 재판소는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관할권을 가진다.

- 一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다음의 ㄱ로부터 ㄸ까지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
 - ㄱ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 ㄴ 상대방의 주소 및 거소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 또는 그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상대방이 신청 전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었을 때(일본 국내에 마지막으로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후에 외국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었던 때를 제외한다.).
 - ㄸ 대사, 공사, 그 외에 외국에 있어서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을 상대방으로 할 때.
- 二 법인, 그 외의 사단 또는 재단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다음의 ㄱ 또는 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イ 상대방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 ロ 상대방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에 다음의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1) 해당 상대방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 경우에, 신청이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의 업무에 관한 것일 때.
 - (2) 해당 상대방의 사무소 혹은 영업소가 일본 국내에 없는 경우 또는 그 사무소 혹은 영업소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표자 그 외의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을 때.
- 三 전2호에 해당하는 것 외에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자(일본에서 거래를 계속해서 하는 외국회사(회사법(헤세이 17년 법률 제86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신청이 해당 상대방의 일본에서의 업무에 관한 것일 때.
- 2.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 어느 나라의 재판소에 발신자정보개시 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 3. 전항의 합의는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4. 전2항의 합의가 그 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된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는 그 합의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5. 외국의 재판소에만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2항의 합의는 그 재판소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 6. 재판소는 발신자정보공개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전 각 항의 규정에 의해 일본의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일본의 재판소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2항의 합의에 기초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사안의 성질, 절차의 추행(追行)으로 인한 상대방의 부담의 정도, 증거의 소재지,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의 재판소가 심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형평을 해치거나 적정하고 신속한 심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할 수 있다.
 - 7. 일본 재판소의 관할권은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관할)

제10조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곳(地)을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상대방의 주소의 소재지(상대방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없는 때 또는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때는 그 거소의 소재지로 하고, 그 거소가 일본 국내에 없는 때 또는 그 거소를 알 수 없는 때는 그 마지막 주소의 소재지로 한다.)
 - 二 대사, 공사, 그 외에 외국에 있어서 그 나라의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일본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 이 항(전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지 않을 때 :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곳
 - 三 법인, 그 외의 사단 또는 재단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다음의 Ⅰ 또는 Ⅱ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일본 국내에 없는 때는 대표자, 그 외의 주된 영업담당자의 주소의 소재지로 한다.)
 - Ⅰ 상대방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 Ⅱ 신청이 상대방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의 업무에 관한 것인 때는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전조의 규정에 의해 일본의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관할재판소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해당 신청은 최고재판소규칙에서 정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3.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전 2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재판소에서도 해당 신청을 할 수 있다.
 - 도쿄고등재판소, 나고야고등재판소, 센다이고등재판소 또는 삿포로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도쿄지방재판소를 제외한다.) : 도쿄지방재판소
 - 二 오사카고등재판소, 히로시마고등재판소,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또는 다카마쓰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오사카지방재판소를 제외한다.) : 오사카지방재판소
 4. 전 3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에 속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전 각 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이용권 또는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자에 의한 해당 권리의 침해에 대한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관하여 해당 각 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은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
 - 도쿄고등재판소, 나고야고등재판소, 센다이고등재판소 또는 삿포로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 : 도쿄지방재판소

二 오사카고등재판소, 히로시마고등재판소,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또는 다카마쓰고등재판소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지방재판소 : 오사카지방법재판소

6. 전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재판소가 한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동항에 규정하는 권리의 침해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

7. 전 각 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제15조 제1항(제1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동호 1에 규정하는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의 성명 등 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의 신청에 관한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해당 제공을 받은 자의 신청에 관한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계속되는 때는 해당 사건이 계속되는 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

— 해당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해당 제공에 관한 침해정보에 대한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

二 해당 제공에 관한 침해정보에 대한 다른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서의 사본의 송부 등)

제11조 재판소는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해당 신청에 이유가 없는 것이 분명한 때를 제외하고 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비송사건절차법(평성 23년 법률 제51호) 제4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서 사본을 송부할 수 없는 경우(해당 신청서 사본의 송부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재판소는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부적법 또는 이유없음이 분명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의 기록 열람 등)

제12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법원서기관에 대하여 발신자정보공개명령사건의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그 정보,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또는 발신자정보공개명령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의 기록 중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것들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재판소 서기관에게 이들 물건의 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의 기록의 열람, 등사 및 복제의 청구는 해당 기록의 보존 또는 재판소의 직무에 지장이 있는 때는 할 수 없다.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신청의 취하)

제13조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은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신청의 취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해당 신청에 대한 결정
 - 二 해당 신청에 관련된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2.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 취하가 있었던 경우에,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해당 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때는, 재판소는 상대방에 대해 해당 신청의 취하가 있었다는 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해당 신청의 취하가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 절차의 기일에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두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언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통지에 관한 신청의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 신청의 취하가 있던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언급하지 아니한 때도 같다.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14조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관한 결정(해당 신청을 부적법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제외한다.)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해당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소는 동항에 규정하는 결정을 한 재판소의 관할에 전속한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해당 소를 부적법으로 각하하는 때를 제외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결정을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한다.
4. 제1항에 규정하는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한 판결로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명하는 것은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급부를 명하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제1항에 규정하는 소가 동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을 때 또는 각하되었을 때는, 해당 소에 관한 동항에 규정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6. 재판소가 제1항에 규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비송사건절차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제2호 중 「즉시 항고를 한다」인 것은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로

한다.

(제공명령)

제15조 본안의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이 계속되는 재판소는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관한 침해정보의 발신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을 한 자(이하 이 항에서 「신청인」이라고 한다.)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의 상대방인 개시관계역무제공자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해당 신청인에 대해 다음의 ㄱ 또는 ㄴ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ㄱ 또는 ㄴ으로 정하는 사항(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는 ㄱ에 정하는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외의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에 의해 제공하는 것.

ㄱ 해당 개시관계역무제공자가 그 보유하는 발신자정보(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동일)에 의해 해당 침해정보에 관한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해당 침해정보의 발신자라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ㄴ에서 같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의 성명 등 정보」라고 한다.)의 특정을 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의 성명 등 정보

ㄴ 해당 개시관계역무제공자가 해당 침해정보에 관한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를 특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발신자정보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개시관계역무제공자가 그 보유한 해당 발신자정보에 의해 ㄱ에 규정하는 특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그 취지

二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공명령」이라고 하고, 전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에 의해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의 성명 등 정보의 제공을 받은 해당 신청인으로부터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해당 침해정보에 대한 발신자정보공개명령의 신청을 한 취지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는, 해당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에게 해당 개시관계역무제공자가 보유하는 발신자정보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것.

2. 전항(각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부분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의 상대방이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이며, 또한 해당 신청서를 해당 신청에서 특정발신자정보를 포함하는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 전항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항 제1호 ㄱ의 규정 중 「에 관한 것」인 것은 다음

표의 윗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같은 표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자구(字句)로 한다.

| | |
|---|---------------------------------------|
| 해당 특정발신자정보의 개시청구에 관하여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에 관한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발신자 정보 |
| 해당 특정발신자정보의 개시청구에 관하여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에 관한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발신자 정보 이외의 발신자정보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명령(제공명령에 의해 2 이상의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의 성명 등 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가 해당 다른 개시관계역무제공자 중의 일부의 자에 관하여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는 해당 일부의 자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그 효력을 잃는다.

— 해당 제공명령의 본안인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에 대한 전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그 소)가 종료한 때.

二 해당 제공명령에 의해 다른 공개관계역무제공자의 성명 등 정보의 제공을 받은 자가 해당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제공명령을 받은 개시관계역무제공자에게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때.

4. 제공명령의 신청은 해당 제공명령이 있는 후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5. 제공명령을 받은 개시관계역무제공자는 해당 제공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거금지명령)

제16조 본안의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이 계속되는 재판소는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관한 침해정보의 발신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을 신청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의 상대방인 개시관계역무제공자에게 해당 발신자정보공개명령 사건(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에 대한 제1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소가 제기된 때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개시관계역무제공자가 보유한 발신자정보(해당 발신자정보개시명령의 신청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소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소거금지명령」이라고 한다.)의 신청은 해당 소거금지명령이 있는 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3. 소거금지명령을 받은 게시관계역무제공자는 해당 소거금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당사자에 대한 주소, 성명 등의 비밀)

제17조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에서의 신청, 그 외의 신술(申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해제이 8년 법률 제109호) 제1편 제8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133조 제1항 중 「당사자」인 것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참가인(비송사건절차법(해제이 23년 법률 제51호))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이해관계참가인을 말한다. 제133조의4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서 동일하다.」로, 동법 제133조의2 제2항 중 「소송기록 등(소송기록 또는 제132조의4 제1항의 처분의 신청에 관련된 사건의 기록)인 것은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규정하는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으로, ㉠ 중」인 것은 ㉠의 기록 중 「당사자」으로, 동법 제133조의4 제1항 중 「자, 소송기록 등」인 것은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참가인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의 기록」으로, 동조 제2항 중 「당사자」인 것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참가인」으로, 「소송기록 등」인 것은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의 기록」으로, 동조 제7항 중 「당사자」인 것은 「당사자 혹은 이해관계참가인」으로 바꿔 읽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제외)

제18조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27조, 제40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최고재판소규칙)

제19조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발신자정보개시명령 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최고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목차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특정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조치 등(제4조-제16조)

제3장 잡칙(제17조-제22조)

제4장 벌칙(제23조 - 제25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최근 수년간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의 진전에 의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어 세계적 규모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디지털플랫폼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자주성 및 자율성을 배려하면서 상품 등 제공 이용자 등의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과제가 된 상황을 감안해,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지정,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의한 제공 조건 등의 개시,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평가, 그 외의 조치를 강구함에 의해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특정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을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디지털플랫폼」이란 다수의 자가 이용할 것을 예정하고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정보처리에 의해 구축한 장소로서, 해당 장소에서 상품, 역무 또는 권리(이하 「상품 등」이라고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정상적 상태(常態)로 하는 것(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이용한 것에 한정한다.)을 다수의 사람에게 인터넷 기타 고도정보통신망(방송법(쇼와 25년 법률 제132호) 제2조 제1호에 규정하는 방송에 이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통해 제공하는 역무를 말한다.

- 一 해당 역무를 이용하여 상품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호 및 다음 호에서 「제공자」라고 한다)의 증가에 따라 해당 상품 등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호에 있어서 「피제공자」라고 한다.)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진되고, 이것에 의해 피제공자가 증가하여 그 증가에 따라 제공자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진되며, 이것에 의해 제공자가 더욱 증가하는 관계
 - 二 해당 역무를 이용하는 자(제공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증가에 따라, 다른 해당 역무를 이용하는 자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진되고,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더욱 증가함과 동시에 그 증가에 따라 제공자의 편익도 현저하게 증진되며, 이것에 의해 제공자도 증가하는 관계
2. 이 법률에서 「이용자」란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상품등제공이용자」란 디지털플랫폼을 상품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일반이용자」란 상품등제공이용자 이외의 이용자를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디지털플랫폼제공자」란 디지털플랫폼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제공하는 제공자를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특정디지털플랫폼」이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디지털플랫폼 제공자(이하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라고 한다)의 해당 지정에 관한 디지털플랫폼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시책은, 디지털플랫폼이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여 일본 경제사회의 활력 향상 및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한 대처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의 관여, 기타 규제를 필요최소한으로 함에 의해 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창의와 공리가 충분히 발휘되는 것 및 디지털플랫폼제공자와 상품등제공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의 상호이해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2장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향상에 관한 조치 등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지정)

제4조 경제산업대신은 디지털플랫폼 중에서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에 관한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구분마다 그 사업의 규모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에서의 상품 등

의 매출액의 총액, 이용자의 수, 그 외에 해당 사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에 의해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제공자를 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자주적인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자로서 지정한다.

2. 디지털플랫폼제공자는 그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이 전항에 규정하는 디지털플랫폼에 해당할 때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디지털플랫폼에 관해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구분마다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그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이 특정디지털플랫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구분 및 규모는 디지털플랫폼이 국민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황 및 일부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 디지털플랫폼제공자와 상품등제공이용자 간의 거래의 실정 및 동향과 함께 이 법률에 기초하여 상품등제공이용자의 이익의 보호 필요성(다른 법률에 의한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에 관한 사업의 규제 및 적정화를 위한 조치, 그 외의 해당 사업자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전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한하여 행해지도록 정한다.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조건 등의 지시)

제5조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는 이용자(특정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의 이 항, 제9조 제4항 및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동일)에 대하여 특정디지털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의 조건(이하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제공조건」이라고 한다.)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해당 제공조건에 관한 이용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특정디지털플랫폼을 제공할 때는, 해당 자에 대해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조건으로서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상품등제공이용자(특정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7조 제1항과 제3항, 제12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호와 제2호에서 같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ㄱ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을 거절할 것이 있는 경우에 거절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ㄷ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에 아울러서 상품등제공이용자에게 자기가 지정하는 상품 혹은 권리를 구입하는 것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다른 역무의 유료제공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내용 그리고 이유

ㄹ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에서 일반이용자(특정디지털플랫폼

을 이용하는 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검색에 의해 요구하는 상품 등에 관한 정보, 그 외의 상품 등에 관한 정보에 순위를 붙여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주요한 사항(상품등제공이용자로부터의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한 광고선전의 비용, 그 외의 금전의 지불이 해당 순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포함한다.)

ㄹ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상품등제공데이터(상품등제공이용자가 제공하는 상품 등의 매출액의 추이에 관련된 데이터, 그 외의 해당 상품등제공이용자가 제공하는 상품 등에 관한 데이터를 말한다. 이 ㄹ와 ㅎ에서 같다)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등제공데이터의 내용 및 그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조건

ㅎ 상품등제공이용자가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보유한 상품등제공데이터를 취득하거나,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상품등제공데이터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게 할지 여부 및 상품등제공데이터의 취득 또는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 상품등제공데이터의 내용 및 그 취득 또는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조건

ㄷ 상품등제공이용자가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해 불만신청 또는 협의신청을 하기 위한 방법

ㄱ 이 부터 ㄷ 까지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상품등제공이용자에 대한 해당 특정디지털 플랫폼의 제공조건 중 개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일반이용자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ㄱ 전호의 ㄷ에 해당하는 사항

ㄷ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상품등구입데이터(일반이용자에 의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의 검색이나 열람 또는 상품 등의 구입에 관한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이 ㄷ에서 같다)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상품등구입데이터의 내용 및 그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조건

ㄷ 이 와 ㄷ에 해당하는 것 외에 일반이용자에 대한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조건 중 공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것으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개시함으로써 일반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그 밖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상품등제공이용자에 대한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조건에 따르지 않은 거래의 실시요청 : 그 내용 및 이유

ㄷ 계속하여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상품등제공이용자에 대한 해당 특정디

지털플랫폼의 제공 거절(해당 제공의 전부를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그 내용 및 이유

三 전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조건에 따라 행해지는 행위 중에서, 해당 행위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내용, 이유, 그 이외의 사항을 개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행위 : 그 내용, 이유, 그 이외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상대방에게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하는 날 이전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해당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시함으로써 일반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그 외에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一 상품등제공이용자에 대한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조건 변경 : 그 내용 및 이유
二 계속해서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하는 상품등제공이용자에 대한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을 전부 거절 : 그 취지 및 이유

5.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 제2항 제1호 ㄱ 또는 제2호 ㄷ 또는 제3항 제3호의 경제산업성령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대신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시에 관한 권고, 명령 등)

제6조 경제산업대신은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전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제공조건을 개시, 동조 제2항 각 호, 제3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개시,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권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권고의 내용이 정보의 전자적 유통에 관련된 것일 때에는 사전에 총무대신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권고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경제산업대신은 제1항의 권고를 받은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령할 수 있다.

5.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해당 명령의 내용이 정보의 전자적 유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사전에 총무대신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경제산업대신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

제7조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는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와 상품등제공이용자 간의 거래관계에서 상호이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그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이하 이 조 및 제9조 제2항에서 간단히 「지침」이라고 한다.)을 정해야 한다.
3. 지침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해야 한다.
 - 一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와 상품등제공이용자 간의 거래관계에서의 상호이해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二 상품등제공이용자에 대한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이 공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 및 절차의 정비에 관한 사항
 - 三 특정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상품등제공이용자로부터의 불만처리 및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와 상품등제공이용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체제 및 절차의 정비에 관한 사항
 - 四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상품등제공이용자, 그 외의 관계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기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업무의 관리를 하는 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五 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 외에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상품등제공이용자의 의견, 그 외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경제산업대신은 지침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특정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에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 및 총무대신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경제산업대신은 지침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것을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제3항의 규정은 지침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권고 등)

제8조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그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다.

2.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권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 평가 등)

제9조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는 매년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一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사업개요에 관한 사항
 - 二 특정디지털플랫폼에 대한 불만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三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기초한 개시상황에 관한 사항
 - 四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사항
 - 五 전의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스스로 한 평가에 관한 사항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을 받았을 때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 및 다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이 있었던 사실, 그 외에 경제산업대신이 파악하는 사실에 기초하고 지침을 감안하여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3.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평가를 할 때는 사전에 총무대신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경제산업대신은 제2항의 평가를 할 때는 사전에 이용자 또는 그 조직하는 단체, 학식경험자, 그 외에 경제산업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경제산업대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1항의 보고서의 개요와 함께 공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
 6.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자주적인 향상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산업대신에 대한 신청 등)

- 제10조** 이용자는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제산업대신에 대해 그 취지를 신청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할 수 있다.
2.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는 이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요구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거부 또는 그 외의 불이익한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3. 경제산업대신은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관하여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해 신속하게 그 불이익한 취급을 그만두어야 하며 그 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해야 한다.
 4.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권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지정 취소)

제11조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장관에게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제공을 하지 않게 된 때
 - 二 특정디지털플랫폼의 사업 규모가 제4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밑도는 경우에 다시 해당 규모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때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전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때도 같다.

(보고 및 검사)

제12조 경제산업대신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해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에 관한 사업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사무소, 그 외의 사업장에 들어가서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경제산업대신은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대하여 그 거래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의 사무소, 그 외의 사업장에 들어가서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경제산업대신은 제6조 제1항 및 제4항,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품등제공이용자에 대하여 그 거래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검사(立入検査)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청구)

제13조 경제산업대신은 특정디지털플랫폼제공자에 관하여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으며, 그 사실이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쇼와 22년 법률 제 54호)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동법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요구를 해야 한다.

- 해당 행위가 다수의 상품등제공이용자에 대해 행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
- 二 해당 행위에 의해 상품등제공이용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때

三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특정디지털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적용제외)

제14조 제4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디지털플랫폼에 해당하는 역무의 제공 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품등제공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료의 제출요구 등)

경제산업대신은 제4조 제1항의 정령 제정 또는 개정의 입안에 필요한 한도에서 디지털플랫폼제공자 또는 상품등제공이용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때는 사전에 해당 요구에 관한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에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대신 및 총무대신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령의 입안 등)

제16조 경제산업대신은 전조 제1항의 자료 및 설명에 기초하여 제4조 제1항의 정령 제정 또는 개정의 입안을 하고 이 법률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경제산업대신은 전항의 조치를 취할 때는 사전에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에 관련된 사업을 소관하는 장관 및 총무대신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디지털플랫폼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디지털플랫폼제공자와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장 잡칙

(다른 시책과의 관계)

제17조 경제산업대신은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디지털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장소에 관련된 사업의 규제 및 적정화를 위한 조치 그 외에 해당 사업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을 감안하면서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과조치)

제18조 이 법률에 기초하여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소요 경과조치(별칙에 관

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송달해야하는 서류)

제19조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제6조 제1항의 권고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송달하여 한다.

2.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관련된 행정 절차법(2008년 법률 제88호)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동조의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31조에서 바뀌 읽어서 준용하는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2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평성 8년 법률 제109호) 제99조, 제101조,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99조 제1항 중 「집행관」이라는 것은 「경제산업대신의 직원」과 동법 제188조 중 「재판장」이라고, 제109조 중 「법원」이라는 것은 「경제산업대신」이라고 바뀌 읽어야 한다.

(공시송달)

제21조 경제산업대신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一 송달을 받아야 하는 자의 주소, 거소, 그 외에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二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에 관하여 전조에서 바뀌 읽어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것에 의해서도 송달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 三 전조에서 바뀌 읽어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의 관할관청에 촉탁을 발한 후 6월을 경과하여도 그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의 송부가 없는 경우
2. 공시송달은 송달을 해야 하는 서류를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언제나라도 교부하여야 하는 취지를 경제산업성의 게시장소에 게시함에 의해 한다.
3. 공시송달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시작한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는 것에 의해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
4.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에 관하여 한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전항의 기간은 6주간으로 한다.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

제22조 경제산업대신의 직원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법률(평성 14년 법률 제151호) 제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처분통지 등이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에 관한 사무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한 때는 제20조에서 바뀐 읽어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하여 해당 사항을 해당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사용에 관련된 전자계산기(입출력장치를 포함한다)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4장 벌칙

제23조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 二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기재를 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三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 혹은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동조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때

제25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전 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는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하여 각 본조의 형을 부과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고철용 (2022), “인격권 개념의 입법에 관한 小考 - 202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99호
- 권영준 (2009),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민사판례연구 제31호
- 권태상 (2013), “개인정보 보호와 인격권 - 사법(私法) 측면에서의 검토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7권 제4호
- 권형돈 (2021), “디지털 전환의 시대 언론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모색 - 언론중재법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3호
- 김여라 (2020),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NARS 현안분석, 제114호
- 김여라 (2022), “호주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2021)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언론 통제
- 김정화·임동민·차호동 (2023),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의 규제 방향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ChatGPT 등 인공지능 시스템 생성물에 대한 표시·고지의무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80호(2023 가을)
- 김재선 (2020),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행정법적 대응방안 -영국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 김재형 (2004), “언론에 의한 인격적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제339호, 대한변호사협회
- 김준우 (2022), “혐오범죄의 형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원/강동욱 (2018),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5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지현 (2022),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90호, 국회도서관

- 김현귀 (2016),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규제”, 헌법이론과 실무 2016-A-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김희정 (2022), “우리 사회 혐오 피해에 대한 법정책적 시사점”, 가천법학 제15권 제4호
- 민영성/박희영 (2016),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제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법학연구 제57권 제2호
- 박경신 (2009),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에 대한 비교법적인 분석”, 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 박경신/김가연 (2011), “모욕죄의 보호범의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 박미숙/추지현 (2017),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신욱 (2016),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제한과 관련된 독일 전자정보법률(TMG) 연구”, 비교사법 제23권 제1호
- 박신욱 (201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그 확장과 관련된 독일 법행법(NetzDG) 연구”,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 박아란 (2020), “디지털 인격권 침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64권 제3호
- 박용숙 (2022),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을 중심으로 -”,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 박정훈 (201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리책임 - 미국의 통신품위법 제230조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 박지원 (2016),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 박현아/이재진 (2019), “온라인게임 공간에 혐오표현 규제 가능성 - 시론적 연구 -”, 언론과 법, 제18호
- 박희영 (2018), “독일의 가짜뉴스(Fake News)에 대처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 최신외국법제정보 4, 한국법제연구원
- 성욱제·정은진 (2020), 코로나19와 허위정보: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송현정 외 2인 (2020),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송현정 (2022), “현행법상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 헌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 심보영 (2020),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 피해자학회
- 안수길 (2019),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법학논총 제36집 제1호
- 오택섭 (2018),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2018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윤성옥 (2019), “가짜뉴스 규제 법안의 특징과 문제점”, 언론과 법 제18권 제1호
- 이균용 (2006), “헌법의 입장에서 본 명예의 침해에 의한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가처분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 - 대상결정 :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저스티스 제89호
- 이권일 (2019),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가짜뉴스(fakenews) 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20권 제1호
- 이문한 (2021), “코로나 19 관련 가짜뉴스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처벌과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법학평론 제11호
- 이병준 (2021),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제7권 제2호
- 이부하 (2022), “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3호
- 이상우 (2019), “유튜브와 허위정보”. 한국방송학회 <유튜브와 정치 편향성,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 세미나 발제집, 2019. 8. 21.
- 이승선 (2017), “영상취재·보도영역의 신기술 활용과 인격권 침해문제 - 드론·모바일폰·블랙박스·CCTV를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2호
- 이승현 (2017), “학문적 비평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 법리와 쟁점”, 언론중재 제144호
- 이승현 (2017),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로날드 드위킨과 제레미 윌드론의 논쟁”, 법과 사회 제55호
- 이정남 (2011), “혐오범죄의 형사법적 규율에 관한 제언 - 미국의 혐오범죄예방법(Hate Crimes Prevention Act) 및 혐오범죄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을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제9권 제2호
- 이종일 (2016),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과 논쟁 범위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제23권 제2호

- 전창영 외 3인 (20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통신심의에 대한 탐색적 고찰: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 및 규제현황”, 방송통신연구 제104호
- 정다영 (2017),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의 보호”,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1호
- 정 완 (2022), “사이버공간상 혐오표현 규제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제23호 제3권
- 정준영 (2013), “치유와 책임, 그리고 통합: 우리가 회복적 사법을 만날때까지”, 저스티스 통권 제134권 제3호
- 정 철 (2009), “연명치료중단 판결의 헌법적 검토: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 조규범 (2017),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306호, 국회입법조사처
- 조재현 (2020), “가짜뉴스와 공직선거법상 규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 지성우 (2019), “독일의 혐오표현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헌법적 평가”,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 지성우·윤성옥·박용숙·이승현 (2019), “해외 각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 연구”, 한국언론중재위원회
- 최유리 (2022), “가짜뉴스 규제논의 동향 및 제도 연구 - 싱가포르의 가짜뉴스 규제를 중심으로 -”,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III), 법무연수원
- 최 란 (2018), “현행법상 혐오표현의 규제, 특히 명예에 관한 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제4권 제2호
- 한국선거협회 (2021), 온라인 가짜뉴스 관련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가짜뉴스 현황과 문제점, 연구서 2017-06
- 허순철 (2017), “미국에서의 공적 관심의 개념과 판단기준”, 법학논총 제33집 제3호
- 현대호 (2008), “개인의 감정적 평온에 관한 불법행위: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제24집
- 홍성수 (2019),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혐오 또는 증오감에 의한 범행 가중 처벌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제151호
- 홍성수 (2018),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 해외문헌

- Hunt Allcott and Matthew Gentzkow (2017), Social Media and Fake News in the 2016 Elec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1(2), pp. 211.
- Ben Andrew (2019), Making Restorative Justice happen for hate crime across the country, pp.4.
- Sara Sun Beale (2000), Federalizing Hate Crimes: Symbolic Politics, Expressive Law, or Tool for Criminal Enforcement?, 80 *B.U.L.Rev.* 1227, 1238.
- Bradshaw & Howard (2019), 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Working Paper, Project on Computational Propaganda.Oxford, UK, pp.13.
- Winfried Brügger (2003), The Treatment of Hate Speech in German Constitutional Law (Part I), 4 *German L. J.* 1, 13, pp.16.
- Ilaria Buri/Joris van Hoboken (2021),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proposal: a critical overview, *Digital Services Act (DSA) Observatory*, p.18-19.
- Caroline Cauffman/Catalina Goanta (2021),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Consumer Protection,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12(4), pp.769.
- Anupam Chander (2023), When the Digital Services Act Goes Global,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Forthcoming, pp.14.
- R. Cohen (2014), Regulating Hate Speech: Nothing Customary About It,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5(1), pp.240.
- Nicholas C. Erickson (2005), Hate Crimes, 6 *Geo. J. Gender & L.* 289, 291-292.
- Eliza J. Estrella (2023), Fals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The Problem with Free Speech in a Fake News Crisis, 88 *Brook. L. Rev.* 1313, 1318.
- Sharon Galantino (2023), How Will the EU Digital Services Act Affect the Regulation of Disinformation?, 20:1 *SCRIPTed* 89, pp.95.
- N. Guggenberger (2017),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S. 2577~2578.

- B. Holznagel (2017), "Das Complicance-System des Entwurfs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ZUM, 2017, S. 615 ff.
- Jean-Marie Kamatali (2021), "Hate Speech" in America: Is It Really Protected?, 61 Washburn L.J. 163, 163.
- Jean-Marie Kamatali (2010), The U.S. First Amendment Versus Freedom of Expression in Other Liberal Democracies and How Each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on Hate Speech, 36 Ohio N.U.L. Rev. 721, 737-740.
- Robert A. Khan (2013), "Why Do Europeans Ban Hate Speech? A Debate Between Karl Loewenstein and Robert Post," 41 Hofstra Law Review 545, 547.
- K. Ladeur/T. Gostomzyk (2012), Der Schutz von Persönlichkeitsrechten gegen Meinungsäußerungen in Blogs - Geht die große Zeit des privaten Presserechts im Internet zu Ende?, NJW 2012, S. 710-714.
- M. Liesching (2017), "Was sind 'rechtswidrige Inhalte' im Sinne des Netzwerkdurchsetzungsgesetzes?", ZUM, 2017, S. 813 ff.
- Benjamin Raue (2018), Meinungsfreiheit in sozialen Netzwerken - Ansprüche von Nutzer sozialer Netzwerke gegen die Löschung ihrer Beiträge, JZ 2018, S. 961-962.
- Andrej Savin (2021), The EU Digital Services Act: Towards a More Responsible Internet, Copenhagen Business School Law Research Paper Series No. 21-04, Journal of Internet Law, p.14-15.
- William A. Schabas (2000), Hate Speech in Rwanda: The Road to Genocide, 46 McGill L.J. 141, 164.
- L. Specht/V. Eickhoff (2016), Ein reformiertes Haftungskonzept für rechtswidrige Äußerungen auf Bewertungsportalen?, CR 2016, S. 740-745.
- Nadine Strossen (2018), Hate: Why We Should Resist it with Free Speech, Not Censorship 67.
- Ioanna Tourkochorit (2023), The Digital Services Act and the EU as the Global Regulator of the Internet, Chicago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No. 1, pp.144.
- Aina Turillazzi/Mariarosaria Taddeo/Luciano Floridi/Federico Casolari (2022), The digital

services act: an analysis of its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Law, Innovation and Technology, 15:1, pp.94.

Alexander Tthesis (2016), Balancing Free Speech, 96 B.U.L.Rev. 1.

Richard Ashby Wilson & Molly K. Land (2021), Hate Speech on Social Media: Content Moderation in Context, 52 Conn. L. Rev. 1029, 1037.

● 저 자 소 개 ●

이 부 하

-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 현 영남대학교 교수

강 기 봉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 현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김 세 준

-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 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한 성 훈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 현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허 순 철

-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박사
- 현 경남대학교 교수

김 기 선

- 독일 라이프찌히대학교 법학박사
- 현 충남대학교 교수

김 성 호

- 독일 본대학교 법학박사
- 현 부경대학교 교수

박 세 영

-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 현 교통대학교 강사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3-29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미디어 규범 마련 연구

2023년 12월 31일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